

OECD기준에 따른

한국의 Family Database 구축방안 연구

보 건 복 지 가 족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OECD 기준에 따른 한국의 Family Database 구축
방안 연구

발행일 2009년 월
저자 고경환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가격 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490-2 93510

머리말

선진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교육 등의 영향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직업과 가정생활의 양립(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을 위한 가정친화적 정책이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OECD는 회원국들의 일·가정양립의 정책성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동·가족·아동분야에 비교 가능한 국제지표를 제공할 수 있는 Family Database를 새로 구축(2008)하였다.

OECD Family Database는 크게 4개의 대분류 즉 ‘가족의 구조’(SF),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가족과 자녀에 대한 공공정책’(PF), 그리고 ‘아동성과’(CO)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대분류는 14개의 중분류, 54개의 소분류, 그리고 110개의 하위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2009년 3월말 기준). 이들 구성 체계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개발하고 있어 앞으로 지표체계의 범위는 넓어지고 통계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Family Database는 부모와 자녀의 핵가족에 초점을 두었으며, 가족 중 노인구성원은 제외(pension or health or long-term care에서 다룸)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OECD기준에 따른 Family Database를 생산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전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통계작성기준과 우리의 통계생산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통계생산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Family Database는 우리의 가족정책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동과 가족정책 수립의 방향이나 내용 등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가족문제와 사회정책에 관심 있는 사회학자 및 정부부처의 정책수립자, 정부의 통계담당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본 연구는 당원의 고경환 연구위원의 책임으로 원내 연구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전체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연구진의 구체적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다.

- 1장 서론(고경환)
- 2장 가족의 구조(정경희)
- 3장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강지원)
- 4장 가족과 자녀에 대한 공공정책(고경환)
- 5장 아동성과(김미숙)
- 6장 통계 생산방안(연구진 공동)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연구진은 그 동안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실의 김영균·신준호과장, 연구진행과 결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현영남사무관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진들은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주신 당원의 김승권 선임연구위원과 김유경 부연구위원에게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5
요약	17
1장 서론	25
제 1절 연구 배경 및 방법	25
제 2절 Family database의 개요와 구성	28
2장 가족의 구조	41
제 1절 OECD의 작성기준과 한국의 현황	41
제 2절 한국의 통계생산방안	97
3장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117
제 1절 OECD의 작성기준과 한국의 현황	117
제 2절 한국의 통계생산방안	147
4장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	165
제 1절 OECD의 작성기준과 한국의 현황	165
제 2절 한국의 통계생산방안	239
5장 이동성과	259
제 1절 OECD의 작성기준과 한국의 현황	259
제 2절 한국의 통계생산방안	296
6장 통계 생산방안	315
제 1절 Family database의 생산현황	315

제 2절 기존 조사를 활용한 생산 방안	322
제 3절 신규조사를 통한 생산방안	330
참고문헌	339
부록	343

표목차

〈표 1-1〉 OECD Family Database의 체계(2009년 5월말 기준)	30
〈표 1-2〉 OECD Family Database의 구성 예	31
〈표 1-3〉 OECD Family Database의 개발정도(2009년 5월 기준)	32
〈표 2-1〉 ‘가족의 구조(The structure of families)’의 공개된 지표 현황 ..	42
〈표 2-2〉 가구유형, 최근년도(SF1.1)	46
〈표 2-3〉 아동이 있는 가구 비율 및 부모 동거여부에 따른 가구 분포(SF 1.2)	47
〈표 2-4〉 아동수별 가구 분포(SF 1.3)	48
〈표 2-5〉 가구유형별 0~14세 아동분포, 최근 년도 기준(SF 2.1)	53
〈표 2-6〉 가구유형별 0~14세 아동분포, 2007년 이후(SF 2.2)	54
〈표 2-7〉 0~14세 아동수별 가구 분포, 2007년 이후(SF 2.3)	55
〈표 2-8〉 0~14세 아동의 거주형태 분포, 2007(SF 3.1)	59
〈표 2-9〉 0~14세 아동의 거주형태 분포, 2007(SF3.2)	60
〈표 2-10〉 무자녀 가구에 속한 여성의 비율(Table SF 7.1)	83
〈표 2-11〉 파트너십 종류별 분포 및 동거율, 최근년도(표 SF9.1)	93
〈표 2-12〉 파트너십 상태와 자녀, 2001(표 SF9.2)	94
〈표 2-13〉 ‘가족의 구조(SF)’에 대한 한국 통계 현황	96
〈표 2-14〉 0~14세 아동의 거주형태 파악을 위한 질문	105
〈표 3-1〉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의 공개된 지표 현황1)	118
〈표 3-2〉 학력별 연령집단별 남성 대비 여성들의 평균 연간 소득(LMF 5.1)	130
〈표 3-3〉 학력별 여성의 고용율과 성별 고용률 격차, 2004(LMF6.1)	137
〈표 3-4〉 대분류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의 요구통계 현황	146
〈표 3-5〉 한국의 여성고용률(25-44세)	148
〈표 3-6〉 경제활동인구조사표의 가구원 현황	149
〈표 3-7〉 가족실태조사표의 가구원 현황	149
〈표 3-8〉 보육교육실태조사의 최연소 아동 기준 모의 고용률	152
〈표 3-9〉 가족실태조사의 자녀존재여부에 대한 질문	154
〈표 3-10〉 가구대표조사의 자녀 연령과 순위에 대한 질문	154

〈표 3-11〉	최연소 아동의 연령별 모의 취업 비율	159
〈표 3-12〉	모의 연령별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인원 비중 추이	159
〈표 4-1〉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PF)’의 공개된 지표 현황	167
〈표 4-2〉	가족 현금급여, 2007(PF3.1)	177
〈표 4-3〉	아동부양체계의 핵심적인 특징들(PF5.1)	185
〈표 4-4〉	한부모 비율과 아동부양비를 받는 한부모 비율(PF5.2)	188
〈표 4-5〉	아동부양비의 수준(PF5.3)	189
〈표 4-6〉	출산휴가, 부성휴가와 육아휴직 비교, 2006/2007(PF7.1)	194
〈표 4-7〉	법정 휴일과 노조합의된 연가 휴가일 수, 2007(PF9.1)	207
〈표 4-8〉	근로하는 부모들의 추가적인 휴가 이용, 2006/07(PF9.2)	208
〈표 4-9〉	6세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이용률(PF11.1)	217
〈표 4-10〉	보육유형(PF13.1)	228
〈표 4-11〉	보육교사자격과 주 근무지 요건(PF14.1)	232
〈표 4-12〉	유치원 교사의 자격과 주요 근무지(PF14.2)	233
〈표 4-13〉	방과후보육서비스의 핵심 특징들(PF15.1)	237
〈표 4-14〉	아동 부양체계의 특징	240
〈표 4-15〉	이혼신고서의 자녀 관련조항	240
〈표 4-16〉	한부모가족의 증가(1995-2005)	242
〈표 4-17〉	혼인상태별 모부자가족의 비율(1995-2005)	243
〈표 4-18〉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46
〈표 4-19〉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인원 비중 추이	247
〈표 4-20〉	육아휴직급여 수급인원 비중 추이	248
〈표 4-21〉	여성의 휴가 사용인원	249
〈표 4-22〉	기업 규모별 가족간호휴가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율 정도	251
〈표 4-23〉	방과후보육 통계	252
〈표 4-24〉	방과후학교 통계	253
〈표 4-25〉	방과후보육서비스의 특징	254
〈표 5-1〉	‘아동성과(CO)’의 공개된 지표 현황1)	260

〈표 5-2〉	불평등 정도(198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CO7.1)	271
〈표 5-3〉	이동과 유자녀 가구의 빈곤율(2000년대 중반)(CO8.1)	278
〈표 5-4〉	수료한 공교육 교육연수(2004)(CO9.1)	284
〈표 5-5〉	한국의 영아사망률 추이	297
〈표 5-6〉	우리나라 저체중아 비율(1993~2007)	300
〈표 5-7〉	아동빈곤율 변화추이(1989~2007)	304
〈표 5-8〉	성별에 따른 니트 비율(2004년도)	308
〈표 5-9〉	개인적 특성별 니트(NEET) 청소년 실태(2004년)	308
〈표 5-10〉	성별 니트 비율 추이(15~29세)	311
〈표 5-11〉	성별 니트 비율 추이(15~24세)	311
〈표 6-1〉	한국의 Family database 통계생산 현황과 방안	316
〈표 6-2〉	'가족의 구조(SF)' 요구통계 분석 현황	318
〈표 6-3〉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요구통계 분석 현황	319
〈표 6-4〉	'가족과 이동에 대한 공공정책(PF)' 요구통계 분석 현황	320
〈표 6-5〉	'이동성과(CO)' 요구통계 분석 현황	321
〈표 6-6〉	기존 자료원을 활용한 생산가능 통계	323
〈표 6-7〉	기존조사의 재분석 또는 문항보완을 통한 생산가능 통계	324
〈표 6-8〉	기존조사의 재분석으로 생산가능한 통계(SF)	325
〈표 6-9〉	기존조사의 재분석으로 생산가능한 통계(LMF)	326
〈표 6-10〉	기존조사의 재분석으로 생산가능한 통계(PF)	327
〈표 6-11〉	기존조사를 활용한 재분석 요구 통계	328
〈표 6-12〉	기존조사의 보완을 통해 생산가능한 통계들	329

그림목차

[그림 1-1]	Family Database의 주요 자료원	36
[그림 1-2]	한국 가족관련 통계의 주요 자료원	37
[그림 2-1]	평균가구원수, 2000년대 초반 혹은 중반(SF1.1)	44
[그림 2-2]	1970, 1995, 2006년의 합계출산율(SF 4.1)	63
[그림 2-3]	1950년과 1965년에 태어난 여성코호트의 완료출산율(SF 4.2)	64
[그림 2-4]	정상분만아의 출생순위별 분포, 2005(SF 4.3)	65
[그림 2-5]	출생순위별 분포의 변화, 1980년~2005년간의 변화(SF 4.4)	66
[그림 2-6]	국가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SF 4.5)	67
[그림 2-7]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SF 5.1)	69
[그림 2-8]	1970년대 이후의 첫째아 출산의 연기(SF 5.2)	69
[그림 2-9]	연령별 출산율, 1970~2006(SF 5.3) (예: 오스트리아)	70
[그림 2-10]	혼외출산아의 비율, 2007년 또는 최근연도(SF 6.1)	73
[그림 2-11]	1970년도 이후의 혼외출산아 비율의 변화(SF 6.2)	74
[그림 2-12]	국가별 혼외출산아 비중과 출산율의 관계(SF 6.3)	75
[그림 2-13]	십대출산율, 1980년과 2005년(SF 6.4)	76
[그림 2-14]	코호트별 무자녀 비율(SF 7.1)	78
[그림 2-15]	확정적인 무자녀 비율의 국가간 비교(SF 7.2)	80
[그림 2-16]	1965년생 여성의 확정적인 무자녀와 완료출산율의 관계(SF 7.3)	81
[그림 2-17]	1970년과 2007년 사이의 조혼인율 저하 추이(SF 8.1)	87
[그림 2-18]	초혼의 비율(SF 8.2)	88
[그림 2-19]	초혼연령, 2003(SF 8.3)	88
[그림 2-20]	초혼연령에서의 남녀차이(SF 8.4)	89
[그림 2-21]	1970년-2006/7년간의 OECD 국가들의 조이혼율의 증가 추이(SF 8.5)	90
[그림 2-22]	1980년과 2005년의 이혼시 평균결혼기간(SF 8.6)	90
[그림 2-23]	파트너와의 거주형태(그림 SF 9.1)	92
[그림 3-1]	여성 고용률과 모의 고용률의 비교(LMF2.1)	120
[그림 3-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모의 고용률(LMF2.2)	120
[그림 3-3]	16세 이하 자녀수별 모의 고용률(LMF2.3)	121

[그림 3-4]	성별, 고용연령별 프로파일(2005)의 예시(LMF4.1)	124
[그림 3-5]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모의 고용률과 출산휴가율(LMF4.2)	124
[그림 3-6]	중위소득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LMF5.1)	128
[그림 3-7]	상하위 소득분위별 성별 임금 격차, 2004(LMF5.2)	128
[그림 3-8]	중위소득자의 성별 임금 격차 동향, 1980-2004(LMF5.3)	129
[그림 3-9]	시간제 고용 비율, 2005(LMF6.1)	132
[그림 3-10]	여성의 시간제 고용율의 변화, 1990-2005(LMF6.2)	132
[그림 3-11]	임시고용 비율, 2005(LMF6.3)	134
[그림 3-12]	임시직 여성 비율의 동향, 1990-2005(LMF6.4)	135
[그림 3-13]	성별 주당 통상 근무시간의 예, 2005(LMF7.1)	142
[그림 3-14]	주당 40시간이상 근로자 비율의 변화(LMF7.2a)	142
[그림 3-15]	주당 50시간이상 근로자 비율의 변화(LMF7.2b)	143
[그림 4-1]	GDP 대비 급여유형별 가족 급여에 대한 공적 지출(PF1.1)	170
[그림 4-2]	교육수준별 공공지출, GDP 대비 %. 2005(PF2.1)	172
[그림 4-3]	교육수준별 학생 1인당 공공지출, US \$, 2005(PF2.2)	173
[그림 4-4]	OECD 국가들의 조세급여 시스템 비교(PF4.1)	180
[그림 4-5]	평균소득 67%의 배우자가 있는 부부의 평균실효세율(PF4.2)	181
[그림 4-6]	출산휴가, 부성휴가와 육아휴직 이용, 2006/2007(PF7.1)	197
[그림 4-7]	아동 1인당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지출, 2003(PF7.2)	198
[그림 4-8]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피고용인 부모의 휴가 사용 비율(PF8.1)	200
[그림 4-9]	1세미만 자녀가 있는 모의 자녀 출생순위별휴가 사용 비율(PF8.2)	201
[그림 4-10]	휴가 수급권을 사용하는 어머니 대비 아버지의 비율(PF8.3)	202
[그림 4-11]	보육·유아교육서비스에 대한 GDP 대비 공공지출(PF10.1)	211
[그림 4-12]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PF10.2)	212
[그림 4-13]	6세미만 아동의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이용률(PF11.1)	215
[그림 4-14]	3-5세 아동의 유치원 대기율(PF11.2)	216
[그림 4-15]	유치원에 다니는 2세 아동의 보육비용(PF12.1)	221
[그림 4-16]	평균 임금 167%인 2인 소득자 가족의 순 보육비용(PF12.2)	223
[그림 4-17]	평균 임금 67%인 한부모 가족의 순 보육비용(PF12.3)	224

[그림 4-18]	0-3세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 비율(PF14.1) ……	230
[그림 4-19]	3-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의 교사 대 아동 비율(PF14.2) ……	230
[그림 4-20]	3-11세 연령별 아동의 방과후보육서비스 이용률(PF15.1) ……	236
[그림 5-1]	영아사망률, 2005(CO1.1) ……	262
[그림 5-2]	일부국가의 영아사망률, 1970~2005(CO1.2) ……	262
[그림 5-3]	영아사망률 감소, 1970~2005(CO1.3) ……	263
[그림 5-4]	저체중아 비율, 2005(CO2a.1) ……	265
[그림 5-5]	저체중아 비율(몸무게 2.5kg 미만) 변화(CO2a.2) ……	266
[그림 5-6]	2세 아동 백일해 집중율과 전체인구 백일해 발생률(CO2b.1) ·	267
[그림 5-7]	2세 아동 홍역 집중율과 전체인구 홍역 발생률(CO2b.2) ……	268
[그림 5-8]	소득불평등 지니계수(2000년대 중반)(CO7.1) ……	270
[그림 5-9]	가구유형별 상대소득(2000년대 중반)(CO7.2) ……	272
[그림 5-10]	가구유형별 상대소득(1980년대와 2000년대 중반)(CO7.3) ·	273
[그림 5-11]	아동 및 전체인구 빈곤율(2000년대 중반)(CO8.1) ……	275
[그림 5-12]	아동빈곤율 변화(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CO8.2) 276	
[그림 5-13]	가구유형별 빈곤율(2000년대 중반)(CO8.3) ……	276
[그림 5-14]	모성고용율이 높은 국가에서의 낮은 아동빈곤율(CO8.4) ……	277
[그림 5-15]	성별 및 연령별 고등학교 졸업비율(2004)(CO9.1) ……	281
[그림 5-16]	성별 및 연령별 대학교 졸업비율(2004)(CO9.2) ……	282
[그림 5-17]	성별 인문학, 예술, 교육학 분야 대졸자 비율(CO10.1) ……	285
[그림 5-18]	성별 수학, 컴퓨터공학 분야 대졸자 비율(2004)(CO10.2) ……	286
[그림 5-19]	성별 공학, 산업공학 및 토목공학 분야 대졸자 비율(CO10.3)286	
[그림 5-20]	읽기와 수학 성적 성차, PISA(2003)(CO12.1) ……	288
[그림 5-21]	조기교육 참여 기간별 평균 읽기점수 차이(CO12.2) ……	289
[그림 5-22]	부모 고용형태별 평균 읽기점수 차이(CO12.3) ……	290
[그림 5-23]	부모 교육수준별 평균 읽기문해율 점수(CO12.4) ……	291
[그림 5-24]	성별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15-19세 젊은이 비율(CO13.1)293	
[그림 5-25]	성별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15-19세 젊은이 연령군 성장률(CO13.2) 294	

부표목차

〈부표 1〉 OECD 기준 자료원에서 생산한 요구통계	343
〈부표 2〉 타 국제기구의 자료원에서 생산한 요구통계	344

Abstract

Not only the family dissolutions are increasing such as divorces, single household so on, but also family structures are varying. Environment surrounding the family so as instability of labor markets and increasing of double-income family are rapidly changing. Countries are switching public policies for children and families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In this background, the OECD establish the Family Database for the changes in the family structures and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y, to compare the policies for the children and families, child outcomes.

Family database present about 60% data showing currently and the rest is still being developed(table 1).

Table 1. OECD Family Database composition

division number	Broad Heading	Middle Category	Indicator	Requirement data
	4	14	54	110
contents	The structure of Families(SF)	Families and Children and 2 items	Family size and household composition and 8 items	Family size and 33 items
	The labor Market of Position of Families(LMF)	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and 2 items	Children in family by employment status and 11 items	Maternal employment rates and 16 items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PF)	General tax/benefit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and 3 items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and 11 items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in cash, services and tax measures and 30 items
	Child Outcomes(CO)	Child health and 3 items	Infant Morality and 17 items	Infant Morality rate(1980-2005) and 27 items

The purpose of this is to find ways producing non-submission statistics. For this we first review the definition and methodology in Family database, and secondly look up the family-related statistics in Korea.

Status of detailed statistics in Korea is submission 69 statistics(62.7%) and non-submission 41 statistics(37.3%).

Again, Korea-non-submission statistics are divided; immediately production through the existing(12, 10.9%); re-analysis of existing data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19, 17.2%); complement of the questionnaire in the existing researches but current not producing(10, 9.0%); requirement of new surveys(2, 1.8%).

Based on the Korean primary resources, the non-submission statistics are separated immediately producing, re-analysis of existing research and complement item of existing research(table 2).

Table 2. Korea data source and non-submission requirement data

Institutions	Data Source	Non-submission requirement data		
		Productibility	re-analysis existing research	complement existing research
		11	15	14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Vital Statistic	3	-	1
	Population Housing Survey	6	3	4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	5	2
	Survey Of Household	-	2	1
	Time Use Survey	-	-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Family Actual Conditions Survey	-	-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	3	3
	National Child Care And Education Actual Conditions Survey	-	-	2
	Infant And Maternal Mortality Survey	1	2	-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Statistics Of Employment Insurance	-	2	1

If the analys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be not available, or if the new questionnaires refused by the existing research institutors, new investigations are needed. For example, “Survey on the compatible work and family”, “Survey on Single parent and Child Maintenance System”, “Family income and spending Survey”, “Inter-Generational facts and recognition Survey”.

요약

-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단위로서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요소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복지의 공급주체이자 소비주체로서 가족의 중요성이 부각되는가 하면,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OECD는 가족정책의 국제적 성과 비교를 위해 Family database를 구축하기에 이룸.
- 전통적으로 가족정책 수립의 기본토대를 제공했던 ‘가족의 구조와 현황(The Structure of Families, SF)’ 및 최근 증가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인한 가족정책의 변화들을 살펴볼 수 있는 ‘가족의 노동시장지위(The Labor Market of Position of Families, LMF)’, 이혼 등 가족의 해체를 야기하는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가족을 보존하거나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가족과 아동에 대한 정부의 공공정책(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PF)’, 지속가능한 국가의 미래를 창출하는 핵심 자본인 ‘아동성과(Child Outcomes)’로 구성되어 있음.
- 즉 Family Database는 가족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들로 인한 아동성과(Child Outcomes, CO)를 비교가능하게 함.

□ Family Database는 4개의 대분류와 14개의 중분류, 54개의 소분류, 110개의 요구통계로 구성됨. 그러나 아직까지 개발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이 중 60%만 공개하고 있음. 추후 작성기준의 개발 완료 및 각국의 통계 수집과 함께 통계의 최신화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됨.

- ‘가족의 구조(SF)’는 전체 3개의 중분류와 9개의 소분류 중에서 8개의 소분류가 제공되고 있어 ‘완숙단계’라고 할 수 있음.
-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는 전체 3개의 중분류와 12개의 소분류 중 5개의 소분류에서만 통계가 제공되고 있어 ‘도입단계’로 명명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통계의 요구가 가장 많을 것임.
-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PF)’는 전체 4개의 중분류와 15개의 소분류 중 14개의 소분류에서 통계가 제공되고 있어 ‘완성단계’에 있다고 명명함.
- ‘아동성과(CO)’는 4개 중분류와 18개의 소분류 중 3개의 중분류와 9개의 소분류에서 통계가 제시되고 있어 도입단계는 지났으나 완숙되지 않은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음.

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요구통계
	4	14	54	110
항목 내용	가족의 구조(SF)	가족과 아동 외 2	가족 규모와 구성 외 8	평균가구원 수 외 33
	가족의 노동시장지위(LMF)	가족, 아동과 고용상태 외 2	고용상태별 가족의 아동 외 11	여성고용률 대비 모의 고용률 외 16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PF)	유자녀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조세/급여 지원 외 3	가족급여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 외 14	급여종류별 가족급여에 대한 공공지출 외 30
	아동성과(CO)	아동건강 외 3	영아사망률 외 17	영아사망률 외 27

주. 이 수치는 Family database 전체에 대한 것이나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60% 정도만 공개된 상태이므로 실제로 통계가 제공되는 것은 4개 대분류, 13개 중분류, 33개 소분류, 110개 요구통계에 대한 것임.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가 요구하는 Family database의 작성기준을 고찰하고, 한국의 가족관련 통계를 살펴본 뒤 미제출 통계의 생산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OECD Family database는 서구 유럽국가들과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어 한국의 통계 작성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음. 또한 핵가족을 기본적인 가족의 단위로 설정하고 있어 한국의 다양한 통계를 그대로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미 Family database에 한국의 통계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 통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대표성 등을 검토하고 기제출된 통계의 경우에도 적합하지 않으며 새로운 통계로 대체해야 함.
 - 현재 국제 기준에 적합한 국내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OECD Family database에 제출되지 않은 통계는 곧 통계 생산이 가능할 것임.
 - 미제출된 통계 중 국내 통계의 작성 기준이 국제 기준과 다른 경우 국내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조사 자료의 재분석이 필요함.
 - 미제출된 통계 중 국내 통계가 생산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먼저 기준에 유사한 조사가 있거나 관련된 조사가 있을 경우 OECD에 제출해야 하는 요구통계의 생산을 위해서 기존조사에 항목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함. 다음으로 기존의 조사들을 이용해서 요구통계를 생산하기 어렵거나 향후 한국의 가족상황과 가족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규조사를 검토함.

□ 4개의 대분류에 대해서 통계현황 및 생산방안을 결과는 다음과 같음.

	계	기제출	미제출			
			생산가능	재분석	보완	신규조사
합계	112	69	12	19	10	2
SF	34	12	9	8	5	-
LMF	17	13 ¹⁾	0	4	2 ¹⁾	-
PF	31	23	1	2	3	2
CO	28	21	2	5	0	-

주: 1) LMF 기제출 통계 13 개 중에는 1회성 연구 성과에 의한 요구통계(2개)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보완' 항목에 중복적으로 표기하였고, 이로 인해 합계가 110개에서 112개로 과다산출되었으나 실제 요구통계 합계는 112개임.

□ 미제출된 요구통계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바로 생산할 수 있는 통계와 기존 조사의 재분석과 조사항목의 보완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통계로 구분함.

- 미제출 요구통계 중 기존조사를 활용하여 바로 생산이 가능한 통계들은 단시일내에 제출할 수 있음.
- 기존 조사의 재분석은 조사실시기관과의 협의 여부에 따라 다르나 중기적으로 생산이 가능함.
- 기존 조사에 조사항목을 보완해야 하는 통계의 경우 조사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고, 조사실시기관에 조사항목 보완을 요청하는 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조사항목의 추가가 쉽지 않은 경우 신규조사로 전환해야함.

□ 한국의 주요 자료원을 기준으로 미제출 요구통계의 생산방안에 대해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자료원	미제출 요구통계		
		생산가능	기존조사의 재분석	기존조사의 보완
	계	11 ¹⁾	15	14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	-	1
	인구주택총조사	6	3	4
	경제활동인구조사	-	5	2
	가계조사	-	2	1
	생활시간조사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실태조사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	3	3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	-	-	2
	영아·모성사망조사	1	2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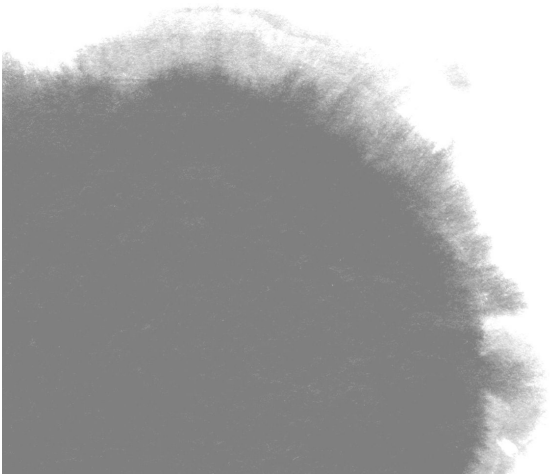
주. 1)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가능한 통계의 수는 총 12개이나 '부모들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휴가'는 한국의 제도 미도입으로 본 표에 포함하지 않음.

□ 미제출 통계 중 기존조사를 활용할 수 없는 항목들에 대해서 신규조사를 검토함.
또한 변화하는 한국의 가족 형태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가족문제들을 살펴
보기 위해 기존의 조사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신규조사를 논의함.

조사명(가칭)	조사목적	기존조사와의 차이	관련통계
일가족양립실태조사	-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모의 고용상태와 일가족양립 실태를 파악하여 유자녀 가족의 보육정책 및 일가족양립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족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파악할 수 없고,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에 관한 항목들이 제공되지 않음	- 자녀의 출생순위별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모의 휴가사용률 외 10 - 미공개 LMF 지표: 가족 상황별 모의 고용 외 2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이혼 후 자녀 양육의 책임과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하는 부나 모의 양육부담, 정부 지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 재가 모부자가정의 생활실태조사는 1회성 조사로 한부모 가족의 동태를 파악할 수 없고 자녀부양비, 한부모의 노동시장 참여, 정부 지원 항목이 미진함	- 아동 및 부모동거여부에 따른 가구분포 외 7 - 미공개 PF 지표: 양육지원 실태
가족소득실태조사	-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가 없어 가족의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하므로 사적인 가족소득 및 지출 실태를 파악하여 가족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통계청 가계조사는 일반적 인 소득과 지출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나 가족의 상황과 가족이 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조사항목은 없음.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욕구를 파악할 수 있음.	- 가구유형별 상대소득 외 5
세대실태 및 인식조사	- 가족을 매개로 세대간의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부담을 토대로 가족의 소득보장체계와 노후생활보장, 복지서비스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이와 유사한 기존의 조사는 없음	- 미공개 LMF 지표: 여가나 근로에서 벗어나 보내는 시간 외 2

01

서론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선진국들은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경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함께 가족부문에 대한 정부재정지출의 확충 등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 국가는 출산력을 증가시키고 향후 예상되는 노동공급의 부족을 해결하며 새로운 위험에 처한 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국가의 주요한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가족과 이동에 대한 국가 비교 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OECD는 최근 Family Database¹⁾를 개발하여 회원국의 가족정책 성과(outcomes)와 가족관련 지표들을 구축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OECD 데이터베이스들²⁾과 유럽연합(EU)의 데이터베이스, OECD의 개별 프로젝트들³⁾ 등에서 제공되던 정보를 취합하고, 회원국들의 가족, 노동, 공공정책, 그리고 이동성과분야의 지표들을 수집하여 구축한 것이다. 이를 통해 Family Database는 가족과 이동에 대한 개별 국가의 정책 현황과 정부의 가족부문 지출, 일-가족생활 양립 실태와 아동의 복지 등 가족정책의 성과들(outcomes)을 공유하고자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

1) 홈페이지는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2)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Benefits and Wages database, OECD Education database 등.

3) OECD Babies and Bosses(2005; 2007), OECD, Starting Strong II(2006), OECD, Taxing Wages 2006-2007(2007) 등.

최초의 Family Database는 2006년 말에 공개되었으나 대부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새로운 지표들을 포함하여 23개 지표를 공개하였고, 2009년에는 기존의 자료들을 최신화(up-date)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통계들을 추가 개발하여 50여개의 지표들을 공개하였다. 현재(2009년 5월말) OECD Family Database는 4개 부분의 5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대분류는 가족의 구조(9개 지표),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12개 지표), 가족과 이동에 대한 공공 정책(15개 지표), 그리고 이동성과(18개 지표)이다.

2008년 9월, OECD는 회원국인 우리나라에 Family Database의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제출 자료는 2000년대 이후지만 일부 데이터베이스는 1970년대부터 요구되는 자료들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족 관련 통계들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부분적으로 제공되었고, 법에 근거를 둔 ‘가족실태조사’,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등 조사자료들이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그 역사는 짧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탁 운영하는 ‘한국 아동패널’, ‘노동패널’, ‘복지패널’, ‘혼인과 출산동향 조사’ 등도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인 자료들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되기보다는 분산적이고 부분적이었던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 OECD가 요구하는 국제 기준에 적합한 가족보육통계를 생산함과 동시에 국내 가족관련 통계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작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Family Database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통계들이 국제통계의 작성 기준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적합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는 통계에 대한 통계생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인 OECD Family Database의 구축 배경과 체계, 개발 정도를 검토한다. 그런 다음 각 4개의 대분류별로 국제적인 통계의 작성기준과 요구통계, 통계 비교의 주의점과 데이터 이슈 등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가족의 구조(The Structure of Families)’에 대해서 국제적인 작성기준과 국가간 통계를 검토한 후, 각 중분류별로 국제적인 통계에 비추어 본 한국의 통계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한국의 통계생산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제 3장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The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제 4장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그리고 제 5장 ‘아동 성과(Child Outcome)’에서도 동일하다. 이는 OECD가 제시하고 있는 통계의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 and methodology)을 기준으로 한국의 통계 현황을 고찰하고 미제출 통계에 대한 생산방안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각 장에서 검토된 통계와 생산방안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가족통계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신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사례연구(Case Study), 관계전문가 회의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는 국내자료와 해외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자료는 기존에 가족과 관련한 통계자료들과 독립적인 연구자료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통계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주요한 가족 관련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 가족실태조사, 전국 보육 및 교육 실태조사, 혼인과 출산동향 조사 등이 있다.

다음으로 외국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2009)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의 작성기준과 요구통계, 국제통계 비교의 이슈와 데이터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OECD Family database에서 참조하고 있는 기존의 OECD 데이터베이스들(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Benefits and Wages database, OECD Education database 등)과 유럽연합(EU)의 데이터베이스, OECD의 개별 프로젝트들인 *Babies and Bosses*(2005; 2007), *Starting Strong II*(2006), *Taxing Wages 2006-2007*(2007) 등을 참고하였다.

한편,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통계작성기준은 개괄적이며 관념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국가간의 상이한 제도에 대해 공통의 요소들을 추출하여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성격 때문이다. 즉 국가간 다양한 가족제도를 국제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통일 하고자 공통의 기준을 설정하는 본질의 한계이다. 하지만 통계를 생산하는 연구진으로서의 보다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필요하다.

OECD가 제시하는 Family Database의 개념과 통계작성의 기준 및 예시가 충분하지 못하여 이를 참고로 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은 가족제도가 선진국과 다른 우리나라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통계산출 과정에서 우리 제도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통계의 적합성에 대한 고심스런 내용에 대하여 OECD관계자⁴⁾와 Case Study를 병행하였다. 이 관계자와의 끊임없는 질의와 토의는 OECD 작성기준에 적합한 추계가 달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방향이나 범위, 추계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로 추계의 정확성은 결국 통계의 신뢰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관계전문가는 당원의 연구진과 사회복지학과의 교수, 유관연구기관,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팀으로 구성되었다.

제 2절 Family database의 개요와 구성

1. 개요 및 분류체계

Family database는 가족정책의 주요한 정책 분야이자 성과지표인 4개의 큰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가족의 구조(the Structure of Families, SF),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the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LMF),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PF), 그리고 아동성과(Child Outcomes, CO)이다.

먼저 전통적으로 가족정책의 수립을 위해 기본 토대를 제공했던 가족의 구조와 현황(the Structure of Families, SF), 다음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맞벌이 가족의 증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은 가족정책의 변화들을 살펴볼 수 있는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the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LMF), 이어서 가족은 국가 지원을 위한 최소 단위로서 가족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자 의지를 반영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 정책(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PF),

4) 'OECD 사무국' 사회정책과의 Willem Adema Senior Economist 등.

마지막으로 가족 정책들의 결과는 결국 지속가능한 국가의 미래를 창출하는 핵심 자본인 아동에 초점을 맞춘 아동 성과(Child Outcomes, CO)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네 개의 대분류 체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분류 ‘가족의 구조(SF)’은 가족의 구성과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과 아동, 출산지표, 혼인과 동거 상태에 대한 9개의 지표 아래 34개의 요구통계가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는 최근 고용여부와 고용상태에 따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와 일-가정생활의 양립에 대한 가족들의 요구를 고려하기 위해 가족·아동과 고용상태, 성별 연령그룹별 고용율의 코호트 비교, 근로시간과 돌봄 노동에 소요하는 시간에 대한 12개 지표와 17개 요구통계가 있다.

이어서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의 성과를 파악하고 정부의 개입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PF)’은 유자녀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조세/급여 지원, 아동관련 휴가, 어린 영아에 대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 가족유형과 소득수준별 보육급여 유형과 순 부모 비용에 대해 15개 지표, 31개 요구통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성과(CO)’에서는 아동건강, 아동빈곤, 교육 및 기초 문해, 사회 참여에 대해서 18개 지표, 28개 요구통계를 통해 국가간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들 지표는 계속 개발 중이므로 향후 통계의 범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Family database의 체계는 아래의 <표 1-1> 과 같이 정리된다.

〈표 1-1〉 OECD Family Database의 체계(2009년 5월말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요구 통계
4 ¹⁾	14 ¹⁾	54 ¹⁾	110 ¹⁾
1. 가족의 구조 The Structure of families	1) 가족과 아동 Families and Children	3	9
	2) 출산지표 Fertility indicators	4	16
	3) 혼인과 동거 상태 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	2	9
2.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The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4) 가족, 아동과 고용상태 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4	5
	5) 성별 연령그룹(5세)별 고용율의 코호트 비교 Cross-cohort comparisons of employment rates by 5-year age groups by gender	2	9
	6) 근로시간과 돌봄노동에 소요하는 시간 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6	3
3.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7) 유자녀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조세/급여 지원 General tax/benefit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6	9
	8) 아동관련 휴가 Child-related leave	3	7
	9) 어린 영아에 대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 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	3	8
	10) 가족유형과 소득수준별 보육급여유형과 순 부모 비용 Typology of childcare benefits and net parental fees by family type and income level	3	7
4. 아동성과 Child outcomes	11) 아동 건강 Child health	6	7
	12) 아동빈곤 Child poverty	2	9
	13) 교육 및 기초 문해 Education/literacy	5	12
	14) 사회 참여 Societal participation	5	0

주: 이 수치는 Family database 전체에 대한 것이나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60% 정도만 공개된 상태이므로 실제로 통계가 제공되는 것은 4개 대분류, 13개 중분류, 34개 소분류, 110개 요구통계에 대한 것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한편 Family Database의 하위체계는 대·중·소분류와 요구통계로 구성된다. 즉 4개의 대분류 중 ‘가족의 구조(SF)’를 예를 들면, ‘가족과 아동’이라는 중분류 아래에 ‘가족규모와 구성(SF1)’, ‘가족내 아동(SF2)’, ‘아동의 주거상황(SF3)’의 3개 소분류가 있다. 이 중 ‘가족규모와 구성(SF1)’에는 OECD에 제출해야 하는 요구통계 4개(1-1, 1-2, 1-3, 1-4)가 포함되어 있다. <표 1-2> 는 가족의 구조(SF)의 단편적 구성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2> OECD Family Database의 구성 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요구통계	
			요구통계	요구통계
가족의 구조	가족과 아동	SF1 가족규모와 구성	1-1	평균가구원수
			1-2	가구유형
			1-3	아동 및 부모동거여부에 따른 가구분포
			1-4	아동수별 가구분포
		SF2 가족내 아동	2-1	0~14세 아동의 가구유형별 분포(1)
			2-2	0~14세 아동의 가구유형별 분포(2)
			2-3	0~14세 아동의 가구내 아동수별 분포
		SF3 아동의 주거상황	3-1	0~14세 아동의 부모와의 동일가구내 거주여부
			3-2	0~14세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특성

2. 구성요소

Family Database는 개발이 진행 중인 관계로 100% 제공되고 있지 않다. 때로는 작성기준의 설명없이 통계만 나열되고 있으며, 때로는 지표 이름만 있을 뿐 작성기준이나 통계가 전혀 공개되지 않기도 한다. 표 1-3은 현재 Family Database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약 60%(소분류 54개 중 32개), 통계는 50%(소분류 54개 중 27개)만 제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각 100% 수준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작성기준의 개발 완료 또는 통계자료의 최신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OECD에서는 향후 특정 시점에 연관되지 않고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Family Database의 개발 현황은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단계

구분의 기준은 작성기준 제시와 통계자료의 공개 여부이다. 독자의 이해를 위해 두 기준 중 하나라도 100%이면 완숙단계, 90%이상이면 완성단계, 50%이상이면 중간 단계, 그리고 40%이하이면 도입단계로 구분하여 보았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대분류 ‘가족의 구조’(SF)와 ‘가족과 이동에 대한 공공정책’(PF)은 각각 완숙단계에, 대분류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는 도입단계, 대분류 ‘아동성과’(CO)는 중간단계임을 알 수 있다.

〈표 1-3〉 OECD Family Database의 개발정도(2009년 5월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작성 기준	통계 공개	진행 단계
1. 가족의 구조 (SF)	가족과 이동	SF1	가족 규모와 구성 Family size and composition	○	○	완숙 단계
		SF2	가족 내 아동 Children in families	○	○	
		SF3	아동의 거주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Further information on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	○	
	출산지표	SF4	출산율 Fertility rates	○	○	
		SF5	첫 자녀 출산시 모(母)의 평균 연령 Mean age of mother at first childbirth	○	○	
		SF6	혼외 출산율과 십대 출산율 Share of births outside marriage and teenage birth	○	○	
		SF7	무자녀 Childlessness	○	○	
	혼인과 동거 상태	SF8	혼인율과 이혼율 Marriage and divorce rate	○	○	
		SF9	동거율과 기타 파트너십의 비율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	○	

주: ○표는 작성기준 또는 통계자료의 공개를, ×표는 미공개를 의미.
자료: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표 1-3〉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작성 기준	통계 공개	진행 단계	
2.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LMF)	가족, 아동과 고용상태	LMF1	고용 상태별 가족의 아동 Children in families by employment status	×	×	도입 단계
		LMF2	모성 고용율 Maternal employment rate	×	○	
		LMF3	가족상황별 어머니의 고용 Maternal employment by families status	×	×	
		LMF4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 프로파일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	○	
	성별 연령별 고용율의 코호트 비교	LMF5	성별 임금 격차와 학력별 소득 차이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	○	
		LMF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	○	
	근로시간과 돌봄노동에 소요하는 시간	LMF7	성별 주당 평상 근로시간 Usual weekly working hours among men and women by broad hours groups	×	○	
		LMF8	자녀유무와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커플 가구 성인의 근로시간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among couple families and adults in couple families individually, by broad hours groups, presence of children, and age of youngest child	×	×	
		LMF9	자녀 유무와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싱글 가구의 근로시간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among single persons by broad hours groups, presence of children, and age of youngest child	×	×	
		LMF10	가족 우호적인 근로 환경의 실제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	×	
		LMF11	여가나 근로에서 벗어나 보내는 시간 Time spent traveling to and from work	×	×	
		LMF12	근로와 돌봄, 가사일에 소요하는 시간 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	×	

주: ○표는 작성기준 또는 통계자료의 공개를, ×표는 미공개를 의미.
자료: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표 1-3〉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작성 기준	통계 공개	진행 단계
3.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 (PF)	유자녀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조세/급여 지원	PF1	가족급여에 대한 공공지출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	○	완성 단계
		PF2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	○	
		PF3	가족현금급여 Family cash benefits	○	○	
		PF4	조세/급여 체계의 중립성 Gender-neutrality of tax/benefits systems	○	○	
		PF5	이동 부양 체계 Child Support (maintenance) Systems	○	○	
		PF6	양육지원 Parenting support	×	×	
	아동관련 휴가	PF7	부모휴가시스템의 핵심적인 특징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	○	
		PF8	부모별 휴가 급여 사용율 Use of leave benefits, by mothers and fathers	○	○	
		PF9	근로하는 부모의 추가적인 휴가 수급권 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parents	○	○	
	어린 영아에 대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	PF10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	○	
		PF11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률 Enrollment in day-care and pre-school	○	○	
		PF12	자녀보육비지원 Childcare support	○	○	
	가족유형과 소득수준별 보육급여 유형과 순 부모비용	PF13	보육과 유아교육서비스의 유형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	○	
		PF14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	○	
		PF15	방과후보육서비스 Out-of-school-hour care services	○	○	

주: ○표는 작성기준 또는 통계자료의 공개를, ×표는 미공개를 의미.

자료: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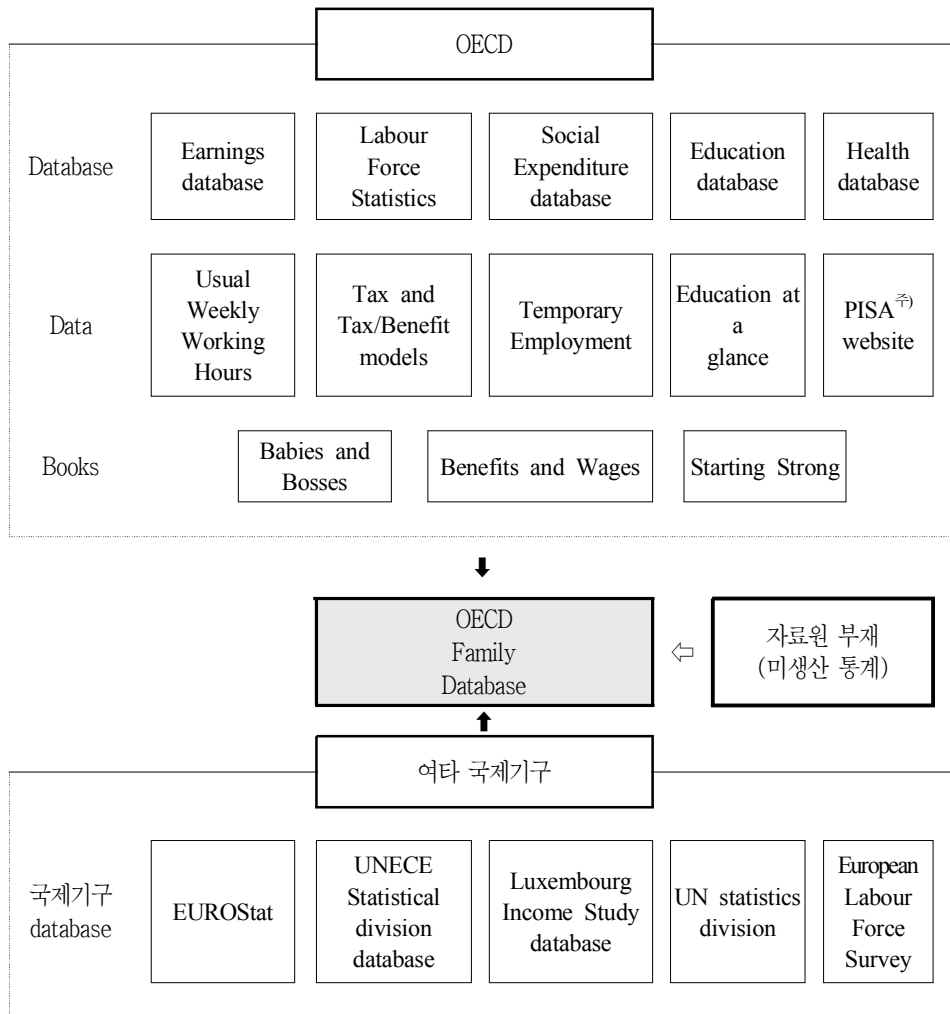
〈표 1-3〉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작성 기준	통계 공개	진행 단계	
4. 아동 성과 (CO)	아동건강	CO1	영아사망율 Infant mortality	○	×	중간 단계
		CO2a	저체중 출산 Low birth-weight	○	×	
		CO2b	백신율 Vaccination rates	○	×	
		CO3	모유보급율 Breastfeeding rates	×	×	
		CO4	질병 관련 통계: 아동의 당뇨병과 천식 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	×	×	
		CO5	10세 이하 아동의 비만 Obesity among children aged 10(and child height for children aged 10)	×	×	
	아동빈곤	CO6	15세 이상 아동의 성별 상습 흡연자 Regular smokers among 15 years olds, by gender	×	×	
		CO7	가구유형별 소득 지위의 경향 Trends in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	×	
	교육 및 기초 문해	CO8	아동 빈곤 Child poverty	○	○	
		CO9	성별 교육수준과 정규 교육의 평균기간(년) 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and average years spent in formal education	○	×	
		CO10	학과별 대학 졸업자들의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	×	
		CO11	9세 연령의 기초학력 점수 Literacy scores, age 9	×	×	
		CO12	15세 연령의 성별 기초학력 점수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	×	
	사회 참여	CO13	교육이나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or employment	○	×	
		CO14	15-29세 청년의 자원 봉사나 NGO 회원 참여 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	×	
		CO15	생애 첫 투표 이용률 Participation rates of first-time voters	×	×	
		CO16	십대 투옥률 Teenage incarceration rates	×	×	
		CO17	청소년의 약물 남용 Substance abuse by young people	×	×	
CO18		십대 자살 Teenage suicides	×	×		

주: ○표는 작성기준 또는 통계자료의 공개를, ×표는 미공개를 의미.
 자료: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OECD에서는 Family database를 구축하기 위해서 OECD의 다양한 자료원과 축적된 통계, 각종 논문이나 저널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국제적인 통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각국의 상황을 숙지하고 국가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므로 기존의 다양한 국제기구의 정의와 통계작성 기준, 통계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지 않는 통계에 대해서는 각국의 정부당국에 질문지를 보내어 자료를 취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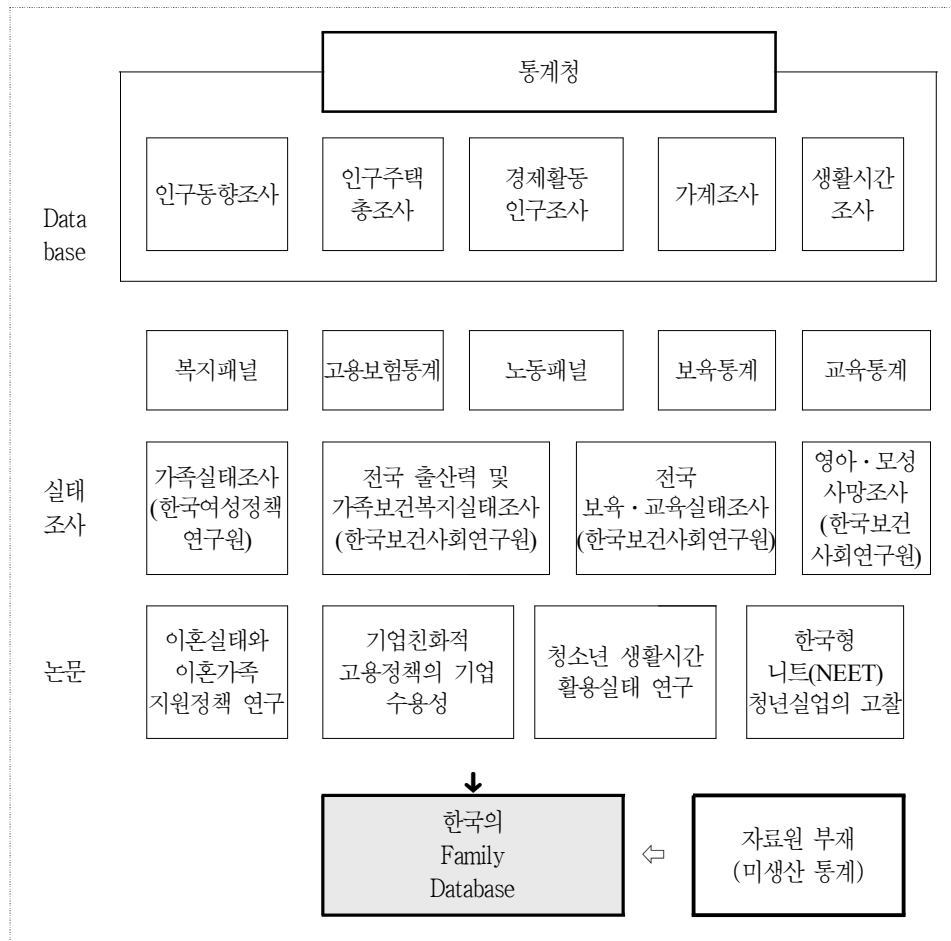
[그림 1-1] Family Database의 주요 자료원



주: PISA는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약칭임.

OECD 기준에 따른 한국의 Family database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 통계 및 실태조사, 논문 등을 통해 단절적으로 제공되는 통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각 요구통계의 생산이 기존 자료로 활용가능한지, 새로운 조사가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통계의 생산이 필요한 경우라도 기존의 통계 조사 혹은 실태조사의 항목에 대한 재분석 혹은 항목의 수정이나 보완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통계 및 조사에서 생산할 수 없는 통계와 한국의 가족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조사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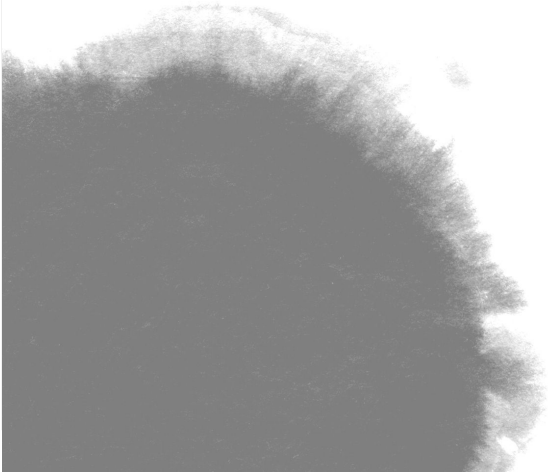
[그림 1-2] 한국 가족관련 통계의 주요 자료원



02

K
I
H
A
S
A

가족의 구조 (Structure of Families, SF)



2장 가족의 구조 Structure of Families, SF)

'가족의 구조(SF)'는 3개의 중분류와 9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34개의 개별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제1절에서는 각 소분류별로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작성기준과 통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지표의 정의와 작성기준, 주요 결과,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관련 이슈, 자료원에 관한 것이다. 그런 다음 34개의 요구통계 중 한국의 통계가 제시되어 있는 지표들에 한해서 국제 통계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제2절에서는 현재 Family database에 통계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요구통계를 중심으로 통계생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 1절 OECD의 작성기준과 한국의 현황

'가족의 구조(SF)'는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의 구성과 거주현황을 살펴보는데, '가족과 아동(Families and Children)', '출산지표(Fertility Indicators)', '혼인과 동거상태(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의 3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가족과 아동(중분류 1)'은 기본적인 가족의 형성과 구성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족규모와 구성, 가족내 아동, 아동의 주거환경이라는 3개의 소분류에서 9개의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출산지표(중분류 2)'는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의 형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출산율, 첫째아 출산시의 모의 연령, 혼외출산과 십대출산, 무자녀 등 4개 소분류에서 16개의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혼인과 동거 상태(중분류 3)'는 파트너십 형성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혼인율과 이혼율, 동거율과 기타 파트너십이라는 2개의 소분류에서 9개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표 현황은 표 2-1과 같다.

〈표 2-1〉 ‘가족의 구조(The structure of families)’의 공개된 지표 현황

중분류	소분류	요구통계	
가족과 아동	SF1 가족규모와 구성	1-1	평균가구원수
		1-2	가구유형
		1-3	아동 및 부모동거여부에 따른 가구분포
		1-4	아동수별 가구분포
	SF2 가족내 아동	2-1	0~14세 아동의 가구유형별 분포(1)
		2-2	0~14세 아동의 가구유형별 분포(2)
		2-3	0~14세 아동의 가구내 아동수별 분포
	SF3 아동의 주거상황	3-1	0~14세 아동의 부모와의 동일가구내 거주여부
		3-2	0~14세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특성
출산지표	SF4 출산률	4-1	합계출산률
		4-2	완료출산률
		4-3	생존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분포
		4-4	출생순위분포의 변화(1980-2005)
		4-5	국가별 여성경제활동참여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SF5 첫째아 출산시의 모의 연령	5-1	첫 자녀 출산시의 모의 평균연령
		5-2	1970년 이후의 첫 자녀 출산시 연령의 지연추이
		5-3	연령별 출산율
	SF6 혼외출산과 십대출산	6-1	혼외출산아 비중(최근 연도)
		6-2	1970년 이후의 혼외출산아 비중의 변화
		6-3	국가별 혼외출산아 비중과 출산률의 관계
		6-4	십대출산율(1980과 2005)
	SF7 무자녀	7-1	코호트별 무자녀 비중
		7-2	확정적인 무자녀 비중
		7-3	1965년생 코호트의 확정 무자녀와 완료출산율의 관계
		7-4	무자녀 가구에 속한 여성의 비중
혼인과 동거상태	SF8 혼인율과 이혼율	8-1	조혼인율의 추이(1970~2007)
		8-2	초혼의 비율
		8-3	초혼연령
		8-4	초혼연령에서의 남녀차이
		8-5	조이혼율의 증가추이(1970~2006/7)
		8-6	이혼시 평균결혼기간(1980~2005)
	SF9 동거 및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	9-1	파트너십 종류별 분포
		9-2	파트너십 종류와 자녀수별 분포 (2001)
		9-3	파트너와의 거주형태

자료: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

1. 가족과 아동(Families and Children)(중분류 1)

1) 가족 규모와 구성(Family size and household composition, SF1)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본 지표는 개별 가구의 구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개별 가구(private

household)는 일인가구와 다인가구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일인 가구는 독립된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단일 주택에서 분리된 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구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지칭한다. 두 번째는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multi-person household)이다. 주거 단위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유하며 생활비 부담을 공유하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가구 구성원의 확인은 일상적인 거주를 기초로 하며, 의료기관, 군대와 같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가구의 유형은 핵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정의된다. 핵가족은 배우자인 자녀가 있거나 혹은 없는 커플(기혼 혹은 동거)이거나 한 자녀 이상 있는 한부모이다. 이 때 부모는 생물학적인 부와 모 뿐만 아니라 복합가족(step family), 예를 들어 생물학적인 부모의 파트너까지 포함하는 용어이다.

이에 따르면 가구유형은 다음과 같이 하위 범주화된다. (a) 1인가구, (b) 자녀여부에 관계없이 이성의 성인과 결혼하거나 동거하고 있는 커플가구, (c) 한부모가구, (d) 기타 가구이다. 기타가구의 범주에는 동일한 거주공간을 공유하는 2인 이상이 동거하는 가족, 3세대 이상의 친인척이 동거하는 가구들(조부모, 부모 그리고 자녀가 있는 ‘확대가족’)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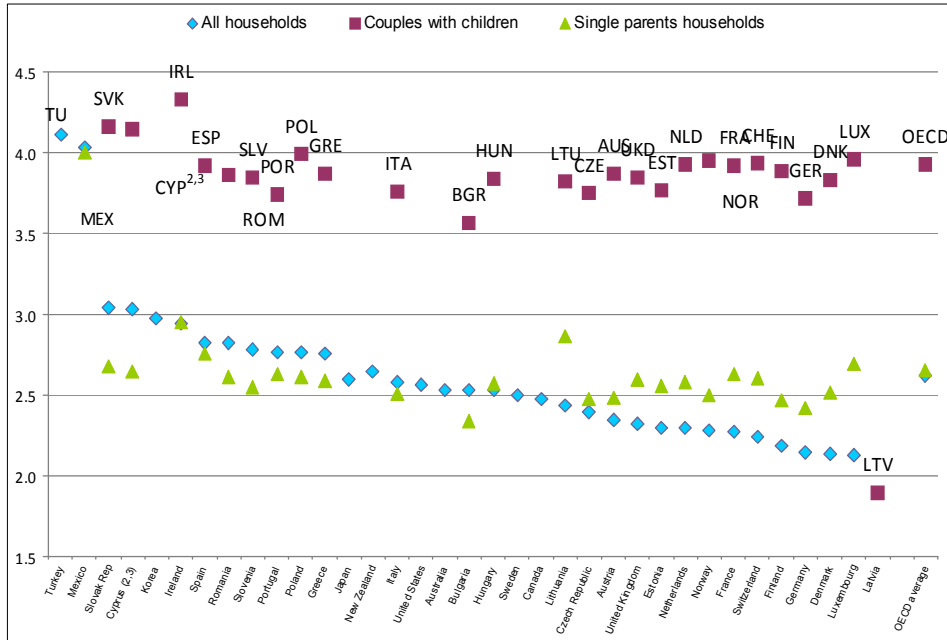
나. 요구통계(Key findings)

‘가족 규모와 가구 구성(SF1)’와 관련하여 가구크기(=평균가구원수), 가구유형, (최근년도의) 유자녀 가구비중, (2000년도 중반의) 자녀의 수에 따른 가구분포의 4개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평균 가구원수는 일반 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성인과 아동 포함)와 각 범주별 가구의 수에 대한 비율로 계산되는데,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의 평균가구원수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의 2.1명에서 멕시코(4.1명)와 터키(4.0명)까지 다양하다. 반면에 자녀가 있는 커플가구의 크기는 포르투갈, 체코, 독일 3.7명에서 멕시코(4.8명), 아일랜드(4.3명)까지 편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는 한부모 가구의

크기가 가구평균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2참조).

[그림 2-1] 평균가구원수, 2000년대 초반 혹은 중반(SF1.1)



주: 터키: 사이프러스로 표기된 경우는 섬의 남부를 지칭하는 표현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가구유형별 분포는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부부가족(자녀 유무 불문)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구형태이다. 그러나 덴마크, 핀란드, 일본의 50%부터 OECD 평균인 58%를 훨씬 상회하는 한국의 73%까지 상대적인 비중에는 차이가 있다. 한편, 일인가구의 비중은 청년층이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경향성과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와 함께 살거나 요양시설 등에 들어가는 경향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일인가구의 비중은 덴마크,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35%에 달하고 있는 반면,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에서는 20% 이하이다. 한편, 한부모 가족은 10% 정도로 소수이지만 국가별 차이가 커 덴마크의 5%부터 캐나다의 16%까지의 큰 변이를 보이고 있다.

〈표 2-2〉 가구유형, 최근년도1)(SF1.1)

(단위:%)

국가명	부부가족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기타
				편모	편부	
호주	58.7	26.5	5.8	87	13	9
오스트리아	52.9	33.5	9.7	85.3	14.7	3.9
벨기에	52.3	31.6	12.1	4
캐나다	57.4	26.8	15.7	80.1	19.9	0.1
덴마크	50.9	36.8	5.1	85.1	14.9	7.2
핀란드	49.8	37.3	7.6	84.9	15.1	5.3
프랑스	58.3	31	8	85.3	14.7	2.7
독일	55.4	35.8	5.9	84.5	15.5	2.9
그리스	64.9	19.7	8.7	84	16	6.6
헝가리	57	26.2	10.7	87.4	12.6	6.1
아일랜드	59.2	21.6	11.7	84.8	15.2	7.6
이탈리아	62.3	24.9	8.9	82.5	17.5	3.9
일본	50.4	27.6	8.5	13.5
한국	72.6	..	9.4	18.65
룩셈부르크	59.6	29.3	8.4	77.7	22.3	2.7
멕시코	58.6	..	8.5	87.1	12.9	
네덜란드	59.9	33.6	5.8	84.5	15.5	0.7
뉴질랜드	60.1	22.6	9.3	8.1
노르웨이	52.2	37.7	8.6	82	18	1.5
폴란드	56.4	24.8	12.6	87.9	12.1	6.2
포르투갈	69.1	17.3	8.6	86.7	13.3	5
스웨덴	63.9	
스위스	56.1	36	5.2	85.1	14.9	2.7
터키	
영국	53.5	30.2	9.8	86.7	13.3	6.6
미국	51.7	27.36	9.2	77.5	22.5	11.8

주: 1) 프랑스는 1999년, 핀란드, 한국, 스위스, 터키, 미국은 2000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은 2001년, 아일랜드, 폴란드, 스웨덴은 2002년, 일본은 2005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2006년 자료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유자녀 가구비중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표 2-3). 이 비중은 자녀가 없는 가구가 가구의 2/3를 차지하는 덴마크, 핀란드, 일본,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등에서는 조금 낮은 편이다. 대부분의 부부는 자녀가 있는데, 특히 호주, 아일랜드, 이태리, 한국, 폴란드에서는 2/3 이상의 부부가족이 자녀를 갖고 있다. 무자녀 부부의 비중은 덴마크, 독일, 미국에서 가장 높고, OECD국가 평균적으로 유자녀 가구의 약 1/5이 한부모 가족이다. 영국(26.4%)과 미국(28.3%)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표 2-3〉 아동¹⁾이 있는 가구 비율 및 부모 동거여부에 따른 가구 분포(SF 1.2)

(단위:%)

	전체가구 중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부부가족의 비율	아동이 있는 가구 중 한부모 가족의 비율
호주	55.7	73.9	20.7
오스트리아	44.7	58.8	23.8
벨기에	44.3	..	15.6
불가리아	56.3	59.7	17.3
캐나다	61.5	54.6	19.36
덴마크	35.3	45.3	18.2
핀란드	38.3	51	23
프랑스	43.2	55.8	19.7
독일	35.3	47.8	18.1
그리스	57.6	65.1	17.1
헝가리	51.2	60.4	23.7
아이슬란드	40.4	52.2	22.5
아일랜드	60.7	70	22
이탈리아	54.3	66.7	17.6
일본 ⁵⁾	26	60.2	6.8
한국	73.9	79.6	12.7
라트비아	59.6	66.1	40.2
룩셈부르크	47.8	61.6	18.7
멕시코 ⁵⁾	58.6	..	14.4
네덜란드	36.9	50.8	15.9
뉴질랜드	43	51.3	22
노르웨이	40.8	58.8	21.8
폴란드	59.7	72.4	23.6
포르투갈	59.1	65.9	15.8
로마니아	58.8	64.5	18.7
슬로바키아공화국	58.7	56.7	24.3
슬로베니아	62.6	73.6	22.4
스페인	60.2	69	18.5
스웨덴 ⁵⁾	36.1	..	19.6 ⁶⁾
스위스	36.7	51.4	15.2
영국	43.5	50.9	26.4
미국 ⁵⁾	38.9	45.6	28.3 ⁶⁾
OECD-평균	48	59.2	18.7

주: 1. 주5)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연령제한 없음.

2. 2005년에 관한 주6)을 제외하고는 표2-2와 동일함.

3. 4. 그림 1의 주2)와 3) 참조

5.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6. 미국 노동통계.

자료: 표2와 동일. 단 일본의 경우는 ‘Comprehensiv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2007’

다음으로, 가구를 아동수에 따라 0, 1, 2, 3명 이상으로 분류해보면 터키의 경우 아동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20%로 OECD 국가중 가장 낮고, 3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20%)과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모든 국가에 있어 아동이 없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1명 또는 2명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각각 20%와 17%이다.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17% 내외이며 터키가 35%로 가장 높다.

〈표 2-4〉 아동수별 가구 분포(SF 1.3)

	(단위:%)				
	0명	1명	2명	3명 이상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의 %
호주	66
오스트리아	63	18	14	5	14
벨기에	57	18	17	8	16
불가리아	55	26	17	2	10
캐나다	55	19	18	8	..
체코공화국	53	21	21	4	16
핀란드	68	13	12	6	13
프랑스	58	19	16	7	18
독일	67	17	13	4	12
그리스	56	19	20	5	15
헝가리	52	23	18	7	15
이탈리아	52	25	19	4	18
아일랜드	60	17	15	8	..
리투아니아	46	27	20	6	16
룩셈부르크	55	18	19	8	16
네덜란드	61	15	17	7	16
뉴질랜드	65	14	13	8	..
노르웨이	70	12	12	6	..
폴란드	44	27	21	9	18
포르투갈	46	31	19	4	20
로마니아	44	29	20	6	16
슬로바키아공화국	45	24	22	8	17
슬로베니아	50	25	20	5	16
스페인	51	25	20	4	20
터키	27	26	27	20	35
영국	58	18	17	7	19
미국	68	13	12	7	..
OECD-평균	56	20	17	7	17

주: 1) EU 국가가 아닌 OECD국가의 경우, 의존적인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18세 미만이 아동으로 간주되었음. 예외적으로 뉴질랜드는 전일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18세 미만이 아동으로 간주되었음. EU국가의 경우는 15세가 되지 않았거나, 15~24세로 의존적인(즉, 고용되어 있지 않고 적어도 한명의 부모와 동일가구내 생활하는 경우임)
 2) 호주(2003), 캐나다(2001), 아일랜드(2002), 뉴질랜드(2006), 노르웨이(2001), 미국(2005)을 제외하고는 2007기준임.
 자료: Australia: family characteristics (2003); Canada: 2001 Census; For EU countries (except Ireland): European Labour Force Surveys, 2007; Ireland: 2002 Census; New Zealand Census 2006; Norway: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01; and US Census Bureau 2005.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가족 규모와 가구 구성(SF1)’의 데이터는 대부분 각국의 인구주택총조사(Census of population and dwellings)에서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인구센서스는 인구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완벽한 자료로 매 5년 혹은 10년마다 조사가 실시되며, 정기적으로 인구의 특징과 가구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가구에 대한 정의와 조사항목에는 차이가 있는데, OECD Family Database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자료의 비교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UN통계국(1997)과 Eurostat(1999)의 가구 구성에 대한 정의를 원용한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2000년대 초기에 최근의 센서스를 실시하였으며,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등은 좀 더 최근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UN통계국과 유럽통계(Eurostat)의 정의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자료의 비교가능성은 자료의 수집방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수조사의 인구 조사가 시행되지 않는 독일과 네덜란드 자료는 등록부(register)와 샘플조사에 의한다. 비교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가구 구성원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일상적인 거주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 거주 장소에 대한 행정적인 정보는 데이터의 가장 비교가능한 자원이다. 응답자들이 센서스나 서베이에서 “일상적인” 거주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비교가능성의 이슈가 될 것이다. 최근 동거와 독거를 번갈아 하는 성인들(예, 몇날며칠은 함께 생활하지만 각자 다른 주소지에 등록된 파트너들이 증가하는 등 비전통적인 생활환경의 증가로 하나 이상의 거주지를 중복적으로 가지는 성인)과 이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SF9).

부모가 헤어진 아동의 경우 이중 카운팅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들은 양부모가 있는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포함된다. 또한 동거와 독거를 번갈아 하는 파트너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거주지를 따로 가지고 있을 때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 또는 복합가족의 수는 과다 추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Toulemon(2008)은 프랑스에서 4-6% 사이의 성인이 두 개의 거주지에 살고 있으며, 6.4%의 아동이 하나 이상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가구유형별 비율에 대한 비교가능성은 아동에 대한 모든 카테고리가 동일한 자료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해 낮아 질 수 있다. 왜

나하면 자료원에 따라 “부양자녀”를 정의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센서스에서는 25세 이하의 집에서 거주하는 모든 부양 자녀를 포함하지만, ‘자녀의 수에 따른 가구(표2-4)’의 유럽노동력 조사에서는 14~24세 연령 중 비고용인 자녀만 포함한다.

또한 센서스나 노동력조사에서 동성 커플이 어느 범위만큼 포함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국가별 실체가 다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커플가구에 대한 센서스 통계는 단지 이성 파트너만 포함하는 반면에(Digoix et al., 2004), 노르딕 유럽 국가의 인구 등록부에서는 동성 배우자도 포함된다(Andersen et al., 2004). 그런 커플을 보고하지 않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 동성배우자의 포함은 커플 가구의 수를 상대적으로 약간 증가시킨다.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 Andersson, G., T. Noack, and A. Seierstad (2004), “The Demographics of Same-Sex “Marriages” in Norway and Sweden”, in Digoix M., and P. Festy (eds), Same-sex Couples, Same-sex Partnerships and homosexual Marriage: A focus on cross-national differences, Document de Travail 124,INED http://www.ined.fr/fichier/t_publication/1035/publi_pdf1_124.pdf.
- Digoix M., P. Festy, and B. Garnier (2004), “What if same-sex couples exist in France after all?”, in Digoix M., and P. Festy (eds), Same-sex Couples, Same-sex Partnerships and homosexual Marriage: A focus on cross-national differences,
- Eurostat (2004), Documentation of the 2000 Round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in the EU, EFTA and Candidate Countries, Part I, II and III,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3/2004/F/01<http://epp.eurostat.ec.europa.eu/>.
- Eurostat (2005), Household and family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Eurostat Metadata in SDDS format. Summary Methodology.
- UN Statistics Division (1997),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standmeth/principles/default.htm>)

- Eurostat (1999) Guidelines and Table programme for the Community Programme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in 2001, Eurostat Working Paper, 3/1999/E/10(<http://epp.eurostat.ec.europa.eu/>).
- Toulemon L. (2008), “Two-home family situations of children and adults, observation and consequences for describing family patterns in France”, 35th CSEIS Seminar, New Family Relationships and Living Arrangements-Demands for Change in Social Statistics.

2) 가족내 아동(Children in Families, SF2)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본 지표는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형태의 구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의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다. 15세 이하 아동의 상이한 거주현황을 비교하는데 있어 인구와 가구조사(UN 통계청, 1977; Eurostat 2004와 2005)는 중요한 자료원으로 아동의 가구유형별 분포는 표2-5에 제시되어 있다.

가구형태는 한부모 가족(sole-parent family), 부부가족(couple family), 시설가구(institutional households)로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다. 한부모 가족은 한명의 부모가 다른 파트너 없이 그/그녀의 아이들과 살고 있는 형태로, 한 주택에 사는 다른 성인(예: 홀어머니의 부모님)을 포함할 수 있다. 부부가족은 아동이 최소 부모 중 1인과 그/그녀의 파트너와 주거를 공유하고 있는 형태로,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파트너는 분리되어 정의되고 있다. 다른 성인들도 부부가족과 같은 가구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시설가구는 고아원이나 기숙사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가구구성에 대한 최근의 자료는 유럽노동력조사(European Labour Force Survey)와 임금과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Survey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에서 얻을 수 있다(Eurostat, 2007). 그러나 표 2-6에 제시된 자료는 위

의 정의와는 조금 다른 분류를 하고 있다.

- 한부모가족(sole-parent only family): 부모는 오직 성인 1명만 사는 가구이다. 표 2-5와는 달리, 표2-6은 다른 친척들이나 성인들과 생활하는 한부모는 이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 배우자가 있는 가구(Partnered adult households)는 같은 주택에 결혼한 배우자나 동거자만이 거주하고 있고 그 가구에 다른 성인은 없는 경우이다.
- 두 명이상의 성인이 있는 가구(Households with two-adults or more)는 한 부모나 배우자가 있는 부모들이 다른 성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이다. 예를 들어 젊은 부모들이 그들의 부모와 한집에 거주할 때 이 범주에 포함된다.

자녀수별 가구 분포와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유럽노동력통계(European Labour Force Statistics, ESFS)에서 제공된다. 가구 내 아동의 수에는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15-24세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 않는 청소년이 포함된다.

이 지표는 가족크기와 가구구성(지표SF1), 아동의 거주형태(지표SF3), 혼외출생(지표SF6), 무자녀(지표SF7), 결혼율과 이혼율(지표SF8), 동거율과 다른 파트너십(지표SF9), 아동빈곤(지표C08)과 관련되어 있다.

나. 요구통계(Key findings)

평균적으로 80%의 아동이 배우자가 있는 가족에서 생활하고 있다(표 2-5).

〈표 2-5〉 가구유형별 0~14세 아동분포, 최근 년도 기준(SF 2.1)

(단위:%)

	한부모가족	배우자가 있는 가족	동거가족	기타가구
호주	19.0	81.0		
오스트리아	15.9	82.8	10.5	1.3
캐나다	22.1	77.9	14.1	0
체코	20.8	78.3	5.2	0.9
덴마크 ²⁾	17.4	81.3	20.9 ³⁾	1.4
핀란드	15.3	83.6	18.1	1.1
프랑스	13.3	85.3	:	1.4
독일	13.4	86.1	6.6	0.5
그리스	7.4	86.5	1.6	6.1
헝가리	14.4	83	12	2.5
이탈리아	9.2	90.1	3.5	0.8
일본 ²⁾	12.3	87.7
멕시코 ²⁾	12.9	87.1		
네덜란드	10.7	88	9	0.9
뉴질랜드	21.4	69.0 ⁴⁾		
폴란드	15.5	82.6	2.3	1.8
포르투갈	9.8	88	9.4	2.2
슬로바키아공화국	13.9	82.1	3.2	4
스페인	14.9	82.1	5	3
스웨덴	21	78	..	1
스위스 ²⁾	15.2	84.7		
영국	22.9	75.6	15.2	1.5
미국 ²⁾	25.8	70.7	4.1	3.5
OECD-22	15.9	82.9	8.2	1.8

주: 1) 프랑스, 1999; 핀란드, 2000; 오스트리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2001; 아일랜드, 폴란드, 2002; 스위스, 미국, 2005; 호주, 뉴질랜드, 2006; 덴마크, 2007; 일본, 멕시코, 2001.

2) 0~17세 아동.

3) 2001년도 센서스.

4) 다른 가족원이 없이 커플하고만 살고 있는 아동의 비율에 해당함.

자료: 덴마크를 제외한 EU 국가들: Eurostat; Switzerland: National Statistics, FDB Questionnaire;

New Zealand: 2006 Census of Population and dwellings; United States: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2007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이 비율은 OECD 국가 중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아 90%를 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영국, 미국이 가장 낮아 70~75%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가족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은 결혼한 부모와 살고 있으며, 동거하고 있는 파트너와 생활하고 있는 비율은 덴마크와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높아 20%에서 25%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부모와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캐나다, 체코,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과 미국에서 20%수준을 넘고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비

율은 그리스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는 4% 이하로 낮다.

〈표 2-6〉 가구유형별 0~14세 아동분포, 2007년 이후(SF 2.2)

	(단위:%)		
	한부모가족	배우자가 있는 가족	기타가구
오스트리아	9	71.5	19.4
벨기에	15.7	66.7	15
불가리아	6.6	60.1	32.9
체코공화국	11.6	76.8	11.5
프랑스	13.4	79.8	6.7
독일	13.3	78.2	8.5
그리스	4.1	84.5	11.4
헝가리	8.6	71.7	19.5
이탈리아	5	84.3	10.6
리투아니아	11.4	52	36.3
룩셈부르크	6.8	84.4	8.7
말타	5.5	75.3	19.1
네덜란드	11.4	84.8	3.8
폴란드	7.9	58	33.8
포르투갈	6	73.6	19.8
슬로바키아공화국	4.9	60.8	34.1
슬로베니아	5.5	73.2	21.1
스페인	5.8	75.1	18.8
터키	4	64.1	31.6
영국	23.8	65.8	10.2

자료: ELFS, 2007.

센서스자료와 유럽노동력조사(European Labour Force Survey)자료가 모두 있는 유럽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 2-6에서 제시된 한부모 가족하고만 살고 있는 비율은 표 2-5에서 제시된 비율에 비하여 낮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의 경우 그 차이는 적지만,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스페인의 경우는 그 크기가 9~10% 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부모와 더불어 다른 성인가구원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표 2-6에서는 성인 2인 이상의 가구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양친과 더불어 다른 성인과 살고 있는 표 2-6에서 2인 이상의 성인과 생활하고 있는 아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가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폴란드나 슬로바키아 공화국, 터키 등에서 특히 15세 이하 아동의 약 1/3 정도로 높다.

〈표 2-7〉 0~14세 아동수별 가구 분포, 2007년 이후(SF 2.3)

(단위:%)

	아동 1명인 가구	아동2명인 가구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오스트리아	26.1	47.7	26.2	52.3
벨기에	20.3	44.4	35.3	55
체코공화국	24.7	55.4	19.9	52.4
핀란드	16.7	38	45.4	60.8
프랑스	22.3	45.9	31.8	58.5
독일	27.7	48.2	24.1	51.2
그리스	22.8	55	22.2	48.3
헝가리	24.4	42.1	33.5	51.8
이탈리아	29.5	53.7	16.8	55
룩셈부르크	19.5	45.4	35	50.7
네덜란드	17.9	49	33.1	55.6
폴란드	24.8	43.2	31.9	50.5
포르투갈	35.1	48	16.9	56.2
스페인	30.3	53.6	16.2	55.2
터키	14.9	34.2	50.9	65.5
영국	21.3	45.3	33.4	55.2
미국*	20.3	39.6	40.1	..

주: ..는 자료 없음. * 18세 이하의 아동
 자료: ELFS 2007 except ELFS 2006 for Turkey. United States: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2007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표 2-7은 모든 국가에서 아동의 40% 이상의 아동이 2명 아동가구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30%의 아동이 3명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 비율은 스페인의 16%에서 핀란드의 45%까지 차이가 매우 크다. 아동이 1명인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가장 낮은 반면,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는 그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20~30% 정도의 아동이 가장 어린 아동이 6세 미만인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다.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SF 1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통계의 질과 비교가능성은 아동이 한 곳 이상의 주거지를 가질 때 영향을 받는다. 중복 카운팅은 별거중인 부부가 자녀를 각각 가구의 일원으로 신고할 때 발생하는데, 그 결과 한부모 가족에 사는 아동의 비율은 과다 추정될 수 있다(Toulemon, 2008).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 Eurostat (2004) *Documentation of the 2000 Round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in the EU, EFTA and Candidate Countries, Part I, II and III,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3/2004/F/01* (<http://epp.eurostat.ec.europa.eu>).
- Eurostat (2005), *Household and family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 Eurostat Metadata in SDDS format: Summary Methodology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SDDS/EN/cens_nhou_sml.htm).
- Eurostat (2007), *EU Labour Force Survey database. User Guide* (http://circa.europa.eu/irc/dsis/employment/info/data/eu_lfs/index.htm)
- UN Statistics Division (1997),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 Toulemon, L. (2008), "Two-home family situations of children and adults: observation and consequences for describing family patterns in France", *35th CSEIS Seminar, New Family Relationships and Living Arrangements-Demands for Change in Social Statistics*.

3) 아동의 거주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Further information on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SF3)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파트너십의 형성과 해체에 있어서의 경향은 지난 수십 년간 변화해왔지만 이러한 경향이 아동의 거주형태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어 왔다. 파트너십을 둘러싼 변화는 아동이 한 가구내에서 그들의 친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성장할 가능성을 감소시켜 왔다.

본 지표는 아동이 어느 정도 그들의 부모 모두와 생활, 어머니 또는 아버지하고만 생활하고 있는가, 그 외의 경우는 어떠한가와 같은 거주유형별 분포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EU국가의 경우, 유럽노동력조사(European Labour Force Survey)자료(EUROSTAT, 2007)가 15세 이하 아동이 그들의 부모와 살고 있는 비율을 추정하는데 활용되었다. 다른 OECD국가들의 경우는 활용 가능한 자료가 17세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정확히 비교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자료는 생물학적 부모와 입양부모, 결혼한 부모와 동거하는 부모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SF9).

본 지표는 '원(original)'가족과 '재구성된' 가족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을 고려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정보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위조사(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2005/2006)가 11, 13~15세 아동에 대한 일부 자료를 제공한다(Currie et al., 2008).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한 가정 또는 두 가정(또는 두 가족)에 살고 있는지만, 주로 누구와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자료는 주로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 한부모 가구에서 사는 아동, 또는 다른 형태의 가족(예를 들어 수양 가족 또는 부모가 아닌 가족원과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서 살고 있는 아동을 제시하고 있다. OECD 각국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0~17세 아동에 대한 좀 더 완전한 정보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일부 국가에서만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였다.

이 지표는 가족크기와 가구구성(지표SF1), 가족내 아동(지표SF2), 혼외출생(지표SF6), 무자녀(지표SF7), 결혼율과 이혼율(지표SF8), 동거율과 다른 파트너십(지표SF9), 아동빈곤(지표C08)과 관련되어 있다.

나. 요구통계(Key findings)

모든 OECD 아동의 대다수(평균 84%)가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표 2-8 참조). 그러나 핀란드의 95%부터 벨기에의 65%까지 국가별 차이가 크다. 17개 국가 중, 부모가 전혀 없는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비중은 매우 낮아 1% 미만이다. 앞서 살펴본 지표 SF2는 6명의 아동중 한명은 그들의 부모중 1명하고만 살고 있으며, 표 2-8은 그들 대부분이 그들의 어머니하고 살고 있고(EU 평균 14%), 2%의 아동만이 아버지하고만 살고 있다. 어머니하고만 살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영국과 미국의 경우 20%를 넘고 있다.

〈표 2-8〉 0~14세 아동의 거주형태 분포, 2007(SF 3.1)

	(단위:%)			
	부모와 동일 가구에서 생활	부모가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음	가장 어린 자녀의 아버지가 동일가구에서 생활	가장 어린 자녀의 어머니가 동일가구에서 생활
오스트리아	86.6	0.5	0.9	12.1
벨기에	65	4.4	11	19.5
체코공화국	80.8	0.6	1.2	17.4
덴마크 ²⁾	81.3	1.4	2	15.3
독일	82	0	1.7	16.3
핀란드	95.2	0.2	0.4	4.1
프랑스	79.5	0.6	2.9	17
그리스	93.6	0.2	0.8	5.4
헝가리	82	1	1.3	15.7
이탈리아	92.1	0.1	1	6.8
룩셈부르크	91.5	0.7	0.7	7.1
일본 ²⁾	87.7	0	1.7	10.6
멕시코 ²⁾	87.1	0	1.6	11.3
네덜란드	87.4	0.1	1.3	11.2
폴란드	82	1.1	1	15.8
포르투갈	86.6	1.8	1	10.5
스페인	91.5	0.7	0.6	7.2
스웨덴 ²⁾	78	0	4	18
스위스 ²⁾	84.7	0.1	2.3	12.9
터키	91.5	0.7	0.6	7.2
영국	68.9	1.1	2.4	27.6
미국 ²⁾	70.7	3.5	3.2	22.6
OECD - 평균	84.1	0.8	1.9	13.1

주: 1) 스위스(2000), 스웨덴, 미국(2005), EU국가들, 멕시코, 미국(2007).

2) 0~17세 아동.

자료: ELFS, 2007; 덴마크, 일본, 스웨덴과 스위스는 OECD 질문지에 대한 정부부처의 답변; 멕시코, 인구주택총조사와 통계청; 미국, 인구센서스와 인구조사, 2007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표 2-9는 아동의 양친, 한부모, 복합가족(stepfamily) 등과 거주하는가 여부 등의 거주형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5세 미만 아동의 75%는 양친과 살고 있지만, 6명중 1명은 한부모와 살고 있다. 복합가족과 거주하는 비율은 터키의 1%에서 데스 토니아와 미국의 14~15%까지 국가별 차이가 크다. 이러한 복합가족과 거주하는 비율은 아일랜드, 남유럽국가(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등에서는 5% 미만이다. 반면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에서는 이러한 재구성된 가족과 살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10%를 넘고 있다. 17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국가들의 경우 복합가족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율은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 비하여 그 비율이 낮다.

〈표 2-9〉 0~14세 아동의 거주형태 분포, 2007(SF3.2)

	(단위:%)			
	양친	복합가족	한부모 가족	기타
오스트리아	76	8	14	1
벨기에 (Flemish speaking)	74	10	14	1
벨기에 (French speaking)	67	14	17	2
불가리아	81	4	13	2
캐나다	69	11	18	3
체코공화국	70	12	16	2
덴마크	66	13	19	3
덴마크 ²⁾	73	8	17	1
핀란드	71	13	16	1
프랑스	73	11	14	1
독일	74	9	15	1
그리스	86	3	11	1
헝가리	74	9	16	2
아이슬란드	70	12	15	2
아일랜드	81	5	13	2
이탈리아	87	3	9	1
라트비아	64	10	23	3
룩셈부르크	76	8	14	2
네덜란드	80	7	12	1
노르웨이	73	10	16	2
폴란드	83	3	12	1
포르투갈	82	6	10	2
로마니아	58	2	37	3
슬로바키아	84	5	11	0
슬로베니아	84	4	10	1
스페인	84	4	11	1
스웨덴	73	12	14	1
스웨덴 ²⁾	69	9	21	1
스위스	79	8	12	1
터키	85	1	11	3
영국 (England only)	70	12	16	1
미국	57	14	24	4
미국 ²⁾	62	7	25	5
OECD 평균	75	9	14	2

주: 1) ‘일차적인’ 가족유형임. ‘기타’는 수양가족, 부모가 아닌 가족원임.

2) 직접 국가에 발송된 설문지에 기초하여 있음. (HBSC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자료: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2005/2006. For school-aged children ages 11, 13 or 15, or spate questionnaire as indicated.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SF1과 SF2에서 이미 가족의 경과적인 성격(transitory)과 한 곳 이상의 거주지를 갖고 있는 아동들 때문에 거주형태를 정확히 밝히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중복카운팅은 한부모가족과 생환하는 경우와 복합가족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비중을 과다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몇몇 부모들은 이전 배우자와 자녀가 ‘종종 생활한다’고 언급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다(표 2-8의 경우). 이러한 이슈는 아동에게 직접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가를 질문함으로써 일부 해소될 수도 있다(표 2-9의 경우).

아동이 ‘통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주지를 왔다갔다 하는 경우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표 2-8에서 그들의 아버지와 거주하는 아동의 숫자는 과소 추정 되었을 수 있다.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 Currie C., S.N Gobhaimn, E. Godeau, C. Roberts, R. Smith, D. Currie, W. Picket, M. Richter, A. Morgan, and V. Barnekow (2008), *Inequalities in Young people's health :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survey :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05-2006 survey*, Copenha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 Eurostat (2007), *The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http://circa.europa.eu/irc/dsis/employment/info/data/eu_lfs/.](http://circa.europa.eu/irc/dsis/employment/info/data/eu_lfs/))

4) 가족과 아동으로 본 한국의 현황

OECD는 평균가구원 수를 전체가구, 자녀가 있는 커플가구, 그리고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OECD는 핵가족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양친과 함께 살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요 관심사가 핵가

족의 중심인 ‘핵’이 있는가 여부에 두어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구를 핵가족, 직계가족, 그리고 기타가족으로 구분하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지속되어온 핵가족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족형태인 직계가족의 존재를 함께 반영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평균가구원수가 2.9명으로 OECD 평균인 2.6명보다 높다. 가구유형과 관련해서는 부부가족의 비율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72.6%이며 1인가구의 비율은 6.8%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낮다.

아동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가구중 아동이 있는 가구가 73.9%로 OECD평균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부부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79.6%로 OECD 국가 평균인 59.2%보다 월등히 높다.

2. 출산지표(Fertility indicators)(중분류 2)

1) 출산율(Fertility rates, SF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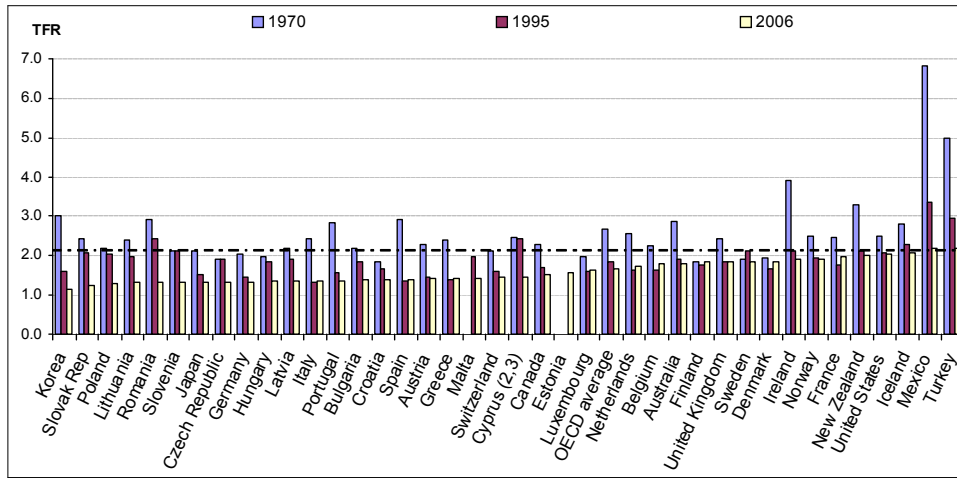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특정년도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각 여성이 가임기 끝까지 산다면 그리고 각 연령에서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현재의 연령별 출산율과 같다면 각 여성에게 태어날 아동의 수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5세 간격으로 정의된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에 의해 산정된다. 이민이 없고, 사망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합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2.1명의 아동을 낳아야 인구의 안정성이 유지된다. 또한 영아사망률(CO1) 0.1%p를 감안하여 여성과 그의 파트너의 대체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인구대체율(replacement fertility rate)’이라고 언급된다. 완료출산율(Completed Fertility Rate; CFR)은 가임기 끝에 있는 코호트의 여성에게서 태어난 실제 아동의 숫자이다. 보통 45세(몇몇 나라는 49세)이상의 여성은 그들의 가임기를 마친 것으로 여겨진다.

나. 요구통계(Key findings)

2006년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이하이지만 아이슬란드, 멕시코, 터키 등에서는 여성이 평균 2명 이상의 자녀를 갖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국제비교가 가능하며 통계자료도 가장 보편적으로 획득 가능하다. 그러나 이 지표는 출산의 수와 시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다.

[그림 2-2] 1970, 1995, 2006년의 합계출산율(SF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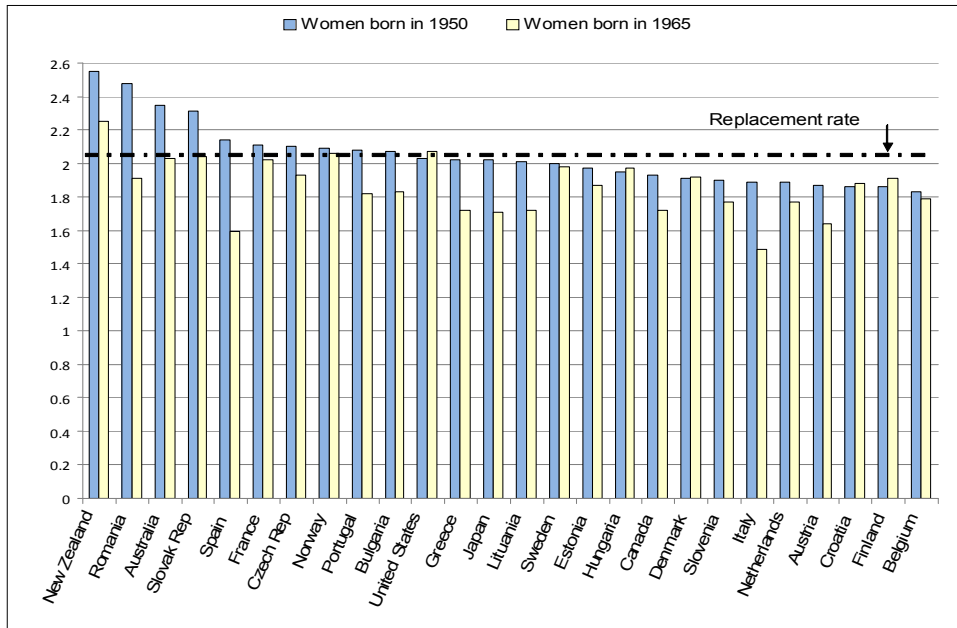


주: 1)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는 1990년
2) SF9의 각주 참조

자료: 유럽국가들은 Eurostat의 인구통계; 비유럽 국가들은 UN 통계국.

1960년대 중반에 출생한 여성의 원료출산율을 보여주는 그림 2-3을 보면,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미국을 제외하고는 1950년생 여성 코호트와 1965년생 여성 코호트 기간 중 원료 출산아의 수가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인구대체수준보다 많이 낮으며, 미국은 2명에 가까운 실정이다. 1965년생 여성 코호트의 원료출산율은 뉴질랜드만이 인구대체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림 2-3] 1950년과 1965년에 태어난 여성코호트의 완료출산율(SF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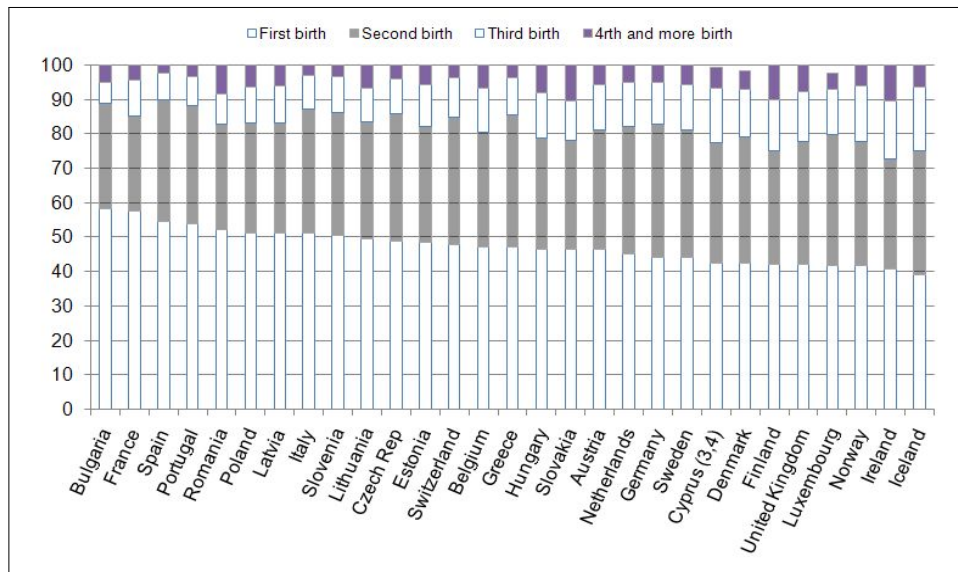


주: 1) 일본의 경우는 1962출생 여성, 프랑스의 경우는 1964 출생 여성.

자료: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for European countries and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for non European countries.

그림 2-4는 2005년의 전체 출산 중 정상분만(live birth)의 출생순위별 분포를 비교하고 있다.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 첫째아 출산이 대다수(약 50% 이상)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3째아 출산 비중이 1000명당 16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에서는 더 적은 비중(약 40%)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아이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일랜드, 핀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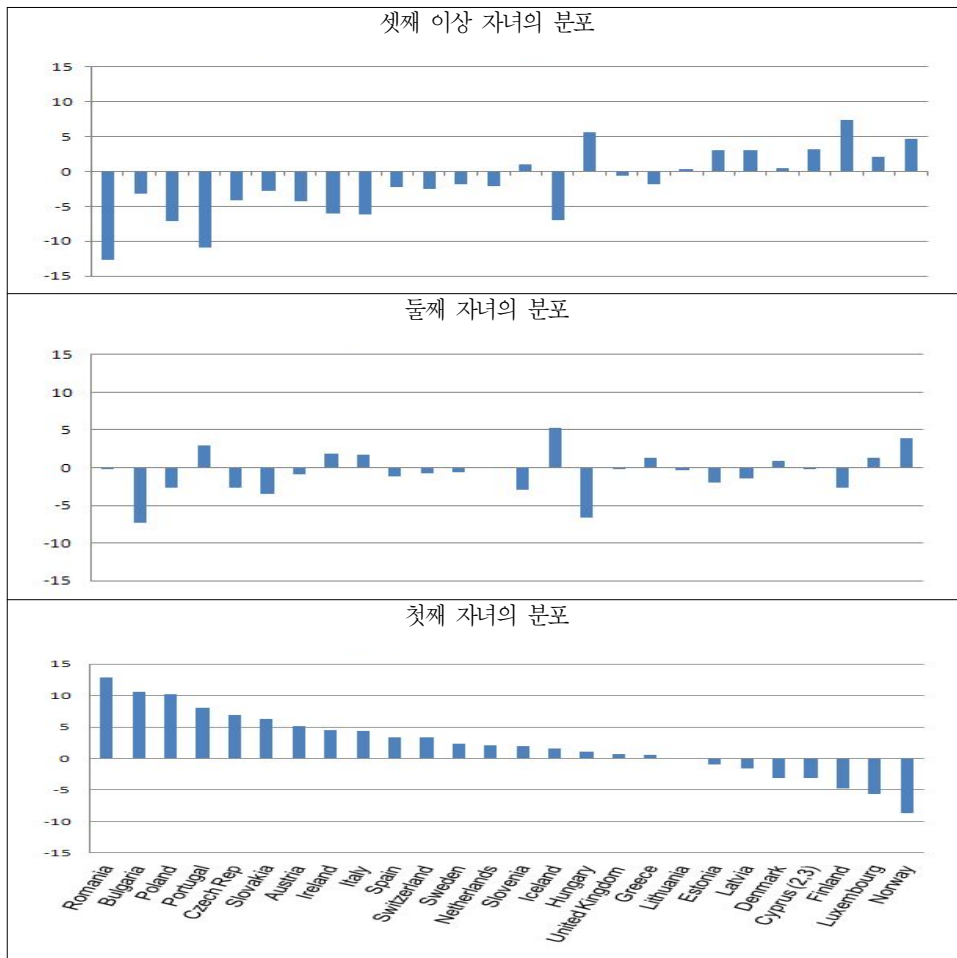
[그림 2-4] 정상분만아의 출생순위별 분포, 2005(SF 4.3)



주: 2005년도의 첫출산 비중이 많은 수서로 제시되어 있음.
 자료: Eurostat, 인구통계.

그림 2-5는 출생순위별 출산의 분포에서 1980년대와 2005년 사이의 변화를 보여 준다. 가장 큰 관심사는 첫째아 출산과 셋째 이상 출산 비중이다. 그림에서 첫째아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셋째 이상 자녀의 출산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는 가족크기의 심각한 감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첫째아 출산은 감소했으나 셋째아 이상의 비중이 증가한 국가(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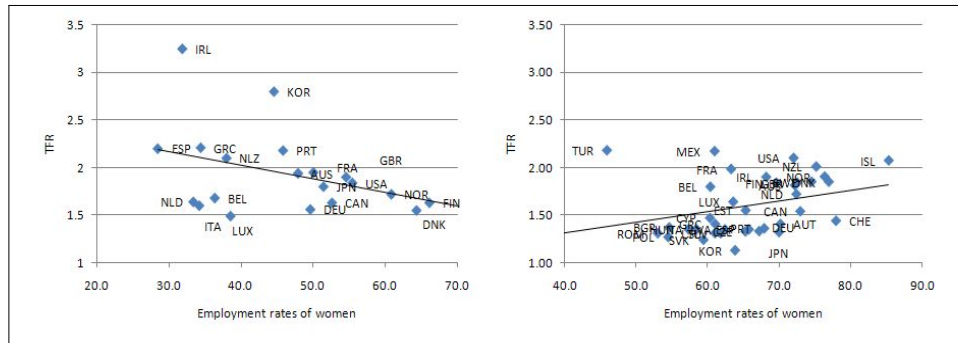
[그림 2-5] 출생순위별 분포의 변화, 1980년~2005년간의 변화(SF 4.4)



자료: Eurostat, 인구통계국.

그림 2-6은 OECD 국가들에게 있어 지난 25년간의 여성의 고용과 출산율의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고용은 증대하였지만, 1980년에는 여성의 고용과 출산율은 부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반면 2005년에는, 그 상관관계수가 약하기는 하지만(0.34), 여성의 높은 고용율을 보이는 국가는 동시에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분명히 유급노동과 자녀출산의 양립불가능성의 정도가 감소하였지만, 국가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자녀양육과 고용의 양립이 일본, 한국 뿐 아니라 동유럽국가나 지중해 연안의 국가에서 가장 어려운 반면, 북유럽국가나 뉴질랜드, 미국에서 가장 양립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국가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SF 4.5)



자료: 고용률- 유럽 국가들은 ELFS, 2006; 비유럽국가들은 OECD Employment statistics; 출산율- UN과 Eurostat, 인구통계국.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출산율의 경향을 비교하기 위해 TFR을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 이러한 총합의 변화가 가족 규모의 변화나 출생시기의 변화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출산율은 여성당 최종 아동의 수를 고려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여성이 가임기의 끝에 다다랐을 때에만 산정 가능하다. 아동의 출생 순위의 비율 변화 역시 출산 패턴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는 가족 크기의 감소는 높은 순위의 출산 비율의 감소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생 분포는 타이밍 효과에 민감하다. 출산 시기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찰은 출산 행동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하다(SF.5).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 D'Addio, AC and M Mira d'Ercole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27, Paris.
- OECD, *Society at a Glance* (Edition 2006).
- EUROSTAT (2006), *Demographic Statistics: Fertility*, Eurostat Metadata in SDDS

format(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SDDS/EN/demo_fer_sml.htm)

- Nimwegen N. van, and C. Beets (2008), "The demographic situation in the European Union", in *Demographic Trends, Socio-Economic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e European Union, Monitoring report for the European Observatory on the Social Situation, 2007*.
- Kohler, Hans-Peter, Francesco C. Billari and Jose Antonio Orteg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641-680.
- Kogel T. (2004), "Did the association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within OECD countries really change its sig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7:45-65.

2) 첫 자녀 출산시 모(母)의 평균 연령(Mean age of mother at first childbirth, SF5)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첫 아이 출산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첫째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성의 평균 연령(average completed year)으로 정의된다. 특정년도에서의 첫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연령별 첫 출산의 출산율을 사용하여 산정된다(일반적으로, 15-49세 사이는 가임기간이라고 한다). 그림 2-7과 2-8은 이 평균 나이에 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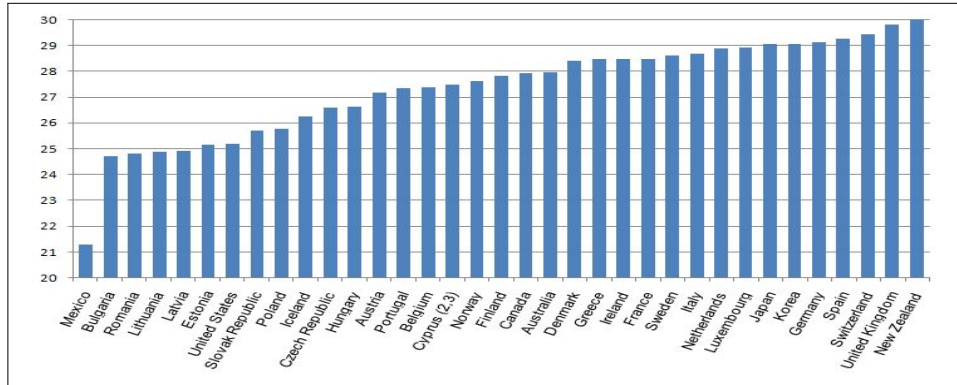
출산 시기의 경향 비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방법은 연령별 출산율의 전개를 살펴 보는 것이다. 그림 2-7과 그림 2-8은 16세에서 49세 연령대의 여성의 출산율로, 그들의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태어난 아동을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 요구통계(Key findings)

2005년의 첫째 아동의 출산시 여성의 평균연령에는 국가별 차이가 매우 커 미국의 경우 가장 그 연령이 낮아 25.2세인 반면 영국은 29.8세로 가장 높다(그림 2-7 참조). 이러한 변이는 부분적으로 지난 세기동안 발생한 가족형성의 시점의 변화(SF6 참조)와 관련되어 있다. 그림 2-8은 1970년대부터 많은 국가에서 첫째아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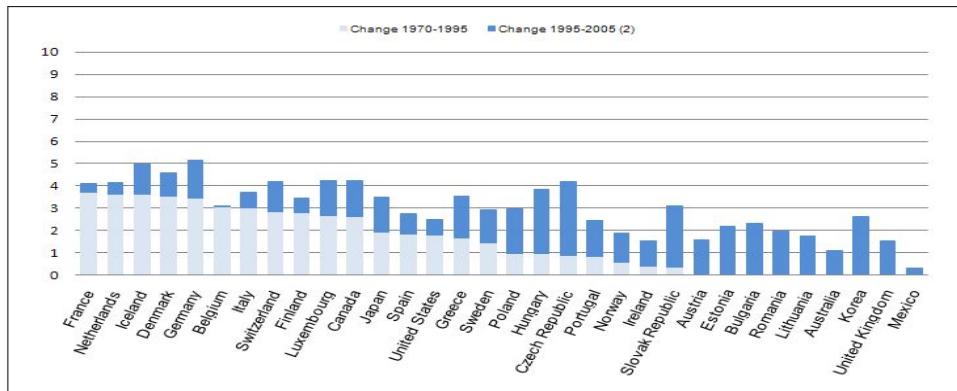
의 지연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8의 왼편쪽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 첫째아 출산시의 평균연령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 상이에 급격히 높아졌고 그 이후 증가속도는 늦어졌지만 꾸준히 증가하였다. 반면, 폴란드, 헝가리, 체코,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경우는 첫째아 출산의 연기가 1990년대 중반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2-7]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SF 5.1)



주: 2005년도의 첫째아 출산시의 모의 연령이 낮은 순서로 제시되었음.
 자료: UN 통계국, Eurostat, New Cronos for EU countries; Mexico, Consejo nacional.

[그림 2-8] 1970년대 이후의 첫째아 출산의 연기(SF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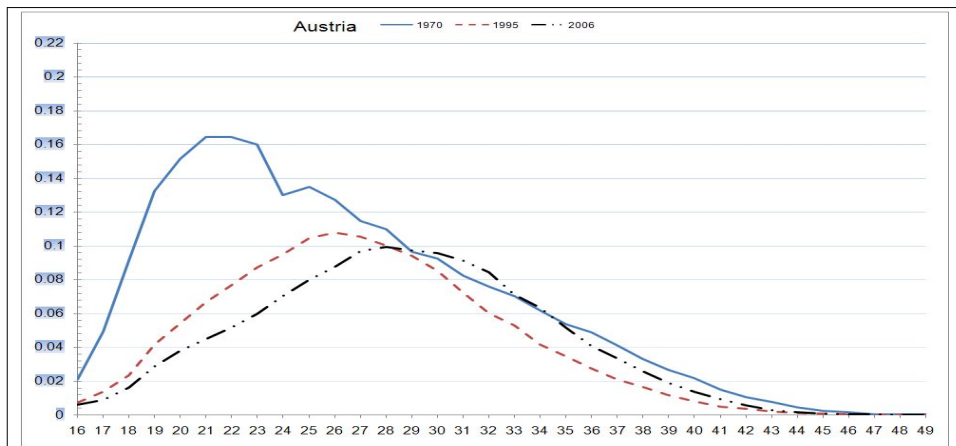


주: 1) 1970~2005년도 기간중의 첫째아 출산시의 모의 연령의 연기가 크게 이루어진 순서로 제시되었음.
 2) 오스트라일리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한국, 루타니아, 루마니아의 경우는 1970년 자료가 없음.
 3) 멕시코의 경우는 1997에서 2006년 사이의 변화임.
 자료: UN 통계국, Eurostat, New Cronos for EU countries; Mexico, Consejo nacional.

그림 2-9는 1970년부터 2006년까지의 일부 OECD 국가에서의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출산율의 감소와 전 생애주기에 있어서 출산의 여기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재생산기간의 초기에 많은 출산이 이루어졌던 1970년대에는 출산율이 20~25세 연령군에서 가장 높았다. 그림 2-9는 또한 가족형성의 연기가 30세 이전의 출산율의 감소와 고연령층에서의 출산의 증가라고 하는 두가지 경향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25~30세군의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특히 1970년대부터 1995년간의 변화는 매우 급격하였다. 그러한 감소는 많은 국가에서 지속되었지만 그 비율은 그 이후 조금 낮아졌다. 또한 후반기의 출산율은 많은 국가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2가지 경향의 결과로 많은 OECD국가에서 여성이 출산하는 아동의 수가 2명을 유지하고 있다.

본 지표는 가족크기와 구성(SF1), 출산율(SF4), 첫째아 출산시의 모의 연령(SF5), 혼외출산비중(SF6), 결혼율과 이혼율(SF9)와 연관되어 있다.

[그림 2-9] 연령별 출산율, 1970~2006(SF 5.3) (예: 오스트리아)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출산율을 어머니의 연령별로 집계하는 것은 합계출산율(SF4)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 중 하나인 출산 타이밍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유용하다. 위의 연령프

로파일은 고 연령대의 출산율이 증가하는 반면 저-연령대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대부분의 나라에서 완전 출산율이 회복수준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전체적인 출산율 수준에서 이러한 타이밍의 변화의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출생순위별 출산율”, “템포를 고려한 출산 흐름 추정”, 혹은 “출산 간격”들은 출산타이밍의 변화를 조명할 수 있도록 해주며, 출산율에 관한 논의 전개에서 타이밍과 양적인 측면을 구분할 수 있게 한다(Potančoková et al.(2008)과 아래에 제시된 자료들을 참조할 것).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 D’Addio, A.C and M. Mira d’Ercole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27, Paris.
- OECD, Society at a Glance (Edition 2006).
- Nimwegen N. van and C. Beets (2008), “The demographic situation in the European Union”, in Demographic Trends, Socio-Economic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e European Union , Monitoring report for the European Observatory on the Social Situation, 2007.
- Bongaarts J., G. Feeney (2006), “The quantum and tempo of life-cycle event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pp. 115-51.
- Lutz W., and V Skirbekk (2005), Policies addressing the tempo effect in low fertility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1(4):699-730.
- Potan.okova M., T. Sobotka, and D. Philipov (2008), European Demographic data sheet: Estimating tempo effect and adjusted TFR, Vienna Institute for demography.
- Rallu J-L, and L. Toulemon (1994), Period Fertility measures: the construction of different indices and their Application to France 1946-1989,

Population, vol 6, pp. 59-93.

- UN Demographic Database(<http://data.un.org/>).

3) 혼외출산과 십대 출산(Share of births outside marriage and teenage birth, SF6)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① 혼외출산

출산율의 경향은 종종 결혼, 가족 구성과 부모자식관계에 대한 유효한 태도의 변화들과 함께 발생한다. 결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OECD 국가들에서 첫 아이가 출생한 시기에 결혼하지 않은 부모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결혼의 정의는 결혼한 커플과 법적으로 시민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으로 선언된 커플들을 포함한다; 이는 일정기간 이후에 서로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갖는 “관습법”적 관계의 커플이나 “사실혼” 관계의 커플들, “동성결혼(civil union)” 커플들을 포함하지 않는다(SF9 참조). 혼외 출생자의 비율은 그해 동안 발생한, 결혼하지 않은 부모(혹은 법적 파트너십에서 살지 않는)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퍼센트로서 산정된다.

② 십대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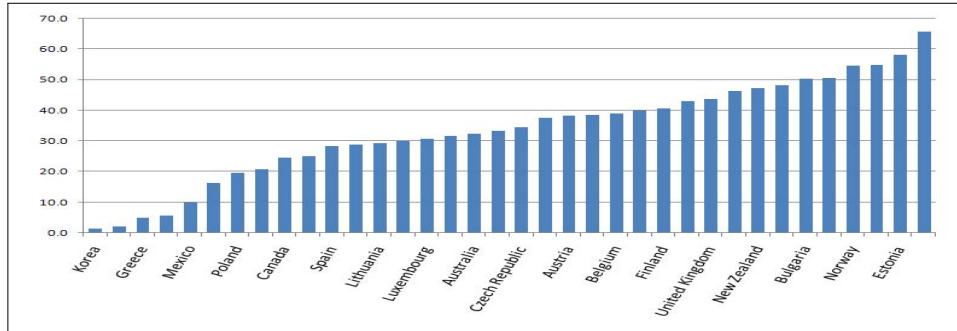
10대 출산율은 여성의 교육과 취업 가능성 등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이다. 젊은 어머니들은 교육을 그만두고, 저임금의 직종에서 일하며, 가족 생계에서 장기간의 영향력을 갖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 출산율(adolescent fertility rate) 혹은 10대 출산율(Teenage Birth rate)은 여성 1000명당 15세~19세 사이의 여성에게서 태어난 생존 아동의 수로 정의한다. 모든 나라에서 10대 출산율이 지난 25년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청소년의 출산율은 특히 미국, 터키, 멕시코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나. 요구통계(Key findings)

혼외출산아의 비중에 있어서의 OECD국가별 차이는 매우 크다. 그리스, 일본 한국, 멕시코에서는 10% 이하이지만 프랑스와 북유럽국가에서는 50%를 넘어서고 있다(그림 2-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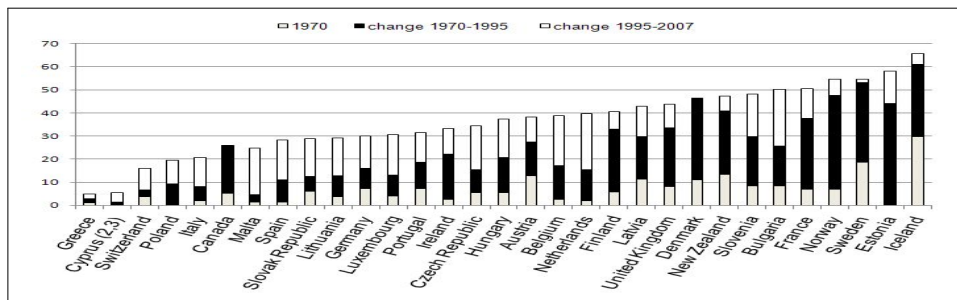
[그림 2-10] 혼외출산아의 비율, 2007년 또는 최근연도(SF 6.1)



주: 1) 2007년도의 혼외출산율 비율이 낮은 국가부터 제시되었음.
 2) 멕시코는 1999, 호주, 캐나다는 2005; 아이슬란드, 한국,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은 2006.
 자료: 각국 통계청; 유럽 국가들은 Eurostat.

그림 2-11은 1970년대에는 혼외출산이 전체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지만(1/3 이하), 그 이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증가는 특히 197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북유럽국가,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두드러졌다. 대부분의 동유럽국가, 벨기에,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스페인은 1995년 이후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림 2-11] 1970년도 이후의 혼외출산아 비율의 변화(SF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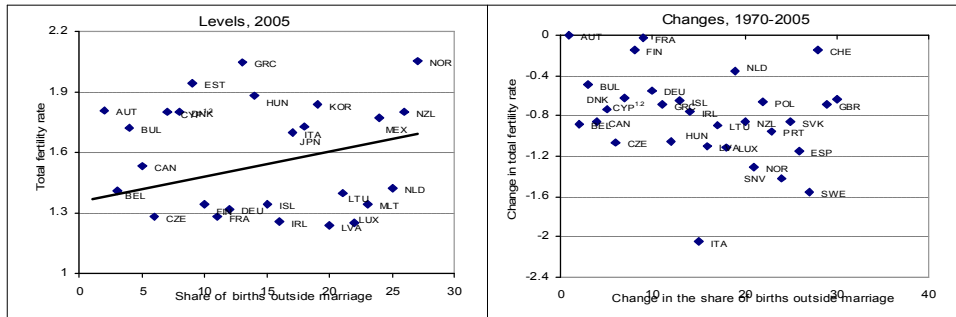


주: 캐나다, 2005;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 2006.
 자료: 각국 통계청; 유럽 국가들은 Eurostat.

그림 2-12는 혼외출산의 비중과 합계출산율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그림은 2005년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번째 그림은 1970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 중의 혼외출산의 비중과 합계출산율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2005년도에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들은 동시에 높은 혼외출산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자녀출산이 결혼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일본이나 한국 등에서는 출산율과 혼외출산의 비중이 모두 낮다. 결과적으로 국가별 차이는 매우 크며, 출산율과 혼외출산과의 상관관계는 0.25에 불과하다.

혼외출산과 출산율 사이의 분명한 관련성은 없다. 경향성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의 경우는 1970년대에 혼외출산이 급증하였지만 출산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네덜란드나 체코의 경우는 혼외출산이 위의 국가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출산율은 197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림 2-12] 국가별 혼외출산 비중과 출산율의 관계, 1970, 2005(SF 6.3)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① 혼외출산

결혼에 관한 자료는 행정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오직 합법적으로 인정된 시민 파트너십이나(civil partnership), 동성결혼(civil union)에 의한 커플들만을 포함한다. 미처 그들의 파트너십의 지위를 법적 동의단계로 전환하지 못한 성인들의 아동들(비록 몇몇 나라에서는 특정기간의 경과로 유사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기도 한다. e.g 호주와 뉴질랜드)은 여기서 혼외 출생자 혹은 사생아(out-of-wedlock)로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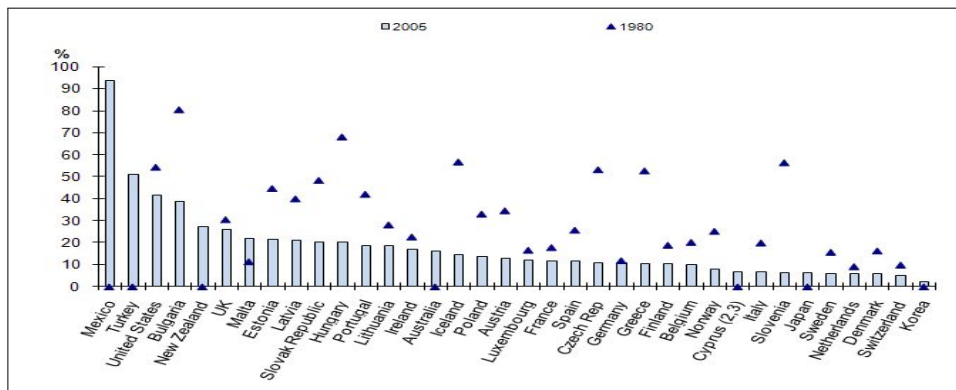
혼외 출생자의 점유율의 증가는 대부분 법적으로 인정된 파트너십 외의 동거 커플의 증가에서 기인한다(SF 9).

출생에 관한 자료는 인구조사에 기반을 둔 행정적인 자원을 통해 수집되고 있다. 반면 결혼이나 부모의 파트너십 지위는 모든 신생아에 관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그림 2-12에 제시된 합계출산율을 둘러싼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을 SF4를 참조할 수 있다.

② 십대 출산

위에 제시된 자료는 15세~19세 사이의 연령집단을 의미하고, 15세 이하에서 출생한 아동은 여기에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자료는 행정자료에서 수집되었고 인구조사에 기반을 두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확한 국가간 비교를 제공한다.

[그림 2-13] 십대출산율, 1980년과 2005년(SF 6.4)



주: 2005년도의 십대출산율이 높은 국가부터 제시되었음.
 뉴질랜드, 2003년, 기타는 그림 2-10의 주 참조
 자료: Eurostat 인구통계; United Nations 통계국.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 Calot G., Sardon J.P. (2003), *Methodology for the calculation of Eurostat's demographic indicators*,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3/2003/F/no 26.

- Eurostat(<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
- D’Addio, A.C and M. Mira d’Ercole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27, Paris.
- OECD (2009), *Society at a Glance*, Paris.
- Kamerman S., Neuman M., Waldfogel J., Brooks-Gunn J. (2003), “Social Policies, Family Types, and Child Outcomes in Selected OECD Countrie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6. OECD,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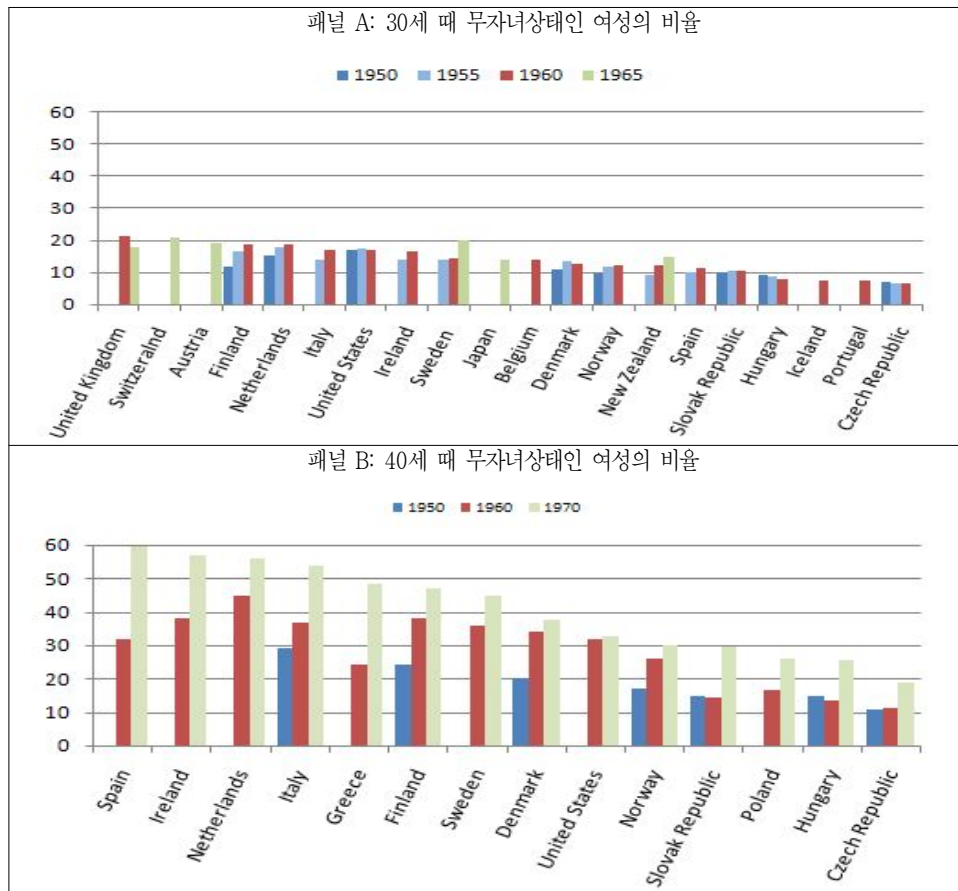
4) 무자녀(Childlessness, SF7)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각기 다른 생애주기 지점에서 무자녀 여성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10여년간 자녀출산(부모되기)의 지연은 성인들이 자녀를 갖지 않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무자녀 인구가 얼마나 출산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확정적인 무자녀상태(definitive childlessness)”는 보통 45세에서 49세의 여성들로, 가임기간이 종료하는 시기에만 측정할 수 있으며, 그에 관련한 정보는 다른 코호트의 여성들에게서 관찰될 수 있다.

그림 2-14는 1950년, 1955년, 1960년과 1965년에 각각 태어난 여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30세와 40세일 때 무자녀 여성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코호트를 연령별로 추적함으로써 무자녀 여성이 감소하거나 지속되는 범위의 측정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는 오직 제한된 수의 국가들에서만 구득가능하다.

[그림 2-14] 코호트별 무자녀 비율(SF 7.1)



주: 패널 A는 1970년생 코호트 기준, 패널 B는 1965년생 코호트 기준으로 무자녀여성의 비율이 높은 국가부터 제시되었음. 자료: D'Addio and Mira d'Ercole (2005), except for Portugal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has been obtained through EU New Cronos; New Zealand: National Census of Population; and, Japan: National Census; percentage for non-married women.

1965년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난 여성 코호트에 대한 가임기가 종료된 여성에 관한 통계자료가 구득 가능했다(표 2-10 참조). 그림 2-16은 완료출산율과 정적인 무자녀상태의 수준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SF4 참조).

나. 요구통계(Key findings)

모든 국가에 있어 30세 때의 무자녀인 비율은 증가해왔다(그림 2-14 참조).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의 경우 1970년에 출생한 여성의 절반 이상이 3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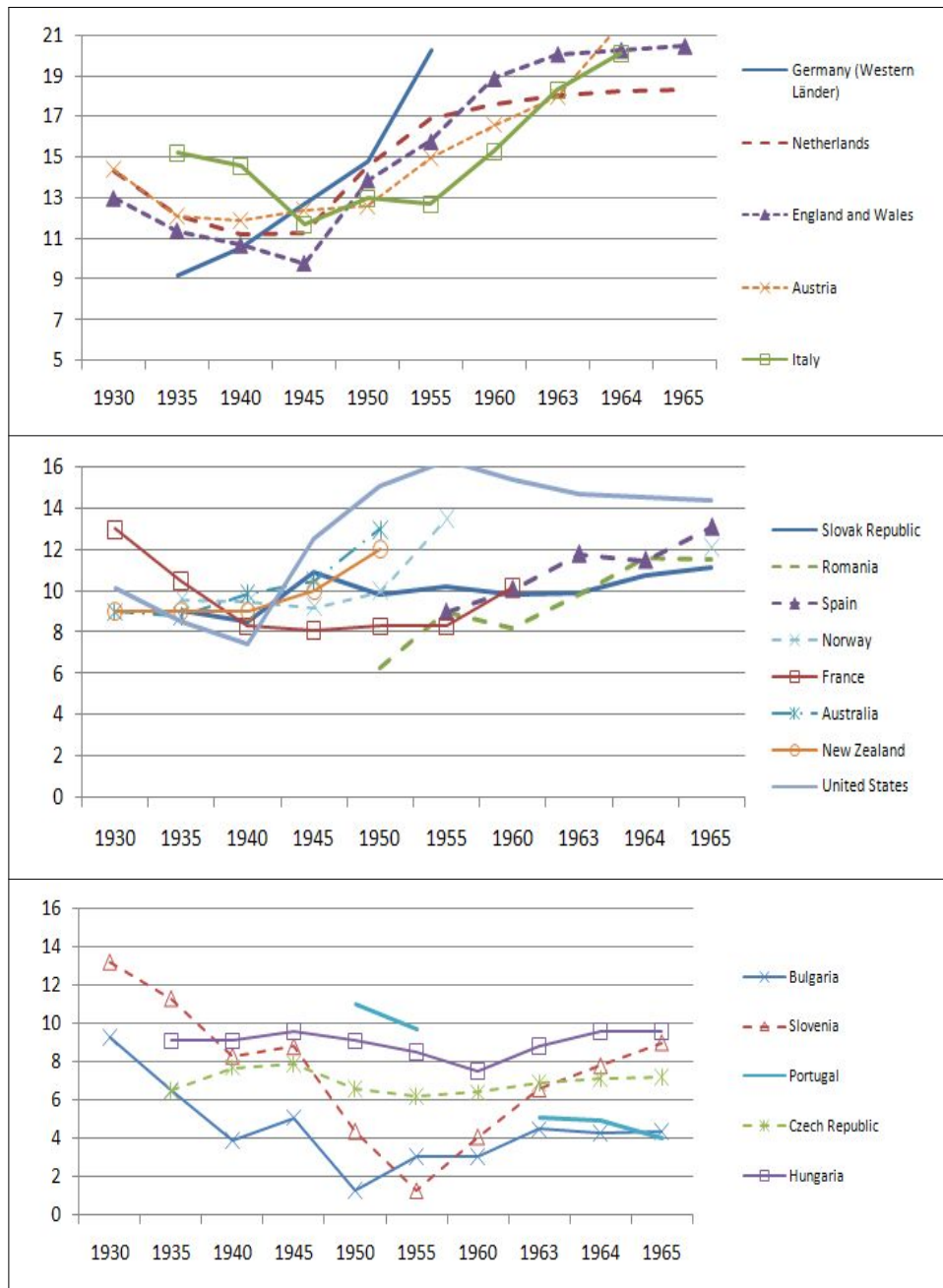
때 무자녀상태이다. 반면 체코나 헝가리에서 1/4규모 이하의 여성만이 무자녀 상태이다. 30대 초반에 무자녀 상태인 여성의 증가는 이들 국가에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 1960년에 태어난 여성의 경우, 40세까지 무자녀상태인 비율은 30세의 경우보다 30~50% 낮은 수준이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에서는 1960년 또는 1965년에 태어난 40세 여성의 5명중 1명은 무자녀 상태이다.

무자녀 상태는 교육수준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경우 40세 여성의 21%는 자녀가 없지만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까지 받은 여성의 경우는 이비율이 40%에 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그 차이가 스위스보다 작기는 하지만 중대한 차이가 발견된다. 1945년과 1949년 사이에 출생한 여성의 경우 중등교육(intermediary level)을 받은 여성의 경우는 9%만이 무자녀 상태임에 비하여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15%가 무자녀상태이다. 또한 고용상태도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1955~1959년 사이에 출생한 여성의 경우 미용사로 고용되어 있는 여성의 10%가 무자녀 상태이다.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유사한 교육수준의 여성의 경우는 이 비율이 23%에 달하고 있다(Neyer and Hoem, 2005).

그림 2-14는 출산 가능 연령의 후반기에 있는 여성에게 있어서의 무자녀 비율이 국가마다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다. 1965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8% 이상이며, 확정된 무자녀상태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오스트리아, 잉글랜드와 웨일즈,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에서 가장 높다. 반면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에서는 이 비율이 10% 이하이다. 1920년대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에 있어 처음에는 무자녀 상태가 감소하다가 제2차 대전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무자녀는 특정 코호트 여성의 완료출산율에 있어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림 2-16에 의하면 1965년 이후 출생한 여성의 경우 확정적인 무자녀 상태인 비율이 높은 국가(45세 이상 여성의 15% 이상인 경우)의 경우 완료출산율이 1.8 이하이다. 스페인은 1965년에 출생한 여성의 무자녀 수준이 낮고 완료출산율도 낮은 국가로, 1자녀 가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SF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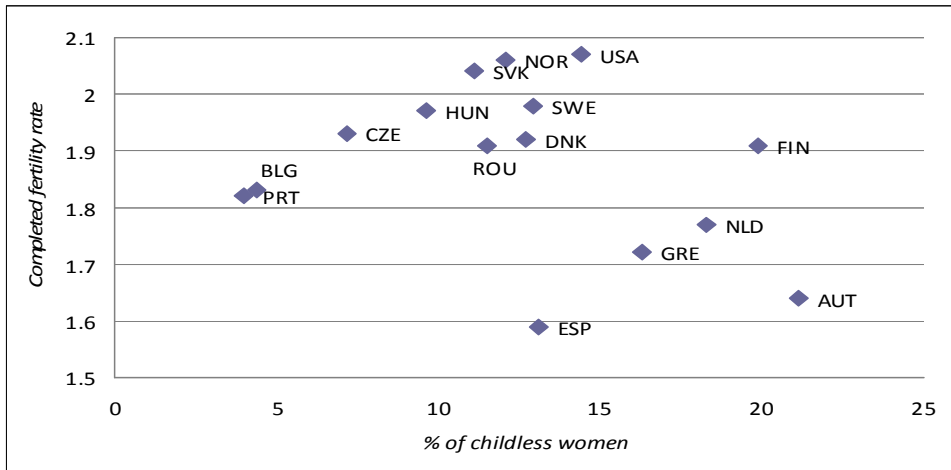
[그림 2-15] 확정적인 무자녀 비율의 국가간 비교(SF 7.2)



자료: Observatoire Démographique Européen (Sardon, 2006) and Rowland (2007).

본 지표는 가족크기와 구성(SF1), 출산율(SF4), 첫째아 출산시의 모의 연령(SF5), 혼외출산의 비중(SF6)과 연관되어 있다.

[그림 2-16] 1965년생 코호트 여성의 확정적인 무자녀와 완료출산율의 관계(SF 7.3)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가임기가 종료된 여성의 무자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최근인 1965년에 태어난 여성의 정보가 요구된다(2000년 중반에 관찰되었으므로). 보다 젊은 집단에서 무자녀가 계속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상적으로는 아이를 갖는 연령별·출생순위별 출산가능성에 있어서의 코호트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 무자녀의 경과적 특성과 생애과정에 있어서의 출생의 시점을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율은 종단적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아직은 표준화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는 구축가능하지 않다.

노동조사(labour survey)는 아이가 없는 가구의 여성의 비율에 대한 횡단적, 국가별 비교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표 2-10은 25세에서 44세의 여성을 5세연령별 그룹으로 묶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 통계자료는 무자녀에 관한 통계자료와 다른 형식의 통계자료인데 이는 아이를 한 번도 낳은 적이 없는 여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모두 키워서 독립시킨 어머니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무자녀 통계자료와 비교할 때, 이 통계자료는 위쪽으로 편향되어 여성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그러므로 25세 연령에서 39세 연령 사이에서 무자녀 가구에 사는 여성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고령 출산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늦은 30대에서 44세에 이르는 상승 추세는 자녀가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경향과 관련되어 있

다.

아이 없는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30세 이하 여성의 비율은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에서 특히 높게(60%이상) 나타난다. 평균에 비하여, 이들 4개 국가의 30대 여성의 경우 이 비율이 높다. 그러나 핀란드와 룩셈부르크는 늦은 나이의 출산율의 증가(표 2-10)로 인해, 4개의 연령그룹을 통해 자녀가 없는 가구의 여성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들이다(반면 네덜란드의 경우 40대 초반 여성들의 증가폭은 30대 후반 여성에 비하여 적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40대 초반 여성 중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아 약 1/3정도이다. 35세 이후 이 두 국가의 여성이 보이는 패턴에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20대의 여성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데, 평균적인 오스트리아 여성은 독일의 여성보다 약 3년 정도 어릴 때 그들의 첫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SF 5).

〈표 2-10〉 무자녀 가구에 속한 여성의 비율(Table SF 7.1)

	(단위:%)			
	25-29	30-34	35-39	40-44
오스트리아	54.9	31.9	25.3	33.9
호주	59.0	13.0
벨기에	47.9	26.9	18.1	19.6
체코공화국	40.1	13.5	9.1	19.3
독일	62.9	40.2	26.8	33.6
핀란드	70.5	38.1	30.3	28.8
프랑스	51.3	26.4	18.1	20.6
그리스	49.3	27.0	18.0	24.8
헝가리	39.7	21.7	11.7	16.5
이탈리아	43.6	31.2	21.8	22.0
라트비아	34.7	13.5	14.3	30.5
리투아니아	26.5	15.4	12.3	19.3
룩셈부르크	64.7	42.9	29.5	26.8
네덜란드	67.0	37.1	22.4	24.3
폴란드	30.4	14.6	8.0	13.2
포르투갈	39.0	19.6	10.7	17.9
로마니아	29.6	14.3	12.4	21.6
슬로베니아	35.5	14.8	10.4	15.2
슬로바키아공화국	23.5	9.2	7.8	18.5
스페인	47.9	32.7	17.3	18.1
터키	13.1	6.2	6.2	16.1
영국	49.0	32.7	20.5	25.1

주: 호주는 2001; 유럽 국가들은 2007.
 자료: 호주, ABS; 호주 사회 동향, 유럽 국가들은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2007.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 D'Addio, A.C and M. Mira d'Ercole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27, Paris
- Neyer, G. and J. Hoem (2007), "Education and permanent childlessness: Austria vs. Sweden", in Surkyn, J., P. Deboosere and J. van Bavel, *Demographic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a state of the art in demography*, VUBPRESS, Brussel.
- Rowland D. (2007), "Historical Trends in Childless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28(10), pp. 1311-37.
- Sardon J.P. (2006), "Recent demographic Trends in Developed Countries", *Population*, 61(3), pp. 225-300.
- Sobotka T. (2005), "Childless societies? Trends and projections of childlessnes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merican Association Conference*.

5) 출산지표로 본 한국의 현황

출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1970년대에 비슷한 출산율 수준을 보였던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급격하게 출산율의 저하를 경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8%이며 출산율은 1.13으로 비슷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는 국가중 출산율의 수준이 가장 낮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합계출산율은 1.19이며 여성의 경제활동이용률은 2008년도 기준 50.0%이다. 이는 간접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의 양립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완결출산률(Completed Fertility Rate)은 제공되어 있지 않지만 권태환(1997)에 의하면 1950년 코호트의 경우 2.50, 1955생의 경우는 2.26이다(통계청, 2006). 1960년생 이후의 경우는 로그감마모형을 이용한 완료출산율이 계산된 바 있는데 중위수준의 경우 1960년생은

2.08, 1970년생은 1.74, 1975년생은 1.43, 1980년생, 1.32, 1985년생 1.31, 1990년생 1.28이다(통계청, 2006). 1950년 코호트의 2.50은 뉴질랜드의 2.55보다는 낮지만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1965년 코호트의 경우는 많은 OECD 국가와 비슷하거나 뉴질랜드, 미국, 노르웨이 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1950년대 코호트에 비하여 원료출산율의 수준이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볼 수 있다.

생존출생아의 출생순위분포는 2005년 기준으로는 첫째아가 51.3%, 둘째아가 38.4%, 3째아가 8.5%, 그 이상이 1.8%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07년 기준으로는 첫째아 비율이 53.2%로 2005년에 비하여 조금 더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81년에 첫째아 비율이 41.0%였던 것에 비하여 매우 높아진 것이며, 셋째아 비율도 16.4%에 비하여 2005년에 약 절반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첫째아 비중의 증가와 셋째아 이상의 비중 감소는 가족크기가 그 기간 동안 심각하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KOSIS).

우리나라 여성은 평균 29.1세에 첫출산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료가 제시된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연령이며 가장 낮은 멕시코의 21.3세나 미국의 25.2세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첫째아 출산이 늦어진다는 것은 결혼시 연령이 높은 것과는 연결되는 것이며, 낮은 출산력과는 연관된다 하겠다. 이러한 통계치는 1995년 이후 10년간 2.6세가 증가한 것으로 급격한 사회체계의 변화를 경험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연령별 출산율에 관한 통계자료는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통하여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 통계를 살펴보면 높은 연령층의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출근 25~29세 연령군의 출산율이 가장 높았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25~29세 연령군의 출산율의 절대 수준이 감소세를 보여오다가 드디어 2006년부터는 30~34세 연령군의 출산율이 25~29세 연령군의 출산율을 넘어서게 되었다(통계청, 2009). 이러한 출산시 연령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각 국가의 출산시 연령과 출산수준이 연계되어있다는 측면 때문일 것이다. 첫 자녀 출산연령이 높아질수록 후속 출산의 가능성이 낮아지며 불임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한 국가의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전통적으로 다수의 출산은 결혼 이후 이루어지며 20대 이후에 이루어져 왔고,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제2의 인구학적 전환기 이후 가족을 둘러싼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이러한 표준화된 생애사건의 순서(order)나 시점(timing)이 당연시 되지 않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06년 기준 혼외출산은 전체 출산중 1.5%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이나 호주의 30%대, 북유럽 국가나 프랑스의 50%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혼외출산율은 1981년의 1.1%에 비교해볼 때 그리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는 혼외출산을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즉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과소보고(under-reporting)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시점으로 혼외출산과 출산율은 모두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출산율과 혼외출산의 관계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출산률이 대체수준 이상이었던 시기에도 혼외출산은 낮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십대출산율⁵⁾은 2005년 현재 2.0으로 OECD의 많은 국가들이 10.0 내외의 수준을, 미국이 가장 높은 십대출산율인 41.6인 것에 비하여 매우 낮다. 그러나 십대임신의 경우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지거나 입양 등을 통하여 인구동태조사에서 모의 연령이 상향되어 파악될 가능성 등이 있어 이 또한 과소보고(under-reporting)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살펴본 우리나라의 출산행태는 출산수준이 매우 낮고 출산의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는 변화가 두드러지는 특징이며 혼외출산이나 십대출산과 같은 결혼과 출산의 관계와 시점을 둘러싼 변화는 미미한 상태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3. 혼인과 동거(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중분류 3)

1) 혼인율과 이혼율(Marriage and divorce rate, SF8)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5) OECD자료에는 2005년 자료만 보고되고 있으나, KOSIS의 자료를 활용하면 1981년부터의 십대출산율을 계산할 수 있음.

① 혼인율

조혼인율은 1년간 신고된 총 혼인 건수를 1000명당 비율로 계산한 숫자이다. 이 방법은 다른 공식적인 동거 계약이나 비공식적인 파트너십은 소홀하고 있다(SF 9참조). 초혼비중(proportion of first marriage)은 만 1년 동안 결혼한 총 인구 중에서 처음으로 결혼한 인구의 비율로 측정된다. 첫 혼인의 평균 연령은 그들이 처음으로 결혼한 남성과 여성 나이이며, 첫 혼인의 성별 연령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 결혼 나이의 차이를 측정한 것이다.

② 이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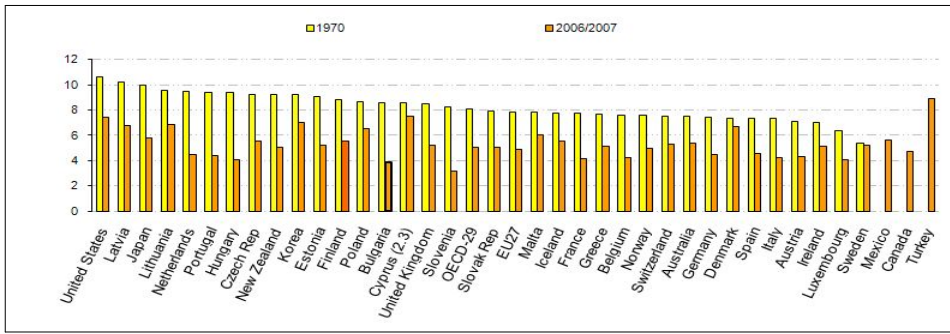
조이혼율은 1000명당 신고된 총 이혼건수이다. 파트너들이 공식적으로 결혼한 상태로 별거중이거나 비공식적 파트너십의 파탄은 계산되지 않는다.조이혼율은 특정년도의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평균인구로 나눈 비율을 표현한다. 이 값은 1,000명당 건수로 표현된다. 이혼시 평균혼인기간(the mean duration of marriage at divorce)은 혼인기간별 이혼율을 더하고, 이 합계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다(Carot and Sardon, 2003).

나. 요구통계(Key findings)

① 혼인율

그림 2-17은 모든 OECD국가와 EU 국가에서 눈에 띄는 조혼인율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감소는 네덜란드의 경우는 대폭적인 반면, 이미 1970년대 이전부터 상대적으로 조혼인율이 낮았던 덴마크, 스웨덴의 경우는 그 폭이 제한적이었다. 결혼이외의 방법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조혼인율의 감소가 꼭 부부관계가 적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F9 참조).

[그림 2-17] 1970년과 2007년 사이의 조혼인율 저하 추이(SF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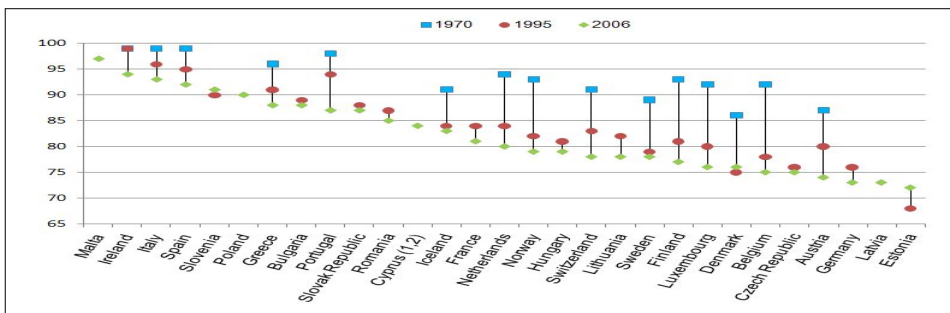


주: Data refer to 2004 for Canada and Mexico; 2005 for Turkey and the EU (except for Denmark and Ireland); 2006 for Denmark, Iceland, Ireland, New Zealand, and the US.

자료: Eurostat 통계국, United Nations 통계국.

1970년대 이후부터의 결혼의 감소는 전체 결혼건수 중 초혼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와 함께 발생하였다(그림 2-18 참조). 통계자료가 구득가능한 모든 OECD국가에서 초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1990 기간 중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0년대부터 감소속도는 느려졌으며, 체코, 덴마크, 헝가리,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에서는 감소경향이 정지하였다(그림의 오른쪽). 혼인상태 중 초혼이 차지하는 비율의 감소는 재혼빈도가 증가하였음을 함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혼은 통계자료가 제시된 국가 중 약 절반(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이태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에서 모든 결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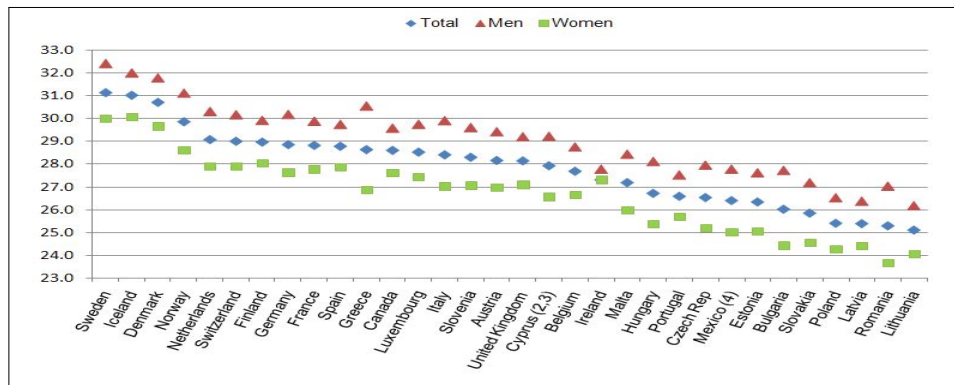
[그림 2-18] 초혼의 비율(SF 8.2)



주: 2006년도의 초혼의 비율이 높은 국가부터 제시하였음.

자료: Eurostat.

[그림 2-19] 초혼연령, 2003(SF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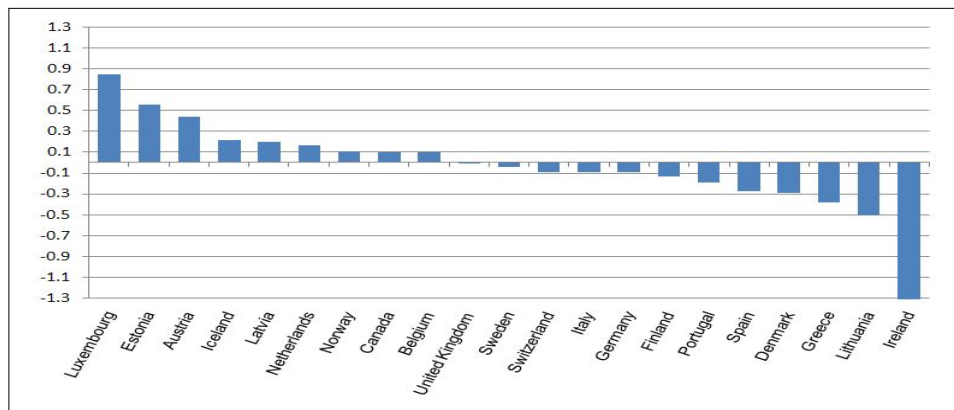
주: 2006년도의 초혼의 비율이 높은 국가부터 제시하였음.

- 1) 아일랜드, 1999; 이탈리아, 영국 2000;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2002.
- 2) 멕시코의 경우 모든 결혼에 대한 결과임.

자료: Eurostat; Mexico: Consejo nacional de Población.

OECD 국가들 사이의 평균초혼연령의 차이가 커 폴란드의 경우는 25세이지만 스웨덴은 31세이다. 이러한 차이는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에 있어서의 전이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거가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의 중요한 형태인 북유럽국가에서는 결혼을 지연시키거나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림 2-20] 초혼연령에서의 남녀차이(SF 8.4)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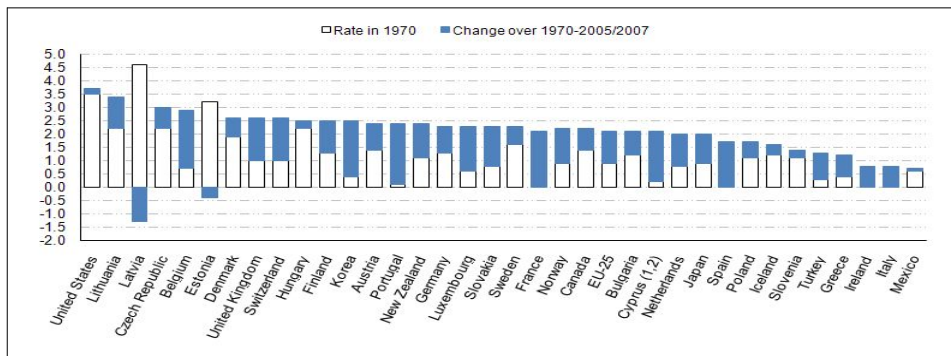
그림 2-20에 의하면 초혼연령에 있어 남녀연령 차이가 크다. 평균적으로 모든 국

가에서 초혼시의 연령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이러한 남녀차이는 아일랜드에서는 1살 정도로 가장 작고, 그리스에서는 거의 4년으로 가장 크다. 초혼연령의 남녀차이의 변화 경향은 국가마다 다르다(그림 2-20참조).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에서는 남녀차이가 증가한 반면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에서는 크게 감소하였다.

② 이혼율

그림 2-21은 조이혼율과 1970년에서 2005/7에 이르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기간동안 이혼율은 1970년에 이미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를 제외하고(유사한 이유로 미국의 이혼율의 증가는 매우 미미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증가하였다. 2005/2007년의 조이혼율의 국가간 차이는 중대하여, 멕시코의 1000명당 0.7건의 이혼건수부터 미국의 1000명당 3.7건의 이혼건수라는 큰 변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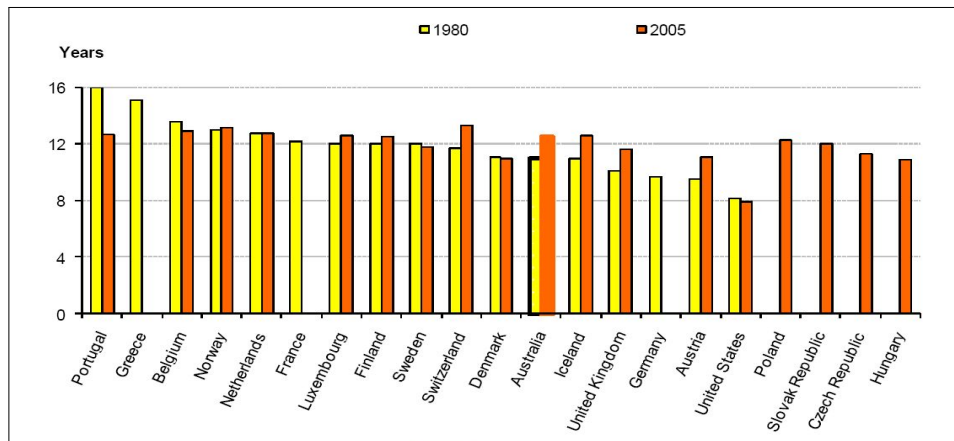
[그림 2-21] 1970년~2006/7년간의 OECD 국가들의 조이혼율의 증가 추이(SF 8.5)



자료: Eurostat 통계국, United Nations 통계국.

비록 이혼율은 1970년 이래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평균 혼인기간의 눈에 띄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략 지난 12년간의 OECD 평균은, 지난 25년간과 비교하여 볼 때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미국은 10년 이하로 평균 혼인기간을 갖고 있는 반면 평균 혼인기간의 다국적 변동은 제한되었다.

[그림 2-22] 1980년과 2005년의 이혼시 평균결혼기간(SF 8.6)



주: 1) 독일, 프랑스를 제외한 EU국가는 2005; 독일, 프랑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터키, 미국은 2006.
 자료: Eurostat 통계국, United Nations 통계국.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① 혼인

모든 국가들에서 결혼에 대한 통계는 시민등록에 근거하고 있다. 종교적 의식이 갖는 지위에는 국가간 차이가 있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과 영국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종교적인 결혼이 공적 결혼과 동등한 지위라고 인정한다. 몇몇 나라에서는(e.g. 호주와 뉴질랜드, SF9 참조), 특정기간동안 함께 사는 파트너들은 결혼한 커플들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갖고 있는 이러한 법적 틀이 ‘결혼’ 경향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이 커플들은 결혼 통계 산정에 계상되지는 않는다.

결혼시 나이는 혼인한 년도의 개인들의 연령을 의미한다(개별 국가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추산하였음, Eurostat 2006 참조). 지난 생일을 기준으로 한 연령별 혼인율을 연령별 혼인율로 전환하는 과정은 Calot과 Sardon(2003)이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혼인시의 실제 생일을 약간 과대평가되는 위험을 수반한다(이혼 연령과, 이혼시 혼인기간 평균 지표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 아래 참

고).

② 이혼

모든 OECD 국가들은 이혼이 가능하나, 기간과 이혼과정의 특성에 따른 국가간 차이가 있으므로, 이 차이는 나라간 이혼율과 평균 혼인기간을 비교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호주, 체코 공화국,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스페인, 스위스와 영국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배우자와 이혼을 확정하기 위해 별거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법으로 두고 있다.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 Calot G., J.P. Sardon (2003), Methodology for the calculation of Eurostat's demographic indicators,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3/2003/F/no 26, Eurostat(<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
- D'Addio, AC and M Mira d'Ercole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27.
- OECD (2007), *Society at a Glance*.
- Eurostat (2006) *Demographic statistics: Nuptiality*. Eurostat Metadata in SDDS format. Summary methodology, Eurostat.
- Eurostat Metadata in SDDS Format Summary Methodology.

2) 동거율과 기타 파트너십의 비율(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ther forms of partnership, SF9)

현재로는 동거율과 기타 파트너십 지표에 대한 정의나 작성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통계를 중심으로 통계치만 제시되고 있다.

[그림 2-23] 파트너와의 거주형태(그림 SF 9.1)



<표 2-11> 파트너십 종류별 분포 및 동거율, 최근년도(표 SF9.1)

(단위:%)

	20세 이상 전체				20-34세				
	독거	결혼	동거	기타	독거	결혼	동거	부모집	기타
호주	18.5	51.2	8.9	21.4	:	:	:	:	:
오스트리아	16.5	48.3	6.5	28.7	15.3	32.6	13.7	32.4	6
벨기에	19.5	48.6	6.4	25.6	18.8	22	5.2	54.1	
불가리아	14	42.4	4.2	39.4	6.4	18.9	2.8	71.9	
캐나다	10.7	39.3	8.9	41.1	:	:	:	:	:
덴마크	24.1	40.8	11.5	23.5	33.7	25.4	28.6	7.6	4.8
핀란드	19.6	43.6	11.8	25	20.8	27	28.3	17.7	6.2
프랑스	22.8	44.6	14.4	18.2	19.4	21.3	21.8	37.5	
독일	16.4	47.5	5.3	30.7	20.3	33.7	13.6	23.9	8.5
그리스	8	56.4	1.7	33.9	6	36.4	3.1	45.5	8.9
헝가리	12	50.9	6.3	30.7	6.6	39.4	11.5	36	6.5
아일랜드	10.6	53.4	5.9	30	5.5	27.6	13.4	45.2	8.3
이탈리아	10.8	53.9	2	33.2	5.8	30.5	3	51.1	9.5
일본	15.46	47.5	2.07	:	:	34.8	:	:	:
리투아니아	14.2	55	4.1	26.6	15.4	69.2	8.3	0	7.1
룩셈부르크	19.1	58.2	14	8.7	18	23.3	11.4	47.2	
네덜란드	15.8	48.1	9.3	26.9	19.5	29.9	21.9	19.9	8.8
노르웨이	19.3	44.1	10.7	25.8	21	25	22.7	26.6	4.7
폴란드	11.2	56.3	1.3	31.1	8	40.7	1.9	43.5	6
포르투갈	7	56.5	4.1	32.4	4.1	40.5	5.9	39	10.6
로마니아	7.6	56.1	4.3	32	3.1	48.8	7.4	31.4	9.3
스위스	17.5	49.3	5.9	27.4	20.7	35.2	12.3	21.3	10.5
터키	3.9	45.7	0.2	50.3	2.4	37.8	0	59.7	
영국	14.9	47.3	8.7	29	11.4	32.2	22.2	24.7	9.6
미국	13.4	52.9	5.5	28.2	:	:	:	:	:
OECD-평균	15.2	49.9	6.8	27.9	14.3	31.4	12.4	36.4	7.7

자료: 호주: 2006 인구센서스; 캐나다, 인구센서스; 뉴질랜드, 2006 센서스; 일본, 통계조사국, 통계위원회, 내무부; 유럽 국가들, 2000 인구주택총조사; 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룩셈부르크와 터키, ELFS, 2007; 미국, US 센서스, 2000.

〈표 2-12〉 파트너십 상태와 자녀, 2001(표 SF9.2)

(단위:%)

	결혼				동거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1명	2명	3명 이상		1명	2명	3명 이상
오스트리아	39.7	24.4	25.4	10.5	55.1	27.3	13.7	3.9
캐나다	43.6		56.4		55.1		44.9	
체코공화국	35.8	27	30.6	6.5	49.5	26.4	16.7	7.4
덴마크	53.4	16.4	21.6	8.6	58.4	20.7	16.3	4.6
스페인	30.7	27.6	31.1	10.7	52.8	24.8	15.9	6.5
핀란드	45.8	21.1	21.2	11.8	60.3	20.1	14.2	5.3
프랑스	44.3	22.8	21.4	11.5	:	:	:	:
독일	53.5	19.9	19.7	6.9	70.3	19.6	7.7	2.1
그리스	35.3	27.3	29.3	8.1	69.2	16.1	10.9	3.8
헝가리	39.4	27.6	25.5	7.6	50	27.2	14.4	8.4
아일랜드	26.7	21.2	26.3	25.8	61.6	20.3	11.4	6.7
이탈리아	33.1	30.1	28.5	8.3	54.2	27.9	13.2	4.7
네덜란드	44.5	19.4	24.8	11.4	73.3	14.8	9.3	2.6
노르웨이	42.3	19.4	24.1	14.3	37.8	28.3	25	8.9
폴란드	28.8	29.1	27.9	14.2	43.9	29	16.3	10.8
포르투갈	34.8	33.1	25.5	6.6	38.2	32.2	19.5	10.1
슬로바키아공화국	27.4	25.3	33.1	14.2	36.8	25.3	20.8	17.1
스위스	44.9	20	24.4	10.7	80.9	11	6.1	2
영국	47.3	52.7	0	0	58.8	41.2	0	0
OECD-평균	39.5	27.4	24.5	10.4	55.9	25.4	13.6	6.2

주: 1) 연령은 20세 이상임.

자료: 캐나다, 2006 인구센서스; EU 국가와 스위스, 2000 인구주택총조사, Eurostat.

3) 혼인과 동거 상태로 본 한국의 현황

결혼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2007년 현재 7.0으로, 동거가 전통적인 결혼을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많은 OECD 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1970년의 9.2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수준이다. 또한 조이혼율도 2.5로 1970년의 0.4에 비하여 매우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조이혼율과 조이혼율의 변화폭은 모두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편인데, 이는 이들 국가들에 있어 동거율이 높기 때문에 법적인 이혼의 발생이 적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국의 사회지표』에 제시되어 있는 총혼인건수와 총초혼건수에 기초할 때 총혼인중 초혼의 비율은 81.8%이며, 초혼연령은 남자 31.1세, 여자 28.1세로 남녀차이는 3세이다. 타 OECD 국가의 비교해보면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높은 편이며, 남

녀차이도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분류 ‘가족의 구조(SF)’는 34개 요구통계 중 불과 13개만 완전하게 제공되고 있고, 12개는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표 2-13〉 '가족의 구조(SF)'에 대한 한국 통계 현황

소분류	요구통계		한국 통계
SF1 가족규모와 구성	1-1	평균가구원수	○
	1-2	가구유형(부부, 1인, 한부모가족, 기타)	○
	1-3	아동 및 부모동거여부에 따른 가구분포	○
	1-4	아동수별 가구분포	×
SF2 가족내 아동	2-1	0~14세 아동의 가구유형별 분포(1)	×
	2-2	0~14세 아동의 가구유형별 분포(2)	×
	2-3	0~14세 아동의 가구내 아동수별 분포	×
SF3 아동의 주거상황	3-1	0~14세 아동의 부모와의 거주형태	×
	3-2	0~14세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특성	×
SF4 출산율	4-1	합계출산율	○
	4-2	완료출산율	△
	4-3	생존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분포	△
	4-4	출생 순위 분포의 변화(1980-2005)	△
	4-5	국가별 여성경제활동참여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
SF5 첫 자녀 출산시 모의 연령	5-1	첫 자녀 출산시의 모의 평균연령	○
	5-2	1970년 이후의 첫 자녀 출산시 연령의 지연추이	○
	5-3	연령별 출산율	△
SF6 혼외출산과 십대출산	6-1	혼외출산아 비중(최근 연도)	○
	6-2	1970년 이후의 혼외출산아 비중의 변화	△
	6-3	국가별 혼외출산아 비중과 출산률의 관계	○
	6-4	십대출산율(1980과 2005년)	○
SF7 무자녀	7-1	코호트별 무자녀 비중	△
	7-2	확정적인 무자녀 비중	△
	7-3	1965년생 코호트의 확정 무자녀와 완료출산율의 관계	△
	7-4	무자녀 가구에 속한 여성의 비중	△
SF8 혼인율과 이혼율	8-1	조혼인율의 추이(1970~2007)	○
	8-2	초혼의 비율	△
	8-3	초혼연령	△
	8-4	초혼연령에서의 남녀차이	○
	8-5	조이혼율의 증가추이(1970~2006/7)	○
	8-6	이혼시 평균결혼기간(1980~2005)	△
SF9 동거율과 기타 파트너십	9-1	파트너십 종류별 분포	×
	9-2	파트너십 종류별 자녀수 분포 (2001년)	×
	9-3	파트너와의 거주형태	×

주: ○ 통계가 제시되어 있음. △ 국내 통계가 있으나 제출되지 않음. × 상응하는 통계 없음.

제 2절 한국의 통계생산방안

지금까지 OECD Family database의 작성기준을 근거로 각 통계지표와 요구통계별 한국의 통계 현황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나타난 통계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현재 미제출된 한국의 통계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존의 한국 통계와 실태조사, 보고서 및 논문에 자료가 제공되어 있으나 현재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기존 자료 이용'가능한 통계가 있다. 두 번째는 현재 통계와 실태조사 등의 조사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산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원자료의 '가공'을 통하여 산출이 가능한 통계가 있다. 세 번째는 현 통계나 실태조사의 항목 일부를 추가하거나 수정함으로써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보완' 가능한 통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통계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조사되지 않았으나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해볼 때 신규조사의 실시를 모색해봐야 하는 통계가 있다. 아래에서는 현존하는 통계가 없어 추가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존조사의 보완 또는 가공을 통하여 산출이 요구되는 통계를 중심으로 생산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이동수별 가구분포(Households by number of children)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

OECD는 가구의 분포를 아동수와 6세 이하 아동이 있는가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있다. 아동수의 분류기준은 0,1,2, 3명 이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주택통계를 통하여 파악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가구분류가 성인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중심의 가구형태 분류 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즉, 전체가구를 100%로 하여 아동의 수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와 각 아동의 연령이 파악된 자료가 필요한데, 이에 적합한 자료가 바로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이다. 따라서 기존의 조사자료의 가공을 통하여 통계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전국표본조사이며 응답자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가구단위 조사인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와 『복지실태조사』,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경우도 본 통계산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없음

3)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4) 작성주기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매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3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비정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2년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하는 전국표본조사이며 국가지정통계를 산출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작성주기가 각각 1년과 3년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 비하여 작성주기가 짧다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가 전수조사이며 5년주기로 통계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비교를 실시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점, 가족규모와 구성에 관한 통계가 상당부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본 통계생산은 추가적인 조사나 항목 증가없이 기존 인구주택총조사자료의 가공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협력만 있다면 당장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2. 0~14세 아동의 가구유형별 분포(1)(Distribution of children aged 0-14 by household type)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

OECD는 가족내 아동의 위치를 살펴보기 위한 통계자료의 하나로 0~14세 아동의 가구유형별 분포를 세가지 통계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 세가지중 하나인 본 통계는 아동이 부모 모두와 살고 있는가 여부에 초점을 둔 것으로, 0~14세 아동을 전체대상으로 하여 한부(모) 가구, 양친가구, 기타가구로 구분하여 아동의 분포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산출을 위해서는 0~14세 아동이 어떠한 가족원과 생활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가능하다. 단지 0~14세 아동을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거주형태분포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없음

3)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4) 작성주기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매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3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비정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2년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이동수별 가구분포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로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본 통계생산은 추가적인 조사나 항목 증가 없이 기존 인구주택총조사자료의 가공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협력만 있다면 당장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3. 0~14세 아동의 가구유형별 분포(2)(Distribution of children aged 0-14 by household type)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

본 통계는 0~14세 아동의 가구유형별 분포(1)과는 다른 가구유형분류를 필요로 한다. 즉, 생활하고 있는 성인의 수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아동이 편(부)모하고만 동거하는 가구, 양친하고만 동거하는 가구, 기타가구로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편

모가 그의 양친과 함께 동거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첫 번째 요구통계에서는 편부(모)를 포함한 가구로 분류되지만, 두 번째 요구통계에서는 기타가구로 분류된다.

본 통계산출 또한 0~14세 아동이 어떠한 가족원과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을 요구하며, 이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가능하다. 현재는 0~14세 아동을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거주형태분포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없음

3)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4) 작성주기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매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3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비정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2년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본 통계생산은 추가적인 조사나 항목 증가없이 기존 인구주택총조사자료의 가공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협력만 있다면 당장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4. 0~14세 아동의 가구내 이동수별 분포 (Distribution of children aged 0-14 by by number of children)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

본 통계는 0~14세 아동을 가구내 아동이 몇 명인가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1,2,3명인 가구로 구분하고 있다. 더불어 0~14세 아동중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본 통계산출은 0~14세 아동을 100%로 하여 각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내의 0~14세 아동의 수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가능하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없음

3)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4) 작성주기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매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3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비정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2년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본 통계생산은 추가적인 조사나 항목의 추가없이 기존 인구주택총조사자료의 가공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협력만 있다면 당장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5. 0~14세 아동의 부모와의 거주형태 (Distribution of children aged 0-14 by living arrangements)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

본 통계는 OECD국가들이 다양한 파트너십과 이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의 ‘핵’을 둘러싼 변화가 아동의 거주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통계는 0~14세 아동이 부모의 혼인상태변화로 인하여 부모와의 동일가주내 거주형태에 어떠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아동의 거주형태를 부모 모두와 동

일가구내 거주하는 경우, 동일가구 내에 부모가 모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가장 어린 아동의 아버지가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가장 어린 아동의 어머니가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통계산출은 0~14세 아동을 기초로 하여 각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내에 각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가구원으로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없음

3)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4) 작성주기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매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3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비정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2년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본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가구원으로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

의 추가하거나 전국조사의 조사항목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각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동일가구내 거주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현 우리나라의 가족문화 속에서 볼 때 타 문항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구주택총조사보다는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태조사중 조사의 목적과의 연계성을 고려해볼 때 3년주기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조사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본 통계생산은 추가적인 조사항목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 조사 실시주체와의 협의가 요구된다.

〈표 2-14〉 0~14세 아동의 거주형태 파악을 위한 질문

0~14세 아동	생모	생부
	① 동일가구내 거주 → 가구원 번호 ____ ② 동일가구 외 거주	① 동일가구내 거주 → 가구원 번호 ____ ② 동일가구 외 거주
아동 1		
아동 2		
아동 3		
.....		

6. 0~14세 아동의 거주형태 (Living arrangements of young adolescents)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통계로 0~14세 아동을 전체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부모의 특성에 따라 친부모, 복합가족(step-family), 한부모가족으로 나누고 있다. 본 통계 역시 0~14세 아동을 기초로

하여 각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내 에 각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가구원으로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산출이 가능하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없음

3)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4) 작성주기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매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3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비정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2년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본 통계 또한 위의 거주형태에 대한 통계와 동일한 이유와 위의 통계산출을 위한 설문구성이 이루어질 경우 자동적으로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본 통계생산은 추가적인 조사항목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 조사

실시주체와의 협의가 요구된다.

7. 코호트별 무자녀(childlessness) 비중⁶⁾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

각 출생코호트별 여성 중 자녀가 있는가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없음

3) 자료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4) 작성주기

3년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여성 개인의 출생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본 통계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면 산출가능할 것이며, 각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

6) 조사항목의 추가나 신규조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단순 가공을 넘어서는 작업을 요구하므로 정리하여 제시함.

자료를 통합한다면 좀더 안정적인 통계의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전문가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8. 확정적인 무자녀(Definitive childlessness) 비중 및 완료출산율과의 관계)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

재생산 연령을 넘어선 44~49세 여성중 무자녀인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44~49세 연령층의 자녀수에 대한 자료가 요구된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44~49세 연령층의 자녀수에 대한 정보는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까지만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1988년도 보고서까지만 발표하고 있을 뿐, 그 이후의 보고서에는 보고하고 있지 않다.

3) 자료원

없음

4) 작성주기

없음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여성 개인의 출생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7) 조사항목의 추가나 신규조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단순 가공을 넘어서는 작업을 요구하므로 정리하여 제시함.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본 통계는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가 임신·출산에 관하여 49세까지를 조사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료를 가공하면 산출이 가능할 것이며, 완료출산율에 대한 실측치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9. 파트너십 종류별 분포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

20세 ~34세 연령층(하위집단 20-34세 구분)의 거주형태를 독거, 결혼, 동거,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는 자료가 있어야만 본 연령층의 파트너십별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없음

3) 자료원

인구주택총조사

4) 작성주기

5년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본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을 조정하면 산출이 가능하다. 즉 각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인의 관계를 파악하는 항목에 ‘동거’를 추가하면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본 통계생산은 추가적인 조사항목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 조정 작업을 요구한다.

10. 파트너십 종류별 자녀수 분포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

20세 이상에 대하여 결혼 또는 동거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결혼 및 동거유무별로 자녀의 수를 파악한 자료가 있어야만 통계산출이 가능하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없음

3) 자료원

인구주택총조사

4) 작성주기

5년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본 통계는 인구 및 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을 조정하면 산출이 가능하다. 즉 각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인의 관계를 파악하는 항목에 ‘동거’를 추가하면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본 통계생산 또한 추가적인 조사항목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 조정작업을 요구한다.

11. 파트너와의 거주형태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

본 통계에 대해서는 OECD에서도 정확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제시된 통계자료에 기초해볼 때 본 통계의 생산은 20세 이상에 대하여 파트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가구를 형성하면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없음

3) 자료원

없음

4) 작성주기

없음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본 통계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조사로는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조사 또는 조사항목 개발이 요구된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파트너십과 관련한 한국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 이를 위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결혼과 관련된 복합적인 변화가 예견되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혼과 기혼 모두를 포함하는 결혼행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인구패널 등과 같은 파트너십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국내에 통계자료가 존재하나 현재의 Family Database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통계들이 있다. 즉, 완료출산율⁸⁾ 생존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분포, 출생순위 분포의 변화⁹⁾, 연령별 출산율, 1970년 이후의 혼외출산아 비중의 변화¹⁰⁾, 초혼의 비율, 초혼연령, 이혼시 평균결혼기간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OECD에 추가로 제출하면 될 것이다.

한편, 무자녀 가구에 속한 여성의 비중은 출산력 및 가복보건복지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단순 가공하면 산출이 가능할 것이며, 1980년대부터의 십대출산율은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 가능할 것이다.

8) 일부는 통계청의 추정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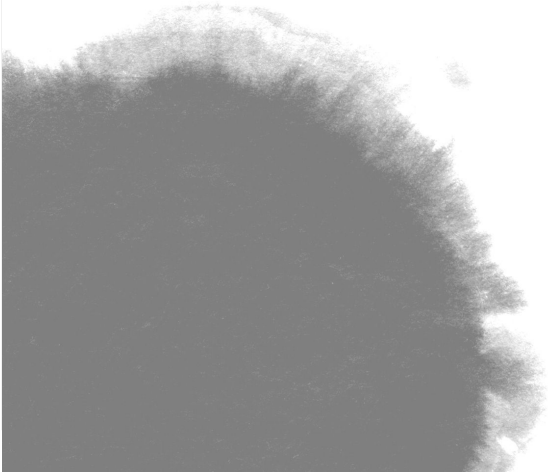
9) OECD 기준은 1980년부터이나 한국은 1981년부터 자료가 제공됨.

10) OECD는 1970년 자료부터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은 1981년부터 사용 가능함.

03

K
I
H
A
S
A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LMF)



3장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LMF)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는 3개의 중분류와 12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5개의 소분류에서 17개의 요구통계가 제시되고 있다. 먼저 1절에서는 각 중분류별로 현재 OECD에서 작성기준과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지표들(LMF2, LMF4, LMF 5, LMF6, LMF7)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는 국제통계 생산을 위한 지표의 정의와 작성기준, 주요 결과, 비교가능성과 통계 이슈, 자료원으로 구성된 다¹⁾. 그런 다음 OECD Family database의 통계 지표에 비추어 한국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에 대한 통계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2절에서는 현재 Family database에 미제출된 요구통계를 중심으로 OECD의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의 통계 생산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제 1절 OECD의 작성기준과 한국의 현황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는 3개의 중분류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가족, 아동과 고용상태(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로 고용상태별 아동의 분포와 모의 고용률, 가족 상태별 모의 고용률, 생애주기별 고용 프로파일 등 4개의 소분류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연령별 성별 고용률의 코호트 비교(cross-cohort comparisons of employment rates by 5-year age groups by gender)’로 성별 임금 격차와 학력별 소득 격차, 고용성과의 성별 차이 등 2개의 소분류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과 돌봄노동에 소요하는 시간(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은 주당 평상 근무시간의 성별 차이, 자녀와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부부

11) 국제통계 생산을 위한 정의와 작성기준, 주요 결과, 비교가능성과 통계 이슈, 자료원에 대한 내용은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근무시간, 가족 우호적인 근로 환경의 실제, 여가나 근로에서 벗어나 보내는 시간, 근로와 돌봄, 가사 일에 소요하는 시간 분포 등 6개의 소분류로 구성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분류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의 요구 통계 현황은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 3-1〉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의 공개된 지표 현황¹⁾

중분류	소분류	요구 통계	
가족, 아동과 고용상태	LMF2 모의 고용률	2-1 ²⁾	여성고용률 대비 모의 고용률
		2-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모의 고용률
		2-3	16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모의 고용률
	LMF4 생애주기별 고용 프로파일	4-1	성별 연령별 고용 프로파일(2005)
		4-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른 모의 고용률과 출산 휴가율
연령별 성별 고용률의 코호트 비교	LMF5 성별 임금 격차와 학력별 소득차이	5-1	전일제 중위소득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2004)
		5-2	상위층 전일제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2004)
		5-3	전일제 중위소득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경향(1980-2004)
		5-4	교육 수준별 연령집단별 남성 대비 여성의 평균 연간 소득(2004)
	LMF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	6-1	시간제 고용 비율(2005)
		6-2	여성의 시간제 고용률의 변화(1990-2005)
		6-3	임시고용 비율(2005)
		6-4	임시직 여성 비율 동향(1990-2005)
		6-5	학력별 여성의 고용률과 성별 고용률 격차(2004)
근로시간과 돌봄노동에 소요하는 시간	LMF7 성별 주당 평상 근무시간	7-1	성별 주당 통상 근로시간(2005)
		7-2a	주당 40시간이상 근로 인구 비율의 변화(1985-2005)
		7-2b	주당 50시간이상 근로 인구 비율의 변화(1985-2005)

주: 1) 현재 OECD에서 작성기준을 제공하는 지표만 정리함.

2) Family database에서 제공하고 있는 번호체계와 다르며 연구진에서 부여한 요구통계별 번호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재구성.

1. 가족, 아동과 고용상태(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중 분류 1)

1) 모의 고용률¹²⁾(Maternal Employment Rates, LMF 2)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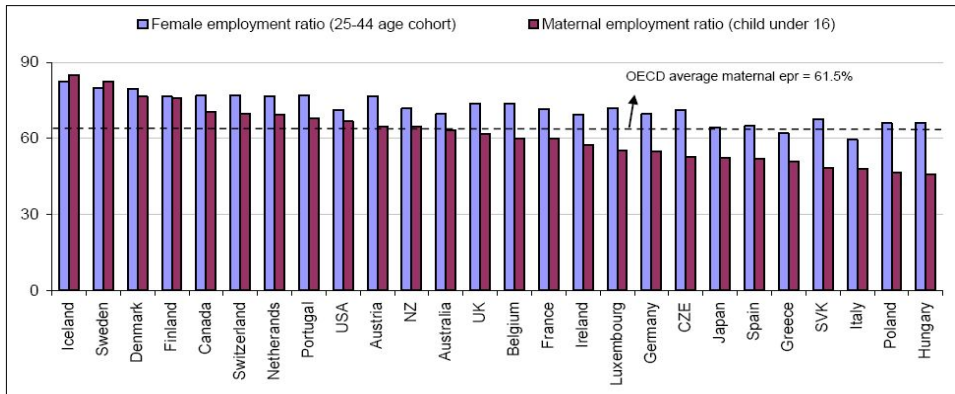
본 지표의 유자녀 여성 고용률은 막내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모(母)의 고용률과 16세 이하의 자녀 수에 따른 모의 고용률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현재 OECD 국가들의 유자녀여성 고용률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는 아직 수집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통계는 각국의 정부가 제공한 통계와 유럽노동력조사(European Labour Force Survey)에서 수집한 통계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제시된 통계는 2005년 또는 가장 최근의 것이다.

나. 주요 결과(Key findings)

그림 3-1은 가정 내에 최소한 16세 이하인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어머니의 고용률에 대한 통계이다. 이는 25-44세인 여성에 대한 고용률과 비교하는데, 이 시기는 전형적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연령대이다.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모의 고용률은 여성 고용률보다 낮게 나타난다. 특히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의 반대쪽 끝에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 등에서 25-44세 여성들의 고용률 대비 모의 고용률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여성 고용률이 모의 고용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12) 고용률이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통계청, 경제활동조사), 본 지표에서 ‘여성 고용률’은 25-44세 여성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모의 고용률’은 25-44세 여성 인구 중 16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여성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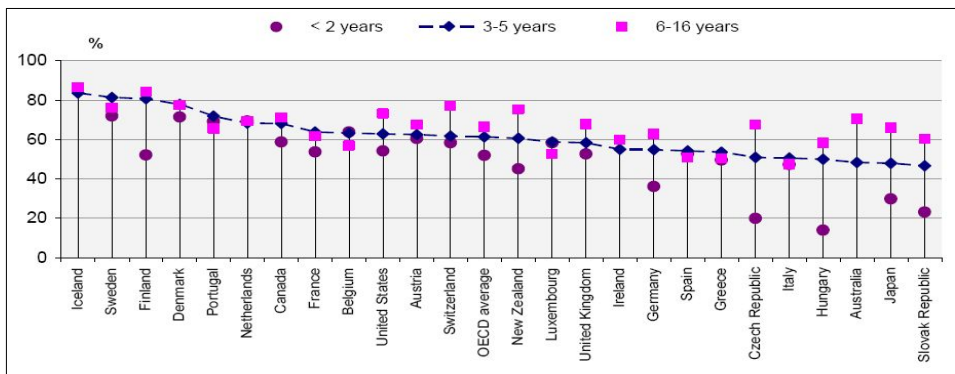
[그림 3-1] 여성 고용률과 모의 고용률의 비교(LMF2.1)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and OECD Family database.

그림 3-2는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른 모의 고용률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머니들은 자녀가 의무교육 연령에 접근할 때(대부분의 국가에서 6세)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몇몇 국가(체코, 핀란드, 독일,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는 매우 어린 자녀(3세미만)가 있는 모에 대한 고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는 지표 LMF 4(생애주기별 고용 프로파일)에서 제시하는 이용 가능한 육아휴직의 범위와 연관이 있다.

[그림 3-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모의 고용률(LMF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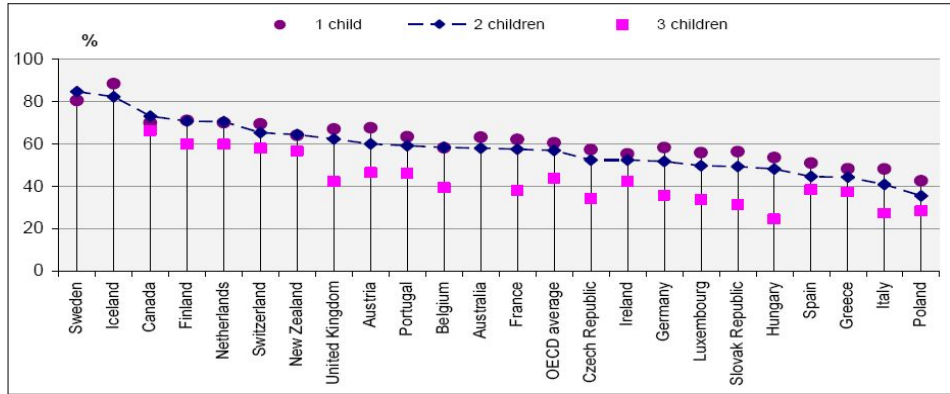


주. 1) 호주,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에서 어린 자녀란 5세 미만의 자녀를 의미함.
 2) 국가들은 3-5세의 가장어린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이 감소되는 순서로 순위를 매김.
 자료: OECD Family Database.

그림 3-3은 자녀수별 모의 고용률을 보여준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의 노동

시장 참여는 자녀가 1명 혹은 2명일 때보다 대부분의 국가(체코, 독일, 헝가리, 일본, 슬로바키아공화국과 영국)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3] 16세 이하 자녀수별 모의 고용률(LMF2.3)



주. 1) 호주,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임.
 2) 국가들은 3-5세의 가장 어린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이 감소되는 순서로 순위를 매김.
 자료: OECD Family Database.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comparability and data issue)

본 지표에서 여성고용률과 모의 고용률은 전일제(full-time)인지 시간제(part-time)인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용이 과대산정 되었다.

아주 어린 연령의 자녀를 둔 유자녀여성의 고용률은 비교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자녀 연령이 30개월에서 36개월일 때 일을 그만뒀다가(유급휴가 또는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출산휴가(maternity leave) 중에 있는 모든 여성은 취업 상태인 것으로 산정된다. EU 가이드라인에서는 부모가 3개월 이하의 육아휴직(parental leave)을 받거나 이전 소득의 일정 금액(최소 50%)을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취업상태인 것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육아휴직에 대한 국가별 대우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휴직기간(최대 2년 까지)동안 무급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parental leave) 중인 부모들은 취업중인 것으로 계산하는 반면, 핀란드에서는 보육휴가(home-care leave:

자녀 연령이 1-3세일 때 받는 휴가) 중인 많은 부모들은 대부분 고용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형적으로 아주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 낮다. 이것은 육아휴직(parental leave) 기간 정도와 여성의 연령별 노동참여의 차이와 관련될 수 있다.

유자녀여성의 고용률 데이터는 OECD에 의해 수집된 것이 아니며, 데이터의 출처 및 연도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비교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각국 통계의 자료원은 다음과 같다

- 호주 통계청(Bureau of Statistics, 2005)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01)
- 덴마크 통계청(Statistics Denmark, 1999)
- 핀란드 통계청(Statistics Finland, 2002)
- 아이슬란드 통계청(Statistics Iceland, 2002): 25-54세 여성 대상임.
- 일본 인구조사(Japanese National Census, 2005)
- 스위스 노동력 조사(Swiss LFS, 2006)
- 영국 통계청(UK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2005)
- 미국 인구조사(US Current Population Survey, 2005)
- 유럽노동력 조사(European Labour Force Survey, 2005, 이탈리아는 2003).

2) 생애주기별 고용 프로파일(20-64세)(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aged 20 to 64, LMF 4)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고용률은 근로가능인구(통상적으로 15-64세이나 본 지표에서는 목적상 15-1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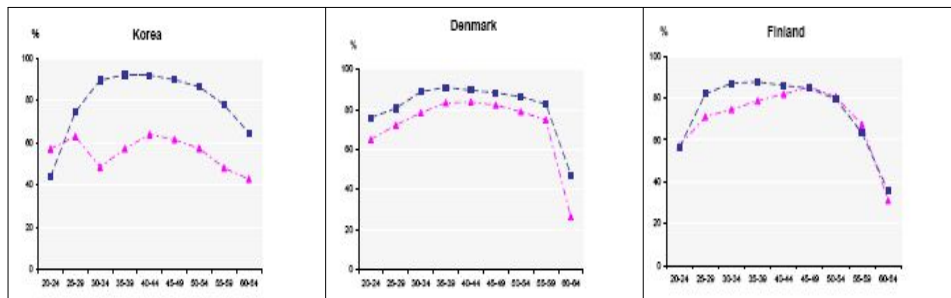
는 제외함)중에서 유급고용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나. 주요 결과(Key findings)

그림 3-4에서는 연령별, 성별, 연령집단별(5세단위) 고용프로파일을 보여준다. 1946-1950년대 출생한 여성들의 고용프로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합성 코호트(synthetic cohort)¹³⁾ 데이터가 이용되었다(여성의 전생애주기를 볼 수 있는 종단데이터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 합성 코호트는 1970년에 20-24세 여성, 1975년에 25-29세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계열로 이용이 가능하다(국가별).

“M” 커브 현상은 고용률이 증가하다가 가족 형성의 초창기부터 감소하는 현상을 뜻한다. 즉, 25-35세 여성의 고용률이 25세 이전 연령의 여성과 35세 이상 연령의 여성에 비해 낮은 것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데 특히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스페인, 터키에서 “M”자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성별, 고용연령별 프로파일(2005)의 예시(LMF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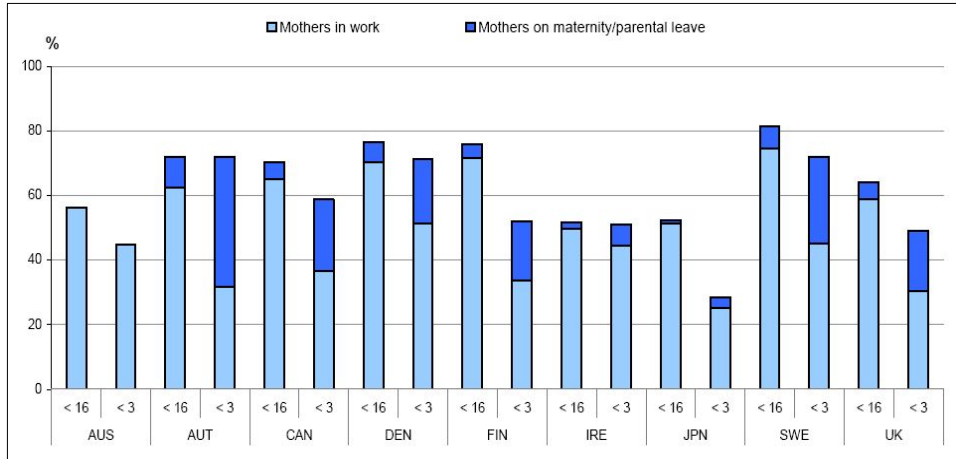
자료: OECD database on Labour Force Statistics.

모든 OECD국가에서 여성의 출산휴가(maternity leave)는 취업 상태로계산된다. 그러나 출산휴가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 출산휴가를 떠

13) 합성코호트(synthetic cohort)는 하나의 대표적인 가구를 상이한 시점에서 관측한 것처럼 취급하는 연구 방법(박대근·이창용, 1997, “한국의 저축률 추이에 관한 연구”,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으로, 횡단면 자료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는 것임.

난 부모들은 최대 2년까지 법적으로 취업상태로 계산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핀란드에서는 보육휴가(home-care leave: 1~3세 아동)를 떠난 부모들은 고용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3-5]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모의 고용률과 출산휴가율(LMF4.2)



주. 각 국가의 참조년도: 호주(2000), 오스트리아, 캐나다와 일본(2001), 덴마크(1999), 핀란드와 아일랜드(2002); 스웨덴과 영국(2003).

자료: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OECD의 노동통계는 시계열로 잘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이므로 본 지표에서 특별히 비교가능성에 대해 논할만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고용률은 개인 1인별로 산정되었으며, 노동 강도(예, 주당근로시간, LMF7의 주당 40시간과 50간 근로자 비율과 같은 지표)는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본 지표에서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에 대한 것이며 노동시장 참가인구(participating in the labour force)에 대한 것이 아니다.

기혼여성의 고용과 출산부모 휴가 비율은 현재 OECD 회원국 일부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지표에 대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포함될 것이다.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각 통계에 대한 자료원은 다음과 같다.

-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 OECD, 노동통계 연간 백서 1985-2005.
- OECD.Stat(OECD의 raw 데이터와 개별적인 통계들을 모두 포함).
- OECD on-line Labour Force Statistics database.

3) 가족, 아동과 고용상태로 본 한국의 현황

부모의 고용상태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을 포함하는 가구의 상황에서 중요하다. 특히 가구 내 고용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가구 내 소득자가 1인인지 2인인지를 기준으로 가족과 아동을 살펴보는 것은 가족이 처한 가구의 상황을 살펴보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의 고용상태와 가족과 아동의 상황에 대한 지표들이 개발되었다.

장기적인 저성장 가능성이 전 세계의 화두가 되면서 1인 소득자 가구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가족 차원의 대응으로 가구 내 주 소득자 외에 추가적인 소득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국가는 2인 소득자 가구를 장려하면서 맞벌이 가구의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 부모의 근로여부는 가구의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여성 한부모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예를 들어, 어린 자녀에 대한 육아문제)로 인해 실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고용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직 미흡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고용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표가 주로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상태와 추이를 조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현재 모의 고용률(LMF2)에 관한 통계는 없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재

분석을 통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60.0%로 OECD 평균(61.5%)에 근접하고 있으며, 유배우자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이보다 낮은 50.4%로 나타났다⁴⁾(통계청, 2008). 또한 여성 한부모가구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5년 1,370가구로 나타났으나, 이들 여성 한부모의 고용상태에 대한 통계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가족 양립정책이 활발히 전개된 국가(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에서 여성 고용률과 모의 고용률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일가족양립정책이 소극적인 국가들(일본,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는 여성 고용률과 모의 고용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한국의 여성 고용률과 모의 고용률의 차이는 스웨덴 등 북유럽의 그것보다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 이유의 이유는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자녀가 어릴 때 급격히 낮아졌다가 자녀가 고등학생 이상이 되는 44세 이후 정도에 다시 급격히 높아지는 M자 곡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현재 한국의 유배우 여성의 고용률 통계는 자녀의 연령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만약 자녀의 연령을 국제 통계의 기준인 16세 이하로 제한한다면 한국의 모의 고용률은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2. 성별 연령별 고용률의 코호트 비교(Cross-cohort comparisons of employment rates by 5-year age groups by gender)(중분류 2)

1) 성별 임금 격차와 학력별 소득 격차(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LMF 5)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는 남성 전일제 급여의 중위수(median) 대비 여성의 전일제 임금의 격차로 정의한다. 이것은 또한 낮은 임금 혹은 높은 임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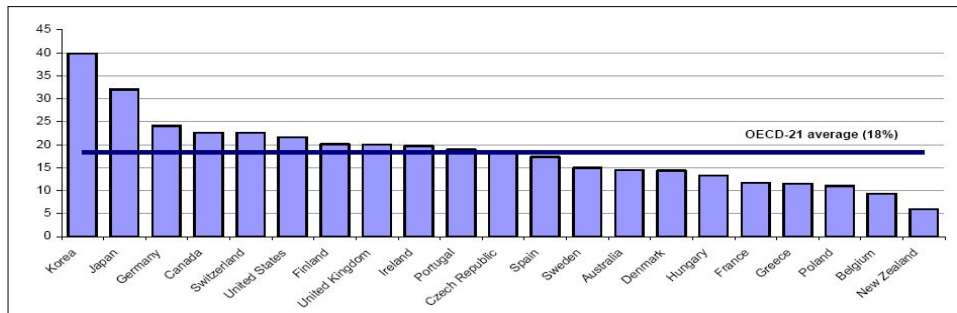
14) 그러나 이 수치는 LMF 2에서 제공하는 지표(1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의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본 통계는 자녀의 연령(16세 이하)과 여성의 연령(25-44세)에 대한 제한이 없음.

서도 각각 측정된다(예, 20번째 백분위수와 80번째 백분위수).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통계는 OECD 임금데이터베이스(Earnings database)에서 가져왔다.

나. 요구 통계(Key findings)

그림 3-6은 몇몇 OECD 국가에서 전일제 중위소득을 버는 근로자의 성별 격차를 보여주고, 그림 3-7은 낮은 소득(20th percentile)과 높은 소득(80th percentile)의 각 지점에서 소득분배의 성별 격차를 보여준다. 그림 3-6에서 보듯이 한국은 중위소득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반면 뉴질랜드와 벨기에에는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국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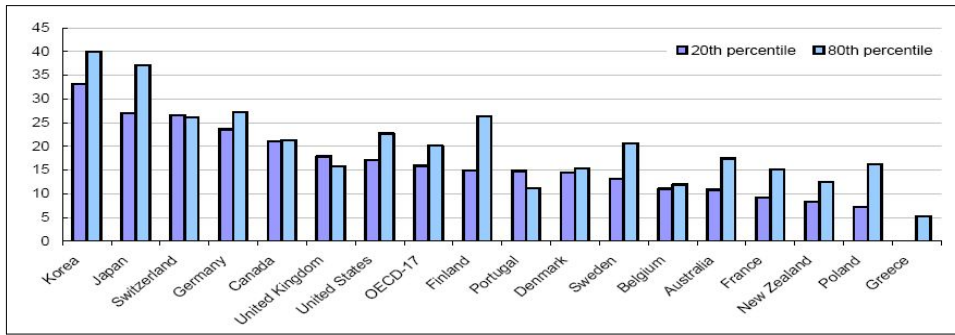
[그림 3-6] 중위소득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2004 혹은 최근년도(LMF5.1)



자료: OECD Earnings database.

또한 상하위 소득지점에서 성별 임금 격차를 살펴본 결과 역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며, 소득 분위 20%의 성별 임금격차보다 소득 분위 80%의 성별 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반면에 그리스에서는 소득 분위 80%에서의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또한 스위스, 영국, 포르투갈에서는 소득분위 20%의 성별 임금격차가 소득분위 80%의 성별 임금격차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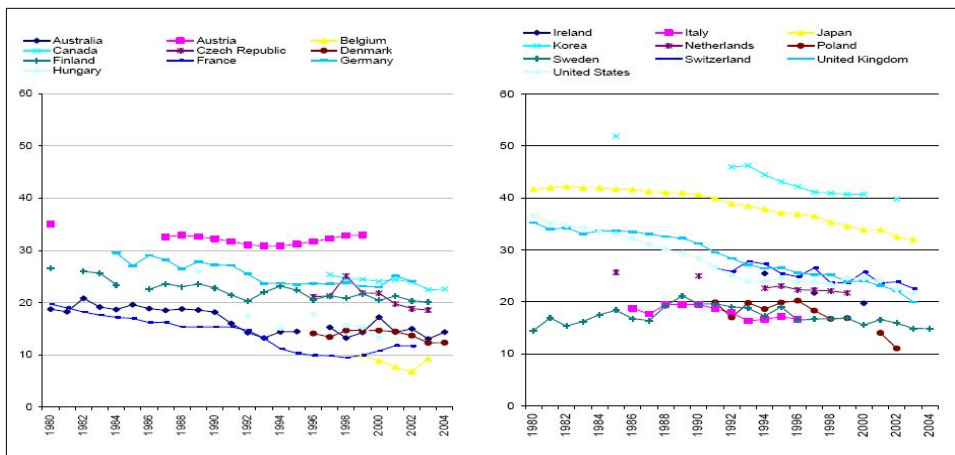
[그림 3-7] 상하위 소득분위별 성별 임금 격차, 2004(LMF5.2)



자료: OECD Earnings database.

1980년대부터 2004년까지의 성별 격차의 추이에 관한 통계는 몇몇 국가에서만 유용하다. 그림 3-8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별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에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 3-8] 중위소득자의 성별 임금 격차 동향, 1980-2004(LMF5.3)



자료: OECD Earnings database.

교육수준이 높은(예를 들어 대학졸업)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격차는 일반적으로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격차보다 낮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격차는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였다. 여성의 소득은 30-44세와 55-64세의 두 개의 연령

집단별로 교육 수준별 남성 소득 대비 비율로 제시된다. 100%를 넘는다는 것은 여성의 소득이 동일한 수준에 있는 남성 대졸자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OECD 임금데이터베이스는 매년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와 가구조사(household survey)를 통해서 전일제 임금근로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왔다. 국가에 따라서 임금데이터는 시간당/주당 기준 혹은 총소득/순소득 기준에 대한 연간 평균 임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임금차이와 같은 절대적인 것 보다는 성별 임금격차와 같은 상대적 측정을 통해 제공된다. 성별격차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¹⁵⁾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다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자료는 국가별 조사 방법이 규칙적으로 바뀌므로 이용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수치는 또한 전일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성별 소득의 격차는 저소득 수준에서 더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 불평등을 줄이려는 의도보다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남성과 비교해서 여성 대다수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직업에 고용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종종 민간부문보다 더 소득이 낮은 공공부문에서 더 많이 근무한다(LMF 6 ‘고용성과의 성별 격차’ 참조).

교육수준별 상대적인 소득에 관한 자료(표 3-2)는 OECD 교육 부문에 의해 수행되는 연간 소득 조사에서 수합된 것으로 모든 OECD 회원국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정기적인 OECD 소득 데이터베이스처럼, 교육수준별 소득 데이터가 국가별로 수집되는 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비록 각국의 통계에 대한 참조시기가 표시된다고 해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호주, 뉴질랜드와 영국의 통계는 월 소득인데 반해 벨기에, 프랑스, 독일, 헝가리와 스위스는 주(weekly) 소득을 보고한다. 월

15)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2차 소득자(대부분 여성)에게는 주 소득자와는 다른 세율 기준점(tax threshold)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소득이나 주 소득과 같은 부분 소득을 연간 소득 자료처럼 취급함으로써 비교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이용률이 임시직이나 계절직업에서 높다면, 이는 더 큰 성별 차이를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득세 이전의 소득 자료를 제공하는데, 벨기에와 한국은 소득세 이후의 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표 3-2〉 학력별 연령집단별 남성 대비 여성들의 평균 연간 소득, 2004(LMF 5.1)

		고졸미만		고졸		대졸		학력 전체	
		30-44	55-64	30-44	55-64	30-44	55-64	30-44	55-64
호주	2001	59	61	59	60	64	61	62	60
벨기에	2003	67	63	72	69	77	72	75	66
캐나다	2003	53	52	58	57	63	61	63	58
체코	2004	68	76	75	90	62	74	69	82
덴마크	2003	72	70	70	71	65	63	71	68
핀란드	2003	71	78	68	78	66	72	71	73
프랑스	2004	69	65	74	70	68	67	74	64
독일	2004	49	56	59	49	61	62	57	53
헝가리	2004	87	90	90	104	67	79	87	86
아일랜드	2002	49	41	58	52	61	65	63	53
이탈리아	2002	69	72	65	59	71	41	73	58
한국	2003	49	45	44	52	76	62	51	37
룩셈부르크	2002	79	83	92	71	78	131	84	56
네덜란드	2002	51	47	60	47	M	M	62	50
뉴질랜드	2004	68	59	61	62	61	63	62	60
노르웨이	2003	62	64	63	65	65	64	66	63
스페인	2004	64	57	68	67	76	74	75	65
스웨덴	2003	73	76	72	72	66	68	72	74
스위스	2004	56	47	49	55	60	56	51	49
영국	2004	51	49	52	56	64	60	57	54
미국	2004	62	58	62	61	60	57	63	57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6.

2) 고용성과의 성별 격차(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LMF 6)

이 지표는 시간제 고용과 임시 고용의 이용률이라는 측면에서 고용 성과의 요소와 성별 차이를 결합하고 교육수준이 고용 성과의 성별 차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한다.

① 시간제고용(Part-time emplo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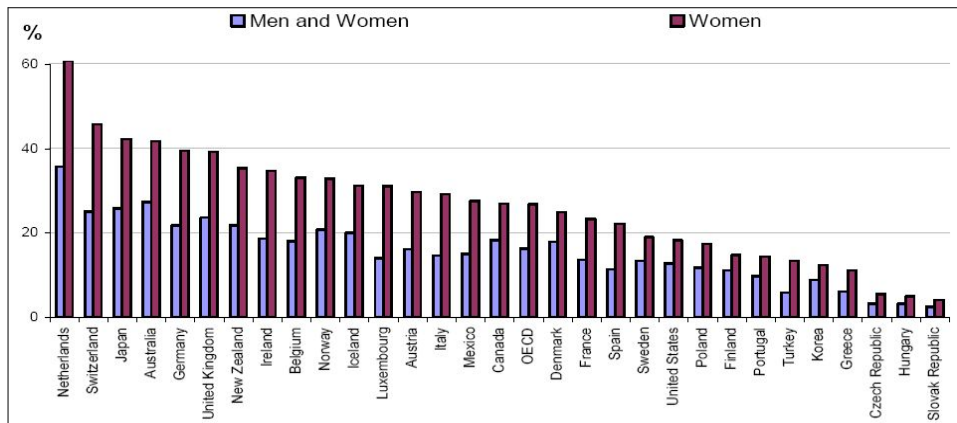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시간제 고용 비율은 OECD데이터베이스의 정상적 주당근무시간(LMF7)에서 가져온 것이다(LMF 7 성별 주당 정상 근무시간 참조). OECD국가에서 시간제 고용은 주당 30시간 또는 그 이하의 근로로 정의한다.

나. 요구 통계(Key findings)

그림 3-9는 남성과 여성이 결합된 시간제 고용 비율과 여성만의 시간제 고용 비율의 차이를 보여준다. 모든 국가에서 시간제 고용에서 여성의 비율은 전체 고용의 시간제 고용 비율보다 더 높다.

[그림 3-9] 시간제 고용 비율, 2005(LMF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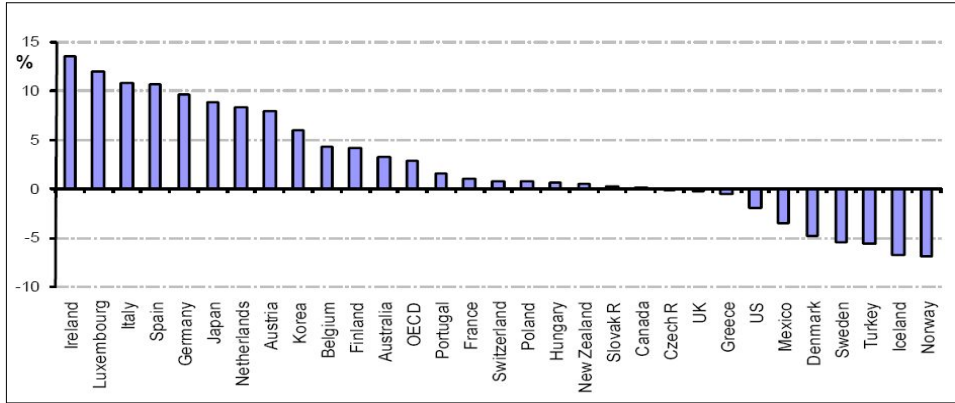


자료: OECD Database on Usual Weekly Working Hours

그림 3-10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여성의 시간제 고용 비율이 차이의 동향을 보여주는데 유용하다. 총 시간제 고용 비율 대비 여성의 시간제 고용 비율은 OECD 회원국 2/3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노르딕 국가(핀란드는 제외)와 터키에서 감소했다. 많은 OECD 국가에서 여성(몇몇 남성은)은 시간제 고용을 하면서 일과

가정내 돌봄 노동을 양립해야 한다(LMF 8 자녀유무와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커플 가구 성인의 근로시간참조); 반면에 포괄적인 이동보육 시스템이 있는 노르딕 국가들은 전일제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그림 3-10] 여성의 시간제 고용율의 변화, 1990-2005(LMF6.2)



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멕시코와 스위스는 1995년을 참조함. 폴란드는 1998년을 참조함.
 자료: OECD database on Usual Weekly Working Hours.

다. 데이터와 비교의 이슈들(Data and comparability issues)

데이터는 국가 노동력 조사(NLFS)와 유럽 연합 노동력 조사(ELFS)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ELFS는 주요 직종으로 분리되는 직업에 대한 주당 노동시간 자료만 포함한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은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모든 직종에서의 노동 시간을 보고하고 있다. 주요 직종으로 분리되는 직업에 대한 노동 시간만을 보고한 국가들의 자료는 일반적으로 전체 분포상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등 세 국가는 평상 근무시간(usual hours worked)이 아닌 실제 근무시간(actual hours worked)을 보고하였고, 이는 시간 단위의 기준이 다른 국가와 달라짐으로써 국가 간 비교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결과로 일본의 시간제 고용 데이터는 주당 35시간 보다 적게 일한 것을 의미한다.

② 임시고용(Temporary employment)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임시고용은 일정 기간을 정한 계약에 근거를 둔 근로를 의미한다. 반대로 상용근로(permanent work)는 종료시점이 없다. 임시고용계약에 의한 고용은 종종 근로자로서의 법적 의무와 이익에 있어서 상용 근로자와 다르다. 확실히 고용 보호에 대한 규제는 임시고용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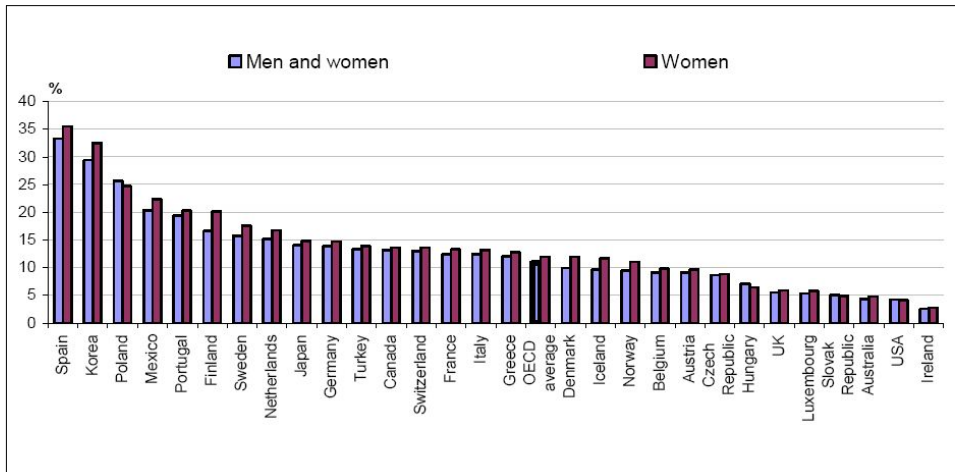
임시고용근로자는 종종 계절직(seasonal component) 서비스업과 관련된다(예를 들어, 레저산업, 호텔, 관광업). 임시고용근로자는 1년 중 각기 다른 기간에 고용되기 때문에 농업(비록 전체경제의 작은 영역이기는 하지만)과는 차이가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Temping Agency(임시고용알선업체)를 통해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된다. 기간이 정해진(Fixed-term) 고용계약은 보통 일정기간의 수습(실습), 훈련생과 같은 임시채용 기간을 가진다.

나. 요구 통계(Key fi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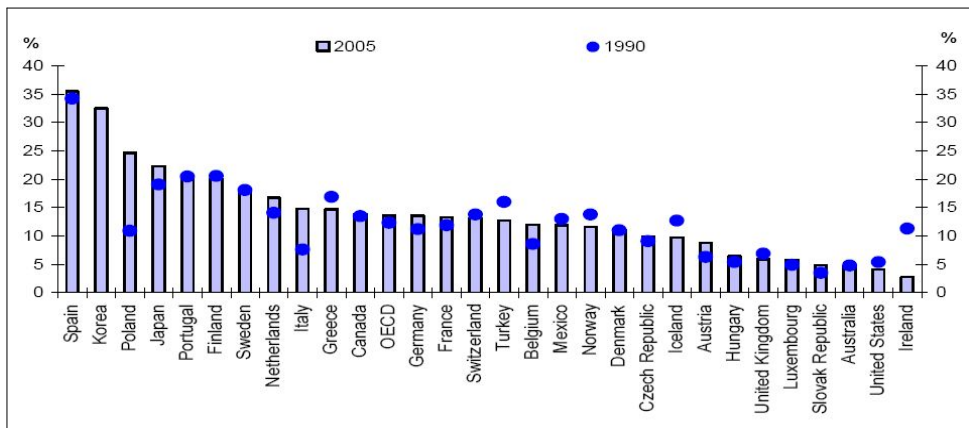
그림 3-11은 임시 고용 비중이 국가별로 상당히 다양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집중된 것을 보여준다. 임시직 비율에 대한 통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1990년대 이후로 유용하다(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여성의 임시고용 비율은 혼합적이다. 폴란드와 이탈리아에서 여성의 임시직 고용 비율은 1990년대 이후 2배가 되었다(이러한 증가는 성별 차이없이 나타나고 높은 실업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며, OECD 회원국의 절반에서 임시직 여성의 비율은 다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12 참조).

[그림 3-11] 임시고용 비율, 2005(LMF6.3)



주: 1) 임시직에 대한 통계는 호주, 한국과 멕시코는 2004년, 아이슬란드는 2002년을 참조함.
 자료: OECD database on Temporary Employment; 한국의 자료는 Grubb, D., J-K. Lee and P.Tergeist(2007), "Addressing Labour Market Duality in Korea".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출현에 관한 통계임.

[그림 3-12] 임시직 여성 비율의 동향, 1990-2005(LMF6.4)



주: 임시고용에 대한 자료는 호주, 한국과 멕시코는 2004년, 아이슬란드는 2002년 자료임.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보고된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독일, 헝가리, 한국, 룩셈부르크, 뉴질랜드와 스위스이고, 1998년까지 보고된 국가는 호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과 터키임.
 자료: OECD database on Temporary Employment, 한국의 자료는 Grubb, D., J-K. Lee and P.Tergeist(2007), "Addressing Labour Market Duality in Korea".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출현에 관한 통계임.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임시고용 데이터는 OECD의 노동력조사질문지와 OECD데이터베이스의 임시고용

에서 수집한 것이다. 각국은 월별 또는 분기별 노동력조사의 질문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몇몇 유럽 국가들은 ELFS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한다.

임시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일정 기간계약(fixed-term)을 포함하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12개월의 시간제한을 두고 분류한다(호주, 일본,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스위스). 이 때문에 계약기간 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임시고용은 일정기간(fixed-term)계약으로 정의하는 국가들의 임시 고용율에 비해 낮다.

국가별 비교에서 각 국가의 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에 대한 엄격성의 차이는 임시고용의 출현(prevalence)정도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상용근로자 계약에서 해고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면 고용주들이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꺼린다. 한국의 높은 임시고용 비율이 이와 관련 있다.

③ 학력별 여성고용률

(Women's employment rates by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이 지표는 학력별 정규 교육과정의 수료에 따른 고용률(성별에 따른)을 나타낸다. 고용률 데이터는 OECD와 EUROSTAT 데이터베이스의 각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를 통해 제공받았다. 학력수준에 대한 프로파일은 10세 단위의 코호트 비율에 근거하여 산정되었으며, 이는 학력별로 세분화되었다. 교육수준에 대한 정의는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ISCED)의 정의에 따른다(OECD Education at a Glance의 표 3의 각주 참조). 고용률은 ILO의 고용률에 대한 정의에 근거하였다.

나. 요구통계(key findings)

표 3-3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노동시장 진입의 필수적인 자격요건인 대학교육이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받지 않고 교육 체계를 떠난 사람들)의 고용율을 보여준다. 모든 학력수준의 고용률과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고용률과 비교

한다.

〈표 3-3〉 학력별 여성의 고용율과 성별 고용률 격차, 2004(LMF6.1)

	학력 전체		고졸 미만		대졸	
	고용률	성별 격차	고용률	성별 격차	고용률	성별 격차
호주	64	20	51	23	79	11
오스트리아	63	15	45	19	79	10
벨기에	59	17	45	28	81	8
캐나다	71	11	52	20	80	6
체코	63	19	39	14	79	13
덴마크	74	9	55	17	85	2
핀란드	71	5	59	11	83	6
프랑스	64	13	59	17	77	7
독일	62	13	43	18	79	8
그리스	51	32	43	43	76	13
아일랜드	60	23	46	38	83	9
이탈리아	49	28	44	35	77	11
일본	60	29	53	26	67	26
한국	56	30	59	24	57	32
룩셈부르크	57	26	43	28	75	16
멕시코	46	46	47	47	73	18
네덜란드	66	17	51	28	83	6
뉴질랜드	71	17	55	22	80	11
노르웨이	77	7	55	16	88	3
포르투갈	68	14	74	12	87	1
스웨덴	78	4	66	13	87	1
스위스	86	8	59	20	82	13
영국	73	10	47	13	86	4
미국	69	12	47	21	78	11
OECD 평균	63	19	49	23	79	10

주: a) 동일한 연령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용률 격차.

b) 대학/3차 교육과 추가 연구 프로그램만 포함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6.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비록 학력수준에 대한 국제 지침(ISCED)이 포괄적이기는 하나, 한 국가의 정규 교육프로그램의 분류가 다른 국가에는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일본, 스웨덴의 대학졸업자격 획득은 몇몇 국가에서는 직업자격증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학력별 고용률에서 여성의 높은 시간제 고용 비율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이 과다하게 조사되었다. 또한 고용률은 현재 노동 인구(labour force)에 대한 근로인구의 비율이 아닌 전체인구에 대한 근로인구의 비율을 나타낼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고용상태와 관련된 자료원은 다음과 같다.

- Employment Outlook(2006).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1985-2005의 연간보고서.
- OECD Stat
- OECD on-line Labour Force Statistics database.

학력별 고용율에 대한 통계의 자료원은 다음과 같다.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6.(ISCED에 대한 각국 프로그램 구성의 상세한 부분은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6의 부록 3을 참조)

3) 성별 연령별 고용률의 코호트 비교로 본 한국의 현황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현재 통계가 제공되는 모든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즉 중위소득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에서 한국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40%로 단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소득분배상의 상하위 소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소득분위의 20% 소득지점과 80% 소득지점 모두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력별 연령집단별 성별 임금 격차를 비교하면 한국에서 여성 고용의 불안정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한국은 고졸 미만, 고졸, 학력 전체에서 30-44세의 남성 대비 여성의 평균 연간 소득의 차이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졸인 30-44세 연령의 임금 격차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 그러나 이 때조차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의 76%에 불과하다.

한국은 IMF의 권고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루었으나 결과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라는 특이한 현상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탄력적 근로시간, 탄력적 근무형태를 띠는 데 반해 한국의 노동시장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사상 지위의 이중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경향이 본 지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먼저 탄력적인 근무시간의 유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은 네덜란드와 스위스, 일본 등에 비해 시간제 고용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비율과 여성에 대한 비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전체의 시간제 고용 비율에 비해서 여성의 시간제 고용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시간제 고용이 대부분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성별 격차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 역시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그림 3-9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시간제 고용의 여성 집중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보육정책과 연관이여 추정할 수 있다. 즉 어린 연령까지 전일제 보육을 제공하는 국가들(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는 여성의 시간제 고용률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반일제 중심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국가들(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여성의 시간제 고용 비율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0 참조). 따라서 어린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한국에서 전일제 고용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기 보다는 시간제 고용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임시직 고용 비율의 성별 차이 역시 시간제 고용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출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다른 국가에서는 기간이 명시된 계약을 모두 임시직으로 포함하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12개월 미만의 일정 기간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비정규직을 포함하므로 다소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적인 통계치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임시직 역시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여성의 고용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불안하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학력별 여성의 고용률과 성별 고용률 격차에서 특이한 것은 한국의

고졸 미만 여성의 고용률이 OECD 평균에 비해 10%나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에 대졸 여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무려 22%나 낮는데 이 수치는 성별 격차와 동일한 수치다. 즉 대졸 여성의 고용률을 22% 증가시킨다면 성별 격차는 OECD 평균 수준이 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3. 근무시간과 돌봄노동에 소요하는 시간(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중분류 3)

1) 성별 통상적 주당 근무시간(Usual working hours per week by gender aged 15~64, LMF 7)

가. 정의 및 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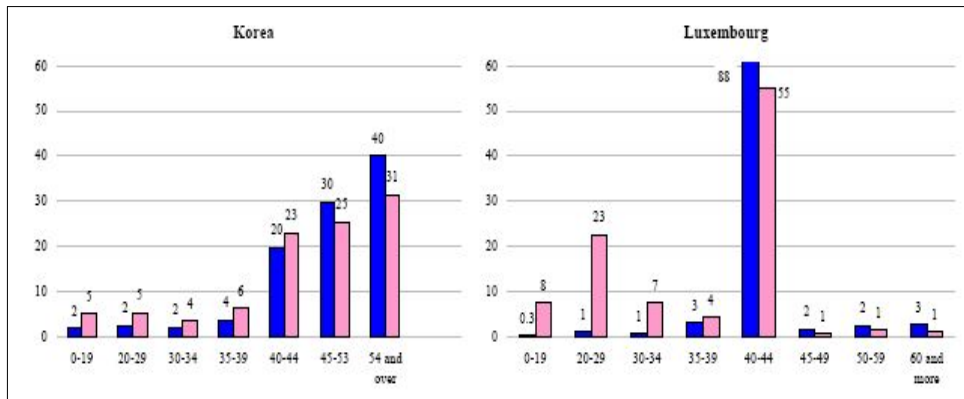
통상적 주당 근무 시간은 가장 일반적인 주당 노동 일정을 바탕으로 정의된다(고용상태인 사람이 7일 동안 근무함). 이 정의는 규정된 노동 일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노동 계약을 맺지 않은 자영업자와 같은 업종의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통상적 근무 시간은 평균적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법이나 규정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집합적인 동의나 중재적 판단으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평균적 노동 시간과 다르다. 통상적 시간의 정의는 매일 혹은 매주 노동환경의 구조적인 이유로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규칙을 바탕으로 규정되지 않는 시간 외 노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불규칙적 혹은 통상적 시간 외 노동은 시간 외 노동에 대해 특별 수당을 주거나 규정된 임금을 주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모두 통상적 주당 노동 시간의 개념 정의에서 배제된다. 같은 이유로 모성 휴가와 같은 이유로 비정기적인 시간 동안에 대한 노동 시간의 감소도 포함되지 않는다.

나. 요구 통계(Key findings)

주요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주당 근무 시간에 대한 데이터는 일반

적으로 OECD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매년 OECD 노동력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수집된다. 가장 최근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2005년 자료이다. 주당 근무 시간에 대한 표준적인 시간 범주(standard hour bands)는 각국에서 보고된다. 그러나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통상적 노동 시간 대신 실제 노동 시간이 보고되었다. 본 통계는 1-19 시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60시간 혹은 그 이상의 단위에 기반을 두며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된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시간 단위는 전체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된다. 그림 3-13은 개별국가의 근로 가능 인구에 대한 통상적 주당 근무 시간의 성별 분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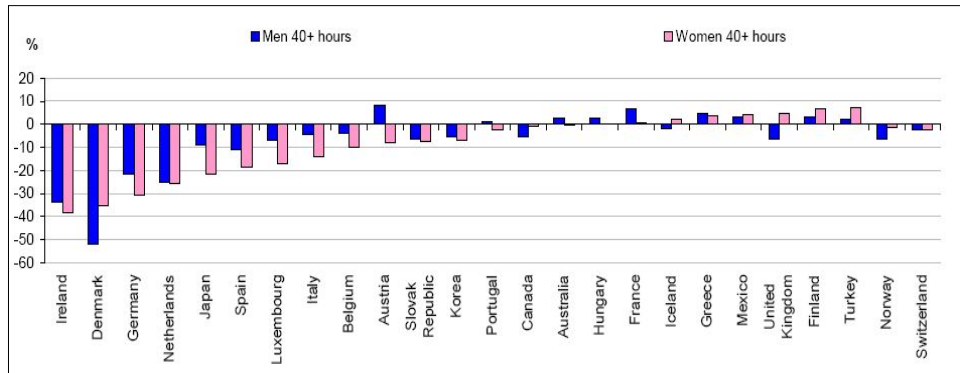
[그림 3-13] 성별 주당 통상 근무시간의 예, 2005(LMF7.1)



주: 각국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은 아이슬란드, 일본과 한국에서 표준과 차이가 있음.
 자료: OECD Database on Usual Weekly Hours of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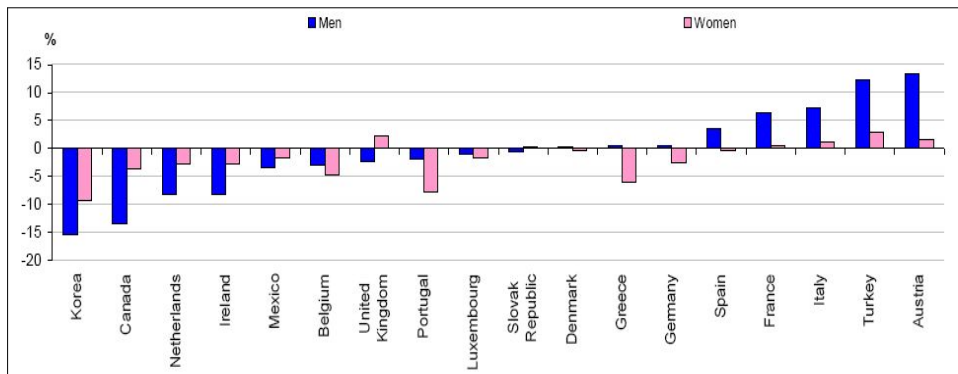
통상적 주당 근무 시간의 추이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통계도 OECD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주당 근무 시간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3-14와 3-15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근무시간대별 인구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즉 1985년부터 2005년 20년 동안에 걸친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주당 50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다.

[그림 3-14] 주당 40시간이상 근로자 비율의 변화, 1985-2005(LMF7.2a)



주: 혹은 가장 최근의 자료가 이용됨(스페인, 핀란드, 노르웨이와 포르투갈은 1990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이슬랜드, 한국, 멕시코, 슬로바키아 공화국, 스위스와 터키는 1995년).
 자료: OECD Database on Usual Weekly Hours of Work.

[그림 3-15] 주당 50시간이상 근로자 비율의 변화, 1985-2005(LMF7.2b)



주: 혹은 가장 최근의 자료가 이용됨(스페인, 핀란드, 노르웨이와 포르투갈은 1990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이슬랜드, 한국, 멕시코, 슬로바키아 공화국, 스위스와 터키는 1995년).
 자료: OECD Database on Usual Weekly Hours of Work.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화(그림 3-14와 3-15)는 현재의 주당 근무 시간(그림 3-13)과 결합해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근무시간의 현저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당 4,50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높다(1995년 55%는 2005년 40%로 감소).

부모 상태별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에 대한 통계는 아직 유의하지 않다.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데이터는 국가 노동력 조사(NLFS)와 유럽 연합 노동력 조사(ELFS)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ELFS는 주당 근무시간을 주요 직종으로 분리되는 직업에 대한 자료만 포함하였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은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모든 직종에서의 노동 시간을 보고하고 있다. 주요 직종으로 분리되는 직업에 대한 노동 시간만을 보고한 국가들의 자료는 일반적으로 전체 분포상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세 국가는 통상적 노동 시간이 아닌 실제 노동 시간을 보고하였고, 이는 시간 구분의 기준이 다른 국가와 달라지므로 국가 간 비교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라. 자료원과 추가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각 통계에 대한 자료원은 다음과 같다.

-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1985-2005의 연간보고서.
- OECD Stat.
- OECD on-line Labour Force Statistics database.

2) 근무시간과 돌봄노동에 소요하는 시간으로 본 한국의 현황

본 지표는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에 소요하는 시간의 배분을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인 동시에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인 부모들의 시간 배분을 살펴보기 위해 구성되었다. 한국은 정책적으로 일가족양립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가족 단위에서 실제로 일과 가족생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양상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근무시간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성별 통상 근무시간에서 한국은 54시간 이상의 시

간 범주에 가장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주당 40-44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 5일동안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부모들이 나머지 시간에 가족과 자녀를 돌보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데 반해 한국의 부모들은 주 5일동안 하루 1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당 40시간이상,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자의 비율이 성별에 상관없이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대분류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역시 3개의 중분류와 12개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표를 중심으로 LMF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 중 5개의 소분류에서 17개의 요구통계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대분류 LMF는 아동성과(CO)와 함께 현재의 4개 대분류 중 소분류 단계에서 공개된 지표와 하위 요구통계의 공개가 매우 미진한 편이다. 이 중 한국은 13개의 요구통계에서 이미 통계가 제시되고 있어 향후 4개의 미제출 통계에 대해서만 구축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4개의 미제출 통계에 대해서 통계조사와 실태조사, 각종 보고서와 연구논문 등을 통해 기존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적당한지 새로운 통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2절 참조).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의 요구 통계 현황은 아래의 표 3-4에서 상세히 제시되고 있다. 이는 소분류를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요구통계 각각에 대해서는 표와 그림에 상관없이 통계의 제시 순서대로 서열화하였다. 다음으로 국제통계는 OECD Family database에서 통계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며, 한국 통계는 각 통계에서 한국의 통계치가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표 3-4〉 대분류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의 요구통계 현황

소분류	요구 통계		한국통계
LMF2 모성 고용율	2-1	여성고용율 대비 모성 고용율	×
	2-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모성 고용율	×
	2-3	16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모성 고용율	×
LMF4 생애주기별 고용 프로파일	4-1	성별 연령별 고용 프로파일(2005)	○
	4-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른 모의 고용율과 출산 휴가율	×
LMF5 성별 임금 격차와 학력별 소득차이	5-1	전일제 중위소득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2004)	○
	5-2	전일제 근로자의 소득분배상 상하위층의 소득에서의 성별 격차(2004)	○
	5-3	전일제 중위소득 피고요인의 성별 임금 격차 동향 비율 (1980-2004)	○
	5-4	교육 수준별 연령집단별 남성 대비 여성들의 평균 연간 소득 (2004)	○
LMF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	6-1	시간제 고용 비율(2005)	○
	6-2	여성의 시간제 고용율의 변화(1990-2005)	○
	6-3	임시고용 비율(2005)	○
	6-4	임시직 여성 비율 동향(1990-2005)	○
	6-5	학력별 여성의 고용율과 성별 고용율 격차(2004)	○
LMF7 성별 주당 평상 근무시간	7-1	성별 주당 통상 근로시간(2005)	○
	7-2a	주당 40시간이상 근무자 비율의 변화(1985-2005)	○
	7-2b	주당 50시간이상 근무자 비율의 변화(1985-2005)	○

주: ○ 통계가 제시되어 있음. △ 국내 통계가 있으나 제출되지 않음. × 상응하는 통계 없음.

제 2절 한국의 통계생산방안

1. 여성고용률 대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compared to female employment rate)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산식)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취업자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거나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여성 고용률은 15-64세 여성 인구 중 여성 취업자의 비율이고, 모의 고용률은 15-64세인 자녀가 한 명이상 있는 어머니의 인구에 대한 취업모의 비율이다. 그러나 본 지표에서는 재생산이 가능한 연령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25-44세 여성인구와 취업자,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어머니와 취업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에서 모의 고용률은 주로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만 12세 미만)에 대해서 조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 조사(2004년)에서 모의 취업여부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만 12세 미만)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가족실태조사(2005년) 역시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4년 25-44세 연령의 여성고용률은 57.8%이며, 유배우자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50.4%(2004)이다. 그러나 유배우자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본 요구통계인 모의 고용률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의 고용률은 자녀가 한 명이상의 어머니의 고용률을 뜻하며, 배우자가 없는 사별, 이혼, 미혼모 등을 모두 포함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배우자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을 모의 고용률로 사용할 경우 과소추정하는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유배우자인 기혼 여성의 고용률에서는 여성의 연령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모의 고용률에 대한 통계 생산이 모색되어야 한다.

〈표 3-5〉 한국의 여성고용률(25-44세)

	2000	2002	2004	2006	2008
여성고용률 (25-44세)	55.1	56.7	57.8	59.6	6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3) 자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작성주기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작성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통계청은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자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법적 근거에 따른 지정통계로,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사람들을 모집단으로 약 32,000가구를 표본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단위의 국가통계리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OECD에서 요구하는 모의 고용률의 생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표 3-6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나 단순히 남녀 성별 구분만 있고 세대주와의 관계 여부가 파악되지 않아 자녀가 있는 어머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자녀가 있는 42세 기혼여성과 그의 친동생인 35세 미혼여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현 조사표에서는 가구원과 취업자 수에 2사람 모두 포함되므로 자녀의 어머니 여부는 알 수 없다. 또한 경제활동제외자에 대해서 15세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이 연령은 OECD의 작성기준인 16세와 다르고, 제외자가 자녀인지 직계존비속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 3-6〉 경제활동인구조사표의 가구원 현황

구분		남	여	계
총가구원				
제외자	15세 미만			
	15세 이상			
대상가구원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제외자 중 가구주유무		1. 있음	2. 없음	
가구구분		1. 농 가	2. 비 농 가	

자료: 통계청, 2007 경제활동인구연보, 2008.

이와 유사하게 가족실태조사는 2000년 인구센서스를 모집단으로 16개 시도별 가구수로 표본 추출하여 표본 크기가 2,925가구(가구원 5,973명)인 전국 규모의 가족조사다. 이 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법적 기반을 둔 정부승인통계로 포괄적인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즉 가족실태조사표는 가구주와의 관계와 혼인상태여부, 취업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Family database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훨씬 더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가족실태조사자료에서는 모의 고용률에 대한 항목이 없으므로 기존의 자료를 활용한 재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1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성의 고용률은 파악되지 않는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세대주여부와 유배우여부에 대한 항목만 있어 자녀의 연령과 자녀의 존재여부에 따른 모성의 고용률은 파악할 수 없다.

〈표 3-7〉 가족실태조사표의 가구원 현황

가구원	이름	문2-1) 가구주와의 관계	문2-2) 성별	문2-3) 나이	문2-4) 혼인 상태	문2-5) 동거 여부	문2-6) 비동거 사유	문2-7) 취업 여부	문2-8) 직업	문2-9) 비취업 사유
1		1(가구주)		만__세						
2				만__세						
3				만__세						
4				만__세						
5				만__세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05.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는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표본가구를 모집단으로 5000가구를 추출하고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9차년도에 3,821가구를 표본으로 한다. 노동패널은 가구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개인의 경제활동상태가 파악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족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료는 없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일가족양립지수를 개발하여 일하는 기혼여성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지수를 통한 국제비교를 시도하였으나 국내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과 자녀의 수와 연령별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등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여성고용률에 대한 자료는 현재와 같이 전국민을 모집단으로 표본추출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나 모의 고용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실태조사의 항목을 재분석해야한다. 실제 OECD 국가들 역시 이 통계치를 생산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함께 가족조사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본 요구통계의 생산을 위해서는 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건강가정기본법이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규정(제 20조)하고 있어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 OECD에서 요구하고 Family database의 가족 구조(SF)와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의 상당 통계들이 이미 가족실태조사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의 고용률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표 3-7에 나타난 가구원 현황 파악 자료를 재분석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산식)

본 통계는 자녀의 연령에 따른 모의 고용률에 관한 통계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모의 고용률과 자녀의 연령이 동시에 고려된 통계가 생산되어야 한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 조사에서 모의 취업여부는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만 12세 미만)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가 있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비율은 자녀가 미취학아동일 때 33.2%,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 4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연소 아동이 0세 일 때 어머니의 취업은 20.2%로 매우 낮은 반면 최연소 아동이 만 12세인 6학년일 때 어머니의 취업은 53.6%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취업한 어머니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용률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표 3-8〉 보육교육실태조사의 최연소 아동 기준 모의 고용률

	자녀연령	전체			최연소아동 기준			전체	수
		취업	미취업	모부재모름	취업	미취업	모부재모름		
연령구분 1	미취학	33.2	64.7	2.1	35.1	62.7	2.2	100.0	2,962
	초등학생	47.4	47.2	5.4	51.6	41.4	7.0	100.0	6,450
연령구분 2	영아	25.8	73.8	0.5	26.8	72.9	0.3	100.0	1,171
	유아	38.1	58.7	3.1	42.6	53.4	3.9	100.0	1,791
	초저	43.1	52.0	4.9	47.6	45.6	6.8	100.0	1,674
	초고	51.5	42.7	5.9	55.5	37.3	7.3	100.0	1,775
미취학아동 (연령)	0세	20.2	79.6	-	20.2	79.8	-	100.0	358
	1세	24.5	75.4	0.8	24.5	75.2	0.3	100.0	391
	2세	35.9	67.3	0.5	35.9	63.5	0.6	100.0	422
	3세	43.5	60.2	2.5	43.5	53.4	3.2	100.0	442
	4세	40.1	61.1	3.6	40.1	54.7	5.2	100.0	507
	5세	44.9	56.9	2.2	44.9	52.3	2.8	100.0	492
취학아동 (학년)	6세	43.1	56.0	4.6	43.1	52.8	4.1	100.0	348
	1학년	39.2	55.6	5.3	44.8	47.0	8.2	100.0	536
	2학년	44.3	51.3	4.5	51.2	43.1	5.8	100.0	558
	3학년	45.6	49.4	5.0	47.1	46.7	6.3	100.0	579
	4학년	49.7	43.3	6.9	57.9	34.8	7.3	100.0	575
	5학년	52.4	43.5	4.1	55.1	39.0	5.9	100.0	542
6학년	52.2	41.7	6.1	53.6	38.0	8.5	100.0	657	

자료: 여성부,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자료원

-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편-이용 및 육구 실태 조사

4) 작성주기: 5년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자녀의 수와 연령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자녀의 순위에 관한 정보가 없고,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는 여성의 노동력 자체에 대한 관심만 반영하고 있어 자녀의 수와 연령, 순위 등 가족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

위에서 살펴본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제한된다. 이러한 한계는 가족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즉, 가족실태조사 역시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실태조사를 대표통계로 선정한 이유는 실태조사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매 5년마다 실시되므로 안정적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 자녀 양육 현황,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가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육·교육실태조사 역시 보육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매 4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상황이 주요한 분석 항목이므로 다른 항목들과 연계가 어려워 효율적이지 못하다.

현행 가족실태조사 자료에서는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모의 고용률에 대한 통계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나 재분석을 통해 본 요구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먼저 만 12세 이하 자녀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표 3-9 참조, SQ-1),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부터 순서대로 3명까지 자녀의 연령을 조사한다(표 3-10 참조). 이를 표 3-7에 제시된 모의 취업 여부를 결합하면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모의 고용률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실태조사의 재분석만으로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를 생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기준이 일반적으로 16세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나 가족실태조사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을 확대하여 2010년에 있을 가족실태조사의 항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9〉 가족실태조사의 자녀존재여부에 대한 질문

다음은 ○○님 닥의 자녀양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SQ-1) ○○님 닥에는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만12세 이하)까지의 자녀가 있습니까?	
1. 있다→문9)로 갈 것	2. 없다→SQ-2)로 갈 것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05.

〈표 3-10〉 가구대표조사의 자녀 연령과 순위에 대한 질문

자녀	문10-1) 나이	문10-2) 초등학교 취학여부	문10-3) 이용기관	문10-4) 주 평균 총 이용시간	문10-5) 월 평균 총 이용비용
가장 어린 자녀	만__세	1. 취학 2. 미취학		주__시간	월__만원
두 번째로 어린 자녀	만__세	1. 취학 2. 미취학		주__시간	월__만원
세 번째로 어린 자녀	만__세	1. 취학 2. 미취학		주__시간	월__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05.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가족실태조사의 가구대상 조사에서는 가족상황, 자녀 양육, 가족내 돌봄 서비스의 욕구 등 가족이 처한 상황에 대한 통계들이 생산된다. 또한 가구원 대상 조사에서는 부모의 혼인여부와 학력, 취업 여부와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OECD Family database의 대분류 중 가족의 구조(SF)와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모의 고용률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SQ-1)

문항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질문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자녀의 연령과 자녀의 학교급별로 제공될 수 있다. 즉 자녀의 연령에 따라 만 5세 이하, 만 12세 이하, 만 15세 이하, 만 19세 미만으로 구분하거나 학교급별로 취학전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연령별로 요구하는 국제적인 통계 기준과 일반적으로 학교급별(취학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로 통계를 요구하는 한국의 통계 현황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16세 미만 자녀수에 따른 모성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number of children under 16)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산식)

본 요구통계는 16세미만 자녀의 수와 모의 고용률을 동시에 산출해야 한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 없음

3) 자료원

- 없음

4) 작성주기: 해당사항 없음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현재 자녀의 존재 여부와 모의 취업률에 대한 통계는 2004년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도 자녀의 수에 따른 모의 고용률에 대한 자

료는 찾기 힘들다. 또한 2009년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현재 수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기준이 바뀔 여지는 매우 낮다. 왜냐하면 실태조사 자체가 취학전 아동과 일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가족의 보육과 교육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대표통계로 선정하는 것은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

표 3-7에서 보듯이 가족실태조사에서는 가구원에 대한 조사항목에서 자녀의 연령과 수가 조사되며, 모의 고용률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 따라서 가족실태조사 항목을 재분석함으로써 본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통계 역시 대표통계로 가족실태조사가 용이하다. 그 이유는 앞의 통계들과의 연계성, 동일한 조사 내에서의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실태조사가 현재 가족이 처한 상황과 향후 가족이 고려해야 할 위험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가족실태조사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이상에서 살펴본 바 3개의 요구통계는 모두 가족실태조사의 재분석과 수정 및 보완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신규조사 역시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가족실태조사의 재분석을 통해서 표본가구에 대한 모의 고용률과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모의 고용률, 16세 미만 자녀수별 모의 고용률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모집단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모의 고용률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자녀가 만 12세 이하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모의 고용률에 대한 3가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향후 항목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12세 이하로 제한된 자녀의 연령을 19세미만까지 폭넓게 포함하여 자녀의 연령에 따른 모의 고용률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M자형 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가족정책과 일가족양립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는 자녀

의 연령별, 학교급별, 출생순위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보육정책, 교육정책, 일가족 양립정책 등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재 가족실태조사 가족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가족정책은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정책과 일가족양립정책, 보육정책과 교육정책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가족실태조사 역시 이러한 하위 영역들을 통해 가족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가족실태조사는 주로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과 일가족양립 현황, 육아 및 노인 돌봄 현황 등만을 포함함으로써 실제적인 가족정책의 수립에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과 일가족양립에 대한 통계들이 다른 조사에서 제공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가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계들이 서로 다른 조사에서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사를 통해서 서로 다른 항목들과의 연관관계를 통해 통계가 갖는 유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모의 고용률과 다음에 나오는 출산휴가 사용률 등 일가족양립에 대한 통계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신규조사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요구통계의 생산방안에서 서술할 것이다.

4.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른 모의 고용률과 출산휴가율(employment and maternity rates for mothers by age of youngest child)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산식)

본 통계는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과 함께 모의 고용률과 어머니가 사용한 출산휴가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출산 휴가 중인 어머니에 대해서는 취업 상태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고용률은 실제로 취업 상태인 어머니의 고용률과 출산휴가중인 어머니의 고용률이 동시에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통계자료에서 여성의 고용률은 일반적인 취업인지 출산휴가중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걸쳐 90일을 쉬고도 임금/월급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자녀의 보육과 교육 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자녀가 최연소 아동의 연령이 0세인 어머니가 취업한 비율은 20.0%로 가장 낮고, 최연소 아동의 연령이 10세인 어머니가 취업한 비율은 5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최연소 아동의 연령별 모의 취업 비율

(단위: %, 명)

자녀연령	최연소아동 기준			자녀연령	최연소아동 기준		
	취업	전체	수		취업	전체	수
0세	20.2	100.0	358	7세	44.8	100.0	536
1세	24.5	100.0	391	8세	51.2	100.0	558
2세	35.9	100.0	422	9세	47.1	100.0	579
3세	43.5	100.0	442	10세	57.9	100.0	575
4세	40.1	100.0	507	11세	55.1	100.0	542
5세	44.9	100.0	492	12세	53.6	100.0	657
6세	43.1	100.0	348				

자료: 여성부,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래 표 3-12에서 보는 것처럼 모의 연령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인원의 연령 구분이 모호하여 재분석이 요구된다. 즉 전체 25-44세인 여성 인구 중 25-44세 연령의 산전후휴가 수급자 수로 출산휴가율을 계산할 수 있다.

〈표 3-12〉 모의 연령별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인원 비중 추이

(단위: %,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100.0 (32,133)	100.0 (38,541)	100.0 (41,104)	100.0 (49,539)	100.0 (60,964)
25세 미만	4.7	4.0	3.5	3.3	3.3
25-30세 미만	56.9	55.0	51.3	48.1	46.4
30-35세 미만	34.7	36.9	40.3	42.5	43.4
35세 이상	3.7	4.1	4.9	6.0	6.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07.

3) 자료원

- 여성부,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4) 작성주기

-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는 5년
- 고용보험통계연보는 매년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본 통계는 서로 다른 조사를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다. 즉 가족실태조사에서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모의 고용률을 파악하고 고용보험통계데이터를 통해 출산휴가사용률을 파악하여 3세미만의 데이터로 포함하는 것이다. 이 때의 전체는 고용률에서는 출산휴가중인 인원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이 외에도 유사한 통계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자료원들이 있다.

먼저 출산휴가신청서를 통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수급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행정서식에 따른 신청이므로 출산 휴가를 이용하는 모에 대한 정보는 모의 연령과 종사하는 산업구분, 직장 규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는 육아휴직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출산휴가 외에 기업복지차원에서 출산휴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통계를 통해서 파악된 수급자 수가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적용률은

55%(2008)이며, 특히 여성의 고용보험 적용률은 이보다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지수 중 하나로 출산휴가를 살펴보는 데 전체 여성노동자 대비 적용비율과 실제 이용률을 파악하지만 휴가를 이용하는 모의 가족상황에 대한 정보는 다루지 않는다. 또한 가족실태조사의 가구원용 질문지는 아버지의 출산휴가 도입 필요성(문 12)과 출산 휴가기간(문 12-1), 아버지 육아휴가제도의 도입 필요성(문 13), 휴가기간(문 13-1)에 대한 항목은 있으나 이는 인식에 관한 조사일 뿐 실제 데이터에 대한 질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최근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면서 일가족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맞벌이 가족은 미흡한 일가족양립정책과 보육시설 공급 부족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는다. 여전히 M자형 고용프로파일을 보이는 한국에서 서구 선진국처럼 중형 고용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인 자료는 부족하다. 현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나 인구주택총조사는 가족의 일반적인 상황과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통계를 중심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비록 조사표가 가구단위로 수행된다고 해도 가족이 처한 상황의 일부분(예를 들면, Family database에서 가족의 구조와 공공정책 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육교육 실태조사나 가족실태조사 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의 일반적인 상황과 고용상태, 자녀 양육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역시 일부분(예,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공공정책)만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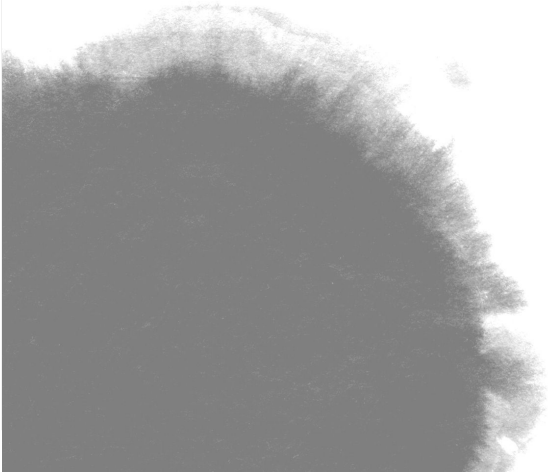
이러한 조사들을 통해서도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부부가구나 핵가족이 처한 가족상황에 대한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에는 노동시장 취업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맞벌이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제는 노동시장참여 여부와 함께 고용형태나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에 따라 고용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용의 질은 가족의 시장경제적 위치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처한 디딤으로 야기되는 서로 다른 욕구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현재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여성가족패널조사에는 가구용 설문(가구주정보, 가구원정보, 가구소득, 가구소비, 자산 및 부채 현황), 여성개인용 설문(성장과정, 직업력, 출산경험, 자녀교육, 가사노동, 부부관계 등), 일자리용 설문(현재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임금비임금 근로자별 일자리 특성, 일만족도, 사별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구주 여부,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들에 대한 정보가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항목을 수정 보완하거나 이들 조사항목을 포함하는 일가족양립패널조사를 신규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PF)



4장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PF)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PF)’은 4개의 중분류와 15개의 소분류, 31개의 요구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절에서는 각 중분류별로 현재 OECD의 작성기준과 한국의 현황에 대해서 고찰한다. 작성기준으로는 국제통계 생산을 위한 지표의 정의와 작성방법, 주요 결과, 비교가능성과 통계 이슈, 자료원으로 구성된다¹⁶⁾. 그런 다음 한국의 현황으로는 OECD Family database의 통계 현황에 비추어 한국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의 통계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2절에서는 현재 Family database에 미제출된 요구통계를 중심으로 OECD의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의 통계 생산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155

제 1절 OECD의 작성기준과 한국의 현황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PF)’은 4개의 중분류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유자녀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조세/급여 지원(General tax/benefit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로 일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출에 관한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가족급여에 대한 지출, 교육에 대한 지출, 가족현금급여, 세금/급여체계, 아동지원체계의 5개 소분류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아동관련휴가(Child-related leave)’로 최근 일가족양립정책의 주요한 변수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출산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에 관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각국의 부모휴가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고, 부모의 휴가급여 사용률과 추가적으로 근로하는 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수급권을 살펴본다. 세 번

16) 국제통계 생산을 위한 정의와 작성기준, 주요 결과, 비교가능성과 통계 이슈, 자료원에 대한 내용은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째는 ‘어린 영아에 대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이다. 이 지표는 특히 취학전 아동의 보육으로 인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의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률, 자녀보육비지원의 3개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유형과 소득수준별 보육급여 유형과 순부모비용(Typology of childcare benefits and net parental fees by family type and income level)’은 어린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유형과 질, 방과후보육서비스의 3개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표는 특히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의 부담이 달라지므로 육아비용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벌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기혼여성의 일가족양육에 대한 딜레마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방과후보육서비스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녀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이 부모의 퇴근시간보다 짧아 하고 이후 아동의 돌봄문제가 제기되자 각국에서 다양한 방과후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깊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분류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PF)’의 요구통계현황은 아래의 표 4-1과 같다.

〈표 4-1〉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PF)’의 공개된 지표 현황

중분류	소분류	요구 통계	
유자녀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조세/급여 지원	PF1 가족급여/공공지출	1.1	급여종류별 가족 급여에 대한 공적 지출
	PF2 교육/공공지출	2.1	교육수준별 공공지출 비율
		2.2	교육수준별 학생 1인당 공공지출 비율
	PF3 가족현금급여	3.1	가족 현금급여
	PF4 성중립적인 세금/급여 체계	4.1	OECD 국가들의 조세급여 시스템 비교
4.2		1차 소득자가 AW 67%일 때 2차 소득자의 평균실효 세율 비교	
PF5 아동지원체계	5.1	아동부양체계의 핵심적인 특징들	
	5.2	한부모와 자녀부양비를 받는 한부모 비율	
	5.3	자녀부양비 수준	
아동관련 휴가	PF7 부모휴가시스템의 핵심적인 특징	7.1	전일제 근로자의 출산 및 아버지휴가, 육아휴직 산출
		7.2	아동 1인당 출생당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지출
	PF8 부모별 휴가 급여 점유율	8.1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피고용인 부모의 휴가 사용 비율
		8.2	자녀의 출생순위별 1세미만 자녀의 모성 휴가 사용
		8.3	휴가를 사용하는 어머니 대비 아버지 비율
	PF9 맞벌이 부모의 추가 휴가 이용	9.1	법정 휴일과 노조 합의에 따른 휴가, 공휴일 수
9.2		근로하는 부모들이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휴가	
어린 영아에 대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	PF10 보육·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10.1	유아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
		10.2	아동1인당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공공지출
	PF11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률	11.1	6세미만 아동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
		11.2	3-5세 아동의 유치원 대기율
		11.3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이용률
	PF12 보육지원	12.1	유치원을 다니는 2세 아동의 보육비용
12.2		평균 임금 167%인 2인 소득자 가구에 대한 전일제 보육 이용의 순 아동보육비용	
12.3		평균 임금 67%인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전일제 보육 이용의 순 아동보육비용	
가족유형과 소득수준별 보육급여 유형과 순보육비용	PF13 보육· 유아교육 서비스의 유형	13.1	보육유형
	PF14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	14.1	보육시설(0-3세 아동)의 교사 대 아동 비율
		14.2	유치원의 교사 대 아동 비율
		14.3	보육시설 교사의 자격요건과 주 근무지
		14.4	유치원 교사 자격요건과 주 근무지
	PF15 방과후보육	15.1	3-11세 연령별 아동의 방과후보육서비스 등록 비율
15.2	방과후보육서비스의 핵심 특징들		

1. 유자녀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조세/급여지원(중분류 1)

1) 가족급여에 대한 공공지출(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PF1)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가족 급여에 대한 공적 지출은 가족과 아동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한다. 의료나 주거와 같은 다른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제공된 지출 역시 가족들을 돕는 것이지만, 가족에 한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 급여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공공 지출이 있다.

① 유자녀 가족에게 제공하는 아동 관련 현금 이전은 아동수당(몇몇 국가에서 급여 수준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양하고 때로 자산조사에 기초함, PF3 참조)과 육아휴직기간 동안 공적 소득보장 지급액(PF7 참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소득 지원(몇몇 국가에서)과 부모에게 귀속된 급여를 통한 공공보육지원(PF12 참조)을 포함한다.

② 유자녀 가족의 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출은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의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원과 보조를 포함한다. 어린 영아에 대한 시설 보조금, 시설 중심 보육서비스와 가사도우미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조세 체계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기도 한다. 가족에 대한 조세지출은 세금감면(e.g. 아동급여는 과세기반에 포함되지 않음), 아동 조세 수당(아동에 대해서 총소득에서 감면되는 금액과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child tax credit 등이 있다. 만약 child tax credit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납부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므로 결과적으로 현금 급여액은 현금 이전보다는 낮다(child tax credit에 대한 동일한 적용이 모든 수급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예는 오스트리아와 캐나다).

벨기에,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위스를 포함하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유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은 과세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소득 수준에서는 가족이 많을수록 과세기반이 더 낮아진다. 이러한 수단들은 조세지출(각국의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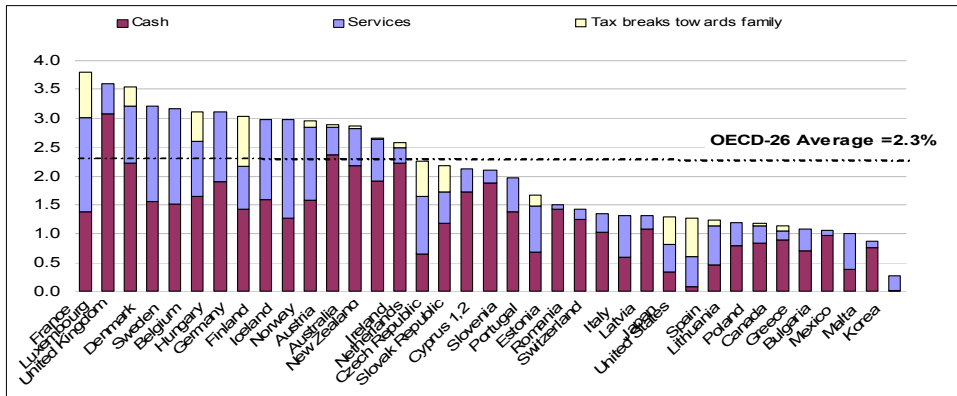
조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이 아니라 유자녀 가족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으로 구축되므로 본 지표에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OECD 국가에서 기혼 커플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 수단(tax break with a social purpose, TBSP)으로도 고려되지 않는다. 즉 부양자녀의 존재가 사회보장체계에서 현금 급여에 대한 자격(eligibility)이 되는 반면에 혼인계약 여부는 자격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혼 자들에 대한 조세 이익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사회적 목적’으로 제공된다고 고려되지 않으며, 여기서도 포함되지 않는다(그런 수단들이 기본적인 조세 구조의 부분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런 수단을 통해 아동에게 지원된 금액의 가치만 포함된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quotient familia’를 통한 아동 지원의 가치는 2005년에 약 110억유로(EUR)였다.

나. 주요 결과(Key findings)

OECD 국가들에서 가족급여에 대한 지출은 GDP 대비 평균 2.3%이지만 국가간 차이가 크다. 가족급여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 대비 3.5% 이상인 국가로는 프랑스, 룩셈부르크와 영국이 있는 반면에 지출수준이 1%에도 못 미치는 국가로는 멕시코와 한국이 있다. 가족급여의 유형으로는 현금과 서비스, 조세수단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비스나 조세 급여보다 현금 급여의 비율이 더 높다. 예외적으로 서비스 지출이 더 높은 국가는 프랑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태리, 한국, 멕시코와 스페인이다. 반면에 조세를 통한 급여는 독일, 일본, 네덜란드와 특히 미국에서 상당한 규모로 나타난다.

[그림 4-1] 급여유형별 가족 급여에 대한 공적 지출, GDP 대비 %, 2005(PF1.1)



주: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멕시코, 스위스, 터키와 OECD 비회원국가에서 가족에 대한 조세 지원에 대한 통계는 유용하지 않음. 포르투갈의 자료는 2003년임.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ESSPROS.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현금이전과 현물 급여에 대한 정보는 예산 배분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각국 통계청에서 통계를 제공하는 행정적인 기록으로 제공된다. 대조적으로 가족에 대한 조세 지원의 가치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에 의해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4-1]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동에 대한 조세 지원의 가치에 대한 추정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족 급여에 대한 공공지출의 국제적인 비교를 왜곡하기도 한다.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와 영국에 대한 현금 이전 관련 통계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소득 지원 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다른 국가들은 또한 욕구가 있는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지만, 일반적인 사회부조유형의 급여를 통해 지원한다(한부모 모가구에 대한 공공 지출의 개별적인 식별은 가능하지 않다). 그 결과 그림 4-1에서 현금 이전에 대한 지출은 전술한 4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다(상세한 국가별 지출 과일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에서 그림 4-1과 다른 비교 기준으로 제공).

SOCX에서는 가족과 지역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범위는 종종 지방정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재원이 부담되는 조달되는 서비스로 제한될 수

있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활동을 위한 재원을 교부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자격 요건에 대한 보고는 지방재정의 특성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는 중앙정부의 통계 기관에서 상세하게 충분히 다루지 못할 수도 있다. 노르딕 국가에서(지방정부가 서비스 전달에서 중요하게 개입한다) 이는 지출의 측정에서 큰 차이를 유도하지 않지만, 캐나다와 스위스 같은 연방 구조를 가진 국가와 네덜란드처럼 중앙 집중화된 국가에서는 큰 격차를 보일 수 있다.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

가족급여에 대한 공공지출의 자료원은 다음과 같다.

- Adema & Ladique(2005), *Net Social Expenditure: 2005 edition*.
- OECD(2003), *Taxing Wages 2001-2002: Special feature taxing families*.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Public spending on education, PF2)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GDP 대비 비율(%)로 한 국가에서 전체 자원의 할당에 비례해서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떤가를 보여준다.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학교, 대학 그리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데 연관된 다른 공사기관들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은 학습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만 제한되지 않고 학생과 가족에 대한 보조적인 서비스-이러한 서비스들이 교육기관을 통해 제공될 때-를 공공 지출에 포함한다. 3차교육 수준에서 연구와 개발에 쓰는 비용 또한 중요한데 교육 기관을 통해 수행되는 연구에 한해서만 이 지표에 포함한다.

교육적인 기관내에서 발생하는 교육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출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은 상업적으로 교과서와 교재들을 구입하거나 교육적인 기관외에서 자녀에게 사적인 지도를 찾을 수도 있다. 3차 교육 수준에서 학생들의 생활비나 과거 소득 또한 교육비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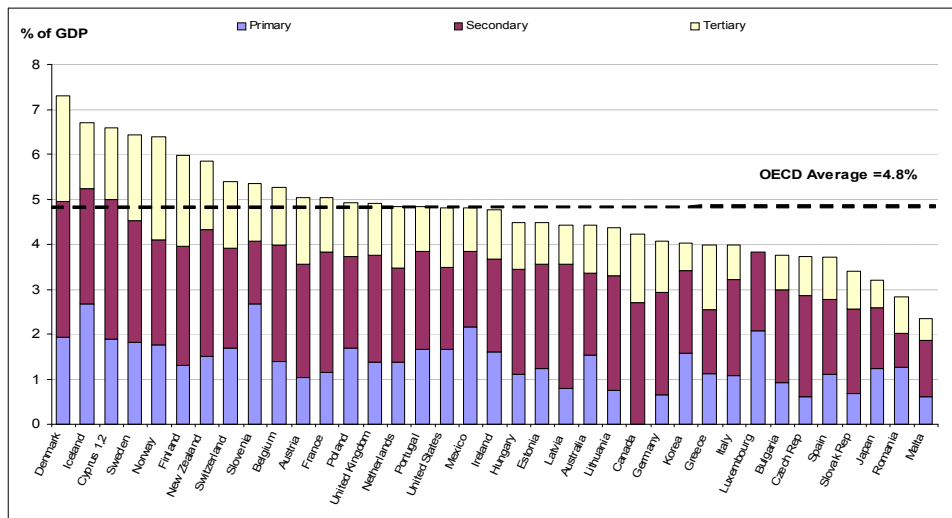
교육적인 기관들 외의 모든 이런 지출은 공적으로 보조된다고 해도 이 지표에서 배제된다.

학생 1인당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은 1차(초등교육), 2차(중고등교육), 그리고 3차(대학교육)의 각 교육수준에서 등록 학생의 수에 따른 지출을 보여준다. 각 교육수준의 공공 지출을 해당 수준에서 등록된 학생 수로 나누어서 계산된다.

나. 주요 결과(key findings)

모든 OECD 국가들은 국가 자원의 상당부분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그림 4-2] 교육수준별 공공지출, GDP 대비 %. 2005(PF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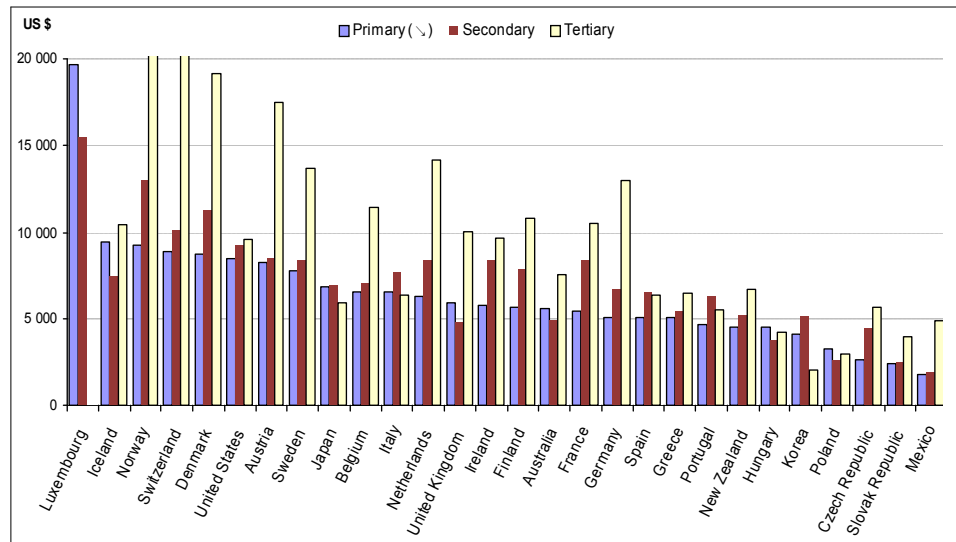
주: 캐나다의 1차 교육에 대한 통계는 사용할 수 없음.

자료: OECD Education database and Eurostat for Non-OECD countries.

공적 재원만을 고려한다면 OECD 국가들은 GDP 대비 5%를 1차, 2차, 그리고 3차 교육기관에 지출하고 있다(그림 4-2). 그러나 교육에 대한 총 지출은 노르딕 국가의 GDP 대비 6%에서 체코공화국, 일본,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공화국, 스페인의 4%미만까지 다양하다. 각 교육수준에서 지출하는 비율은 다양한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등교육에 더 많은 비중을 할당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얼마나 많은 돈이 각 학생에게 투자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그림 4-3).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은 학생 1인당 7,800USD를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은 학력별로 다르다. 학생 1인당 지출은 대학교육에서 가장 높다. 예를 들어 독일, 노르웨이와 멕시코에서 대학교육의 학생 1인당 지출은 초등교육의 학생 1인당 지출보다 2.5배 이상이다. 한편 중고등교육에서 학생 1인당 지출액은 초등 교육에서 학생에게 투자하는 금액과 다르다.

[그림 4-3] 교육수준별 학생 1인당 공공지출, US \$, 2005(PF2.2)



자료: OECD Education database.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교육 체계의 조직은 학생이 각 교육 수준을 완수하는데 걸리는 기간만큼 국가마다 다양하다. 이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다른 교육수준에서보다 초등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쓴다.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에서 초등교육의 전형적인 연령은 6세부터 12까지(7년)인 반면, 독일에서는 6세부터 10세까지(5년)이고 헝가리에서는 6세부터 9세까지(4년)다. 또한 프로그램의 기간은 교육 수준별 1인당 교육투자의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고 교육 시스템의 주기에서 더 중요한 기간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반영

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초등과 중등교육에의 참여는 매우 높은 반면, 각국의 지출 격차에 확실히 영향을 주는 대학의 등록 학생 비율은 10%에서 50%로 다양하다(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OECD 교육지표 2008 참조). 이 지표는 교육부문에서 공공지출을 보여준다. 교육 프로그램의 재원에 대한 사적인 투자를 살펴보면 초중등보다 특히 대학 수준에서 국가들은 교육에 덜 지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학생 1인당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각 교육수준별 전체 공공 지출을 해당 수준의 등록 학생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러한 수치는 2008 교육지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교육기관에 대한 사적인 지출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공지해야 한다. 국내 통화는 OECD 2005에서 국가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PPP(구매력)인 USD로 전환하였다.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

각 통계에 대한 자료원은 다음과 같다.

- OECD, Education database.
- OECD(2008), *Education at a Glance*.
- Eurostat(<http://epp.eurostat.ec.europa.eu/>).

3) 가족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s, PF3)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여기서 가족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s, FCB)는 아동과 관련해서 가족에게 현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그런 지원은 일반적으로 가족이 사용하는 자녀 양육비용이다. 여기서 가족급여의 가치는 3-12세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아동수당(몇몇 국가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양하다)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택된 연령은 육아휴직기간동안의 소득지원(PF7)과 중복되는 것을 피한다. 여기서 급여는 “환급가능 refundable”하거나 “비소비적인 non-wastable”한 tax credits(예를 들면

가족의 과세액이 특정 조세 이익이나 tax credit의 사용만큼 충분히 크지 않을 때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이다.

나. 주요 결과(key findings)

표 4-2는 각국의 가족 급여 체계에 대한 검토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급여는 유자녀 가족으로 제한된다. 절반 이상의 국가들에서 FCB 금액은 가족의 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보편적인 급여로 지급된다.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저소득 가족,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혹은 실업자인 부모에게 추가적인 자산조사형 급여가 제공된다(각각). 보편적인 FCB는 가구의 근로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 FCB는 실업 후 7개월 이후부터 증가한다. 헝가리,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에서 한 자녀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가족 현금 급여는 보다 더 관대하여, 그런 가족에 대한 현금 이전이 평균 소득 근로자(AW)의 평균 임금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몇몇 국가에서 FCB 총액은 가족의 소득에 따른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에서 급여는 철회율이 있는 소득 제한이후 아동의 수에 따라 다른데 아동이 1명, 2명, 3명일 때 각각 2, 5, 7%씩 감소한다.

호주,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와 영국에서 현금 이전은 “환급가능한” 혹은 “비소비적인(non-wastable)” 텍스 크레딧(tax credit)의 형태를 띠는데, 이들 급여는 가족에게 주는 현금 이전을 포함한다. 독일을 제외한 이들 국가에서 가족 텍스 크레딧은 자산조사에 기초한다. 후자의 국가에서 텍스 크레딧은 소득이 증가해도 감소하지 않는다(phase out). 대부분의 보편적인 FCB는 아동의 수에 따라 지급율이 증가하지만 4번째 아동부터 해당된다.

표 4-2는 가족이 아동 관련 현금급여를 받기 위한 최대한의 아동 연령을 보여준다. 종종 국가들은 연령 제한을 가지지만 교육 상태에 있는 아동은 더 높은 연령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자녀가 자신의 소득을 가지거나 결혼하거나 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 가족들은 FCB의 자격이 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지급율은 단일할 수도 있지만 종종 아동의 연령과 수에 따라서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 4-2의 세 번째 칸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아동에 대한 급여액 증감은 “+”와 “-”로 나타낸다.

〈표 4-2〉 가족 현금급여, 2007(PF3.1)

국가	3-12세 아동 1인당 최대 급여		추가적인 아동 급여		아동 연령 상한선 (학생)	소득조사	관찰결과
	US\$	평균임금 대비 %	아동의 연령	아동의 수			
호 주	3613	8	+/-	+(넷째)	20(24)	가족 소득	급여 A는 자녀양육비용 보조 현금이나 조세로 지급가능
	2901	6	-	0	15(18)	부부 중 2차 소득자의 소득	급여 B는 1인 주소득자 가구에 추가적으로 보조 현금 혹은 조세로 지급
오스트리아	2150	4	+	+	19(27)	없음	저소득층 가구에 셋째 이상 자녀에게 추가금 지급
	836	2	0	0			비소비성 tax credit
벨기에	1739	3	+/-	+/-	17(24)	없음	실업자는 7개월부터 가족급여가 증가함
캐나다	1194	3	0	+(셋째)	17	가족의 과세소득	캐나다 child tax benefit(비소비성 tax credit)
	1851	5	0	-		가족의 과세소득	국가아동급여는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충
덴마크	2306	4	-	0	17	없음	-
핀란드	1643	3	0	+	16	없음	아동수 대비 고정 비율로 증가
프랑스	979	2	+	+	20	없음	가족수당: 첫째는 없고 둘째부터 (11세이하) 1인당 979USD씩 증가(평균임금2%)
독 일	2530	4	0	+(넷째)	18(25)	없음	유아는 비소비성 tax credit 형태로 매월 환급(비과세가구는 공공부조에서 감면)
	2300	4	-	-	-	있음	추가적인 아동수당은 자녀를 부양하는 실업급여와 공공부조에 적용됨
일 본	510	1	+/-	+	12	세금감면 전 총소득	셋째부터 1인당 급여는 2배
룩셈부르크	3846	6	+	+	17(26)	없음	최대급여는 아동이 12세가 될 때까지 제공
네덜란드	1488	3	+	0	17	없음	이전 체계는 아동 수에 따라 아동 1인당 금액이 증가
뉴질랜드	3133	10	+	-	18	가족 소득	가족지원taxcredit(급여를 받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유용한 child tax credit 포함)
노르웨이	1987	3	0	0	17	없음	-
영 국	1883	3	0	-	15(18)	없음	둘째부터 고정율
	1883	3	0	+		총 가족소득	116,410이하 가구 소득을 가진 유자녀 가족은 child tax credit 자격을 가짐. 이는 "비소비성"이며, 장애인에게는 높은 비율로 책정
미 국	1056	3	0	+	-	있음	TANF에서 아동급여는 아동의 수가 아니라 가족규모에 따라 달라짐. 급여양과 기간은 주마다 다름

주: 1) 가족급여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tax credit)을 포함. 모든 급여는 연간으로 산출됨.

2) 지급율은 아동의 수에 따라 다양함. "+" 증가, "-" 감소, "0" 동일, "+/-"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냄.

자료: OECD Tax-Benefit Models.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가족급여에 대한 통계는 Befits and Wages database에서 각국 정부부처에 보낸 질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이다. 급여액은 자국통화를 OECD 2007통화환율(currency exchange rates)에서 사용한 USD로 전환했다.

가족급여는 가족의 소득에 연계되거나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자산조사가 있는 국가에서 급여는 종종 가족소득이 특정 수준보다 낮을 때에만 지급되고 아동 급여는 가족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감소된다. 이 같은 급여 산정에 대한 특성은 국가마다 다양하다.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

- OECD, *Babies and Bosses*(various issue).
- OECD(2007), *Benefits and Wages*.

4) 조세/급여 시스템의 중립성(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PF4)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 가능한 범주에서 다양한 근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부모들이 희망하는 가족의 가처분 소득이 조세/급여 시스템의 수준을 획득하는데 있어 커플 가족의 각 성인에 대한 유급 노동의 비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을 “중립적”이라고 정의한다.

어떤 조세/급여 시스템이 2인 맞벌이 가구 혹은 1인 부양자 가족에게 친화적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과세 단위는 중요한 특성이다. “합산” 혹은 “가족에 기초한” 과세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 배우자인 두 번째 소득자의 한계세율이 주 소득자의 한계세율과 같을 것이다. 만약 조세 시스템이 누진적이라면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 2인 맞벌이 가구의 한계세율이 1인보다 높아 유급노동시장에서 여성 배우자의 참여에 역유인효과가 있다. 또한 개별과세가 누진적인 세율을 가지면 동일한 수준의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서 2차소득자가 주소득자보다 덜 무겁게 과세된다. 이는 2인소득자 가구가 더 높은 가처분소득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진소득세율을 가진 개별적인 조세 시스템은 가족내 다른 구성원의 소득을 펼침으로써 약간의 바이어스를 가진다.

2006년에 OECD 19개 국가들은 배우자의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채택했다(OECD, 2003; OECD, 2008). 합산과세나 합산과세에 대한 선택을 가진 국가는 체코공화국(유자녀 커플들에 대해서), 프랑스(가족), 독일(기혼 커플), 아일랜드(기혼 커플), 룩셈부르크(기혼 커플), 노르웨이(선택적), 폴란드(기혼 커플), 포르투갈(가족), 스페인(선택적), 스위스(기혼 커플), 미국(기혼 커플) 등이다. 그러나 조세/급여 시스템이 “중립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세 단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많은 “개별적인” 과세 시스템은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처럼 배우자들간에 이전할 수 있는 과세경감tax relief과 세금환급tax credits과 같은 약간의 “합산요소”나 가족 구성에 따른 자산조사급여들(예, 공공부조급여)을 보여준다. 커플 가족에서 2차소득자가 소득을 갖기 시작하면, 이러한 소득은 먼저 과세 경감의 정도를 상쇄시키고 급여 소득의 손실을 이끈다.

나. 주요 결과(key fi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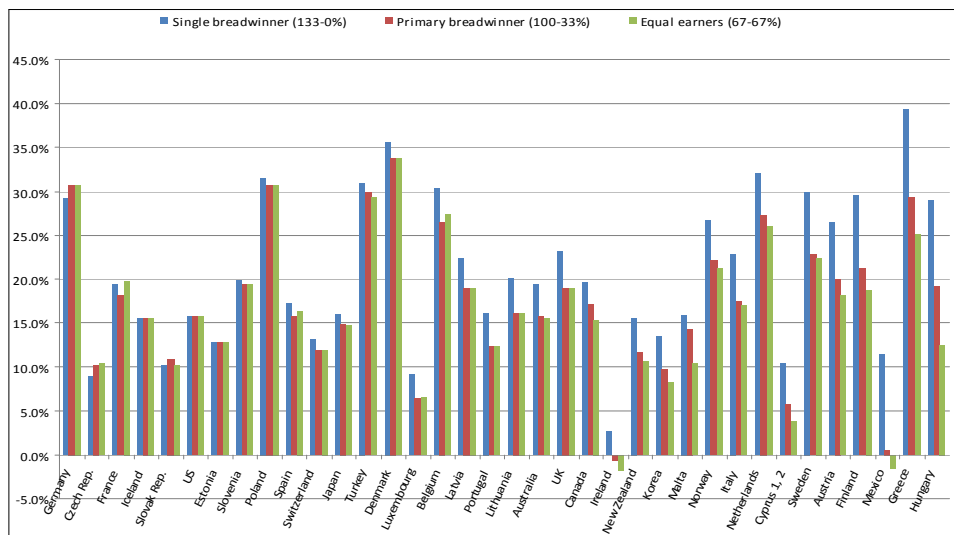
그림 4-4는 커플 가족에서 어떤 조세/급여 시스템이 배우자의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려한다(결과들은 가구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평균 소득의 133%인 커플 가족들이 그들 사이의 소득이 어떻게 할당되어야 가장 좋을지를 보여준다. 3가지 대안들이 고려된다. i) 홑벌이(1차 소득자가 평균 소득 133%를 가짐); ii) 주 소득자(1차 소득자가 평균 소득을 가지고, 2차 소득자가 평균 소득 1/3을 가짐); iii) 동일한 소득을 가지는 평등한 배우자. 그림 4-4는 이들 세 가지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구로부터 정부로 얼마나 많은 순 이전(세금 납부와 가족급여 수급 사이의 차이)이 있는지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06년에 핀란드에서 평균 소득 133%를 지는 홑벌이 가족의 순이전은 총 소득의 거의 30%로 나타난 반면에 배우자 동일한 소득을 가지는 커플에 대해서는 20%로 나타났다. 즉 동일한 가구 소득

수준이라면, 핀란드의 조세/급여 시스템은 홑벌이 소득자 가구보다 2인 소득자 커플 가구에 더 우호적이다.

가족소득이 동일한 수준일 때, 프랑스, 아이슬란드, 일본,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스페인과 미국의 조세/급여 시스템은 2인 소득자 커플과 홑벌이 커플 사이에 거의 중립적으로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급여 시스템은 커플 가구에 대한 작지만 중요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그림 4-4). 체코공화국과 독일의 조세/급여 시스템만 재정적으로 2인 소득자 가구보다 홑벌이 가구를 더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잠재적인 2차 소득자의 유급 노동 진입은 가구 내 유급노동을 공유하는 조세/급여 시스템의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2차 소득자로 인한 전체 재정 수입의 확대라는 매력이 근로를 유도한다. 즉 어느 정도까지가 2차 소득자가 유급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근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림 4-4] OECD 국가들의 조세/급여 시스템 비교(PF4.1)



주. 가족소득과 아동의 연령이 동일할 때, 동일한 소득을 버는 홑벌이 가족과 2인 소득자 가구에 대한 정부의 순 급여의 차이에 따라 국가들의 순위를 매긴. 헝가리 시스템은 2인소득자 가구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우호적이고 독일의 조세/급여 시스템은 2인 소득자 가구에 가장 덜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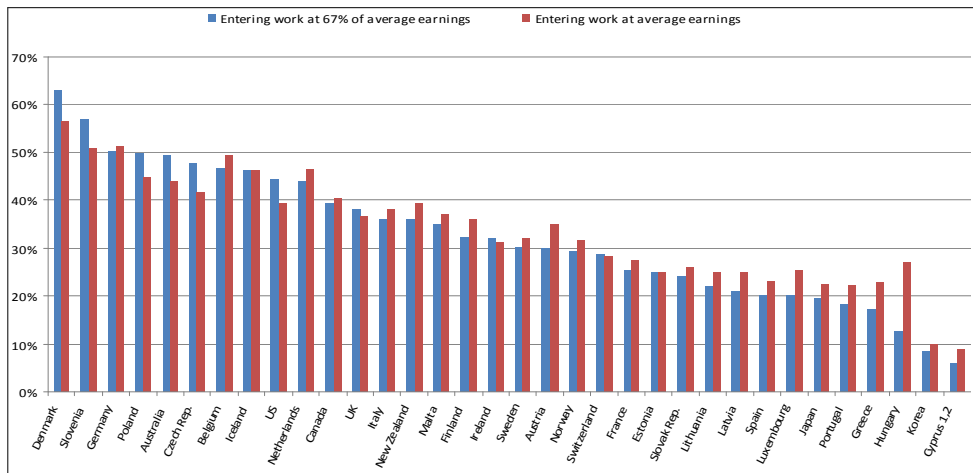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and Tax/Benefit models.

그림 4-5는 배우자가 평균 소득과 동일하거나 2/3일 때(이러한 계산은 육아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개인별 조세/급여 지위를 계산하는 OECD Tax/Benefit 모델에서

취하고 있는 가정에 근거함. OECD, 2007a), 2차소득자가 유급 고용으로 이동하면 예상되는 부모들의 평균유효세율(AETRs- 급여 소득의 과세 혹은 손실로 잃게 되는 소득의 증가 비율로 측정)을 보여준다. AETRs은 일반적으로 50%이하인데, 소득 지원을 받지 않는 가족들 중 잠재적인 2차 소득자에 대한 노동에 대한 급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몇몇 OECD 국가에서 근로하는 배우자가 있는 모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벨기에,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와 폴란드가 그렇다.

그림 4-5의 결과에서 제시하는 계산은 공식적인 아동보육시설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들이 “비공식적인” 아동보육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사실상 많은 부모들은 비공식적인 아동보육시설(친척, 이웃)을 이용하지만 모든 부모가 포괄적인 개념에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는다. 아동보육시설의 비용은 노르딕 국가에서 대부분 보조되므로 부모에게 근로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른 국가에서는 공식적인 보육시설이 항상 유용하지도 않고, 가격이 비싼 경우도 있다.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아동보육비용은 매우 높아서 커플가구인 2차 소득자에게 단기적인 노동이 대부분 요구되며, 이는 캐나다의 온타리오와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의 쥘리히의 한부모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OECD, 2007a; OECD 2007b).

[그림 4-5] 평균소득 67%의 배우자가 있는 부부의 평균실효세율, 2006(PF4.2)



자료: OECD Tax/Benefit models.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논의한 것처럼 자산조사 급여와 가족에 기초한 tax credits, 이전가능한 조세 수당들은 조세/급여 시스템에서 1인 소득자 커플에 대한 편견을 가져온다. 많은 사회적 이전(공공부조와 주택지원을 포함한)들은 특히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아동이 있을 때 저소득 가구에서 잠재적인 2차 소득자는 대부분 노동시장에 취약한 재정적인 유인책에 직면하게 된다(OECD, 2007a).

그림 4-5는 여기서 고려된 것보다 훨씬 더 어린 자녀가 있는 유자녀 가족에 대해 계산할 때 몇몇 국가에서 매우 다를 수 있다. 이는 몇몇 국가에서 1인부양자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서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 중요한 가족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혹은 슬로바키아공화국, OECD 2007b). 다시 말해, 여기서 제시된 계산은 높은 보육료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 비용들은 2차 소득자의 근로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와 유자녀 커플 가족에서 부모들의 유급 노동의 배분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

각 통계에 대한 자료원은 다음과 같다.

- Immernoll, H., H.J.Kleven, C.T.Kreiner and N. Verdellin(2008), "Taxation of Couples in European Countries", *IZA Discussion Paper*, forthcoming.
- OECD(2003), *Taxing Wages 2001-2003*, Special feature Taxing Families.
- OECD(2007a), *Benefits and Wages*.
- OECD(2007b),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for OECD Countries*.
- OECD(2008), *Taxing Wages, 2006-2007*.

5) 아동 부양 체계(Child Support system, PF5)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는 모든 부모들은 법적으로 아동 부양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재(혹은 비거주) 부모의 부양비 지불을 이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아동 부양시스템을 갖고 있다. 몇몇 회원국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거주 부모에 의해 지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진보적인 소득 보장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나. 주요 결과(key findings)

표 4-3은 아동 부양 체계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보여준다. OECD 국가에서 이러한 체계는 이혼건수의 증가와 한부모 가족의 빈번한 출현으로 더 중요해졌다(SF8). 2005년에 유자녀 가족들의 약 10%는 한부모 가구였다(SF1). 아동부양체계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것을 돕는다(CO7 and CO8): Skinner et al.(2006)은 만약 한부모 가족이 실제로 수급자격이 되는 모든 아동 지원을 받는다면 이들 가족의 아동 빈곤율은 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추정했다.

표 4-3은 아동부양비가 부모, 법정, 행정기관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아동 부양비(그리고 가능한 위자료)에 대해 합의하도록 내버려둔다.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과 미국(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에서 모든 합의는 법정에 등록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온타리오), 프랑스, 독일과 스웨덴에서 법정은 지급율을 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영국에서는 공공 아동 부양 기관이 주도한다.

아동의 부양 책무를 결정하는 규칙은 국가별로 다양한데, 몇몇 국가에서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 반면에 다른 국가에서는 비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기관 체계를 가진 회원국들(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영국)은 부양비를 산정하는 엄격한 공식을 적용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법정 체계를 가진 국가들(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과 스웨덴)에서 부모들은 공식적인 합의를 결정할 때 비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아동 부양비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동거와 비동거 부모의 재정적인 자원, 다른

자녀와 (전) 배우자에 대한 책무, 면접권(자녀를 만나는 시간과 공동 보육)와 아동의 육구.

표 4-3은 아동부양수급, 아동부양비의 기한, 혼인여부에 따라 아동에 대한 부양제도가 다른지 혹은 국가가 진보적인 아동 부양금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아동부양금의 기한은 아동이 18세가 되면 끝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아동이 전일제 교육(예, 호주, 아일랜드, 멕시코, 폴란드, 영국과 미국)을 끝낼 때까지 혹은 재정적으로 독립할 때(예, 체코공화국과 뉴질랜드)까지 지속된다. 독일과 폴란드를 제외하고 미혼 부모의 아동에 대한 공식적인 체계의 결정요인은 이혼 부모의 아동에 대한 것과 유사하다.

표 4-3에 수집된 국가 중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과 미국 외의 다른 모든 국가들은 비거주 부모가 그들의 재정적인 책무를 충족하지 못할 때 아동이 최소한의 수당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진보적인 아동부양비를 제공한다. 정부는 부재한 부모에게 아동부양비를 다시 청구하기 위해 소송한다.

룩셈부르크소득연구소(LIS)는 부양비 규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표 4-4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적어도 2년 이상 이러한 정보가 유용한 15개국에 대한 수치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부양수급자는 18세미만의 자녀가 있으며, 미혼부모나 별거 혹은 이혼한(이러한 지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한부모 가구나 사별한 가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부모가족을 포함한다. 표 4-3에서 부양비의 가치에 대한 추정치는 3가지 형태의 급여를 포함한다. 아동부양, 위자료(전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와 자녀부양에 대한 돈)와 정부에 의해 진보적인 부양비. 자국의 통화는 국가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OECD PPPs(구매력)를 이용하여 USD로 전환되었다.

〈표 4-3〉 아동부양체계의 핵심적인 특징들(PF5.1)

	자녀양육결정의 개입			양육비 결정책임	양육비 결정 규칙	양육비 강제의무	미혼부모 자녀의 타제도	부양비 지급 자녀연령	부양비에 대한 조세혜택
	부모	법원	기관						
호주	○ 법원이 승인	○ 제한적 역할	○ 아동 지원국	부모, 합의가 안되거나 자산조사급여 시 아동 지원국	규칙/ 엄격한 산정식	아동 지원국	×	18세, 혹은 학교 졸업까지	×
오스트리아	○ 법원이 승인	○	×	부모, 법원의 승인	공식적인 지침과 규칙/엄격한 산정식	법원	×	18세	○
벨기에	○ 법원이 승인	○	×	법원	대부분 재량권-정해진 규칙이나 방법 없음	법원	×	18세	○
덴마크	○ 법원이 승인	×	○ 주(州) 위원회	부모, 합의가 안될 경우 주 당국 기관	규칙/ 엄격한 산정식	주당국 기관	×	18세	○
핀란드	○ 복지 위원회 확인	○ 제한적 역할	○	부모, 사회복지위원회, 부모가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	대부분 재량권-비공식적 지침	자치단체 사회복지위원회	×	18세	○
프랑스	○ 법원이 승인	○	×	법원	대부분 재량권, 정해진 규칙이나 방법 없음	법원과 사회보장위원회	×	18세	○
독일	○	○	×	부모, 부모가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	대부분 재량권 양육표 이용	법원	○	18세	○

〈표 4-3〉 계속

	자녀양육결정의 개입			양육비 결정책임	양육비 결정 규칙	양육비 강제 의무	미혼부모 자녀의 타제도	부양비 지급 자녀연령	부양비에 대한 조세혜택
	부모	법원	기관						
네덜란드	○ 법원이 승인	○	×	부모, 합의가 안되거나 자산조사급 역시 변호사의 감독아래 법원	대부분 재량권, 비공식적인 지침	국가적인 수집과 지원기관, 행정관을 통해 시행, 법원이 시행촉구	×	21세	×
뉴질랜드	○	○ 제한적 역할	○ 국세청 아동 지원	부모, 부모가 합의가 안될 경우 IRCS	규칙/ 엄격한 산정식	국세청 아동지원	×	16세, 혹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
노르웨이	○	○ 제한적 역할	○ 복지부 기관	부모, 부모가 합의가 안될 경우 NAV	규칙/ 엄격한 산정식	자녀 부양비 자료수집 센터	×	18세	○
스웨덴	○ 복지 위원회 확인	○	×	법원	대부분 재량권, 비공식적인 지침	강화서비스	×	18세	○
영국	○ 법원이 승인	○ 제한적 역할	○ 아동 양육 기관	부모나 CSA, 합의가 안될 경우 PWC	규칙/ 엄격한 산정식	법원과 아동지원기관	×	16세, 혹은 전일제 학생의 경우 19세	○
미국	○ 법원이 승인	○	○ 아동양육기관 (주별 상이)	법원	공식적인 지침	법원과 아동지원기관	×	주별 상이 (16세-25세)	×

자료: Skinner et al.(2007) and National Authorities.

표 4-4는 유용한 정보를 가진 국가들을 보여주는데, 스웨덴, 영국과 미국에서 어린자녀가 있는 비사별 한부모 가구가 약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대조적으로 유럽대륙국가들은 모든 유자녀 가구 중에서 가장 낮은 약 4%가 비사별 한부모 가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보가 유용한 국가들에서 비사별 한부모 가구의 평균 비율은 1994년 12%에서 2004년 17%로 증가했다.

표 4-4는 또한 아동부양비를 받는 비사별 한부모 가구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2004년에 평균적으로 그런 가족의 50%미만이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국가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럽대륙, 아일랜드,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한부모 가구의 25%미만의 가족들만 부채중인 부모로부터 현금 이전을 받았지만 덴마크,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이 수치는 80% 이상이다. 비사별 한부모 가구 중 부양비를 받는 한부모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1994년 43%에서 2004년 64%로 증가했다. 프랑스, 헝가리와 아일랜드에서는 부채중인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1990년대 후반동안 감소했다.

〈표 4-4〉 한부모 비율과 아동부양비를 받는 한부모 비율(PF5.2)

	한부모 가족의 비율			자녀부양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의 비율		
	1994	2000	2004	1994	2000	2004
호주	16.4	23.0	21.2	34.9	35.2	36.9
오스트리아	9.9	12.9	n.a.	51.6	69.8	n.a.
벨기에	9.3	11.8	n.a.	47.8	49.1	n.a.
캐나다	n.a.	15.9	n.a.	n.a.	35.5	n.a.
덴마크	13.9	13.7	15.7	99.2	99.2	98.8
핀란드	12.7	14.9	13.0	74.2	72.7	83.4
프랑스	10.0	12.6	n.a.	55.9	46.3	n.a.
독일	8.0	13.9	n.a.	n.a.	30.1	n.a.
그리스	3.4	3.1	n.a.	17.2	24.5	n.a.
헝가리	8.4	5.7	n.a.	47.2	39.8	n.a.
아일랜드	10.4	14.4	n.a.	23.7	20.1	n.a.
이탈리아	3.6	3.7	n.a.	12.3	25.2	n.a.
룩셈부르크	10.2	6.3	7.3	32.2	40.1	n.a.
네덜란드	8.6	8.8	n.a.	15.6	24.4	n.a.
노르웨이	20.2	19.6	n.a.	80.6	81.1	n.a.
폴란드	6.8	6.8	n.a.	46.4	72.9	n.a.
스웨덴	24.1	21.2	21.9	85.4	92.6	100.0
스위스	n.a.	8.0	7.4	n.a.	67.1	74.5
영국	21.2	22.9	24.6	20.2	21.9	22.8
미국	28.0	20.1	21.5	28.8	34.1	33.7

주: 1) 이 표는 비사별 한부모에 관한 것임.

2) 첫 번째 칸은 1994년경, 두 번째칸은 2000년경, 세 번째칸은 2004년경에 작성된 것임. 각국 자료의 정확한 년도는 OECD Family database를 참조.

자료: Calculation on basis of the Luxembourg Income Study data.

〈표 4-5〉는 비동거부모나 정부기관으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가족들의 현금 지급금을 보여준다. 표는 매일 현금 이전의 평균 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아동 1인당 현금 이전의 월 평균 금액(가족 규모 고려); 가구의 순 소득 대비 현금 이전 비율, 가구 단위로 받는 총 현금 이전(공사부문)에서 부양비의 비율. 표 4-4와 대조적으로 이 표는 샘플사이즈가 너무 적어서 유의한 추정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 스페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보가 유용한 국가들에서 2004년을 기준으로 한부모 가족은 평균적으로 매일 399 USD를 받고, 아동 1인당 266 USD를 받으며, 가구의 순소득은 16%, 가구의 소득 이전은 39%로 보고되었다. 표 4-5는 국가간의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스위스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미국, 영국과 캐나다 순이며, 핀란드에서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 덴마크, 폴란드와 스웨덴(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의 지급율은 노르딕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다-PF3) 순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순소득 대비 현금 지급금의 비율과 총 소득 이전 대비 현금 지급금의 비율은 스위스,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높고, 노르딕 국가에서 가장 낮다.

〈표 4-5〉 아동부양비의 수준(PF5.3)

(단위: US\$, %)

	한부모가구당 평균아동부양비 ¹⁾			아동 1인당 평균아동부양비 ¹⁾			순가처분소득 대비 아동부양비 ²⁾			총 소득이전 대비 아동부양비 ²⁾		
	1994	2000	2004	1994	2000	2004	1994	2000	2004	1994	2000	2004
호주	249.2	290.4	283.2	146.4	173.5	176.7	17.3	15.1	14.2	34.9	31.2	26.1
오스트리아	295.3	313.4	n.a.	197.0	245.1	n.a.	19.5	18.3	n.a.	45.2	47.9	n.a.
벨기에	260.9	313.9	n.a.	164.9	219.7	n.a.	14.3	14.0	n.a.	32.0	38.1	n.a.
캐나다	n.a.	363.6	n.a.	n.a.	240.4	n.a.	n.a.	17.5	n.a.	n.a.	43.1	n.a.
덴마크	115.5	153.2	197.0	82.6	104.7	131.6	7.4	9.4	9.2	19.3	24.2	26.3
핀란드	166.0	205.7	206.9	118.7	139.5	133.4	11.2	12.3	10.7	27.0	29.7	29.5
프랑스	260.8	250.8	n.a.	196.8	152.4	n.a.	18.3	16.2	n.a.	47.4	40.1	n.a.
독일	n.a.	246.2	n.a.	n.a.	183.6	n.a.	n.a.	17.1	n.a.	n.a.	37.2	n.a.
노르웨이	189.0	226.1	n.a.	136.1	162.7	n.a.	11.3	10.5	n.a.	25.5	27.1	n.a.
폴란드	126.7	166.8	n.a.	111.5	125.3	n.a.	24.4	30.0	n.a.	47.1	59.6	n.a.
스웨덴	194.9	184.7	196.2	122.5	116.8	128.0	12.9	11.1	10.1	24.1	27.1	28.3
스위스	n.a.	902.9	918.5	n.a.	583.5	657.1	n.a.	49.7	35.1	n.a.	72.3	71.1
영국	346.0	379.9	416.3	221.5	244.8	295.7	23.3	19.5	16.9	42.9	40.0	32.6
미국	316.5	436.3	502.2	209.4	292.7	333.3	17.5	18.7	19.4	60.0	63.0	53.3

자료: Calculations on basis of the Luxembourg Income Study data.

표 4-5는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금 이전의 상당한 증가를 보여주나 이는 한 부모 가족들이 받는 순소득이나 총 이전 지급금 대비 비율이라는 측면에서 명확한 증가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아동 1인당 평균 부양비 총액은 25% 증가했으나 순소득 대비 비율과 총 이전 대비 비율은 30%이상 감소했다.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표 4-3은 Skinner et al.,(2006)에 의해 자녀양육비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고찰에 근거하고 실행여부와 확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각국 정부에서 보내왔다.

표 4-4과 4-5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소득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각국에 대한 구성요소는 자료 아카이브를 통해 수집하였다 (<http://www.lisproject.org>). LIS는 표준화된 정보를 시간에 따라 다른 지점에서 대조할 수 있어 역사적 경향에서 국가간 비교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비 지급에 대한 정보는 LIS에서 그렇지 않다. i) 자녀 양육비와 이혼수당(배우자에게 제공하는 생활비와 자녀 양육을 위해 지불하는 돈)은 각각 분리해서 설명하고, ii) 자녀 양육비는 자발적으로 혹은 법정의 명령에 따르는지 설명하고, iii) 한부모 가족으로 받은 자녀 양육비지원을 커플 가구를 구성했을 때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LIS에 포함되더라도 체코공화국과 멕시코는 표 4-3과 표 4-4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들 국가들은 아동 양육비 제도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그룹의 가족들이 자녀양육비체계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별가족은 우리의 분석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호주와 스웨덴의 1995년 자료는 한부모에 대한 이 그룹의 설명이 구분되어 제공되지 않고, 이러한 관찰치 때문에 양육비를 받는 적격 가구의 비율을 과소추정할 수 있다.

자녀부양에 대한 자료는 일부 국가(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와 아일랜드)에서 추가적인 부양비를 포함하지만 모든 국가(독일, 노르웨이와 스웨덴)가 이러한 종류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여기서 제공된 수치들은 독일, 노

르웨이와 스웨덴의 가족들이 받는 현금 급여와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의 가치를 과소 추정할 수 있다.

자국통화로 제공되는 급여액은 OECD PPP로 사용되는 USD로 전환하였다. 유럽 국가들에서 2002년 이전의 자국 통화는 LIS의 환율로 사용하는 Euro로 전환하고 그 후에 USD로 전환하였다.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

각 통계에 대한 자료원은 다음과 같다.

- Luxembourg Income Study(<http://www.lisproject.org/>).
- Australia's Child Support Agency(<http://www.csa.gov.au/>).
- The Clearinghous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Child, Youth and Family(<http://www.childpolicyintl.org/>).
- Skinner, C. Bradshaw, J. and Davidson J.(2007) Child support polic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WP Research Report No. 405*, Leeds.
- Kurz, J, Villeneuve, P. and Garfinkel I.(2001) "Child Support Among Selected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in Koen Verminx and Timothy Smeeding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Bristol, England: Policy Press.

6) 유자녀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조세/급여 지원으로 본 한국의 현황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단위이자 조세단위이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단위이기도 하다. 본 지표에서는 주로 정부가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수단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우선 정부가 현금급여, 서비스제공, 조세수단 등을 통해서 가족에게 지출하는 정도는 OECD 평균 GDP 대비 2.4% 이다.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는 북유럽 국가들(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과 아동에 대한 현금급여가 발달한 유럽 국가들(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과 영미권 국가들(영국, 호주) 등은 3%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터키와

함께 1%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는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조세급여체계는 동일한 가구소득(133%)일 때 1인 소득자 가구(133-0%)와 주-부소득자 가구(100-33%)에 비해서 동일한 소득(67-67%)일 때 가장 세금이 적게 부과된다. 이는 2차 소득자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용률이 매우 높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과 유사하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는 충분히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를 바탕으로 취업여성의 증가가 이뤄진 반면에 한국에서는 비공식적 보육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LMF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의 노동시장은 M자형을 그리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이혼시 자녀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부모가 상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양의 책임만 결정될 뿐 부양비 지불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최근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이 급증하는 것을 볼 때 이혼시 부양의 책임과 부양비 지급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부양하지 않는 부나 모에 대해서 법적으로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을 완화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 아동관련휴가(Child-related leave)(중분류 2)

1) 부모휴가 시스템의 핵심적인 특징들(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PF7)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출산휴가(Maternal Leave(혹은 pregnancy leave): 출산시 혹은 몇몇 국가에서는 입양시에 피고용인 여성의 부재에 대해 고용보호 휴가를 제공한다. 출산휴가에 대한 ILO 협약은 최소 14주의 휴가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급자들은 출산전후로 결합해서 휴가를 이용한다. 몇몇국가에서 출산전 짧은 휴가는 의무적이

며 이에 따라 6-10주를 출산 후에 휴가로 이용한다.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은 출산휴가를 받을 때 연계되는 공공 소득보장급여를 가진다. 몇몇 국가(호주, 독일,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들에서 출산휴가는 육아휴직체계에 통합되므로 출산휴가에 대한 독립된 규정이 없다.

부성휴기(Paternity Leave): 자녀의 출산시 피고용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고용보호 휴가다. 부성휴기는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부성휴가의 기간은 출산휴가에 비해서 훨씬 더 짧다. 짧은 기간 부재하기 때문에 부성휴가를 쓰는 근로자는 종종 완전임금을 계속적으로 받는다. 몇몇 국가에서는 아버지에 특화된 휴가의 수급은 독립된 권리라기보다는 육아휴직 체계의 일부이다. 그림 4-6과 표 4-6에서 부성 휴가에 대한 수급권 수치는 이러한 “아버지 할당”을 포함한 것이다.

육아휴직(Parental Leave): 피고용된 부모에 대한 부재에 대한 고용-보호 휴가는 종종 출산휴가와 부성휴가 기간에 대한 보충이거나 종종 모든 국가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출산휴가기간에 따른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수급권은 개별적인데 반해 공공 소득 보장에 대한 수급권은 종종 가족에 근거를 두므로 일반적으로 한 부모는 그런 지원을 한번만 신청할 수 있다.

그림 4-6의 패널 A, B와 C는 출산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의 고용보호 휴가 기간(주 단위)을 보여준다(소득 지원에 상관없음). 각기 다른 급여율과 유급 휴가기간 체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더 잘 하기 위해서 유급 휴가의 수급권은 또한 임금소득이 100%일 때 유급 휴가의 기간의 비율인 전일제 등식(FTE)으로 나타낸다. 이 전일제 등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FTE = \text{휴가기간(주)} * \text{수급자가 받는 지급액(평균임금 대비 \%)}$$

표 4-6은 각국의 출산휴가, 출산수당, 부성과 육아휴직 급여의 핵심 특징을 보여준다. 몇몇 나라에서 무급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육아휴직 규정과 관련없는 아동/가정 돌봄 수당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급여들(과 상응하는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급여율을 추정하는데 포함된다.

〈표 4-6〉 출산휴가, 부성휴가와 육아휴직 비교, 2006/2007(PF7.1)

(단위: 주, %, USS)

	출산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			육아 휴직 (무급)
	기간	수당 비율	FTE 지급	기간	수당 비율	FTE 지급	기간	수당 비율	FTE 지급	
호주	×(6)	×(6)	52
오스트리아	16	100	16	0.4	100	0.4	104	21	21.84	..
벨기에	15	82/75	11.53	2	100	2	12	20	2.4	..
캐나다	17	55	9.35	35	55	19.25	..
체코	28	69	19.32	156	10	15.6	..
덴마크	18	100	18	2	100	2	32	90	28.8	..
핀란드	18	65	11.7	3	100	3	26	60	15.6	..
프랑스	16	100	16	2	100	2	156	25.8	40.2	..
독일	14	100	14	104	11	11.4	52
그리스	17	100	17	0.4	100	0.4	28
헝가리	24	70	16.8	1	100	1	80	70	56	52
아이슬란드	13	80	10.4	13	80	10.4	13	80	10.4	..
아일랜드	18(8)	80	14.4	0.4	100	0.4	28
이탈리아	21	80	16.8	12	30	3.6	24
일본	14	60	8.4
한국	12	100	12	36	17	6.12	..
룩셈부르크	16	100	16	0.4	100	0.4	26	62	16.12	..
멕시코	12	100	12
네덜란드	16	100	16	0.4	100	0.4	24
뉴질랜드	12	50	6
노르웨이	9	80	7.2	6	80	3.2	42	100	42	..
폴란드	16	100	16	2	100	2	156	14.6	22.7	..
포르투갈	17	100	17	1	100	1	24
슬로바키아	28	55	15.4	156	24	37.44	..
스페인	16	100	16	0.4	100	0.4	156
스웨덴	15	80	12	11	100/80	9.2	51	80	40.8	..
스위스	16	100	16
터키	12	66	7.92
영국	26(26)	90	12	2	25	0.5	26
미국	12	0	0

주: 1) 휴가급여에 대한 상세한 규칙은 표 PF7.2, PF7.3, PF7.4와 PF7.5 참조.

2) 수당비율은 전일제 근로자의 휴가 급여와 휴가 수급 주수간의 비율로 정의됨.

자료: Moss, P. and M. Korintus(2008); Missoc; OECD Babies and Bosses; National authorities.

나. 주요 결과(key findings)

OECD 국가들의 평균 출산 휴가 기간은 약 18주다(표 4-6과 그림 4-6의 패널

A).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성휴가는 2주 혹은 그 이하로 상당히 짧다. 부모들에게 달

려있다. 누가 휴가를 받고 소득지원을 신청할지는 부부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데 이는 실제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휴가의 수급권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성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시스템에 “아버지 할당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아버지가 사용해야 하는 휴가기간으로 만약 아버지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가 소멸되는” 체계로 아이슬란드에서는 3개월이나 된다.

몇몇 국가에서는 육아휴직으로 혹은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아동/가정 보육 휴가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휴가의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최소 2년). 모든 국가에서 휴가의 연장 기간은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핀란드,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과 스페인에서 사용될 수 있다.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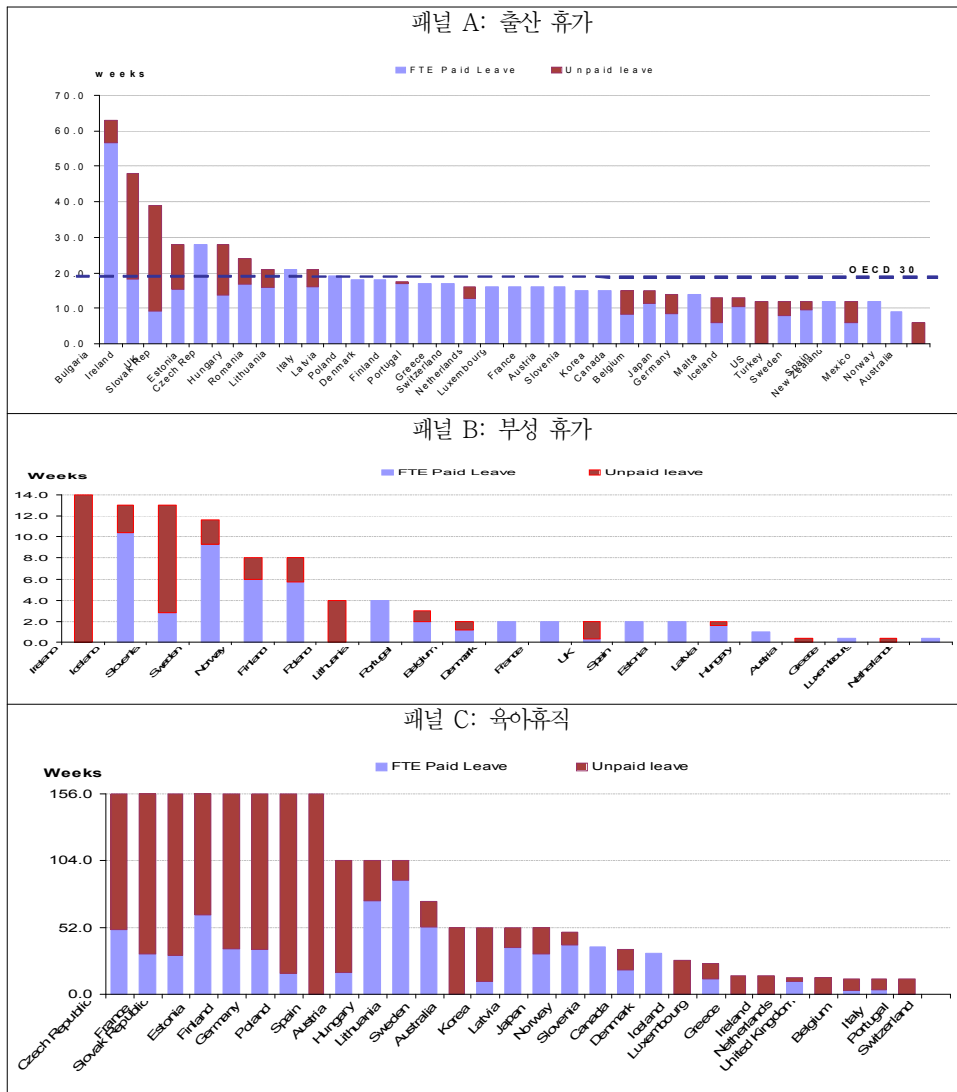
국제적인 비교에서 휴가시스템의 관대성을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은 휴가 관련 가족 급여액과 이와 관련되는 출생아동의 수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출산에 대한 총액(lump-sum) 지급액과 실제로 유급 육아휴직 급여의 자격이 되는 부모의 수에 대한 국가간의 서로 다른 규칙들이 더 포괄적으로 획득된다. 휴가 시스템의 국제적인 비교에 영향을 주는 다른 아동 관련 정책에서도 차이가 있다.

- 다른 아동 급여의 역할. 예를 들면 호주는 비록 2009/2010예산에 대한 개혁 제안서에 유급 휴가의 도입이 포함되었지만, 현재는 유급 출산 휴가가 없는 OECD의 2개국 중 한 국가이다. 게다가 출생에 대한 총액급여의 유의한 증가(그림 4-7)와는 별개로 호주는 1인 부양자 가족에게 자산조사에 기초한 가족 세금급여를 제공하는데, 그런 급여는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는다(PF3).
- 몇몇 국가들은 매우 어린 자녀에 대해 추가적인 높은 아동 급여를 주거나 공공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매우 어린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가정양육급여”를 제공한다(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경우).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처럼 지방정부는 휴기중인 부모에게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고, 독일에서 몇몇 지역은 1/3년에 대해서 휴가급여를 준다(출산 후 처음 2년동안은 연방정부에서 휴가급여 제공). 그런 급여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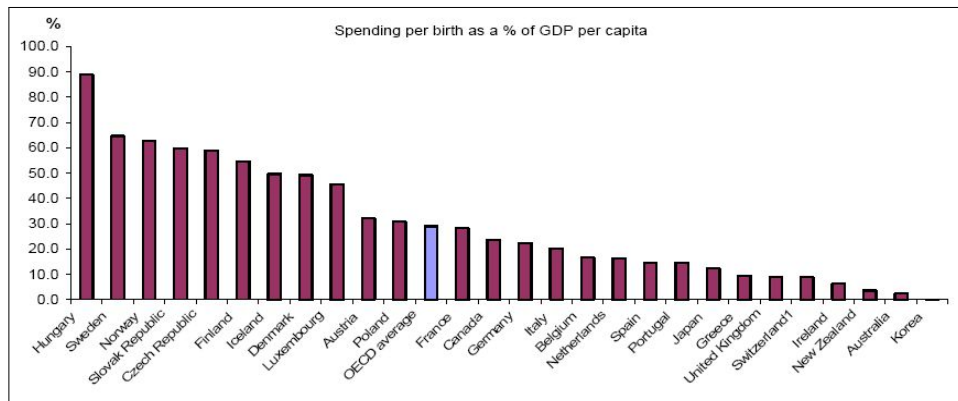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고 국가적인 가정양육급여에 추가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재정에서 제공되는 가정양육급여도 포함되지 않는다.

- 출산 및 육아휴직 중인 사람들에 대해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충(top-up)급여액(법정 최저임금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기업, 부문과 국가별로 차이가 나지만 많은 OECD 국가에서 이들 급여는 지표들이 종종 휴가중인 부모들의 총 급여 소득을 나타내므로 과소평가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림 4-6] 출산휴가, 부성휴가와 육아휴직 이용, 2006/2007(PF7.1)



[그림 4-7] 아동 1인당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지출, 2003(PF7.2)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

각 통계에 대한 자료원은 다음과 같다.

- MISSOC(2008); 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 in the EU and EEA, Table IV-Maternity(<http://ecc.europa.eu>)
- Moss and MKorintus(2008),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08, DIII Employment Relations Research No. 100.*
- OECD, *Babies and Bosses(Various issues).*
- Ray(2008), *A detailed Look at Parental Leave Policies in 21 OECD Countries*, CEPR, Washington.

2) 아동출산과 관련한 부모별 휴가 사용율(use of childbirth-related leave by mothers and fathers, PF8)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부모의 휴가수급권한의 사용(use of leave entitlement)은 국가간 차이를 고려해야한다. 출산을 둘러싼 휴가 권리(어머니 출산 휴가, 아버지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허가와 관련한 범위는 선행 조사에서 보듯이 제한적이고, 기준 접근의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간 차이 비교는 고려해볼만 하다(PF7). 게다가 부모가 전부 육아휴가 기간을 가질 때조차, 항상 이 권리의 전부를 사용하지 않는다. 몇몇 부모들(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주로 관계가 있다)은 그들이 일하지 않는 장기간의 휴가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경력관리와 소득향상에 방해가 될 것 같아 내키지 않아 한다.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 지원 가능성은 부모의 휴가권리 사용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머니 출산휴가는 모두 의무적으로 비교적 이전 소득의 높은 비율로 지불되나, 반면 장기의 아버지 출산휴가기간(그리고/혹은 가정돌봄급여)에는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로 지급된다. 아버지 출산휴가는 종종 비교적 짧은 기간의 시간으로 생각되고(빈번히 2주이내), 100%의 임금이 지불되는 것으로 기여한다.

휴가 사용의 종합적인 평가는 이상적인 2가지 지표를 포함한다. 아이를 가진 일하는 부모들 중에서 해당하는 부모들의 비율,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부모들 중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비율(take-up rates)이다. 그러나 휴가를 가는 사람의 수, 그리고/혹은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들의 정보(행정 통계)는 입수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격인구의 종합적인 정보는 없다. 그러한 정보는 종종 주제를 갖는 특정한(그리고 부정기적)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 가능하게 되나, 질문과 조사방법에서의 설문조사 간의 차이로 사용률을 비교할만한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란 어렵다.

유럽노동력조사(The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ELFS)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고용된 부모가 휴가를 얻은 것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ELFS는 주어진 해에, 휴가를 갖는 부모의 비율(어머니 출산휴가, 아버지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가)을 아직 1세가 되지 않은 자녀를 가진 고용 인구 사이에서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이용률에 관한 지표는 아니다. 이것은 육아휴가의 사용을 육아휴가권의 적용범위 안에서 국가간의 차이에 의한 영향으로서 측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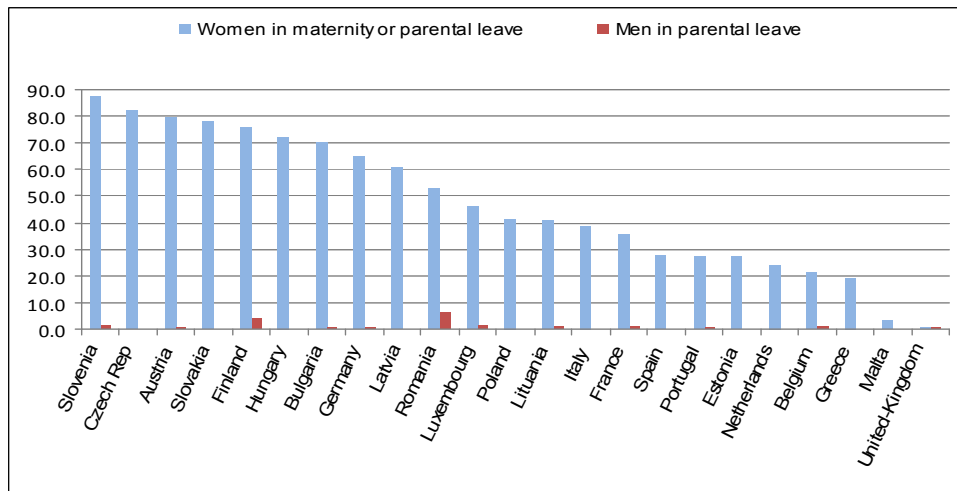
그림 4-8은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고용된 부모에 관한 것이고, 그림 4-9는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비율과 아동의 출생 순서에 의해 비교한 것이다. 통계는 부모가 법적인 어머니 출산휴가, 아버지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가, 그리고/혹은, 계약상 고용주가 제공하는 휴가를 고려한다(PF7 참조). 휴가이후의 여파로 일하지 않거나, 육아 휴가 급여의 지급이 중지된 부모들은 ‘휴가 중’으로 계산되지 않으나,

비활성으로서 구분된다. 육아휴가기간이 일반적으로 짧기 때문에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설문조사시기에 아버지 출산휴가를 갖기 위한 가능성이 낮았고(아래 참고), 그 이유로 그림 4-9는 어머니들만 고려하였다.

나. 주요 결과(key findings)

그림 4-8은 1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남성과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출산과 육아휴직은 합산해서 고려되는데, 휴가날짜가 구분되지 않거나 종종 아동 출생이나 입양의 첫해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림 4-8은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데 어머니들보다 아버지가 훨씬 덜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게다가 정책적으로 어머니들의 휴가기간의 연장을 촉진하는 국가(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핀란드, 슬로베니아와 슬로바키아 공화국)들에서는 자녀의 생후 1년동안 휴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4-8]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피고용인 부모의 휴가 사용 비율(PF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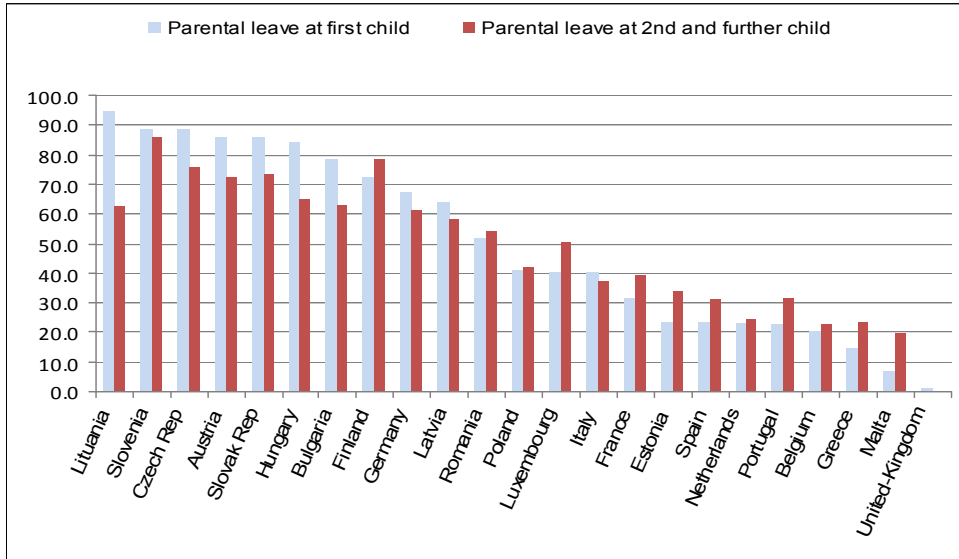


자료: The European Labor Force Survey, 2006.

그림 4-9는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휴가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핀란드를 제외)들은 둘째나 셋째 자녀에 대

해 휴가를 사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대조적으로 어머니의 휴가 사용 비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둘째나 셋째 자녀에 대한 휴가 사용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림 4-9] 1세미만 자녀가 있는 모의 자녀 출생순위별 휴가 사용 비율(PF8.2)



자료: The European Labor Force Survey,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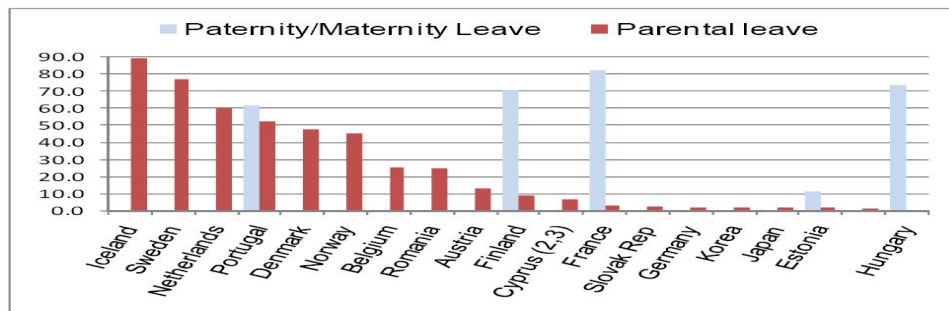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유럽노동력설문조사는 다양한 이유로 하향 편중하는 휴가에 관해 대략적인 추측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간(1년 이상)의 무급 휴가를 갖는 부모들은 비활동인구로 확인되는 반면에 시간제 휴가를 갖는 부모들은 계속 고용된 것으로 계산된다. 게다가, 휴가를 얻은 사람의 비율이 측정되고, 휴가사용의 가능성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특히 유급)에 의해 결정된다. 아버지들의 휴가 사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의 휴가기간보다 매우 짧고, 아버지들이 휴가를 사용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여러 나라들은 출산휴가 정책의 사용에 대한 다소간의 세부 정책들을 제공한다. 통계치는 측정방법의 차이 때문에 엄격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별, 성별에 따른 출산휴가의 사용은 매우 큰 차이점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림 4-10은 출산휴가 사용의 성별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육아휴가를 사용한 아버지들의 총 숫자와 어머니 출산휴가를 사용한 어머니들의 수를 비교하거나, 적어도 육아휴가의 하루라도 사용한 아버지와 일치하는 어머니의 숫자를 비교하여 그 해당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그 비율이 항상 100% 미만인 것은, 휴가를 사용하는 아버지의 수가 여성의 수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 출산휴가를 갖는 아버지의 비율은 육아휴가를 갖는 아버지보다 높는데, 특히 아버지 출산휴가가 있는 핀란드나 프랑스는 육아휴직의 혜택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보수가 좋다.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은 비교적 높은 비율인데, 100명의 여성 당 89명, 77명의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실시한다, 반면 독일, 일본, 한국에서는 여성 100명당 2명 이하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그림 4-10] 휴가 수급권을 사용하는 어머니 대비 아버지의 비율, 2007(PF8.3)



주: 1) 일본은 2005년, 아이슬랜드는 2006년.

자료: 육아휴직에 대한 Family Database 설문지에 대한 각국의 답장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임. 아이슬랜드는 Social Protection in the Nordic countries, 2006/7.

휴가 사용 비율의 차이는 휴가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인구에 대한 통계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포착하기 어렵다. 각국에 보낸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통계와 육아휴직에 대한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의 고찰 모두에서 성별과 임금율이 자녀의 출생 후 사용하는 휴가의 명백한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다.

- 호주는 2005년 임신과 고용 동향조사(Pregnancy and Employment Transition Survey)에서 출산 전에 직업을 가졌던 어머니 중 2세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의 73%가 평균 34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만이 유급휴가를 사용, 22%만이 무급 휴가를 사용, 그리고 37%는 유급과 무급 휴가를 혼합해서 사용하였다(AST, 2007). 이전의 호주의 육아휴가 서베이(Parental Leave in Australia Survey)에서는 68%에 해당하는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2003년 3월과 2004년 2월사이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고, 반면 아버지의 경우는 30%였다. 25%정도에 해당하는 아버지는 유급 아버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고, 10%에 못미치는 아버지가 무급 아버지/육아휴가를 사용하였다. 아기를 낳은 고용인의 약 80%가 육아휴가에 해당하나, 아버지들은 명확하게 그들의 권리 사용에 제한되어 있다.

- 벨기에에서는 사적 영역에 고용된 많은 수의 여성들이, 2002-2007년에 육아휴가 사용이 두배 증가했으나, 아버지들의 경우 7배가 증가하였다(Maron et al., 2008). 그러나 여전히 남자는 27%의 부모가 육아휴가를 갖고 있는 것 보다 더 나타나지는 않는다. 게다가 그들 대부분은 결근 기간을 갖는 것 보다 그들의 주중근무시간의 1/5정도를 줄이고 있다.
- 캐나다는 2006년에 아이를 낳았거나 입양한 어머니의 90%가 출산휴가를 가졌고, 그 중 약 10%정도가 무급 휴가를 받았다(Beaupré and Cloutier, 2007). 반면 2001년과 38%과 비교하면 약 55%의 아버지들이 약간의 출산휴가를 얻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2005년에 시작된 퀘벡 육아 보험제도(Régime Québécois d'Assurance Parentale)가 아버지 할당량으로 전환될 수 없음을 포함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퀘벡에서 아버지 출산휴가의 사용은 현재 대략 80%정도이다.
- 덴마크에서는 약 99%이상의 어머니들이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94%가 육아휴가를 사용한다, 89%의 남성이 아버지 출산휴가를 쓰지만 단지 26%의 아버지들만이 육아휴가를 사용한다(SFI, 2007)
- 프랑스에서는 2007년 어머니 출산휴가에 해당하는 약 97%의 어머니들이 사용하였고, 아버지 출산휴가는 약 66% 정도가 가졌다.
- 독일에는 2007년 1월에 휴가개정이 되어서, 2006년 마지막 분기 동안 해당하는 아버지의 3.5%가 육아휴직을 가졌으나, 2008년 첫 번째 분기에는 14.3%가 육아휴직을 이용하였다.

- 아이슬란드에서 대부분의 모든 여성이 그들의 육아휴직권리를 갖고 있고, 약 90%의 어머니들의 기본적으로 3달간의 출산휴가보다 더 사용한다(Eydal and Gislason, 2008).
- 아일랜드에서는 육아휴직이 무급이고, 이행율도 매우 낮고, 특히 아버지들이 그러하다(5%).
- 일본에서 육아휴직의 이행율은 어머니는 약 72%정도이나, 2004 4월에서 2005년 3월 사이에 육아휴직을 가진 남성 근로자들은 단 0.5%에 불과하다.
- 네덜란드는 어머니출산휴가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며(가장 최대) 100% 사용이 간주된다. 육아휴직은 무급이고(비록 고용주가 지불할지라도, 정부는 지급하지 않음), 그러나 유급이고 2007년에는 해당하는 114,000명의 어머니중 약 44%정도가 사용하였다; 143000에 해당하는 아버지들은 21%가 이행하였다. 그래서 더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반면 그것의 사용은 덜하다.
- 뉴질랜드에서는 2005년, 10명중 8명의 어머니가 유급 육아휴직에 해당하여 사용한다(DoL, 2005)
- 2006년 6월 현재 미국 인구 조사의 기본적 추정에서, 어머니 출산/육아 휴가를 갖는 여성의 비율은, 약 1/3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첫달에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휴가 기간은 비교적 짧으며, 20%의 어머니들이 자녀가 3개월차까지 휴가를 갖는다.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

각 통계에 대한 자료원은 다음과 같다

- Beaupré P. and E. Coulier(2007), *Vivre les transitions familiales: resultants de l'enquête sociale générale*, Statistics Canada.
- OECD, *Babies and Bosses (various issues)*.
- DoL(2005), *Parental Leave in New Zealand-2005/2006 Evaluation*, Department of Labor, New Zealand.
- Moss P. and K. Wall,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07, *Employment Relations Research Series 80*, Department for Business, United Kingdom.

- NOSOSCO, *Social protection in Nordic Countries*, 2005.
- Eydal G.B. and I.V. Gislason(2008), *Equal rights to earn and care-Paid parental leave in Iceland*, Felags og Tryggingamala Raduneutid
- SFI(Danish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2007), *Evaluering af den fleksible barselsorlov*.
- Maron, L., D. Meulers, and S. O'Dorchai, Le congé parental en Belgique, Brussels Economic Review, n° special, *Parentalite et Emploi*, 51(2/3), pp. 347-363.

3) 근로하는 부모의 추가적인 휴가 수급권(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for working parents, PF9)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출산을 둘러싼 휴직 권리(PF8)에 더하여, 일하는 부모는 그들의 일과 가정생활 몰입을 맞추기 위해 며칠간의 휴가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조항은 출산 초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가족 휴가”중 몇몇 조항은 특별히 노후생활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경향이다. 이 지표는 세 가지의 범위 집단에서 법정 휴가 제도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다: 연간유급휴가(paid annual leave), 부양가족 돌봄 휴가(periods to care for dependents),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가와 휴직(career breaks and leaves for taken for personal reason)이다. 개별 사용주가 별도로 제공하는 휴가와 노사합의에 따른 휴가는 여기에 포괄되지 않지만, LMF10에서는 포함할 것이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기업은 여기에 월차휴가를 포함하지 않고 근로의 변화나 유연한 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연간유급휴가일수days of paid annual leave는 법정 공휴일과 공공 휴일을 말한다. 공공휴일은 정해진 날짜이나 연례 휴일은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선택에 따라 정해진다(주 생산 기간을 유념하고 기간을 알림). 휴일의 수는 노사합의에 따라 정해

지며 종종 법적 최소 수준보다 높다. 유럽 국가들은 1993년 EU 근무시간 권고(Working Time Directive)에서 유급 연간 휴일의 기준을 최소 4주로 정하였다.

부양가족돌봄을 위한 휴기Time-off periods to care for dependents는 친척, 파트너나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자와 함께하는 고용인을 위한 권리이다. 이 조항 중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은 육아휴직으로 간주된다(PF8). 자기자신의 병이나 가족 구성원의 장애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 등으로 인한 간호휴가 등은 특별한 상황을 위해 예비된 것이지만 때로는 근무시간(일단위, 주단위, 월단위 혹은 연단위)의 축소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는 근무시간 제도의 유연화로 간주하여 LMF10에서 논의할 것이다.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직무휴가나 휴직Career breaks or time-off for personal reasons은 긴급, 사고나 부상과 관련된 월차이다. 몇몇 경우 이러한 권리는 명백하게 아동돌봄제도와 함께 기대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

나. 주요 결과(Key findings)

대부분의 OECD와 EU국가에서는 근로자를 위해 최소한의 법정 유급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그런 법정 최저 임금이 연방 수준에서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실제로 유럽의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공휴일을 포함해서 1년에 약 30-35 일간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공휴일의 수가 많아 전체적인 휴가 일수는 유럽의 실제 휴가일 수와 비슷하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녀가 아프거나 부양 친척에 대해서 추가적인 휴가의 자격을 제공한다(표 4-7). 미국에서는 연방수준의 추가적인 법정 휴가 급여는 없지만 이러한 휴가는 주 단위로 입법된다. 예를 들면 2004년에 캘리포니아주는 심각하게 아픈 자녀나 부모 혹은 배우자를 돌보는데 사용되는 부분적인 유급휴가를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6주까지 제공하는 포괄적인 유급 가족법을 제정했다.

〈표 4-7〉 법정 휴일과 노사합의된 연휴가일 수, 2007(PF9.1)

	유급휴가일수		
	법정 최소	노사합의	공휴일
호주	20	..	8-10
오스트리아	25	25	10
벨기에	20	..	8
캐나다	10-20	..	10
체코	20	25	8
덴마크	25	30	9
핀란드	20	25	10
프랑스	25	25	11
독일	20	30	9
일본	10-20	..	15
한국	8-20	..	14
네덜란드	20	25.6	8
뉴질랜드	(15)20	..	11
노르웨이	21	25	8
스웨덴	25	33	9
영국	24	24.6	8
미국	0	..	10

주: 1. 캐나다, 일본, 한국과 스위스에서 최저 휴일 사용의 기간은 정년에 따라 증가함.

2. 연방국가에서 지방시군구와 주의 차이는 중요함. 전형적으로 이러한 관할지역별로 1일 혹은 2일 이상의 공휴일이 있으나 캐나다 Newfoundland 지역은 6일의 추가적인 공휴일이 있음.

자료: EU국가들은 EIROnline의 Working time developments-2007; 그 외 국가들은 OECD(2007), Babies and Bosses.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픈 아동의 돌봄을 위한 단기적인 휴가(포르투갈에서는 30일 까지)가 있다. 그런 특별한 돌봄휴가가 빈번하게 이용되지만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예를 들어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혹은 영국), 노사협약에 따르거나(예, 핀란드), 전체 연휴가일수 중 잔여기간에 따른다(예, 프랑스).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 혹은 노인 친척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건은 국가마다 현저히 다를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이 보장된 채 몇 년씩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된 기간 동안 소득 보장은 제한된다.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많은 나라들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권리를 제공하여 그들이 아픈 자녀나 다른 친척을 단기동안 돌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 부모가 그들 자신의

병가휴가를 사용하는지, “긴급 돌봄“을 위해 공휴일 권리를 사용해야만 하는지에 관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게다가 몇몇 나라들(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과 영국을 포함하여)은 돌봄이 필요하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제공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LMF10에서 할 것이다.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

각 통계에 대한 자료원은 다음과 같다.

- Moss P. and K. Wall,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06*, DTI Employment Relations Research Series, No, 100(<http://www.berr.gov.uk>).
- OECD(2007), *Babies and Bosses-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표 4-8〉 근로하는 부모들의 추가적인 휴가 이용, 2006/07(PF9.2)

국가	목적		법정	기간	지급조건
	부양친인척 돌봄	개인적인 사유			
호주		○		10일	소득 100% 지급
캐나다	가족구성원에 대한 임시적인 보호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뉴브런즈윅: 3-5일 퀘벡: 10일	
	가족구성원이 명확한 사망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			26주 기간내에 8주	무급이나 6주까지는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과거 52주동안 600시간 이상 일했다면)
덴마크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의 사망위험시 보호				보호급여
핀란드	10세 이하의 아픈 아동에 대한 보호			2-4일, 기간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음	급여는 노사합의에 따름

4) 아동관련 휴가로 본 한국의 현황

한국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일가족양립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모성과 영아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현행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90일을 사용하되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 급여는 전일제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출산휴가의 기간은 짧은 편이지만 전일제 임금 대비 수당의 비율은 100%로 높은 수준이다. 급여 수준이 이렇게 높은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이들 국가는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친 국가들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육아휴직의 기간은 다소 길지만 급여수준은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다. 2009년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 정액이다. 어린 영아를 키울 비공식적인 서비스 제공자가 없을 경우 기관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0-3세의 어린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노동시장에 있던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역시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이 M자형 곡선을 그리는 것과 관련이 깊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출산을 맞는 남성들에 대한 ‘배우자출산휴가제’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나 휴가기간이 3일로 짧고 할당제의 성격이 아니므로 휴가 수급자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실제 휴가수급자의 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휴가의 경우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자녀 1인당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지출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급여가 고용보험체계에서 이루어지고 무급가족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의 휴가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빈곤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성 한부모 가구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 어린 영아에 대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중분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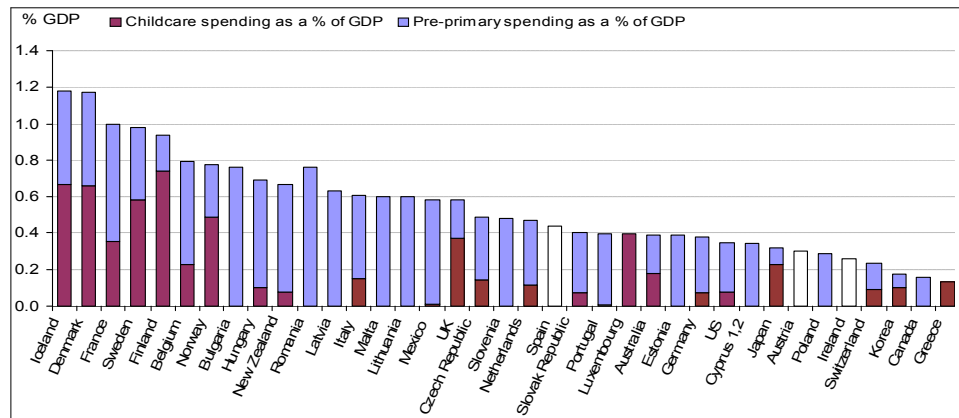
1)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지출(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PF10)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유아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은 공식적인 보육시설(e.g 영아전담보육시설, 어린이집, 3세이하 이동을 위한 가정보육시설)과 취학전 교육시설(3-5세사이의 아동에 대한 전통적인 보육과 함께 종종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포함)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전체 공적재정지원(현금과 현물, 조세제도를 통한 지원 등, PF12 참고)이다.

아동 1인당 보육지원에 대한 공공지출(Public Spending)은 각국의 아동보육 지출(Expenditure)을 3세미만 아동의 수로 나눈 것이다. 반면 유아 1인당 취학전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은 교육시설에 대한 공공지출을 이들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의 수로 나눴으로써 계산된다.

[그림 4-11] 보육·유아교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GDP 대비 비율(%), 2005(PF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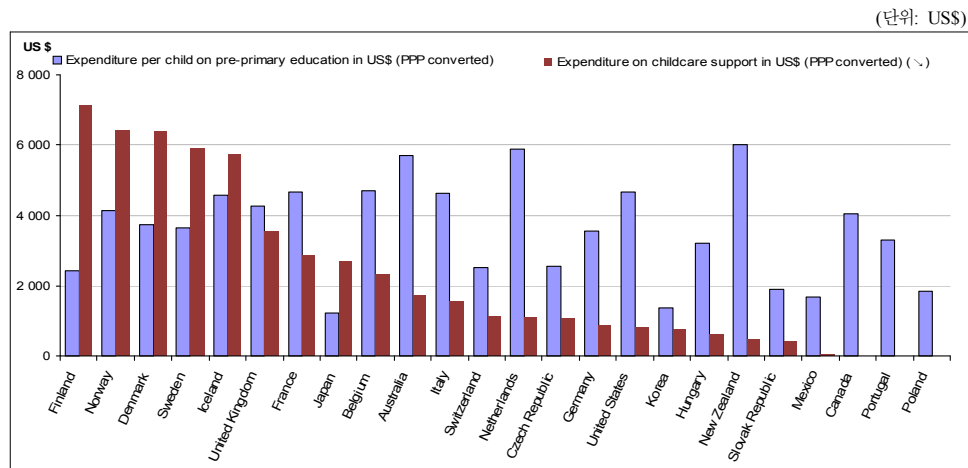
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수치는 교육 수준별로 구분할 수 없음.

자료: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5; OECD Education database; Eurostat for Non-OECD countri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나. 주요 결과(key findings)

3세미만 아동의 공식적 보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 가장 높고, 아동 1인당 지출 역시 이들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남유럽 국가에서 아동보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낮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전형적으로 취학전 교육 참여가 시작되는 3세 미만의 어린 자녀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보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아동 1인당 보육에 대한 공공지출 또한 민간 부분의 보육이 우세한 국가에서 더 낮게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에서 가구의 지출이 취학전 아동 지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4-12]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2005(PF10.2)



자료: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5; OECD Education databas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지방 정부는 종종 재원 조달과 때로 아동보육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노르딕 국가에서 기록을 유도하지는 않지만 다른(종종 연방) 국가에서 국가간 비교를 위해 아동보육에 대한 공공 지원의 자료를 취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이는 지방정부가 아동보육서비스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재원들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일반적인 정책교부금(block-grants)을 이용하거나 스위스처럼 아동보육에 대한 지방 정부의 지출에 관한 정보는 중앙정부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이슈들은 연방 국가에서는 제한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지방자치구는 주민들을 위해서 아동보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구에 제공된 정부의 정책 교부금에서 재원조달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사회복지수급자에 대한 아동보육 지원을 재원 조달하는 것과 같이 소득보장수급자에 대한 노동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중앙 정부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아동보육과 조기교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Public Expenditure)은 매 2년마다 OECD 사회지출통계와 연간 UOE(유네스코/OECD/Eurostat) 통계의 교육항목 각 각에서 가져온다. 비 OECD 국가의 통계는 Eurostat 통계에서 가져온다. 그러나 이것은 미취학 교육의 지출만 포괄하며(ISCED-0); 3세 이하의 아동보육은 없다. 통계치는 2005년 자료이다. GDP 통계는 OECD 국가 회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다.

아동보육지원의 더 낮은 비교를 얻기 위해, 이 지표의 통계는 국가각 차이를 비교를 위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의무나이를 조정하였다(아래에 있는 자료에는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음). 몇몇 노르딕국가들은 초등학교에 7세에 입학하고, 그 이전 해에 취학전 학교에 가도록 한다. 비교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러한 6세에 대한 지출은 제외하였다(때때로 추측하는 것이 교육과 6세의 수에 관한 사용가능한 통계의 근거로 끌어낼 수 있다). 유사하게, 아동이 5세에 학교에 입학하는(아동보육과 미취학 통계를 포함하지 않음) 나라를 위해, 호주, 뉴질랜드와 영국에 대한 미취학 지출 통계를 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에서 지출을 연결하여 더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몇몇 나라들, 호주와 아일랜드는 취학전 학교 서비스를 초등학교에서 제공해서, 사립과 공립시설 사이에서 등록하는 경우 지출 통계가 분리되어 제공될 수 없다. 그러므로 미취학 교육에서 한 아동당 지출은 현재 입수할 수 없다.

종종 사용자는 그들의 고용인의 아동보육 지원에 대한 경비를 보고할 이유가 없다, 이 이슈에 관한 정보는 실태조사나 노조협약으로부터 조금씩 알 수 있다.

아동당 유아교육과 아동보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 구매력 평가지수를 사용

하여 USD로 변환하였다. 이 변환은 국가간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

각 통계에 대한 자료원은 다음과 같다.

- OECD, *Babies and Bosses(Various issues)*.
- OECD Education database.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8*
- Various national sources.

2)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률(Enrollment in day-care and pre-schools, PF11)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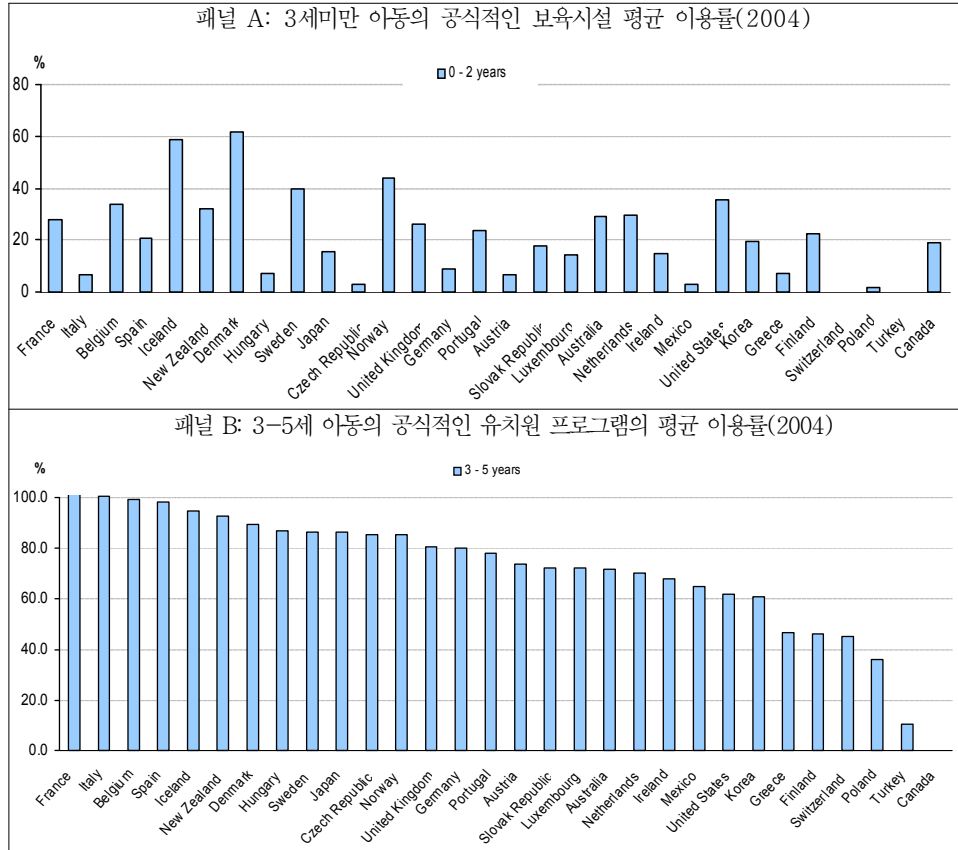
아동보육의 서비스 제공은 국가마다 매우 다르지만(PF13), 여기에 제시된 0-2세 아동에 대한 주요한 이용률은 주로 어린이집에서의 집단 보육, 등록된 보육교사가 그들의 집에서 한명이나 그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보육시설, 가족 구성원이 아니지만 집에서 함께 사는 보육자에 의해 제공되는 보육과 같은 공식적인 보육시설에 관한 것이다. 3-5세 아동에 대한 이용률은 공식적인 취학 전 교육 서비스의 등록에 관한 것인데, 몇몇 나라에서는 4세 혹은 5세에 초등학교에 진학하기도 한다(방과 후 교육에 관한 분리된 조항이 개발될 예정임). 이 지표에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등록된 3-5세의 모든 아동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관들이 각국에서 정규교육의 일부분 인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

나. 주요 결과(Key findings)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용률은 단일 연령마다 계산될 수도 있고, 다른 국가에서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이용률은 3세 단위의 연령 코호트에서만 유용할 수도 있다. 모

든 OECD 국가에서 3-5세 아동에 대한 이용률은 단일 연령 아동별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림 4-13은 0-3세, 3-5세의 연령 집단에 대한 평균 이용률을 보여준다, 연간 이용률은 표 4-9에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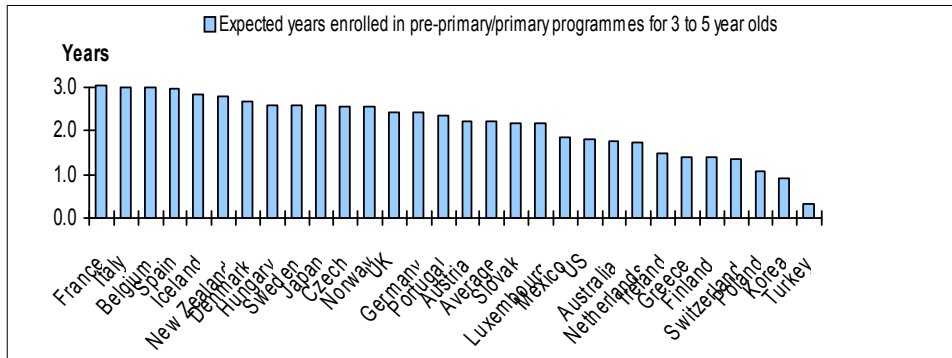
[그림 4-13] 6세미만 아동의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이용률, 2003/04(PF11.1)



자료: OECD Family database and OECD Education database.

유치원 대기율은 유치원 이용률이 얼마나 포괄적인가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다. 유치원 대기율은 3-5세 아동의 연령별 순 이용률을 요약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유치원 이용률은 3년에 가깝고(예를 들어 벨기에, 프랑스와 스페인), 이는 전체 3세 연령 집단에서 100% 유치원 이용률로 나타낸다. 유치원에 참여하지 않는 3(그리고 4)세 아동의 비율이 더 낮다. 유치원 대기율은 반일제와 전일제 여부, 연간 공휴일의 수와 같은 국가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림 4-14] 3-5세 아동의 유치원 대기율(PF11.2)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2006년 12월에 가족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기 전에 각국에 확인을 위해 아동보육·교육통계를 보냈다. 정규 보육서비스에서 매우 어린(3세 이하) 아동의 참여 통계는 매우 다양한 출처에서 왔다.OECD babies and bosses reviews, the OECD Educational Database, the Eurodyce database, NOSOSCO 노르딕 국가의 사회복지 리뷰와 각국 통계청 및 출판물들.

아동이 하나이상의 파트타임 프로그램에 등록되면, 이중 카운팅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 예로 몇몇 나라에서 유치원은 오직 반일만 운영한다. 그러므로 아동이 오전에는 유치원에 가고 오후에는 가족 데이케어에 가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영역은 일반적으로 함께 보고되고, 한 아동이 2번 집계될 수 있다. 이용률에 과대산정으로 이어진다.

각국별로 다양하게 고려되어 사용되는 아동보육의 참여도는 표 4-9에 전부 반영되지 않는다. 그 예로, 스웨덴에서 아동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6시간, 한주에 5일 이용하는데, 네덜란드는 정규아동보육이 일주일에 오직 하루나 이틀이며 보기 드문 일이다. 전일 아동보육 참여를 산정하는 정보는 아직 3세에게는 유용하지 않다. 표 4-9는 0-3세의 모든 아동이 분모로 포함했는데, 많은 나라에서 유급휴가제도로 아동의 처해를 보호하려고 해서(PF 7), 이 연령대의 이용률은 낮을 것이다.

몇몇 나라들(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멕시코와 미국을 포함)은 아동보육의 중요한 부분이 사적 혹은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제공되어, 충분하게 신고하지 않아 유효 이

용률이 과소평가된다. 불충분한 신고로 인해 나라들의 조기교육과 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정부의 부분적이거나 완전한 재정지원 전달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캐나다, 멕시코, 스위스와 미국에 쟁점으로 보고되었다.

〈표 4-9〉 6세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이용률, 2004(PF11.1)

	3세미만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과 3-5세 아동의 유치원 이용률				교육체계 편입
	3세미만	3세	4세	5세	3-5세
호주 ¹⁾	29.0	55.0	64.6	90.9	1.8
오스트리아	4.1	45.9	82.1	93.1	2.2
벨기에	38.5	99.3	99.9	99.7	3.1
캐나다 ²⁾	19.0
덴마크 ¹⁾	61.7	81.8	93.4	93.9	2.7
핀란드 ³⁾	22.4	37.7	46.1	54.6	1.4
프랑스 ⁴⁾	26.0	100.0	100.0	100.0	3.2
독일 ²⁾	9.0	69.5	84.3	86.7	2.4
이탈리아 ⁵⁾	6.3	98.7	100.0	100.0	3.0
일본	15.2	67.3	95.2	96.6	2.6
한국 ¹⁾	19.9	59.5	66.4	88.7	0.9
룩셈부르크 ³⁾	14.0	37.9	83.5	96.9	2.2
네덜란드	29.5	32.3	74.0	98.4	1.7
뉴질랜드	32.1	82.1	95.1	100.0	2.8
노르웨이	43.7	79.4	86.9	89.0	2.6
스웨덴	39.5	82.5	87.7	89.7	2.6
스위스	..	7.2	34.4	89.7	1.3
영국	25.8	50.2	92.0	98.2	2.4
미국 ¹⁾	29.5	41.8	64.1	77.0	1.8

주: 1) 참조년 2005; 2) 참조년 2001; 3) 참조년 2003; 4) 참조년 2002; 5) 참조년 2000
 자료: OECD Family and Education databases.

3-5세 아동의 이용률은 인구조사에 근거하여 주로 UOE 교육 통계(조직 내부자료인, UNESCO, OECD, EUROSTAT에 의해 공동으로 만들어진 통계데이터베이스)를 출처로 한다. 주로 취학 전 프로그램이 ISCED 0로서 분류되어(ISCED는 국제 교육 분류에 의한 교육 등급을 의미함) 이것이 중앙 혹은 학교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이고 교육적이며 아동 개발 욕구를 충족하는 형태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나라는 4,5세의 유효한 수의 아동이 초등학교 프로그램에 등록하며(ISCED 1), 대표적으로 영국이 그러하다. 이용률은 3-5세의 모든 아동들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이 분류하는 것 이하의 ISCED 등급과는 상관없다. 또한 어떤 나라는 (호주와 한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유효한 비율의 아동들이 ISCED 0등급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데이케어 프로그램에 등록하며, 그 커리큘럼은 교육적인 내용의 절반도 담고있지 않았거나, 대부분의 직원이 인지할만한 자격을 갖지 않고 있다(ISCED에 따르면). 여기에 등록된 아동은 위에 보이는 이용률에 포함된다.

통계 수집의 다른 방법을 사용한 다른 출처는 보다 국제적인 비교에 방해가 된다. OECD 교육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취학전 시설 등록은 이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학생수에 분모로 인구통계(population data)의 사용을 통해 계산된 퍼센트에 기반하여 보여진다. 같은 규칙을 3세 이하의 실제 아동보육 시설 등록한 몇몇 국가에 적용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아동보육 시설 자료가 가구조사의 매개물을 통해 수집되어 자료의 질이 샘플 크기와 샘플 선택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

각 통계에 대한 자료원은 다음과 같다.

- NOSOSCO, *Social Protection In Nordic countries(various issues)*.
- OECD, *Babies and Bosses(various issue)*.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6*.
- OECD, *Starting Strong*(2 issues and various country notes).
- Eurodyce database(EUROSTAT)
- Various national sources.

3) 자녀보육비지원(Childcare support, PF12)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육기관에 아동보육비(e.g. 어린이 집, 가정보육시설)를 지불한다. 통계는 2세와 3세아가 전일제 보육을 한달간 받을

때 지불하는 요금을 나타낸 것으로, 아동보육이 제공되지 않는 기간(e.g. 방학)은 포함하지 않는다. 비용에 관한 정보는 시간당 보육비용으로 제공되는데, 전일제 보육은 주당 40시간이라고 가정한다. ‘비용’은 부모가 지불하는 총액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정부기관이나 사적 기부를 받은 보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총 비용은 아동보육 관련 현금 급여, 세금 혜택이나 부모에게 유용한 환급 가능한 조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보육비용이 가족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일 때는 최대 적용 가능한 비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비용이 규정에 근거하거나 모든 시설에서 동일하면, 평균이나 “전형적인” 비용을 제시하였다.

지금 정의된 것처럼 순 자녀보육비용은 비용에서 현금 급여와 조세 환급, 세금 감면을 뺀 것이다. 보육서비스 제공자별로 징수한 총 비용에서 후자들을 빼면 부모의 순 비용이 되고, 일례로 공식적인 아동보육시설의 사용에 대한 “현금 지불” 경비가 된다. 2세아와 3세아에 대한 전일제 보육과 관련한 순 자녀보육비용의 계산은 전형적인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것이다. 결과는 아래에 나타난다.

세금 감면과 현금급여는 고려되고 주로 아동 보육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급여들”(예, 가족 혹은 주거 급여)은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비용은 가구 소득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보육비용은 가족상황과 소득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가구 상황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 모두 전일제로 일하는 기혼 커플로 1명은 평균 임금(AW 100%), 1명은 평균 임금 이하의 소득(AW 67%)을 버는 경우.
- 전일제로 일하는 한부모로, 평균 이하의 소득인 경우(AW 67%).

나. 주요 결과(Key fi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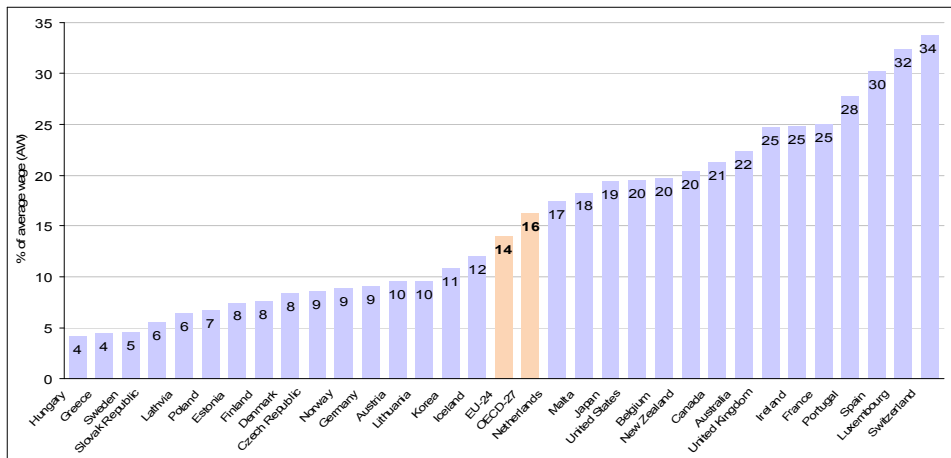
아동보육시설(부모 직접 양육,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보육)의 선택은 많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비용적절성 affordability이다. 그림 4-15는 OECD 국가에서 전일제 2세 아동에 대한 “전형적인” 아동보육비를 보여주는데, 평균적으로 소득의 16%를 넘으나 국가간 차이가 크다. 이 금액은 그리스, 헝가리와 스웨덴의 5% 미만에서부터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

위스의 30%까지 다양하다. 여기서 나타난 “전형적인” 비용은 각국에서 인가한 아동 보육시설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보육 유형과 지역이나 지방, 아동이나 부모의 특성 등에서의 차이는 무시한다.

많은 국가에서 아동보육비는 종종 저소득 가족에게는 감소되고, 때로 한부모 가족보다 더 싸며, 보육 받는 아동의 수에 따라 다르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감소된다. 이러한 수단의 목적은 형평성과(제한된 수단을 가진 가족에 대한 아동 보육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구학적인 목적(대가족에 대한 아동의 비용을 감소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총 아동보육비용에 대한 국가별 구성은 그다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순 아동보육비용은 확실히 더 낮게 나타난다. 전에 언급했듯이, 아동보육비용은 종종 특별한 상황에서 감소되는데, 이 감소 정도가 크고 광범위할 수 있다. 게다가 부모들이 아동보육을 구매하는 순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다양한 조세 감면과 현금 급여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포함한 이후에도 많은 국가에서 전체 비용은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그림 4-15] 유치원에 다니는 2세 아동의 보육비용(PF12.1)



주: 평균 임금은 “평균적인 근로자”의 임금을 반영함, 상세한 논의는 OECD 2007, pp. 186-7을 참조
 자료: OECD(2007).

167%의 소득을 가지는 2인 소득자 커플 가구에서 전일제 보육을 이용하는 2 자

녀에 대한 평균 현금 비용은 평균 소득의 17%에 달하며(그림 4-16,패널 A),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벨기에와 포르투갈처럼 풍부한 (자산조사형)보육비용 지원 급여가 있어 총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 순 보육비용은 역시 낮다. 이들 국가에서는 2자녀가 있는 가족의 순 보육비용은 전체 가족의 순 소득의 10% 이하이다(그림 4-16, 패널 B). 대조적으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보육은 스위스(취리히)와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들(미국에서 저비용인 국내 서비스 시장은 포함하지 않음)의 근로하는 커플에게 가장 비싸다.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순 보육비용은 평균 소득의 167%를 버는 근로하는 커플은 가족 지출의 약1/3로 가장 높다. 여기서 제시되지는 않지만, 평균 임금의 133%와 200%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을 가지는 2인 소득자 가구의 계산 역시 그림 4-16에서 제시된 것과 유사하다.

비공식적인 보육제도에 의존할 수 없다면 한부모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공식적인 보육을 이용해야 한다. 평균 소득의 67%를 가지는 한부모 가구의 순 아동보육비용은 2인 소득자 가구의 절반 정도 수준인 평균 임금의 8%이다(그림 4-17, 패널 A). 2인 소득자 가구와 비교해서 한부모에 대한 아동보육 비용은 벨기에에서 현저히 낮다. 호주, 뉴질랜드, 포르투갈, 영국과 미국(미시간)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 순 비용 감소는 대상에 초점을 맞춘 아동보육 급여와 환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한부모의 현금 지출 비용은 평균 임금의 40% 이상이다. 게다가 아일랜드에서는 아동보육비용이 가족의 순 소득의 절반 이상이다. 후자는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와 빈곤에 처할 위험을 내포한다.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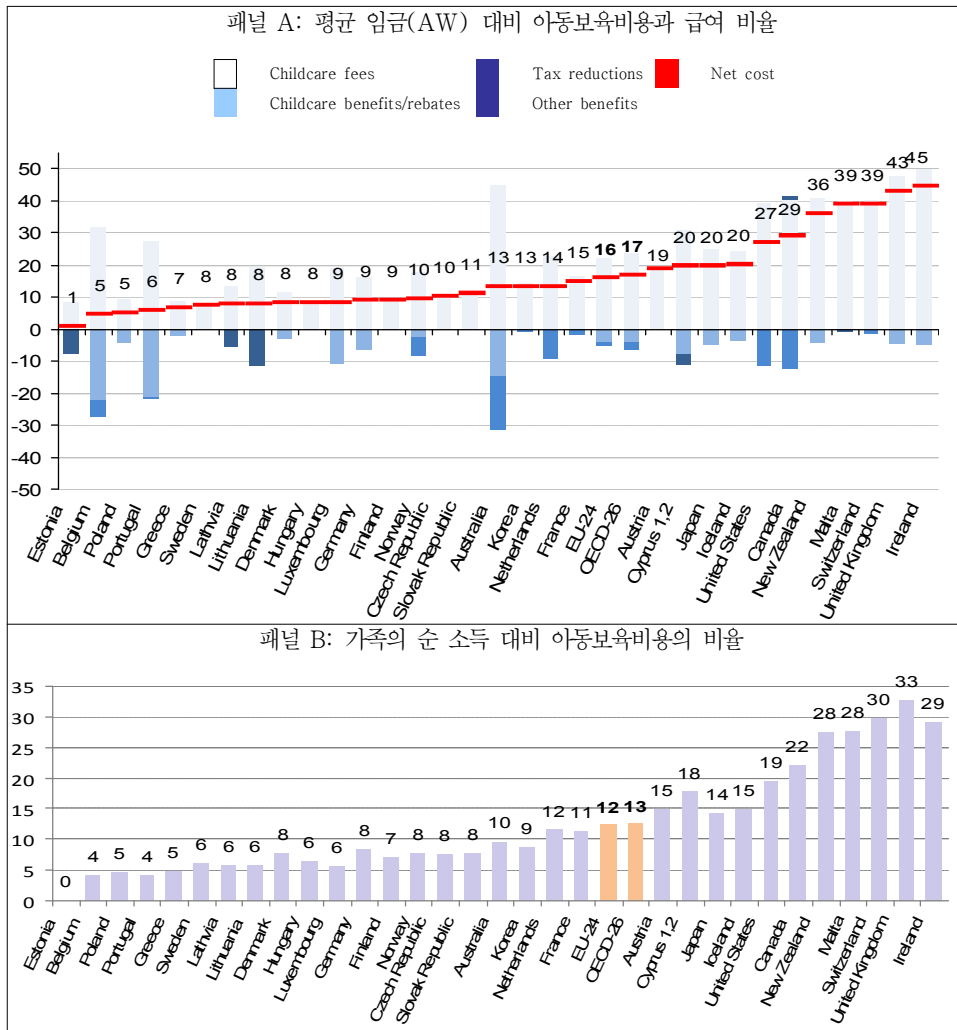
서로 이질적인 제도의 특성을 가지는 영역에서 국제 비교를 의미있게 제공하기 위해서 OECD는 2-3세 아동에 대한 인가된 보육시설의 ‘전형적인’ 비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불가피하게 아동의 나이, 가족 지위, 각기 다른 수입 수준으로 가정되고, 전체 비용은 부모와 아동보육 사용 정도에 따라 지불된다고 가정한다(위 참고).

계산은 비용이 전일제 보육에 대한 지불이라고 가정한 반면 실제에는 국가별, 아

동별 참여의 정도는 상당히 다양하다. 일례로, 스웨덴에서 아동보육시설의 이용은 전형적으로 주당 30시간인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아동보육 참여는 종종 시간제이다. 결과를 해석할 때 이들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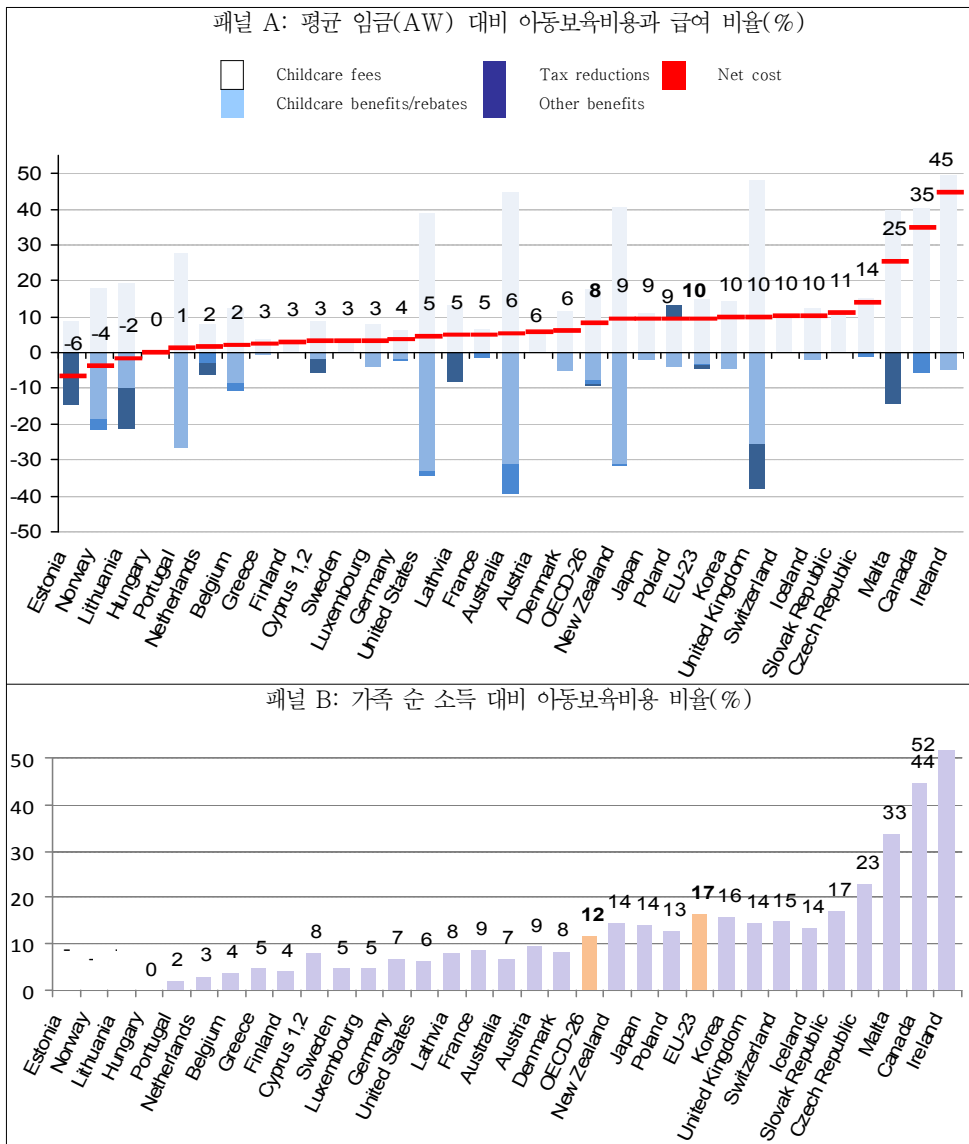
많은 나라에서 특정지역이나 지방과 관련된 요금 정보를 공개 한다. 오스트리아(비엔나), 벨기에(왈로니아), 캐나다(온타리오), 독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아이슬란드(레이카비크), 폴란드(울스친), 스위스(취리히), 미국(미시건).

[그림 4-16] 평균 임금 167%인 2인 소득자 가족의 순 보육비용(PF12.2)



주: 평균 임금은 "평균 근로자"의 임금을 반영함, 상세한 내용은 OECD 2007, pp. 186-7을 참조
 자료: OECD (2007).

[그림 4-17] 평균 임금 67%인 한부모 가족의 순 보육비용(PF12.3)



주: 평균 임금은 “평균 근로자”의 소득을 반영함, 상세한 논의는 OECD, 2007, pp. 186-7을 참조.
 자료: OECD(2007).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각 통계에 대한 자료원은 다음과 같다.

- OECD(2007), *Benefits and Wages*.

4) 어린 영아에 대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으로 본 한국의 현황

취학전 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즉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아일랜드와 덴마크와 비교했을 때 6배의 차이가 있다. 이 중 유치원에 대한 지출보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출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루어지며, 유치원은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의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로 보육시설의 이용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3-5세 아동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률은 89%에 이르는데, 3-5세 아동의 유치원 이용률은 60%로 나타난다. 나머지 아동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3-5세 아동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3세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멕시코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지만 한국은 북유럽 국가들처럼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취학전 아동의 보육에 대한 이용료가 맞벌이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평균 소득 167%를 버는 2인 소득자 가구에서 아동의 보육비용은 급여의 13%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수치는 평균임금 67%를 버는 한부모 가족의 보육비용인 10%보다 많다. 그러나 가족의 순소득에 비추어 아동보육비용을 살펴보면, 2인 소득자 가구(9%)보다 한부모 가족(16%)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비교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가구의 평균 소득이 167%와 67%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구의 소득에 따라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수와 서비스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구의 소득이 높은 가족은 정규 보육시설을 이용한 후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선택하거나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이 높은 가족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고, 반대로 빈곤 가족의 아동

과는 다른 것이다. 다음으로 자녀의 보육비용으로 인한 빈곤의 위험이다. 가족의 순 소득 대비 16%를 자녀의 보육비용을 사용한다면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빈곤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현재 유아교육비와 보육시설이용료에 대해 가구소득에 근거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육비와 보육료에 대한 감면만 해당할 뿐 급식비와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방과후보육시설이용료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가족유형과 소득수준별 보육급여 유형과 순 부모비용(Typology of childcare benefits and net parental fees by family type and income level)(중분류 4)

1) 보육·유아교육 서비스의 유형(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PF13)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는 세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시설 중심의 보육: 가정 밖에서 제공되는 모든 아동 보육은 중앙의 허가를 받는다. 서비스는 전일제 혹은 반일제로 제공되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놀이방, 데이케어 센터, 탁아소, 놀이학교와 부모 운영그룹으로 언급된다. 대개 이 서비스들은 4세 미만의 유치원에 가기 전인 아동에게 제공된다(제외되는 국가는 아래 참고).

아동보육규정의 타입은 혼합되어, 국가에 달려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의 규정은 주로 공공 세금 공제, 아동공제 등(아동보육 비용의 지표를 언급)을 통한 양육비용의 감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데이케어 아동보육의 부처 책임은 몇몇 나라는 교육부에서(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복지부처(사회복지)의 관할아래에서 제공된다. 조기 아동보육의 사적 규정은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과 미국 의 나라들에서 두드러진다. 중앙중심 서비스 영역에서 집단 가정 보육, 미니 탁아소와 공동육아센터(자세한 국가 참고) 의 비율은 작다. 이는 부모 집단에 의해 개발되어 왔지만 때로 비

공식적 시작과 함께) 국가로부터 인가와 보조금을 획득하도록 움직이고 있다.

가정보육(Family daycare(FDC)는 전통적으로 가족 세팅에서 제공된다. 가족의 부모의 집, 혹은 아동의 집에서 자격이 있거나 등록된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우 어린 아동을 돌보는 최대 숫자는 보통 3,4명이다. 이러한 종류의 보육은 대부분 유치원에 가기전 대체로 3세 이하의 아동에 해당하며, 탁아소/놀이방 모두 너무 제한적이어서 부모가 가족적인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찾는다.

유아교육프로그램: 이 영역은 중앙기반의(혹은 흔히 학교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교육에 입학할 준비하는 아동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어도 50% 정도의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자격이 있는 종사자가 지도한다. 몇몇 나라는 이 프로그램이 풀타임 기반으로 운영되고, 같은 전제로 방과후 시간으로 제공된다(다가올 방과후시간 서비스 부분 참조). 그러나 몇몇 나라는 전통적으로 유치원 프로그램을 시간제로 제공하고, 현재 이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아래의 국가 주석을 참고). 다른 나라들은 초등학교 취학전의 1, 2년 동안에 대해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그 예로 호주 퀸즐랜드의 “준비”학년과 아일랜드의 ‘영어반’, 네덜란드의 집단 1(정규 유치원), 스페인의 영아교육과 영국의 환영수업을 들 수 있다. 표 4-10은 이들 세 가지 카테고리들을 보여주며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제공되는지를 설명한다.

나. 주요 결과(key findings)

표 4-10을 참조할 수 있다.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없음.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

없음.

〈표 4-10〉 보육유형(PF13.1)

	Centre-based care		Family day care		Pre-school		Compulsory school	
Public*								
Private**								
Age	0	1	2	3	4	5	6	7
Australia	Accredited centres and family day care available part-time (20hrs) or full-time (up to 50hrs)			Reception/ pre-school classes, with primary school (full-time, out-of-school-hours care also provided).		Compulsory schooling		
Austria	Tagesmutter (FDC) and Krippen (centre-based). Part-time (25hrs)		Kindergarten, (part-time, 25hrs). Out of school care provision under development.		Compulsory schooling			
Belgium	Kinderdagverblijf (centre-based crèches) and FDC; Crèche (centre-based) and gardiennes encadrées (FDC)		Kleuterschool, part-time or full-time, with out-of-school-hours care; École maternelle, part-time or full-time, with out-of-school-hours care		Compulsory schooling			
Canada	Centre-based and family day care			Junior Kindergarten Ontario	Kindergarten/ Maternelles in Québec	Compulsory schooling		
Czech rep.	Crèche (centre-based care), FT		Materska skola (state kindergarten)		Compulsory schooling			
Denmark	Dagpleje (FDC) and Vuggestuer (creche) full-time (>32hrs)		Børnehaver (kindergarten) full-time (>32hrs)		Børnehaver (>32hrs)		Compulsory schooling	
	Adlersintegrer (age-integrated facility) full-time (>32hrs)							
Finland	Perhepäivähöito (FDC) and Paivakoti (municipal early development centres), full-time (<50hrs)			Esiopetus pre-school		Compulsory schooling		
France	Crèche (centre-based care) and Assistant maternelles (FDC), FT		Ecole maternelle (pre-school)		Compulsory schooling			
Germany	Krippen (centre-based creche)		Kindergarten (pre-school)		Compulsory schooling			
Greece	Vreronipiaki stahmi (crèche for children		<2.5 and nursery school for >2.5)		Compulsory schooling			
			Nipiagogeia (kindergarten)					
Hungary	Bölcsöde (creches), full-time (40hrs)		Ovoda (kindergarten)		Compulsory schooling			
Iceland	Day-care centres and "day mothers"(FDC)		Pre-school		Compulsory schooling			
Ireland	Regulated FDC and nurseries (centre-based)		Early Start and Infant school (pre-school), with primary school		Compulsory schooling			
			Pre-school playgroups					
Italy	Asili nidi (creches) part-time (20hrs) and full-time (<50hrs)		Scuola dell'infanzia (pre-school)		Compulsory schooling			
Japan	Centre-based care		Kindergartens		Compulsory schooling			
	Family day care							
Korea	Childcare centres		Kindergartens		Compulsory schooling			
			Hakwon (pre-school)					
Luxembourg	Crèche (centre-based care) and Tagesmutter (FDC)		Enseignement pre-scolaire (pre-school)		Compulsory schooling			
Mexico	Educación inicial (centre-based creche)		Compulsory educación preescolar (pre-school)		Compulsory schooling			
Netherlands	Gastouderopvang (FDC), Kinderopvang (child care centres) and Playgroups		Group 1, with primary school		Compulsory schooling (group 2 onwards)			
New Zealand	Child care centres and some home-based services (FDC)		Community-based Kindergarten, Playcentres		Compulsory schooling			

* 공적 제공은 대부분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관리되는 것임(등록의 50%이상이 공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임).

**사적 제공은 사적인 이해관계자에 의해 주로 경영되고(비영리와 영리 제공자 모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의해 재원 조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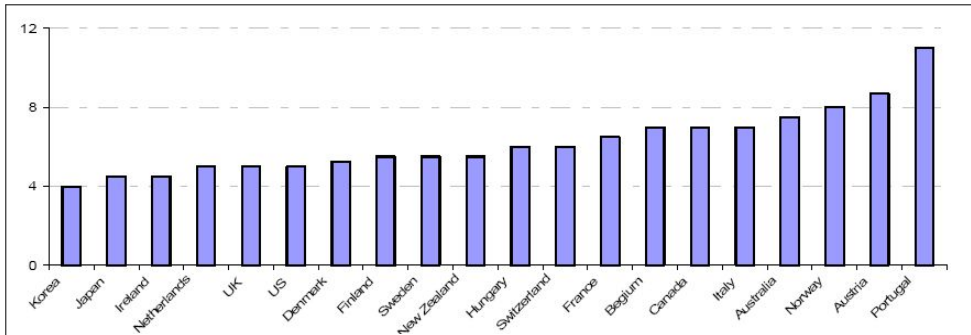
2) 보육과 유아교육서비스의 질(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PF14)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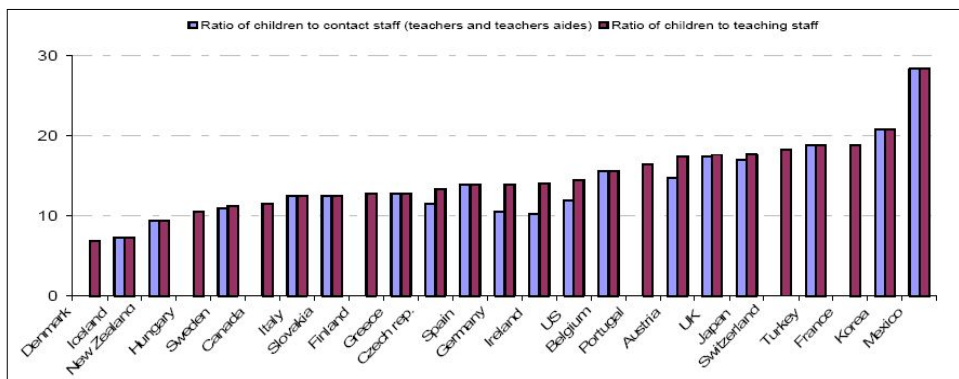
아동보육의 질은 위생과 안전, 교직원과 아동 비율, 그룹 사이즈, 부모 참여와 특정 교육 정책에 대한 승낙, 때론 커리큘럼의 발굴등의 기준과 같은 많은 양상을 갖고 있고, 이는 질, 자격조건, 훈련과 아동보육교직원의 보수를 규제하는 주요변수이다. 아동보육과 조기교육서비스에 대해 양육 업무위탁이 용이한 범위는 질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목표 설정과 의도는 각 국가별로 다른 교육서비스의 높은 수준의 질을 채택하기 위해 감독하고 홍보하곤 한다.

비록 질적으로 단면적인 제한이지만, 직원-아동 비율은 보육자/교육자와 아동 사이의 접촉 횟수의 양적 지표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나라는 아동-교직원 비율을 특정한 규정이 있으며, 아동의 나이에 따라 전형적인 증가를 보인다. 그림 4-18은 공인된 보육시설의 4세미만 아동에 대한 영유아-보육자/교육자의 평균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 4-18] 0-3세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 비율(PF14.1)



[그림 4-19] 3-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의 교사 대 아동 비율(PF14.2)



유치원에 출석하는 아동은 교사-아동 비율은 유치원 등록된 풀타임에 상응하는 아동에 그 수준에 해당하는 교사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유치원에서 아동이 접촉하게 되는 직원(교사와 보조교사)의 비율도 표 4-12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나. 주요 결과(key findings)

서비스 환경의 질과 교사와 아동 사이의 상호작용의 질을 반영하는 적절하고 단일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유아교육·보육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표 4-11과 표 4-12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각에 대해서 교사의 자격요건과 근로 환경에 관한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별 자격증 소지 교사의 비율에 관한 정보는 유용하지 않지만 교사의 자격에 관한 정보는 교사의 질에 대한 일부 지표를 제공하는데, 이는 개인적인 능력과 근로 경험 같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표는 또한 특정 연령의 아동 대 교사 비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자료가 유용할 때 정보는 “작업 중” 혹은 “지속적인 훈련”으로 표시된다.

유아교육·보육부문 교사에 대한 분류는 보육과 교육의 보급과 관련되어 매우 까다롭다. 일반적으로 “교육이 보육이고, 보육이 교육이다”는 큰 범주에서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역에서 보육교사와 교사의 광범위한 그룹은 구분된다(이 분류는 PF13 지표 아래에서 설명된 서비스의 유형에 따름).

보육교사Childcare workers: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은 국가마다 서비스마다 매우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보육교사는 직업학사(vocational level diploma) 수준을 유도하나 일반적으로 아동의 유모(nurse) 수준이며(고졸, 전문학교 수준), 많은 국가에서는 고졸자에게 특정 훈련을 제공하고 1-2년짜리 대학수준의 직업 학위를 추가할 것이다.

보조교사Auxiliary staff: 각기 다른 수준에서 훈련받은 많은 보조교사가 어린이 집에서 일하고 있다. 보조교사의 한 쪽은 정규 자격이 전혀 없는 반면에 노르딕 국가의 유치원(PF12에서 보듯이 1세 이상이 다님) 보조교사는 고등학교 직업 훈련을 2년 이상 경험한 사람이다.

〈표 4-11〉 보육교사자격과 주 근무지 요건(PF14.1)

	직원 유형	주요 자격 요건	대상 연령	주요 근무지	지속적인 훈련	아동 대 교사비율
호주	보육사 ¹⁾	2-3년제 혹은 3차교육과정	0-5	유치원 총일제	보육-몇몇 서비스에 제한됨	5.0 (0-2세) 10.0 (2-3세)
캐나다	유치원교사 ⁴⁾	2년 교사학위 (ECE)	0-12	어린이집, 보육학교, 유치원		5.5 (0-1세) 8.5 (2-3세)
덴마크	교사 ²⁾	3-5년 직업, 혹은 3차교육(이전 경험에 따름)	0-5	교육기관, 사회적 보호, 장애기관(보육시설포함)	재원은 탈중앙화	3.3 (0-2세) 7.2 (3-5세)
핀란드	교사, ²⁾ 보조간호사	3년 중등 직업교육	0-6	어린이집	지자체에서 연간 3-10일 제공	4.0 (0-3세) 7.0 (3세+)
프랑스	소아간호사, 보육사 ¹⁾	간호/산후조리+1년 특별교육, Bac+27개월 훈련기관	0-3 0-6			5.0 (0-2세) 8.0 (2-3세)
일본	보육교사 ²⁾			주간보육시설, 영아시설, 보호시설		3(0<1) 6 (1-3세)
한국	보육사 ¹⁾	2년제 혹은 고졸 후 1년 훈련과정	0-6	어린이집, 학원	지역 중심으로 모든 보육사와 유치원교사에게 제공	3(1세) 5(2세) 15(3세)
스웨덴	보육사 ¹⁾	중등 16학년 이후 2년	0-7		재원은 탈중앙화	5.5
영국	보육교사 ²⁾ , 보육간호사	중등 16학년 이후 2년	3-11 0-5	보육소(혹은 상위기관 보조)	보육교사에 제한됨	3 (>2세) 4(2-3세) 8(3-5세)
미국	보육교사 ²⁾	1년코스부터 4년제 대학까지	0-5	공립학교, Head Start, 아동보육시설	대부분의 주에서 해마다 정해진 시간	5

- 주: 1) child care worker로,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라고 부르나 실제로는 교사 체계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2)와 구분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명칭을 붙임.
 2) nursery teacher 혹은 child care teacher로, 교사체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어린 아동의 보육을 담당.
 3) teacher, educator 등으로 일반적인 교사 체계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를 할 수 있음.
 4) early childhood educator로 유아만을 전담으로 하나 교사 체계에 포함되어 있음.

유치원교사The pre-primary/primary teacher(호주, 캐나다, 미국에서는 kindergarten/pre-school): 유치원 교사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교사와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한 교육과정과 동일한 기관에서 교육받는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과 미국(이들 국가 중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에서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모두에 대한 훈련을 받음)에서 그러하다. 연방 국가에서는

주와 지방별로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주요한 훈련 유형은 초등학교에 기반을 둔 교육이다.

노르딕과 유럽 대륙 국가의 유치원 교사는 초등학교보다는 오히려 유치원에 초점을 두고 훈련(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서)을 받는다. 교사들은 또한 청소년 사회사업이나 장기요양과 같은 다른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도 있다.

〈표 4-12〉 유치원 교사의 자격과 주요 근무지(PF14.2)

	직원 유형	주요 자격 요건	대상 연령	주요 근무지	지속적인 훈련	아동 대 교사비율
호주	교사	3-4년 3차교육과정	0-8	유치원	1년에 며칠간 교사들을 대상으로 재원조달	
캐나다	교사	4년 3차교육과정 (PEI는 아님)	0-5/5-10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들에게 제공	8-15 (5세아)
덴마크	교사	3-5년 직업 혹은 3차교육(이전 경험에 따름)	0-10	교육기관, 사회적 보호, 장애기관(보육시설포함)	지방재원으로 충당	6.9
핀란드	유치원 교사	3-4-5년 대학 혹은 3년-5년제 직업대학	0-7	유치원	지방재원으로 충당	12.7
프랑스	(초등학교)교사, 보육사	바칼로리아+2년	2-6	영아학교		18.8
일본	유치원 교사	유치원교사자격 (전문대, 대학 혹은 대학원)	3-6	유치원		17.7
한국	유치원 교사	4년제 대학 학위	3-6	유치원	지역 중심으로 모든 보육사와 유치원교사에게 제공	20.8
스웨덴	유치원 교사, 교사	3년제 대학, 3년제 대학	0-7	유치원 초등학교	지방재원으로 충당	11.2
영국	인증 교사	4년제 대학	4-8 (0-8)	어린이집 부설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정기적인 접근	17.6
미국	공립학교교사 헤드스타트교사	4년제 대학 CDA=1년제 직업 3차교육	3-5	공립학교 헤드스타트	대부분의 주에서 해마다 정해진 시간	14.5

3) 방과후보육서비스(Out-of-school-hours care services, PF15)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방과후시간(OSH)보육 서비스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전의 아동의 활동 범위로 점심과 방과후시간 사이의, 학교 휴일동안과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흔히, 그러나 항상을 의미하지는 않고, 학교 시설이나 청소년센터를 기반으로 레크레이션 활동과 아동의 안전 보호를 제공하고, 반면 동시에 부모들이 학교와 근무시간 사이에 절충점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나. 주요 결과(key findings)

유급노동을 하는 어머니 수의 증가(LMF2)는 증가하는 정규 학교 시간 이후에 보육과 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욕구를 유도했다. 근로하는 부모와 그들의 자녀들의 욕구가 강조되면서 OECD 국가들에서 OSH 유형(방과후보육서비스)의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여전히 방과후 보육이 시작단계이며,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거의 없다.

표 4-13은 방과후보육서비스의 핵심적인 특징을 제시한다. 에스토니아와 헝가리와 같은 몇몇 국가에서 수혜율은 초등학생 아동의 최소한 40%가 방과후보육 서비스를 사용하며,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수혜율은 심지어 55%로 더 훨씬 더 높다. 대조적으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수혜율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10%미만이다.

일반적으로 방과후보육의 수혜율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현저히 달라진다; 이용률은 십대에 들어서면서 현격히 떨어진다(그림 4-20).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3-5세의 어린 연령에 대한 자료는 유용하지 않거나 그런 서비스가 유치원 아동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런 통계가 유용한 국가에서 수혜율은 6-8세 아동(이들 아동 중 일부는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음)의 그것에 비교해서 유사하거나(스웨덴) 더 높다(에스토니아, 헝가리와 포르투갈).

방과후보육서비스에 참여하는 아동의 비율은 6-8세 아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이 연령 그룹의 80%이상이 방과후보육서비스를 사용하고 있

다, 에스토니아와 헝가리의 수혜율은 50%이상이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여전히 낮게 나타난다.

9-11세 아동의 이용률은 감소한다(그림 4-20). 이는 보호 이슈와도 관련이 되는데, 아동은 독립적이 되고 조직화된 현장 외에서(그들의 또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 방과후보육서비스를 받는 9-11세 아동의 비율은 28%로 6-8세 아동과 3-5세의 80%와 비교된다. 일반적으로 낮은 수혜율을 보이는 국가에서 이들 연령 그룹의 방과후보육서비스 이용 아동의 비율은 5%미만으로 나타난다.

절반쯤 되는 국가에서 방과후보육서비스의 제공자들은 휴일보육과 함께 학교시간 전후의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제공은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헝가리,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공화국과 스웨덴에서 가능하다. 다른 국가들에서 방과후 활동은 주로 학기 중에만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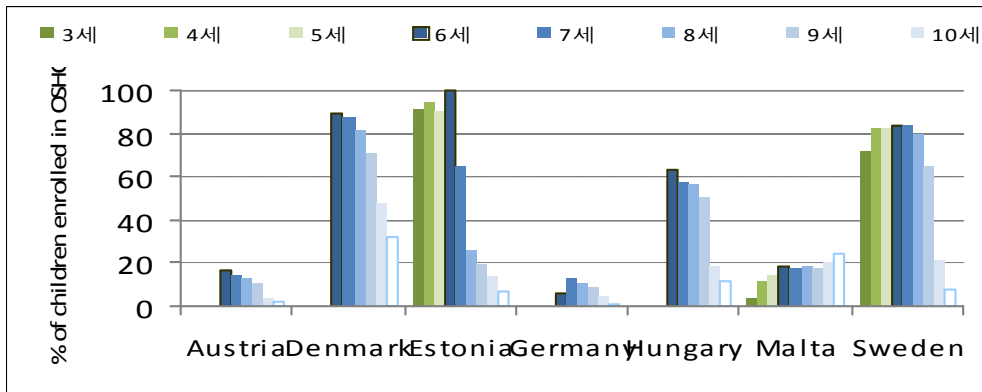
국가간 아동 대 교사 비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많은 국가의 규정은 아동의 연령과 서비스가 교내에서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아동 대 교사의 비율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 스웨덴에서 교사 1인당 아동의 수는 5명에서 1명까지, 그리스에서 25명에서 1명까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양하다(체코공화국, 덴마크, 독일과 포르투갈에서 그룹 사이즈별 교사 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은 없음). 아동 대 교사의 비율이 어린 아동의 보육(PF14)과 비교해서 높으므로 방과후보육서비스는 종종 상대적으로 덜 비싼 편이다.

방과후보육서비스에 대한 총 공공지출액은 국가별로 상당히 다양하다. 유의한 자료(여기서는 포함하지 않음)는 총액에 포함된 구성요소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 지출은 약 40억유로(Euro)로 이는 감독관과 시설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것이지만, 다른 국가(덴마크를 포함해서)들은 10억 유로(Euro)미만이며 덴마크 시스템은 매우 포괄적으로 자료의 비교가능성 이슈를 지적하고 있다.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방과후 통계는 각국 정부로 보내진 설문지에서 도출된 것으로 아직은 많은 나라의 통계가 입수되지 않았다. 통계를 제공한 국가들은 흔히 그렇듯이 서비스 종류별로 아동들의 수는 보고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의 보고는 미흡하다. 1세 집단에 대한 방과후보육서비스 포함 여부에 관한 정보 역시 많은 국가에서 입수되지 않았다. 이용률은 아동이 한군데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두 번 카운트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육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한 예로 체코 공화국은 6에서 11세 아동을 위한 방과후 교육은 매우 다양하게 갖고 있는데, 잠재적인 통계는 서비스가 각각 분리되지 않아 모든 데이터가 단순히 더해졌을 때 이중 카운팅의 문제가 발생했다. 통계는 또한 주당, 시간당 혹은 날짜별로 이용 서비스의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

[그림 4-20] 3-11세 연령별 아동의 방과후보육서비스 이용률, 2007(PF15.1)



주: 독일은 2006년 자료, 오스트리아, 덴마크와 스웨덴은 2005년 자료임.

자료: National Authorities.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

각 통계에 대한 자료원은 다음과 같다.

- OECD, *Babies and Bosses(Various issues)*.

〈표 4-13〉 방과후보육서비스의 핵심 특징들(PF15.1)

국가	기준 년도	이동연령	이용률	방과후보육 서비스 제공 유형	교사 비율 (공식지침)	공공지출/ Euro(2000)	공공지출 대비 GDP
호주	2005	3-4	n.a.				
		5-8	15	결합	n.a.	n.a.	n.a.
		9-12	17				
오스트리아	2007	3-5	n.a.	-	-	-	-
		6-8	13.7	결합	n.a.	n.a.	n.a.
		9-11	5.3				
덴마크	2005	3-5	-	-	-	-	-
		6-8	86.2	결합	없음	870	870
		9-11	49.8				
핀란드	2007	3-6	n.a.	-	-	-	-
		7-9	24.7	수업전후	n.a.	n.a.	n.a.
		10-11	n.a.	-	-	-	-
프랑스	2007	3-6	20.8	수업전후	n.a.	n.a.	n.a.
		7-11	n.a.	-			
독일	2006	3-4	n.a.	-	-	n.a.	n.a.
		5-8	7.4	수업전후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9-11	4.9				
일본	2007	3-5	n.a.	-	-	n.a.	n.a.
		6-11	10.5	수업후와 공휴일	n.a.		
네덜란드	2007	4-12	43.7	수업전후	10:1	2,064	2,064
뉴질랜드	2005	3-4	제공안함	결합	공식 10:1, 비공식 8:1	n.a.	n.a.
		5-8	n.a.				
		9-11	n.a.				
스페인	2006	3-5	7.4	주로 수업전	n.a.	n.a.	n.a.
		6-11	3.7				
스웨덴	2005	3-5	80.7	결합	5:1	4,020	4,020
		6-8	80.2		19:1		
		9-11	28.2		19:1		

주: 결합은 학교시간전후의 활동과 휴일을 포함하는 것임; n.a는 유의하지 않음.
 자료: National Authorities and Australian Social Trends 2007.

4) 가족유형과 소득수준별 보육급여유형과 순 부모비용으로 본 한국의 현황

한국의 보육유형은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유아교육은 유치원에서 행해지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이다. 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된다. 반면에 보육은 보육시설에서 행해지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무부처이다. 보육시설은 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부처이원화로 여러 문제점

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대상아동 연령의 중복성이다. 유치원은 유아 교육법에 근거하여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그 연령을 하향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보육시설은 보육기본법에 근거하여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주된 연령 층은 유치원과 중복되는 3-5세이다. 이에 따라 3-5세 아동에 대한 과도한 경쟁구도와 함께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의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3-5세를 중복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은 4년제대학 학사학위가 일반적이나 2년제 전문학사도 있다. 이에 반해 보육시설은 2년제 전문학사와 고등학교 졸업 후 1년간의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¹⁷⁾. 유치원과 보육교사의 자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시안이나 한국의 경우 동일한 연령과 유사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으로 인해 사실상 교사의 자격요건이 비슷해지고 있는 현재, 오히려 심각한 문제는 교사와 아동의 비율에서 발생한다.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의 비율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보면 한국은 가장 낮은 1대 4로 나타난다. 반면에 유치원의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1 대 20으로 나타난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교사와 아동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교사를 보조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성인을 포함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수업 환경에서 교사의 보조나 자원봉사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양쪽모두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17)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주요자격요건은 이미 OECD Family database에 제시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현재 한국의 보편적인 종사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제 2절 한국의 통계생산방안

1. 이혼부양체계의 핵심적인 특징들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산식)

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 등을 참작해 정한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또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진다(837조 2의 1항).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하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협의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대한 합의는 부모의 협의로 이루어진다. 이 때 이혼신고서에는 20세 미만 자녀의 존재와 친권자에 대한 지정이 이루어지는데, 양육에 대한 사항과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항 등은 논의되지 않는다. 또한 부모의 이혼이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결정되지만 이 경우 행정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상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표 4-14〉 아동 부양체계의 특징

자녀 양육결정의 개입			양육비 결정 의무	지불금 결정규칙	지불금 강제의무	비혼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타제도	양육비 청구종결시점	양육비 지불금에 대한 혜택
부모	법원	기관						
○	○ (부모 합의 안될 때)	×	부모들의 합의	절반 부담이 원칙이나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결정	×	×	21세 미만	×

자료: 민법을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

3) 자료원

없음

4) 작성주기

없음

나. 대표통계 선정기준

한국의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조항은 민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이혼 신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이혼신고서의 행정서식을 보완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5〉 이혼신고서의 자녀 관련조항

	항 목	기재내용
일반사항	미성년자(20세미만)의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지정	친권자	1) 부 2) 모 3) 부모
	지정효력일	년 월 일

자료: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양육결정과 양육비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혼신고서에 친권자 지정 외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합의 여부, 양육비 지불금의 금액, 기한을 작성할 수 있는 항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이혼신고서의 보완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로 양육결정과 양육비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 김미숙 외(2000)의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에서 수행되었던 “재가 모부자 가정의 생활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패널 데이터로 수집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부모 가족의 근로소득 및 공적이전, 사적이전 등의 소득정도와 함께 주거환경과 양육환경 등을 통해 복지욕구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일회성에 그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한부모가족 소득 및 양육 실태 조사(가칭)”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법적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통계치나 실제 판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현상 파악을 떠나서 향후 통계생산을 대비하여 부모 중 양육권 수급 여부, 양육비 지급액, 구상권 책임 등에 대한 통계생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협의 이혼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에 대한 책임은 고지하고 있으나 부양비 지급, 부양비 지급액, 부양연령 등은 부모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부모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성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빈곤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양육비를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부나 모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도 문제도 있다.

2. 한부모 비율과 자녀부양비를 받는 한부모 비율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산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부 또는 모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뜻한다. 이 때 부 또는 모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이거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혹은 미혼인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다.

이러한 정의는 OECD에서 비사별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 범위가 다소 넓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한부모가족은 10년 동안 1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1995년 960천가구→2005년 1370천가구).

〈표 4-16〉 한부모가족의 증가(1995-2005)

	1995	2000	2005
한부모가족수	960	1124	1370

(단위: 1,000가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특히 모자가족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0년간 모자가족의 증가율이 138%인데 비해 부자가족의 증가율이 166%로 높은 것도 특징이다.

만 20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의 양육비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혼인상태별 한부모가족의 비율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으나 가족 돌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유배우의 비율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20% 이상) 나타나고 있다(표 4-17 참조). 이와 대조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형성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의 이혼으로 한 쪽에서는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함께 살지 않는 다른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한다고 할 때 전체 한부모 가족 중 53.1%가 배우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이혼으로 인해 양육비 청구의 대상이 되며, 29.1%가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청구의 대상

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중 얼마나 자녀양육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는 없다.

한편 급진적인 선진국의 경우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미혼인 한부모가족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63.4%가 양육비 청구의 대상이 된다.

〈표 4-17〉 혼인상태별 모부자가족의 비율(1995-2005)

(단위: 1,000가구, %)

모자가족	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1995	787 (100)	165 (21.0)	458 (58.2)	73 (9.3)	91 (11.5)
2000	904 (100)	195 (21.6)	438 (48.4)	153 (16.9)	118 (13.1)
2005	1083 (100)	264 (24.4)	427 (39.4)	259 (23.9)	133 (12.3)
부자가족	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1995	173 (100)	51 (29.5)	68 (39.3)	51 (29.5)	3 (1.7)
2000	220 (100)	58 (26.3)	64 (29.1)	93 (42.3)	5 (2.3)
2005	287 (100)	64 (22.3)	74 (25.8)	140 (48.8)	9 (3.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김미숙 외(2005)가 분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 조사(2005)”에 따르면 이혼자의 85% 정도는 이혼시 18세미만의 자녀가 있어 이혼 후 자녀양육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녀 양육비 제공자 수는 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1인이 가장 많았고, 양육비 주 제공자는 첫째 자녀의 경우는 부모가 비슷한 수치로 각각 49.0%와 45.0%를 나타내는데, 둘째 자녀는 국가가 49.2%로 파악되었다. 이는 둘째 자녀가 있다는 응답 중 모부자 가정의 경우가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혼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배우 가족의 경우 자녀의 사교육비(23.6%)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반해, 이혼가족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23.5%), 주거비(18.3%), 공과금(15.8%) 등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모자보

호시설 18곳을 대상으로 126 사례에 대한 분석이므로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3)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김미숙 외(2005),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4) 작성주기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 김미숙 외(2005)는 1회

나. 대표통계 선정기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지정조사통계로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를 파악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들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국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영토 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 영역에 대한 전수조사이므로 대표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구 비율에 대한 자료가 있으나 한부모가구 중 자녀 부양비를 지급받는 비율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통계 생산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해당 서류에는 20세 미만의 자녀수와 친권자 지정에 대한 항목이 있다. 이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항목을 이 행정서류에 포함하고 가정법원에서는 관련 데이터를 통계청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자녀부양비 수준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산식)

한국은 만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공간 및 양육비, 자녀 학비 등을 지원한다. 이 때 저소득이란 3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04만원이하 가족으로 제한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은 달라진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고등학생자녀학비지원, 아동양육비지원, 복지자금대출, 자녀학용품비지원, 자녀교통비지원, 보육료지원, 유치원교육비지원, 영구임대주택입주, 기존 다가구주택임대, 부자기족주거지원사업, 미혼모부지원거점기관운영 등 총 15개 사업이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은 2007년 기준 151,520세대 404,446명이며, 이 중 한부모가족 보호대상가구가 50.7%, 국민기초수급대상이 49.3%, 국가보호대상이 0.04%이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OECD가 요구하는 아동부양비 수준에 관한 지표로는 한부모가족당 평균 아동부양비와 아동당 평균 부양비, 가처분 소득 대비 아동부양비 비율, 총이전소득 대비 아동부양비 비율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한 현금이전은 아래의 <표 4-18> 과 같다. 이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동부양비는 약 5만5천원 수준이다. 그러나 한부모가족당 평균 아동부양비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양비, 총 이전소득 대비 부양비 비율에 관한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고교생 학비 지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10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4-18〉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단위: 명, 백만원)

구분	07년도		08년도	
	지원인원	지원예산	지원인원	지원예산
계	54408	30005	72345	40656
고교생학비	23930	16881	29542	21819
아동양육비	30478	13124	42803	1883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 관련 통계자료(2008)

3) 자료원

보건복지가족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행정자료

4) 작성주기: 매년

나. 대표통계 선정기준

현재 유용한 정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침이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12월경에 ‘저소득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어 이 통계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김미숙 외(2000)의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 조사에서는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관계, 결혼과정, 경제적 상황, 지원정도 및 종류, 사회심리적 상태, 복지욕구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통해 편부모가족의 실태와 현 복지대책상의 문제점, 편부모가족 발생 예방책 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해당조사에서는 한달 평균 수입에 대한 항목만 있을 뿐 이전소득, 가처분 소득에 대한 항목들이 포함되지 않아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지원 수준을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다. 향후 예정된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4.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피고용인 부모의 휴가 사용 비율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산식)

현재 한국에서 피고용인 부모의 휴가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전부이다. 산전후 휴가는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휴가기간은 반드시 산후 45일 이상 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72조). 또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고용주가 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제공한다.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월 50만원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제공한다. 따라서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피고용인의 경우 산전후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고용보험통계연보가 주요 자료원이다. 이 자료원에 따르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수급 인원 및 지출 정도를 알 수 있다. 또한 60일의 산전후휴가는 기업이 복지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공단의 급여화일에서 분담급여를 수령한 자의 수도 고용보험통계연보와 비교가 필요하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산전후휴가는 자녀의 출생전후로 하기 때문에 1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피고용인 부모의 휴가 사용 비율의 작성방식과 일치한다. 그러나 1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피고용인 부모에 대한 통계는 유용하지 않다.

〈표 4-19〉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인원 비중 추이

(단위: 명)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32,133	38,541	41,104	49,539	60,964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육아휴직급여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고용보험통계연보로 활용가능하다. 다만 자료에서는 자녀의 연령별 육아휴직급여 사용율을 파악할 수 없다.

〈표 4-20〉 육아휴직급여 수급인원 비중 추이

(단위: 명)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6,817	9,303	10,700	13,672	21,185
남	104	181	2,008	230	310
여	6,712	9,122	10,492	13,442	20,87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3) 자료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4) 작성주기

통계생산은 매월이뤄지며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되고 있다.

나. 대표통계 선정기준

우리나라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체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보험통계연보는 가장 정확한 통계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비율은 취업자 대비 39.0%, 임금근로자대비 56.3%에 불과하고 특히 여성은 일용직, 임시직 근무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고용인이 출산급여를 받거나 육아휴직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 관계로 고용보험통계연보를 대표통계로 선정하는 것은 대표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는 신청사유와 영아의 주민등록

록번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정보를 이용한 통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여성들의 높은 비율을 생각할 때 실태조사가 뒤따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5. 자녀의 출생순위별 1세미만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휴가 사용 비율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산식)

산전후휴가는 출생전후 90일간의 휴가를 사용하므로 자녀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통계분석은 필요하지 않으나 육아휴직은 휴가사용자의 성별과 자녀의 연령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휴가사용비율은 1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전체 여성에 대비한 비율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자녀의 순위와 1세미만 자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고용보험통계연보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의 통계는 파악할 수 있으나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자를 분석할 수 없다.

〈표 4-21〉 여성의 휴가 사용인원

(단위: 명)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산전후휴가	32,133	38,541	41,104	49,539	60,964
육아휴직	6712	9122	10492	13442	2087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3) 자료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4) 작성주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는 매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나. 대표통계 선정기준

앞서 언급했듯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체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용한 통계자료원이 고용보험통계연보이다. 그러나 1세미만 자녀의 출생순위별 휴가 사용율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아 추가적인 생산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는 어린 영아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자녀의 출생순위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휴직급여 신청서에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휴가 및 휴직급여는 고용보험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어 고용보험통계연보에 제시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통계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 근로하는 부모들이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휴가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산식)

한국은 아직까지 맞벌이 부모가 가족의 간병이나 장애아의 간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을 수용한 기업들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적인 휴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김혜련 외(2007)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태아검진휴가, 가족간호휴가, 입양휴가,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육아휴직분할사용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지표와 관련된 것은 가족간호휴가이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현재 한국에는 근로자들이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간호휴가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기업에 따라서 가족간호휴가를 제공하기도 한다.

3) 자료원

김혜련 외(2007),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기업수용성 연구”의 실태조사

4) 작성주기

1회

〈표 4-22〉 기업 규모별 가족간호휴가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율 정도

	전체	근로자 수				
		10-29	30-99	100-299	300-999	1000-
제도없음	89.6	91.1	93.2	87.9	88.8	82.1
제도도입 계획	3.0	2.4	3.6	4.7	2.0	0.9
활용률 매우 낮음	2.6	3.6	1.4	2.7	2.0	3.8
활용률 저조한 편	1.7	0.8	0.4	1.6	2.6	5.7
활용률 높은 편	1.5	0.4	1.1	1.2	2.6	3.8
활용률 매우 높음	1.7	1.6	0.4	2.0	2.0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김혜련 외(2007),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기업수용성 연구, pp. 77-78.

나. 대표통계 선정기준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유급휴가를 유급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 5가지로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지표에서 요구하는 가족간호휴가나 돌봄휴가는 제도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으며 기업별로 노사합의에 따라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휴가와 관련한 지표에 유용한 통계는 없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본 지표는 점유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법정지정 여부, 기한과 급여조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제도가 한국에 도입되기 전까지는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7. 3-11세 연령별 아동의 방과후보육서비스 등록 비율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산식)

OECD에서 요구하는 방과후보육서비스는 취학전후를 모두 포함하여 3-11세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한국의 방과후보육서비스는 3-6세를 대상으로 방과후보육과 7-11세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교실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정부 소관부처와도 연관이 있다. 즉 방과후보육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방과후교실은 교육과학기술부 학력증진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방과후보육과 방과후교실에 대한 자료 모두 행정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현재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보육은 966개 시설에서 14,1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보육통계, 2008). 그러나 연령별 방과후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제공되지 않는다.

〈표 4-23〉 방과후보육 통계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보육아동		종사자
		정원	현원	
계	966	73,425	14,150	7,72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2008)

〈표 4-24〉 방과후학교 통계

구분	이동수			강사수(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1,712,000	920,197	1,463,776	186,44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2008)

3) 자료원

방과후보육은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이다.

4) 작성주기

행정자료이므로 매년 생산

나. 대표통계 선정기준

방과후보육과 방과후교실에 대한 실태조사는 발견할 수 없으며 행정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표의 내용 역시 행정적인 자료에 의해 작성이 가능하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현재 제공되고 있는 통계는 정부부처에서 제공하는 통계이므로 이에 대한 이용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보육통계에서는 연령별 이용율에 대한 자료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초등보육자료에서는 총체적인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

8. 방과후보육서비스의 핵심 특징들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산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과후보육서비스는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보육과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교실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방과후보육과 방과후교실 모두에서 수업시간 이전의 보육은 제공하지 않고 방과 후의 보육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휴일에 대한 보육 역시 제공되지 않는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방과후 보육의 시설 수는 966개소이며, 현재 등록된 아동수는 14,150명이고, 종사자수는 7,726명이다. 이에 따라 아동 대비 종사자 비율은 1.8명이다.

〈표 4-25〉 방과후보육서비스의 특징

연령	이용률	방과후보육제공 유형	교사 대 아동비율	공공지출액	(단위: 십억원)
					GDP 대비 공공지출 규모
만3-6	2.1('08)	하교후	1.8:1('08)	164('08)	0.00016
만7-11	49.8('07)	하교후	20:1('08)	47200('07)	0.0048

주: 1. 방과후보육의 공공지출액은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임.

2. 방과후학교(초등)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교육부 내부자료임.

3. 2007년 GDP는 975,013십억원, 2008년 GDP는 1,023,937십억원임(한국은행 홈페이지, 2008).

자료: 3-6세 아동의 방과후보육의 자료는 보육통계(2008)와 보건복지가족부 내부 자료임.

7-11세 아동의 방과후학교 자료는 방과후교실(2007)과 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자료임.

3) 자료원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2008)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교실(2007)

정미라 외(2007),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연구

서문희 외(2005), 보육·교육 실태조사 총괄보고(5)

4) 작성주기

매년, 행정자료

나. 대표통계 선정기준

각 행정부처에서 제공하는 보육통계와 방과후학교 자료가 유일하여 대표통계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현재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내부 자료를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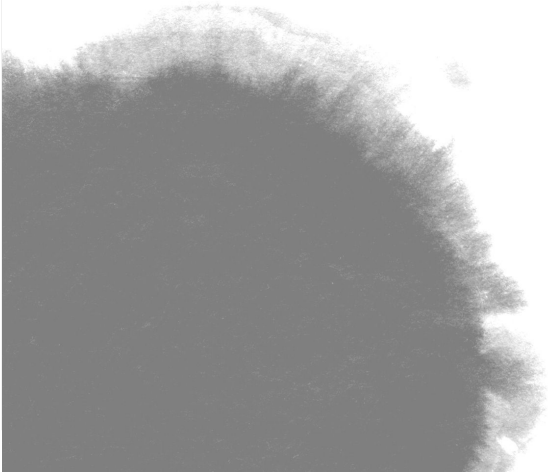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일반적으로 정부부처에서 제공하는 통계 및 행정자료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방과후보육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문희 외(2005)의 보육·교육 실태조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2004년 보육교육실태 조사에서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욕구에 관한 항목들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주로 방과후교육 및 보육의 필요성과 욕구에 대한 문항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2009년 2차 보육·교육 실태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나 방과후보육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05

K
I
H
A
S
A

아동성과
(Child Outcomes, CO)



5장 아동성과 (Child Outcomes)

‘아동성과(CO)’는 4개의 중분류와 18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9개의 소분류에서 28개의 요구통계가 제시되고 있다. 먼저 제1절에서는 각 중분류별로 현재 OECD에서 작성기준과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지표들(CO1, CO2a, CO2b, CO7, CO8, CO9, CO10, CO12, CO13)에 대해서 고찰한다. 주요 내용은 국제통계 생산의 정의와 작성기준, 주요 결과, 비교가능성과 통계 이슈, 자료원이다. 그런 다음 OECD 국가들의 통계현황에 비추어 한국의 가족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제2절에서는 현재 Family database에 미제출된 아동성과 요구통계를 중심으로 OECD의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의 통계 생산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 1절 OECD의 작성기준과 한국의 현황

‘아동성과(CO)’는 3개의 중분류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아동건강(Child health)’로 영아사망, 저체중 출산, 예방 접종 3개의 4개 소분류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아동빈곤(Child poverty)’로 가구유형별 소득불평등과 소득수준, 아동빈곤 등 2개의 소분류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문해(Education/literacy)’는 성별 교육 수준과 평균 공교육기간, 전공별 대졸자 성차, 15세 아동의 성별 문해점수,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젊은이 등 4개의 소분류로 구성된다. 보다 구체적인 지표 현황은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5-1〉 ‘아동성과(CO)’의 공개된 지표 현황¹⁾

중분류	소분류	요구 통계	
아동 건강	C01 영아사망	1-1 ²⁾	영아사망률(2005)
		1-2	일부국가의 영아 사망률(1970-2005)
		1-3	영아사망률의 감소(1970-2005)
	C02a 저체중 출산	2a-1	저체중아 비율(2005)
		2a-2	저체중아 비율 변화(1980-2005)
	C02b 아동기 예방접종	2b-1	2세아동 백일해 접종율과 전체인구 백일해 발생율(2005)
2b-2		2세 아동 홍역 접종율과 전체인구 홍역 발생율	
아동 빈곤	C07 가구유형별 소득불평등과 소득수준	7-1	소득불평등의 지니계수(2000년대 중반)
		7-2	불평등 정도(198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7-3	가구유형별 상대 소득(2000년대 중반)
		7-4	가구유형별 상대소득(198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C08 아동빈곤	8-1	아동 및 전체인구 빈곤율(2000년대 중반)
		8-2	아동빈곤율 변화(1990년대중반-2000년대 중반)
		8-3	가구유형별 빈곤율(2000년대 중반)
		8-4	모성고용율이 높은 국가에서의 낮은 아동빈곤율
		8-5	아동과 유자녀 가구의 빈곤율(2000년대 중반)
교육 및 문해	C09 성별 교육수준과 평균 공교육기간	9-1	성별 및 연령별 고등학교 졸업 비율(2004)
		9-2	성별 및 연령별 대학교 졸업 비율(2004)
		9-3	수료한 공교육 연수(2004)
	C10 전공별 대학졸업생 성차	10-1	성별 인문학, 예술, 교육학 분야 대졸자 비율(2004)
		10-2	성별 수학, 컴퓨터공학 분야 대졸자 비율(2004)
		10-3	성별 공학, 산업공학, 토목공학 분야 대졸자 비율(2004)
	C12 15세 아동의 성별 문해 점수	12-1	읽기와 수학 성적 성차, PISA(2003)
		12-2	조기교육 참여 기간별 평균 읽기점수 차이, PISA(2003)
		12-3	부모 고용형태별 평균 읽기점수 차이, PISA(2003)
		12-4	부모 교육수준별 평균 읽기문해율 점수, PISA(2003)
	C13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젊은이	13-1	성별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15-19세 젊은이 비율(2004)
		13-2	성별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15-19세 젊은이 연평균 성장률(1995-2004)

주: 1) 현재 OECD에서 작성기준을 제공하는 지표만 정리함.

2) Family database에서 제공하고 있는 번호체계와 다르며 연구진에서 부여한 요구통계별 번호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

1. 아동건강(Child Health)(중분류 1)

1) 영아사망(Infant Mort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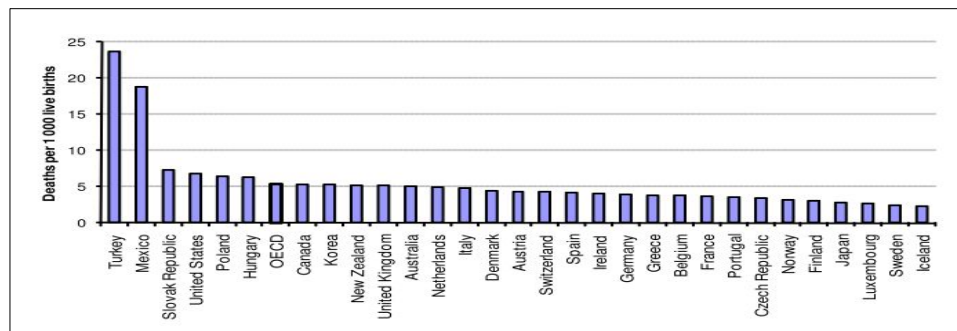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영아사망률은 특정년도의 1000명 당 1세미만 사망아동수로 나타낸다. 신생아 사망(neonatal mortality)은 28일 이전에 사망한 아동을 뜻한다. 영아사망(infant mortality)은 OECD Health database를 자료원으로 한다.

영아사망의 대략 3분의 2는 신생아사망이다. 선진국에서 신생아 사망은 선천적인 기형, 조산과 임신 중에 발생한 상황들에 의해 발생한다. 생후 한 달 이후의 사망(신생아 이후 사망)은 다양한 원인들에 기인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SIDS(Sudden Infant Death Syndrome: 영아돌연사증후군), 출생시 결함, 감염과 사고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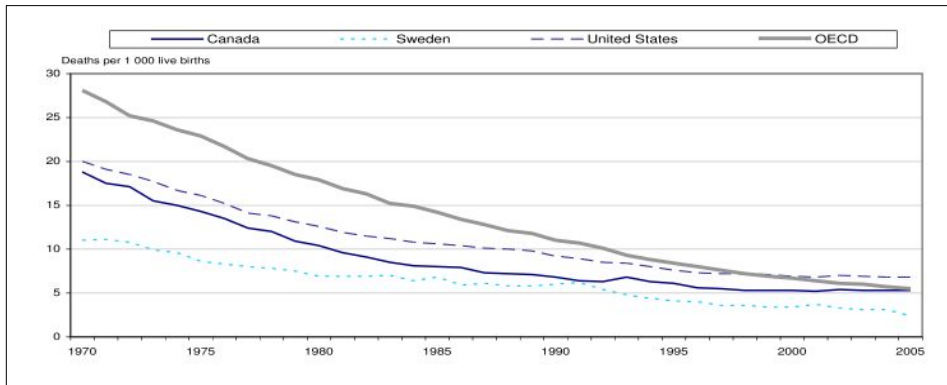
OECD 국가들에서 2005년 영아사망률은 낮은 국가는 1000명당 2-3명인 일본, 노르딕국가(덴마크 제외)와 룩셈부르크이고, 반면 높은 쪽은 1000명당 19-24명인 멕시코와 터키 등이다(그림 5-1). 영아사망률은 또한 미국(생존아 1000명당 6명 이상)과 몇몇 동유럽과 중부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5-1] 영아사망률, 2005(CO1.1)



주: 한국은 2002년 자료이고 캐나다는 2004년 기준임.
자료: OECD Health Data,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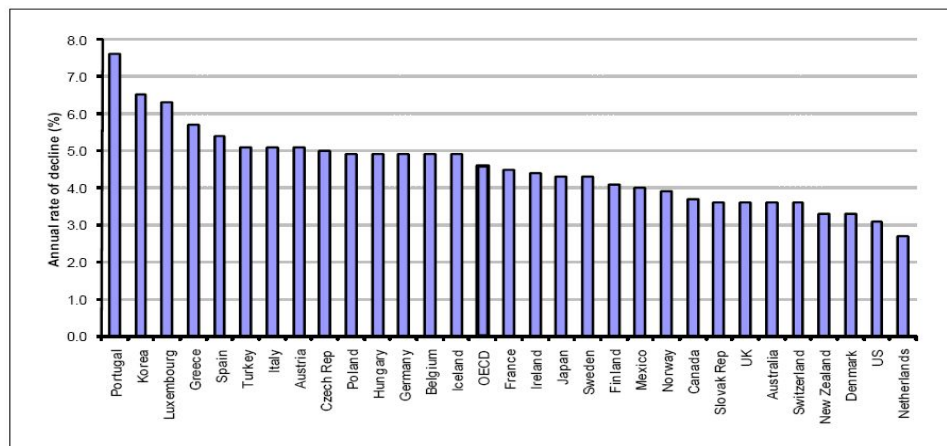
[그림 5-2] 일부국가의 영아사망률, 1970~2005(CO1.2)



자료: OECD Health Data, 2007.

모든 OECD 국가들은 생존아 1000명당 평균 30명 정도 사망하던 1970년대부터 영아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그림 5-2). 2005년에 OECD 국가 평균은 5.4로 감소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80%이상 누적적인 감소를 보여준다. 영아사망률에서 큰 감소는 그리스, 룩셈부르크, 한국과 포르투갈에서 관찰되었다(그림 5-3). 영아사망률에서 감소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들 국가는 1970년대에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였다(그림 5-2).

[그림 5-3] 영아사망률 감소, 1970~2005(CO1.3)



자료: OECD Health Data, 2007.

많은 여성이 출산을 연기하고 불임 치료에 의한 다태아출산(multiple births)이

증가함에 따라 조산수가 증가할 전망이다(그림 5-4 지표 참조: 저체중 평균체중 출산, 아동 예방접종), 저체중아 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영아사망 위험이 많고 실제로 고소득 국가에서는 지난 몇 년이 영아사망률이 영향을 받았다. 미숙아 출생의 증가는 1950년 이후 미국에서 첫 번째로 발생한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영아사망률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림 5-1).

나. 주요결과(Key findings)

없음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영아와 신생아 사망률에서 국가간 차이는 각국의 조산아 등록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그것이 정상분만으로 보고되든 유산으로 보고되든). 미국, 캐나다, 일본과 노르딕 국가와 같은 몇몇 국가에서 생존가능성이 매우 낮은 조산은 사산으로 등록되어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영아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라. 자료원과 추가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OECD Health Data, OECD Health at a Glance, 2007 (forthcoming)

2) 저체중 출산(Low birth weight, CO2a)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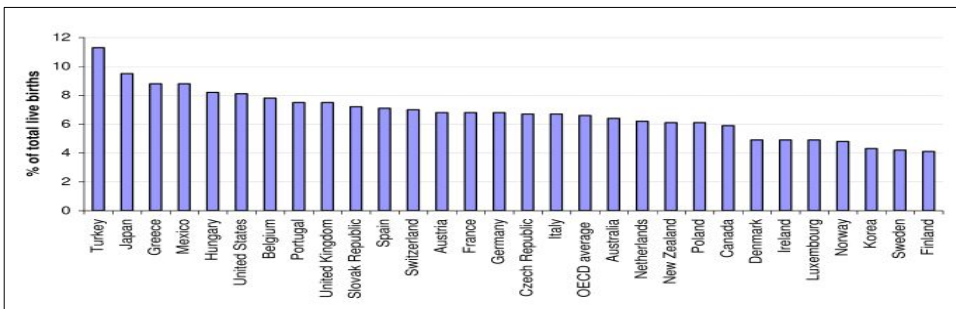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저체중 영아는 출생시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몸무게가 2500g(5.5파운드)미만일 때로 정의된다. 이는 영아 사망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감염성 질환을 관찰하는데 근거하며 국제적인 비교의 표준이기도 하다. 저체중출산아 수는 전체 출생아에 대한 비율로서 나타낸다. 대부분의 자료(data)는 출생에 대한 등록으로부터 제공되나 네덜란드의 경우는 국가의료인터뷰

조사가 자료원이다.

출생시 몸무게와 영아 질환율 및 사망률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체중 출생은 영아건강의 주요 지표이다(그림 5-1: 영아사망률 참조). 저체중 출생아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 태아의 불충분한 성장의 결과로 발생하기도 하고, 조산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저체중영아는 병약하고 높은 사망의 위험을 가지고 출생 후 장기적인 입원을 요하며, 심각한 장애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UNICEF & WHO, 2004). 저체중아를 초래하는 위험 요소에는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원, 모의 연령상승과 다태아 출산의 증가, 흡연이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와 같은 위험 행동, 임신기간 동안의 불충분한 영양섭취와 임신 전 부족한 케어 등이 포함된다.

2005년 노르딕국가(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아일랜드, 한국, 룩셈부르크가 비중이 낮은(2.5kg 미만) 출산이 5% 미만으로 정의되는 저체중아 출산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스, 헝가리, 일본, 멕시코, 터키, 미국은 저체중아 출산율이 8% 이상인 국가들이다. 이러한 지표는 OECD 평균인 6.6%와 비교할 때도 높은 수치이다.

[그림 5-4] 저체중아 비율, 2005(CO2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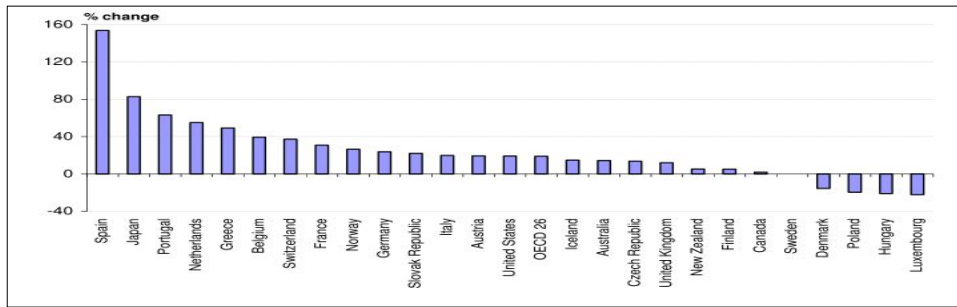


주: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태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미국 (2004); 룩셈부르크 (2003).
자료: OECD Health Data, 2007.

1980년 이후 저체중아 출산이 많은 OECD 국가에서 증가하였다(그림 5-5). 이러한 증가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미숙아 출산과 저체중의 위험을 높이는 다태아 출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불임치료 증가의 결과이다. 저체중 출산 증가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고령출산과 유도 분만, 제왕절개 등,

분만 관리 기술의 사용에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 출산과 함께 1970년 이후 젊은 여성 흡연율의 증가와 같은 많은 위험요인이 이러한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저체중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에 대한 의료기술로 영아사망율을 줄이는데 특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OECD Health at a Glance, 2007).

[그림 5-5] 저체중아 비율(몸무게 2.5kg 미만) 변화, 1980~2000(CO2a.2)



자료: OECD Health Data, 2007.

나. 주요결과(Key findings)

없음.

나.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국가적인 인구 조사는 인구 집단간 차이를 가린다. 국가내에서 인구집단간의 비교는 저체중 영아의 비율이 교육, 소득, 생활환경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저체중 영아의 비율에 있어 현저한 인종집단간의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유사한 차이가 호주와 멕시코에서 토착민과 비토착민 집단을 비교했을 때도 나타난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모든 자료는 각국의 행정적인 자료에서 제공되었으며, 네덜란드는 정기적인 국가의료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합되었다.

라. 자료원과 추가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OECD Health database, OECD Health at a glance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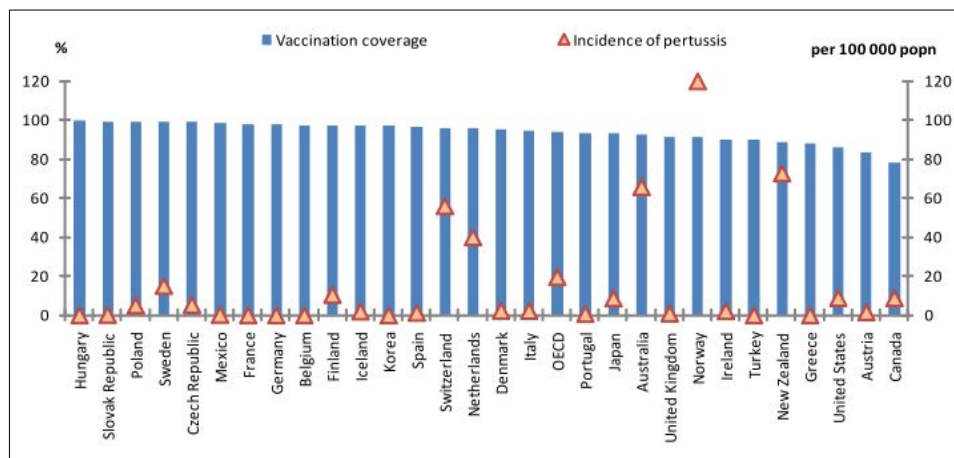
3) 아동기 예방접종(Childhood vaccination, CO2b)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예방접종율은 아동인구의 몇 %가 그 시기에 추천된 관련 백신을 맞는지를 보여 준다. 이 지표는 2세 어린이의 백일해와 홍역에 대한 예방접종율을 보여준다. 백일해와 홍역의 출현은 인구 100,000명 당 사례수로 측정된다. 모든 OECD 국가들은 수십년에 걸쳐 종합적인 아동 백신 프로그램을 제도화 하고 있다. 대중적인 백신, 소아마비, 디프테리아를 통해서 OECD 국가들에서 아동기 질병들을 대부분 박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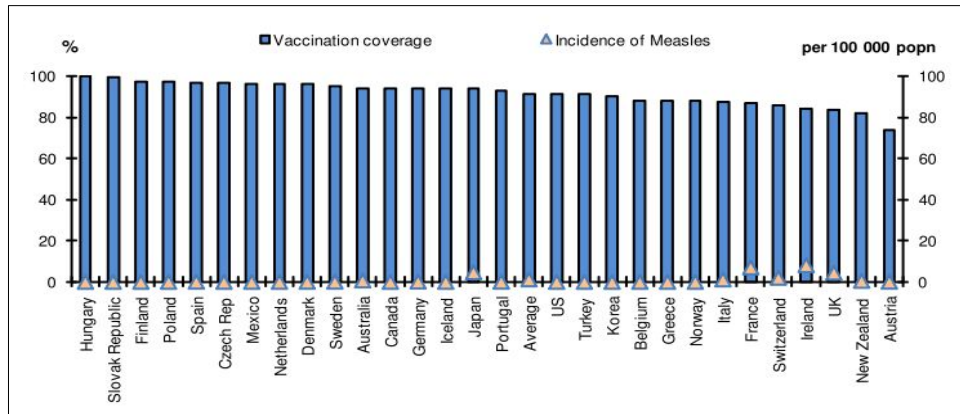
백일해는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희귀한 질병이 되었다. 그러나 보고된 접종률의 분산은 홍역에 비해 크다. 아울러 백일해의 발생은,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경우 예방접종율이 90%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120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예방접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림 5-6] 2세 아동 백일해 접종율과 전체인구 백일해 발생율, 2005(CO2b.1)



주: 호주자료는 2006년 기준;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일본, 프랑스, 핀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는 2004년 기준; 한국은 2003년 기준

[그림 5-7] 2세 아동 홍역 접종율과 전체인구 홍역 발생율, 2005(CO2b.2)



주: 호주자료는 2006년 기준;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일본, 프랑스, 핀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는 2004년 기준; 한국은 2003년 기준.

나. 주요결과(Key findings)

없음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예방접종 적용율을 측정할 때 국가간 이동백신정책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 지표는 특정 국가(혹은 하위 지역)에서 실제적인 정책에 근거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조사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주사를 맞은 아동의 수(행정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백신의 수를 확인한다. 발병율이 낮은 국가들은 해마다 불안정한 비율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보고가 의무적인지 자발적인지와 의심되는 사례와 확인이 든 사례가 보고 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가별 실제 보고는 다르며 이는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노르웨이에서 2005년 백일해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높는데(그림 5-6) 이는 백일해에 의해 감염된 아동의 수가 실제로 증가한 것과는 반대로 좋은 보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자료원과 추가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OECD Health database, OECD Health at a Glance 2007

4) 아동건강 상태로 본 한국의 현황

아동의 건강상태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직결되는 것으로 UN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사국은 최대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강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질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19세이 이후부터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포함시키고 있다(이향란, 2007). OECD Family Database에서는 아동의 건강을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주로 영유아의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항목(소분류)으로는 영아사망, 저체중 출산, 예방접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OECD 기준의 아동건강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아사망률은 OECD 평균과 거의 유사할 뿐 아니라, 영아사망률 감소률도 매우 높은 편이다. 저체중아 출산율은 핀란드와 스웨덴 다음으로 낮은 상황이다. 아울러 백일해와 홍역 예방접종률에 있어서도 한국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백일해 예방접종률은 OECD 평균보다 높고, 발병율은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홍역에 있어서는 약간 낮은 접종율을 보이고 있지만, 발생율이 낮은 특성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아동건강수준은 OECD Family Database의 기준에 의하면 매우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아동빈곤(Child poverty)

1) 가구유형별 소득 불평등과 소득수준(Trends in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CO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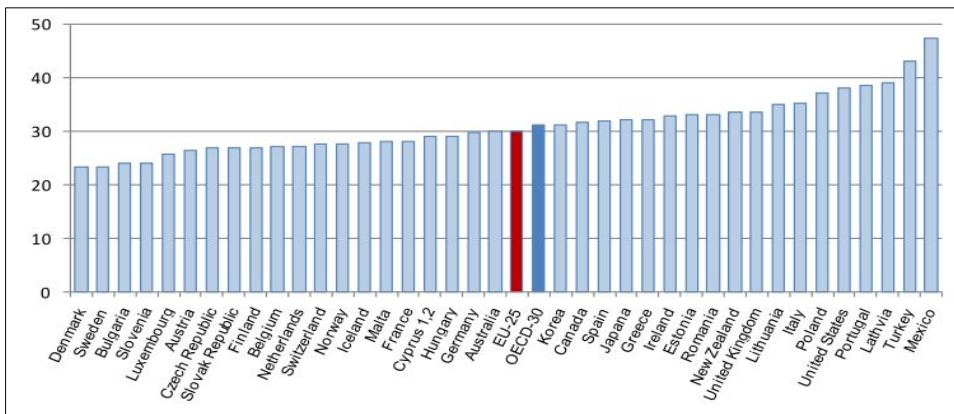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여기서 소득 불평등은 세금과 이전 후에 가구의 가처분 소득의 비율로 측정된다. 가구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 가구 가처분 소득은 0.5 탄성치를 가진 가구 규모로 조정된다. 여기서 사용하는 소득분배 지표는 지니계수와 5분위 (S80/S20), 소득 10분위수(P90/P10)를 포함한다. 지니계수의 값은 “완전히 평등한” 0에서 “완전히 불평등한” 100 사이에 있다; 5분위수는 가장 높은 분위(S80)에 대비한 가장 낮은 분위(S20) 사이에 있고; 10분위수는 가장 높은 분위(P90)에서 가장 낮은 분위(P10) 사이에 있다.

나. 주요결과(Key findings)

OECD 국가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매우 다양하다. 2000년대 중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덴마크와 스웨덴이 가장 낮고, 멕시코와 터키가 가장 높다(그림 5-8). 소득불평등의 측정법은 국가에 따라 매우 다르다(표 5-1). 예를 들어 5분위 측정은 상위분위에 있는 소득을 가진 인구는 하위분위에 있는 인구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미국, 폴란드, 터키는 8배; 멕시코는 11배 높게 나타난다. 사용된 측정법에 상관없이 국가간 차이는 유의하고 국가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림 5-8] 소득불평등 지니계수(2000년대 중반)(CO7.1)



자료: OECD (2008); non-OECD EU 국가는 Eurostat.

소득 불평등은 지난 20년간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보통수준이나 유의한 수준

이고, OECD 국가의 3분의 2에 영향을 준다. 전반적인 불평등 수치는 7%이상 증가하였다(표 5-2). 불평등의 증가는 특히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낮은 분위), 그리고 독일, 이태리, 뉴질랜드, 미국에서 현저하게 볼 수 있다.

〈표 5-2〉 불평등 정도(198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CO7.1)

	지니계수				S80/S20비율			P90/P10 비율		
	80s중반	90s중반	2000	2005	90s중반	2000	2005	90s중반	2000	2005
호주	..	0.3	0.29	0.31	5.0	5.2	4.5	4.1	4.3	4.1
오스트리아	0.23	0.23	0.25	0.27	3.4	3.8	4.1	3.0	3.3	3.3
벨기에	..	0.26	0.28	0.27	4.6	4.7	4.0	3.5	3.6	3.3
불가리아	0.29	0.24	..	3.7	3.7
캐나다	0.29	0.29	0.31	0.32	4.6	5.1	5.6	5.7	4.0	4.4
체코	..	0.25	0.26	0.27	3.4	3.7	3.9	2.8	3.1	3.2
덴마크	0.21	0.21	0.22	0.23	2.9	3.1	3.3	2.5	2.8	2.7
핀란드	0.20	0.23	0.28	0.27	3.4	3.8	4.0	2.8	3.2	3.3
프랑스	..	0.28	0.29	0.28	4.2	4.2	4.1	3.6	3.5	3.4
독일	0.26	0.27	0.27	0.30	4.1	4.1	4.9	3.4	3.4	4.1
그리스	0.33	0.32	0.34	0.31	5.3	5.7	5.1	4.3	4.6	4.1
헝가리	..	0.30	0.30	0.30	4.4	4.5	4.5	3.7	3.8	3.6
아이슬란드	0.29	4.3	3.2
아일랜드	0.34	0.32	0.29	0.32	5.1	4.8	5.4	4.3	4.4	4.3
이탈리아	0.31	0.35	0.34	0.35	6.4	6.1	5.1	4.8	4.5	4.2
일본	0.28	0.32	0.33	0.31	5.5	6.3	5.5	4.5	5.0	4.6
한국	0.30	5.2	4.2
룩셈부르크	0.24	0.26	0.26	0.26	3.7	3.8	3.8	3.2	3.2	3.3
멕시코	0.45	0.52	0.50	0.47	15.6	14.3	11.6	10.6	10.2	8.1
네덜란드	0.23	0.26	0.28	0.27	3.5	4.2	4.2	3.2	3.3	3.3
뉴질랜드	0.26	0.33	0.33	0.33	5.4	5.6	5.9	4.3	4.4	4.6
노르웨이	0.22	0.25	0.26	0.28	3.7	3.8	4.2	2.9	2.8	2.9
폴란드	0.32	0.36	..	5.2	7.6	..	4.1	5.9
포르투갈	..	0.34	0.35	0.36	5.9	5.9	7.0	4.7	4.8	5.5
스페인	0.33	0.28	0.27	0.31	6.1	6.0	5.3	4.7	4.6	4.4
스웨덴	0.22	0.22	0.24	0.24	3.1	3.5	3.4	2.6	2.9	2.9
터키	0.43	0.51	..	0.42	11.8	..	8.6	5.7	..	6.2
영국	0.28	0.30	0.37	0.34	4.8	6.5	5.6	4.1	4.6	4.4
미국	0.33	0.35	0.35	0.37	6.7	5.6	7.7	5.3	5.1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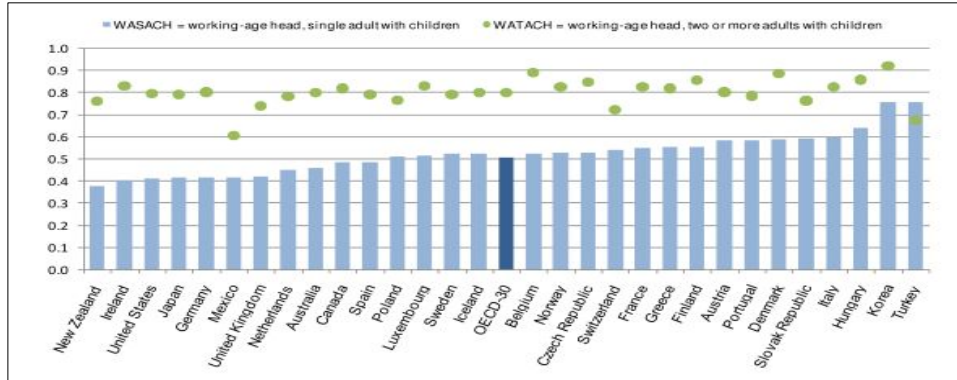
주: 호주자료는 2006년 기준,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일본, 프랑스, 핀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는 2004년 기준, 한국은 2003년 기준.

가구유형은 소득 분포에서 위치를 나타낸다(그림 5-9). 일반적으로 평균 가처분 소득은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가 없는 부부가족의 반 이하에 불과한 낮은 소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소득갭은 독일,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아동이 있는 부부의 소득은 자녀가 없는 부부의 소득에 비해서 20%가 낮다. 자녀 유무에 따른 부부의 소득의 차이는 터키에서는 33%이고 멕시코에서는 40%이다.

[그림 5-9] 가구유형별 상대소득(2000년대 중반)(CO7.2)

경제활동연령의 자녀가 없는 부부의 가구에 비한 가구의 가처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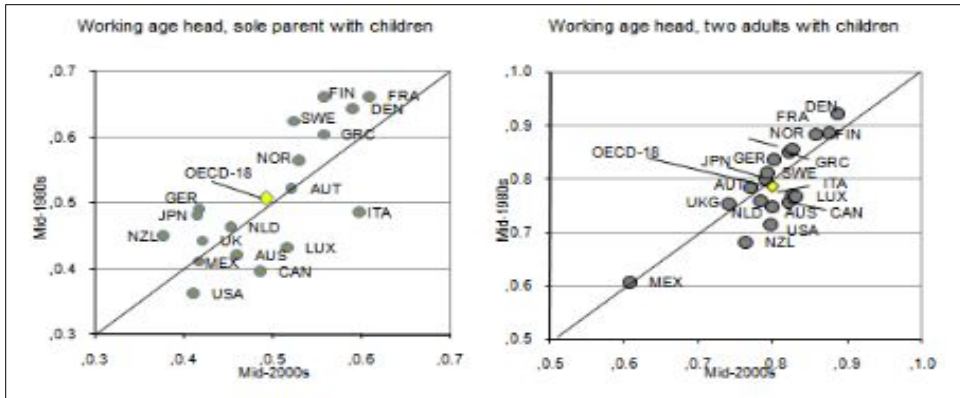
자료: OECD (2008).

소득 불평등 추이는 인구집단간 혹은 집단 내의 변화를 반영한다. 그림 5-9는 가장이 경제활동 연령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의 소득에 대비한 다양한 가구 유형의 두 지점(수평지점은 가장 최근 연도이고 수직지점은 1980년대)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대각선의 위에 위치한 국가들은 상대소득인 감소한 집단들이다.

일반적으로 대각선 양쪽에 균등하게 국가들이 분포되어 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한부모의 소득은 핀란드, 독일,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에서 감소하였고, 캐나다, 이태리, 룩셈부르크에서 증가하였다.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은 자녀가 있는 부부의 소득이 매우 많은 반면,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가구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5-10] 가구유형별 상대소득(1980년대와 2000년대 중반)(C07.3)

경제활동연령의 자녀가 없는 부부의 가구에 비해 가구의 가처분소득



자료: OECD (2008).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가구에 의해 제공되는 직접적인 세금과 사회보험기여를 제외한 후의 소득으로 측정되고, 정부와 사적 기관에 의해 가구에 제공하는 현물 서비스와 소비세, 주택소유와 다른 유형의 자산에 연계된 귀속 소득과 같은 비현금 소득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OECD에 의해 제공되는 가구 소득의 분배에 대한 표는 각 국가별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가정과 정의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 이들 자료들은 가구의 정의와 소득 평가기간과 같은 표준화된 기준으로부터 이탈이라는 측면에서 다를 수 있다. 아울러, 이들 조사 자료는 샘플과 비샘플 에러 각각의 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니계수와 5분위수에 대한 비OECD 국가에 대한 자료들은 생활환경과 복지에 대한 유럽통계의 도표(2005년)에서 제공하였다.

라. 자료원과 추가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OECD (2008), Growing Unequal - OECD 국가의 소득 분포와 빈곤. Income

poverty와 social exclusion in EU 25, 2005. Eurostat Living conditions in Europe, 2007. 2007, Eurostat.

2) 아동빈곤(Child poverty, CO8)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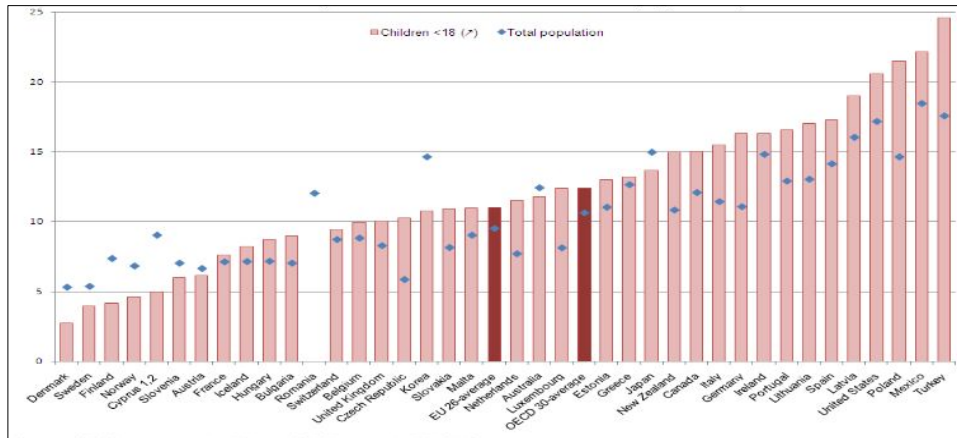
여기서 사용되는 빈곤 지표들은 아동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의 균등화된 소득을 가진 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아동의 비율),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의 균등화된 소득을 가진 유자녀 가족의 비율)과 전체 인구에 대한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의 균등화된 소득을 가진 모든 개인의 비율)이다.

가구별 비교를 촉진하기 위해서 아동(18세 미만)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획득된 소득을 공유하는 것으로 고려되고, 가구의 현금 가처분 소득은 0.5 탄력계수를 가진 가구 규모로 조정된다. 가구 소득은 급여, 이전소득, 자본소득을 포함하고, 가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순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측정된다.

나. 주요결과(Key findings)

평균 30개의 OECD 국가에서 아동의 약 12%는 2000년대 중반에 빈곤의 위험에 처했다(그림 5-11). 비슷한 비율이 OECD 26개 국가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아동의 11%가 빈곤하다. 아동빈곤율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5% 미만이고, 멕시코, 폴란드, 터키, 미국에서는 20%를 넘는다. 일반적으로 아동빈곤율은 전체 인구보다 높은데, 오스트리아, 호주, 덴마크, 핀란드, 일본, 한국, 노르웨이, 슬로바니아, 스웨덴은 예외이다. 아동빈곤율과 전체 빈곤율의 갭은 체코, 독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에서 4% 이상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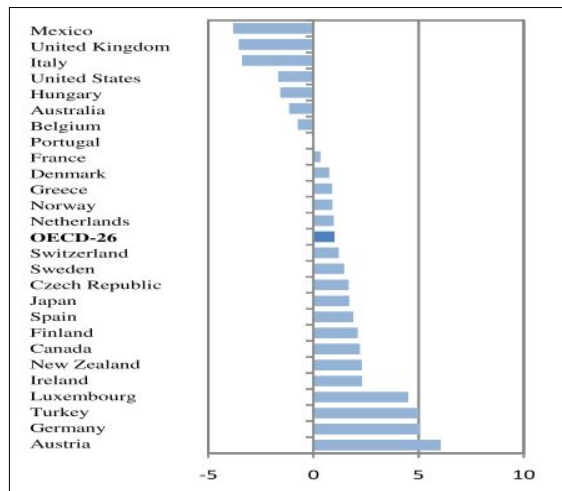
[그림 5-11] 아동 및 전체인구 빈곤율(2000년대 중반)(CO8.1)



자료: OECD (2008), EU의 경우 non-OECD 국가 EU-SILC (2005).

비록 몇몇 OECD 국가에서의 빈곤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빈곤율은 지난 10년간 1 point 증가했다. 특히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터키의 경우 증가했고, 이태리, 멕시코, 영국에서는 상당히 감소했다.

[그림 5-12] 아동빈곤율 변화(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CO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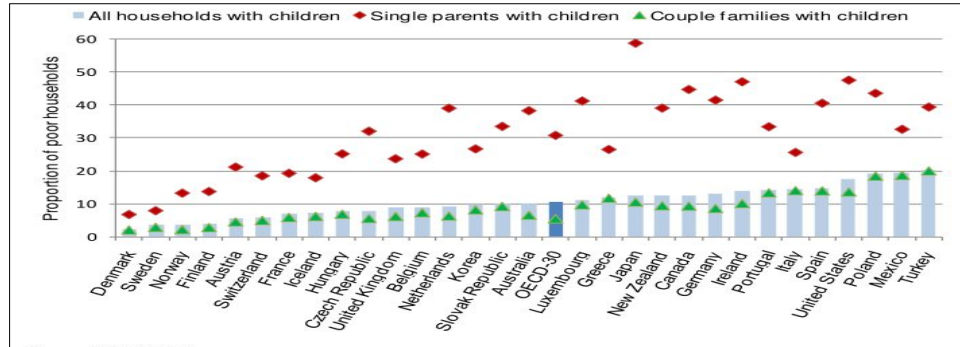


자료: OECD (2008).

아동빈곤에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데, 2개의 요인은 아동이 한부모와 사느냐 이고 부모가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한부모와 사는 아동은 2명의 성인과 사는 아

동보다 빈곤할 확률이 높다(그림 5-13). 그러나 빈곤할 확률은 부모의 고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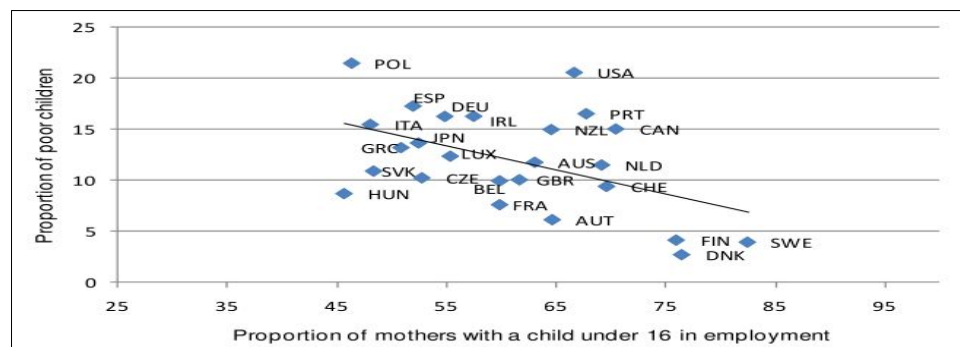
[그림 5-13] 가구유형별 빈곤율(2000년대 중반)(CO8.3)



자료: OECD (2008).

부모가 일을 하는 아동은 무직가구의 아동보다 빈곤율이 훨씬 낮다(표 5-3). 한부모가족 중, 직업이 없는 가구의 빈곤율은 일하는 가구보다 2.6배 더 높다. 아동이 있는 부부 중 직업이 없는 가구의 빈곤율은 1명만이 일하는 가구보다 3배 높고, 2명이나 그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 가구보다 12배 더 높다. 이러한 유형의 결과, 어머니가 일하는 비율이 높은 OECD 국가도 또한 아동빈곤율이 낮게 보고되고 있다(그림 5-14). 빈곤율은, 비록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구에 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다(표 5-3).

[그림 5-14] 모성고용율이 높은 국가에서의 낮은 아동빈곤율(2000년대 중반)(CO8.4)



자료: OECD (2008) and Family database

〈표 5-3〉 아동과 유자녀 가구의 빈곤율(2000년대 중반)(CO8.1)

	빈곤율		가구주 근로여부와 자녀의 수에 따른 빈곤율									
	2000년 대 중반	90년대 부터의 변화	모든가구		한부모가구		부부가구			자녀의 수		
			2000년 대 중반	1995년 부터의 변화	근로 안함	근로함	모두 근로안 함	1명 근로	2명 이상근 로	1명	2명	3명 이상
호주	12	-1.2	10	-1.0	68	6	51	8	1	9	10	11
오스트리아	6	6.0	6	6.1	51	11	36	4	3	6	5	6
벨기에	10	-0.8	9	0.1	43	10	36	11	3	7	9	11
캐나다	15	2.2	13	1.6	89	32	81	22	4	11	13	18
체코	10	1.7	8	1.4	71	10	43	9	1	8	6	..
덴마크	3	0.8	2	0.7	20	4	21	5	0	2	2	4
핀란드	4	2.1	4	1.9	49	6	23	9	1	5	3	3
프랑스	8	0.3	7	-0.2	46	12	48	12	2	6	7	10
독일	16	5.1	13	4.2	56	26	47	6	1	13	13	14
그리스	13	0.9	12	0.9	84	18	39	22	4	8	13	19
헝가리	9	-1.6	8	-1.1	44	16	22	6	3	5	6	14
아이슬란드	8	..	7	..	23	17	51	29	4	7	6	10
아일랜드	16	2.3	14	..	75	24	55	15	2	12	12	19
이탈리아	16	-3.4	14	-3.1	..	16	78	24	1
일본	14	1.6	12	1.2	60	58	50	11	10
한국	10	..	9	..	29	26	65	10	4
룩셈부르크	12	4.5	11	3.8	69	38	27	16	5	7	13	14
멕시코	22	-3.8	19	-2.4	30	34	53	27	11	11	16	26
네덜란드	12	1.0	9	1.2	62	27	65	12	2
뉴질랜드	15	2.3	13	1.5	48	30	47	21	3
노르웨이	5	0.9	4	0.6	31	5	29	4	0	4	2	6
폴란드	22	..	19	..	75	26	51	28	6	15	18	31
포르투갈	17	0.0	14	0.4	..	26	53	34	5	10	17	..
슬로바키아	11	..	10	..	66	24	66	18	2
스페인	17	1.9	15	1.1	78	32	71	23	5	10	16	29
스웨덴	4	1.5	4	1.5	18	6	36	14	1	4	3	3
스위스	9	1.2	6	1.3	22			8	
터키	25	5.0	20	3.6	44	32	28	19	20
영국	10	-3.6	9	-3.7	39	7	36	9	1	4	6	20
미국	21	-1.7	18	-1.1	92	36	82	27	6	14	15	26
OECD	12	1.0	11	0.8	54	21	48	16	4	8	10	15

자료: OECD (2008).

가구유형별 구성과 빈곤율의 국가간 차이는 아동빈곤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정책의 범주에 영향을 준다는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시사점에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은, 만약 각국이 좋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모범적 국가에 의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아동빈곤을 줄이는 공적 이전소득의 부모 고용망을 확산시킨다면 얻게 될 아동

빈곤율을 계산함으로써 얻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고용을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둔 “노동시장 전략”이 호주, 미국, 독일, 아일랜드에서는 커다란 영향을 줌을 의미하고, 가족수당을 증액하는 “급여전략”이 한국, 일본, 이태리, 폴란드, 미국에서 많은 영향을 줌을 의미한다 (Whiteford and Adema, 2007).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여기에서 가구는 소득을 공유하는 기본 단위로 정의한다, 이 때 가족은 구성원들 사이에 반드시 혈연관계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 “아동이 있는 1인 성인” 가구는 한부모 가구, 다른 가구 형태(조부모가구와 같은)를 포함하는 가구들로 분류된다; 유사하게, “아동이 있는 커플”가구는 다른 성인과 함께 살고 있는 일부 한부모가구를 포함하기도 한다.

OECD 국가들에 대한 자료(data)는 OECD 소득분배조사표(OECD 2008의 표 1.A1.1)에서 제공되었다. 비 OECD 국가들 중 EU 국가에 대한 자료(data)는 EU-SILC 2005에 근거한 유럽통계(Eurostat)의 웹사이트(2008년 10월)에서 추출하였다. 여기의 수치들과 유럽통계 사이의 주요한 차이는 균등화 지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구 규모의 스케어루트를 사용한 반면에 유럽통계는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여 추가적인 가구 구성원에 대해서 더 높은 가중치를 준다(1인일 때 1의 가중치를 주고, 이후 추가적인 성인 1인당 0.5, 추가적인 아동 1인당 0.3).

참조한 년도는 국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자료에서는 주로 2004년 자료이며, 캐나다, 덴마크,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한국, 영국과 미국은 2005년, 네덜란드는 2003년 자료이다. 1990년대 중반 자료에서 대부분의 자료는 1995년인데, 오스트리아는 1993년 자료이고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와 터키는 1994년, 체코 공화국,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는 1996년도 자료이다.

라. 자료원과 추가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OECD (2008); Growing Unequal-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Eurostat (2008); Child Poverty and Well-Being in the EU - Current status and way forward, Luxembourg; Whiteford P. and W. Adema (2007), "What Works Best in Reducing Child Poverty: A Benefit or Work Strategy?",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52.

3) 아동빈곤 상태로 본 한국의 현황

아동빈곤은 아동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아동빈곤이 없을 때 아동은 기초생활이 보장되고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게 된다. OECD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계는 지니계수, 아동빈곤율, 가구 유형별 아동빈곤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단,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는 있지만, 기존 조사가 불완전하여 향후 보다 완전한 통계치가 요구된다. 특히 조사대상 지역, 아동연령, 모의 취업 여부 등과 같은 보다 자세한 정보가 요구된다.

OECD Family Database를 통해본 결과, 지니계수를 통한 한국의 불평등수준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불평등 수준이 중간수준에 이르고 있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불평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구유형별 소득에 있어서는 무자녀 부부가구에 비해서 한부모가구의 소득은 비교적 타국가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파악되었고, 유자녀 부부가구의 경우도 높은 편으로 파악되었다. 아동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영국, 체코, 슬로바니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구유형별로 볼 때, 가구내 취업자의 수에 따라 아동빈곤률이 매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OECD 국가보다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구성원의 경제활동은 아동빈곤율을 낮추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에는 모의 취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모의 취업과 아동빈곤율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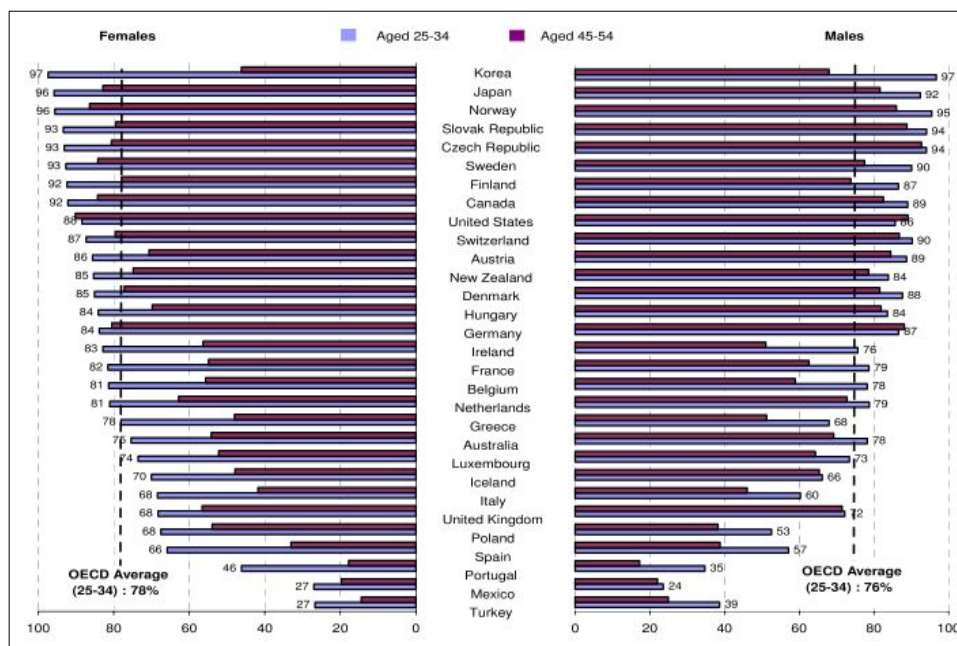
3. 교육 및 문해(Education/literacy)

1) 성별 교육수준과 평균 공교육기간(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and average years spent in formal education, CO9)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이 지표는 성공적인 정규 교육 프로그램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성인 인구의 교육수준을 측정한다. 인구와 교육수준에 대한 자료는 OECD와 EUROSTAT의 연차 노동력조사(LFS: Labour Force Surveys)에 의해서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다. 교육수준 프로파일은 특정 교육 수준을 완료한 10세 연령 코호트의 비율에 근거를 둔다. 교육수준을 정의하기 위해서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가 사용되었다. 더 상세한 정보는 OECD 교육지표 부록 3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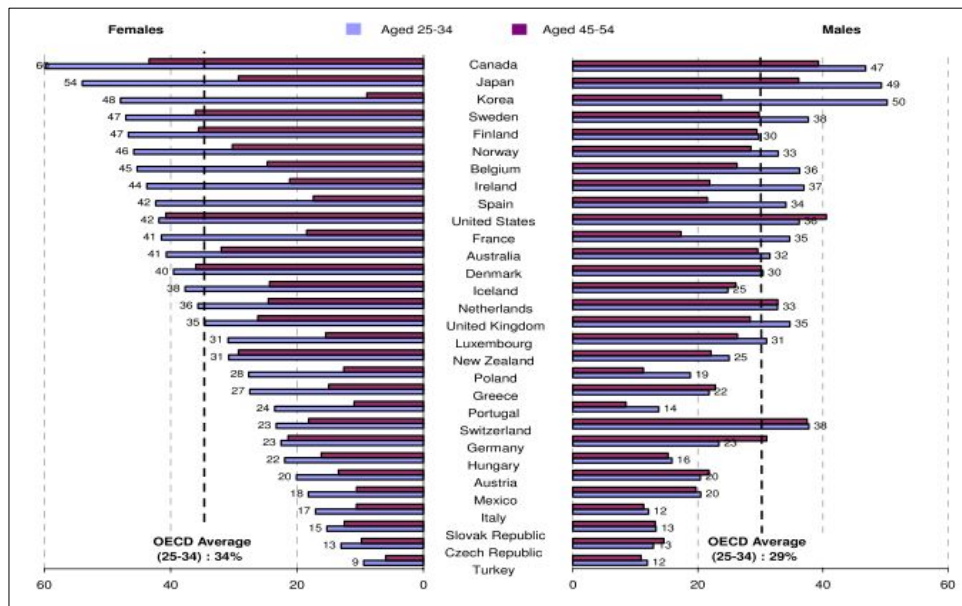
[그림 5-15] 성별 및 연령별 고등학교 졸업비율(2004)(CO9.1)



주: 25-34세 여성의 교육수준은 내림차순으로 순위가 매겨짐.

고등학교 교육(ISCED 3)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은 공교육의 마지막 2년의 기간(일반적으로 16세)의 프로그램과 관련되고 단기간의 직업 교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5-14는 성별 및 2개의 연령 코호트별 고등교육 수준을 나타낸다. 최근 졸업생(25-34세)과 20세 더 된 사람(45-54세). 고등학교의 상급학년을 마치는 인구의 백분율이 증가하는 국가에서는 여학생의 학력이 증가한 국가들이다. 이러한 여학생 교육수준의 증가는 여성과 어머니의 노동수급 증가를 촉진시킨다.

[그림 5-16] 성별 및 연령별 대학교 졸업비율(2004)(CO9.2)



주: 25-34세 여성의 교육수준은 내림차순으로 순위가 매겨짐.

교육성취는 주어진 교육수준(중학교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에서는 초등학교 연한만이 포함된다.)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사람들을 위한 공교육(표 5-3)의 평균 연한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교육성취는 각 ISCED 수준의 가중치를 둔 연한의 백분율로서 표현된 각 교육수준의 성취율 비율을 합함으로서 계산된다. 예를 들어, 만약 인구의 50%가 대학교육을 받았고, 이 과정이 3년의 프로그램이라면, 교육취득 연수(평균 연한으로 표현된)는 1.5년이 된다. 성공적으로 끝낸 공교육의 평균 연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평균 연한은 각 교육수준(즉, 고등학교, 대학교)을 전부

더한 것이다.

나. 주요결과(Key findings)

없음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이 매우 포괄적이더라도, 한 국가의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것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직업교육프로그램은 2차 교육의 상위프로그램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대학프로그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일본과 스웨덴에서 대학 졸업생의 상당수는 다른 나라에서 직업 교육으로 분류되는 자격증을 획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평균 기간은 교육 수준에 따른 인구에서 국가간 차이를 나타내는 완벽한 지표는 아니다.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교육 수준내에서도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시간에는 국가간 그리고 국가내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법이나 의학 학위 코스가 컴퓨터 과학 학위와 유사한 교육 성취를 야기할 수는 있지만, 졸업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또한 유사한 학문의 유사한 학위를 획득하는 데 요구되는 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둘째,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뉴질랜드와 폴란드의 자료는 모든 아동이 의무교육을 완성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자료는 아동의 일정비율이 의무교육 기간을 완성하기 전에 탈락(drop out)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4년에 이러한 비율은 덴마크에서 1%, 네덜란드에서 8%, 멕시코와 터키에서 50% 이상이었다. 그러므로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뉴질랜드, 폴란드에 대한 통계는 2차 교육의 하위 수준을 획득한 아동의 비율을 과다 추정할 지도 모르고, 성공적으로 공식교육을 완성하는 평균 기간 역시 과다추정일지도 모른다.

〈표 5-4〉 수료한 공교육 교육연수(2004)(CO9.1)

	25-64인구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5-34	35-44	45-54	55-64	25-34	35-44	45-54	55-64
호주	12.6	12.8	12.5	13.2	12.8	12.7	12.2	13.3	12.4	12.3	11.7
오스트리아	12.0	12.3	11.7	12.4	12.4	12.2	12.0	12.3	12.0	11.4	10.8
벨기에	11.3	11.4	11.4	12.4	11.7	11.1	10.3	12.8	11.9	10.7	9.5
캐나다	13.2	13.2	13.3	13.6	13.3	13.0	12.2	14.1	13.6	13.0	11.8
체코	12.5	12.5	12.4	12.6	12.8	12.6	12.5	12.8	12.6	12.1	11.9
덴마크	13.4	13.5	13.3	13.6	13.6	13.4	13.6	13.6	13.3	13.3	13.0
핀란드	11.9	10.9	11.4	12.5	12.3	10.5	8.5	13.5	13.0	11.2	8.5
프랑스	11.6	11.7	11.4	12.8	12.1	11.3	10.3	13.1	12.0	10.7	9.6
독일	13.4	13.7	13.2	13.6	13.8	13.8	13.7	13.5	13.4	13.2	12.5
그리스	10.9	11.0	10.7	11.9	11.7	10.9	9.4	12.6	11.7	10.0	8.2
헝가리	11.7	11.8	11.6	12.1	12.1	12.0	11.3	12.4	12.1	11.5	10.5
아이슬란드	10.5	9.7	11.4	10.1	10.4	9.2	9.0	12.6	11.9	10.5	9.7
아일랜드	13.0	12.9	13.1	14.0	13.4	12.3	11.2	14.5	13.6	12.5	11.4
이탈리아	10.1	10.2	10.0	11.2	10.5	10.0	8.7	11.7	10.7	9.5	7.6
일본	12.4	12.6	12.1	13.3	13.3	12.4	11.2	13.2	12.9	11.9	10.9
한국	12.0	12.5	11.4	13.7	13.2	11.6	10.2	13.6	12.2	10.0	8.0
룩셈부르크	13.3	13.6	13.0	14.2	13.5	13.5	13.1	14.1	13.3	12.6	11.6
멕시코	8.8	9.1	8.6	9.5	9.4	8.8	7.8	9.4	8.9	8.0	7.1
네덜란드	11.2	11.4	11.1	12.0	11.5	11.3	10.6	12.5	11.4	10.5	9.8
뉴질랜드	12.6	12.6	12.6	11.8	11.4	11.0	9.6	12.1	11.5	10.7	8.4
노르웨이	13.9	13.9	13.9	14.2	14.1	13.7	13.4	14.7	14.2	13.8	13.1
폴란드	11.8	11.6	11.9	12.2	11.7	11.4	11.1	12.9	12.2	11.7	10.7
스웨덴	12.6	12.4	12.8	13.1	12.7	12.2	11.3	13.6	13.0	12.7	11.8
터키	9.6	9.9	9.2	10.3	9.8	9.6	9.2	9.6	9.1	8.9	8.6
영국	12.6	12.7	12.4	13.0	12.6	12.7	12.4	12.9	12.4	12.3	12.0
미국	13.3	13.2	13.4	13.1	13.2	13.4	13.2	13.4	13.4	13.5	13.1

주: 1) 참조년은 2003.

라. 자료원과 추가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2) 전공별 대학졸업생 성차(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CO10)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이 지표는 전공과 성별 졸업율을 살펴봄으로써 남학생과 여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숙련되고 전문적 지식이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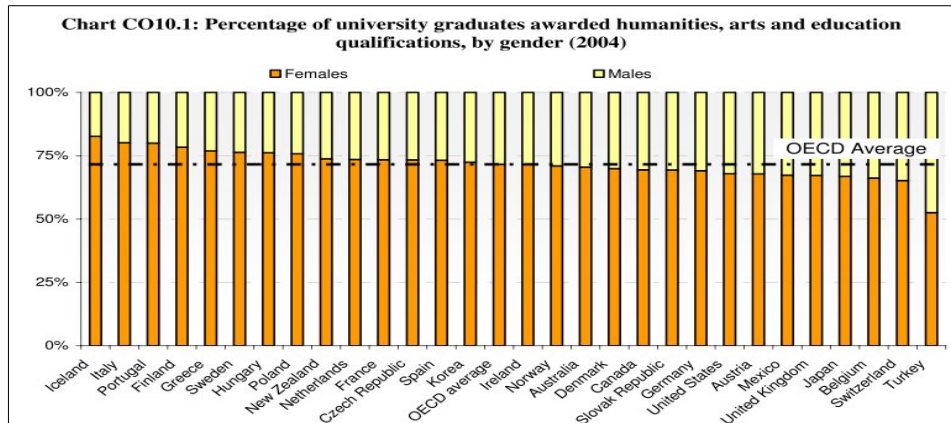
학생과 여학생을 시장으로 이끌고, 어떠한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이 미래의 커리어와 가족 소득 패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통찰을 준다.

학문별 졸업자에 대한 통계는 UNESCO, OECD와 EUROSTA(UOE)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간 통계 수집을 통해 취합했다. 졸업자들은 성공적으로 대학 프로그램을 완성한 사람과 특정 해에 졸업한 사람으로 구분된다; 이는 성과 학과별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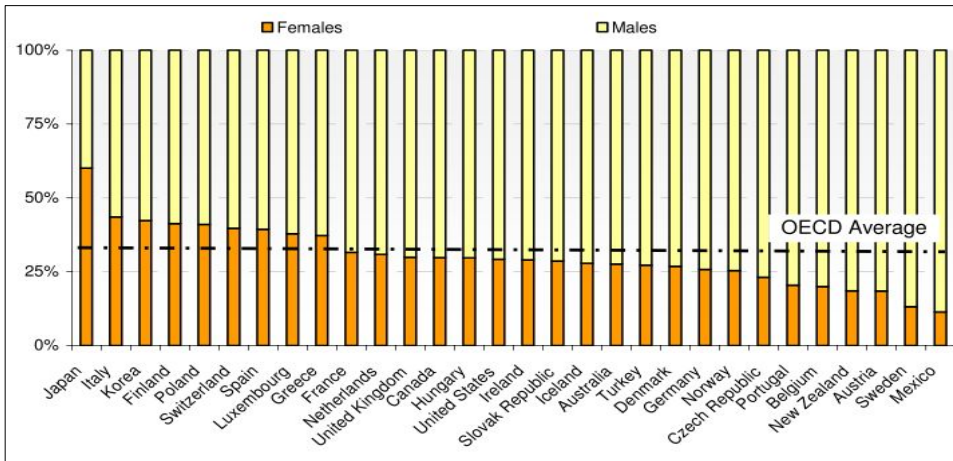
그림 5-16은 여학생 졸업생이 교양학, 예술, 교육 분야에서 많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야에는 인문학, 연극, 그래픽 및 오디오 예술, 즉 사진학과 외국어, 언어학과 문학, 역사 및 고고학 등의 과목이다. 이중 교사, 번역가, 고고학자 등은 전망있는 경력이 된다.

역으로, 수학과 컴퓨터 공학은 남학생이 주로 성공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그림 5-18). 이 분야의 과목에는 통계학, 회계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료분석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있다. 전망있는 직업이 하이테크분야, 회계부문과 보험부문에 있다.

[그림 5-17] 성별 인문학, 예술, 교육학 분야 대졸자 비율 (2004)(CO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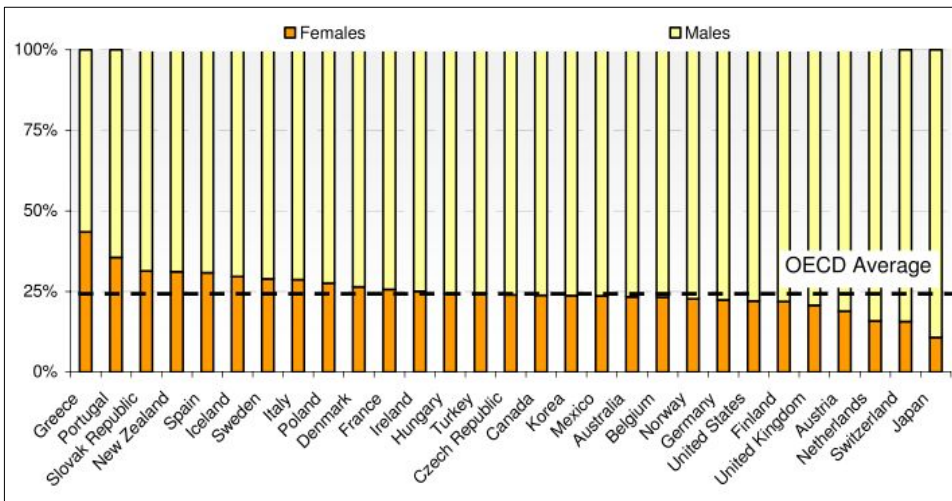


[그림 5-18] 성별 수학, 컴퓨터공학 분야 대졸자 비율(2004)(CO10.2)



남학생이 지배적인 다른 분야에는 공학, 산업공학, 토목공학이 있다. 이 분야는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고 따라서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은 원거리통신, 화학공학, 식품공학, 광학, 건축학과 토목학 분야의 과목을 이수한다. 평균적으로 여성 졸업생은 이 분야 졸업생의 30%를 차지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그림 5-19를 참조하라.

[그림 5-19] 성별 공학, 산업공학 및 토목공학 분야 대졸자 비율 (2004)(CO10.3)



나. 주요결과(Key findings)

없음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이 분야에서, 국가간 비교통계에 대한 더 이상의 중요한 이슈는 제기되지 않는다. 학과와 학문 분야에 대한 카테고리에 근거한 UOE의 국가별 해당 매뉴얼과 지침에 상세한 지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교육 프로그램의 분류 측면에서 국가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 자료원과 추가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OECD Education Database and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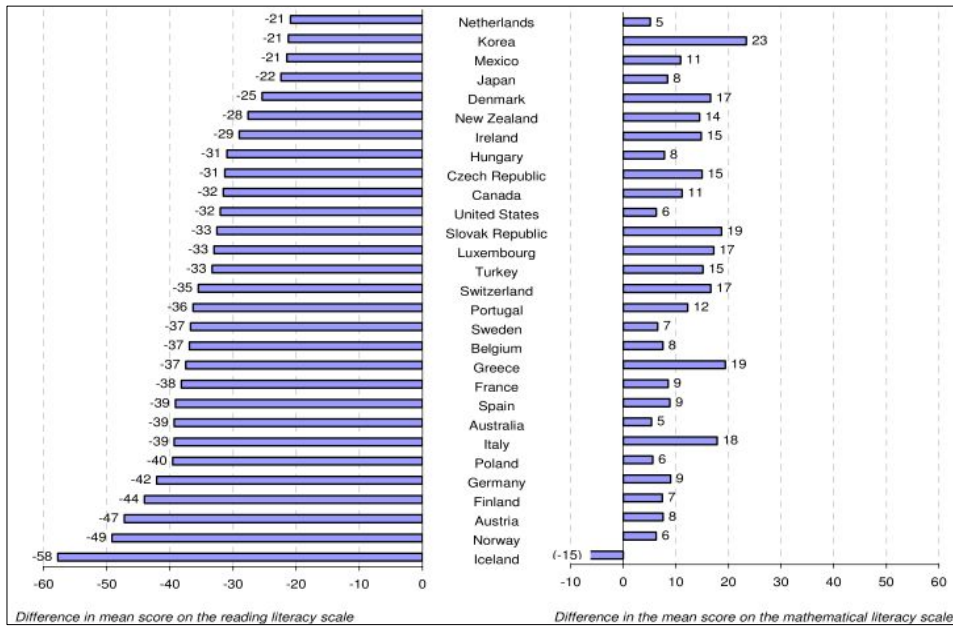
3) 15세 아동의 성별 문해점수(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CO12)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OECD의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은 15세 학생(의무교육이 끝날 시점에 다다른)이 읽기, 수학과 과학 등의 기본적인 지식 숙련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평가는 실생활에서의 읽기, 수학과 과학 문해에 대한 학생의 능력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PISA의 읽기 능력은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유형의 텍스트와 그것이 나타나는 맥락에서 관련된 텍스트를 설명하도록 질문함으로써 텍스트와 문법 구조에 대한 독해 능력 이상을 검사한다. 수학 능력 역시 이와 유사하게 수학에서의 설명, 이해와 응용에 대한 학생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과학 능력은 과학적인 지식을 사용하고 증거에 근거를 둔 결론을 도출하는 학생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첫 번째 PISA 평가는 읽기 능력을 주요한 평가 영역으로 하여 2000년에 행해졌다; 2003년의 초점은 수학이었다(여기서 제시하는 대부분의 통계는 그 해에 행해진 것이다); 그리고 2006년에 평가의 초점은 과학 이해였다(결과는 2007년말에 사용가능하다).

[그림 5-20] 읽기와 수학 성적 성차, PISA(2003)(CO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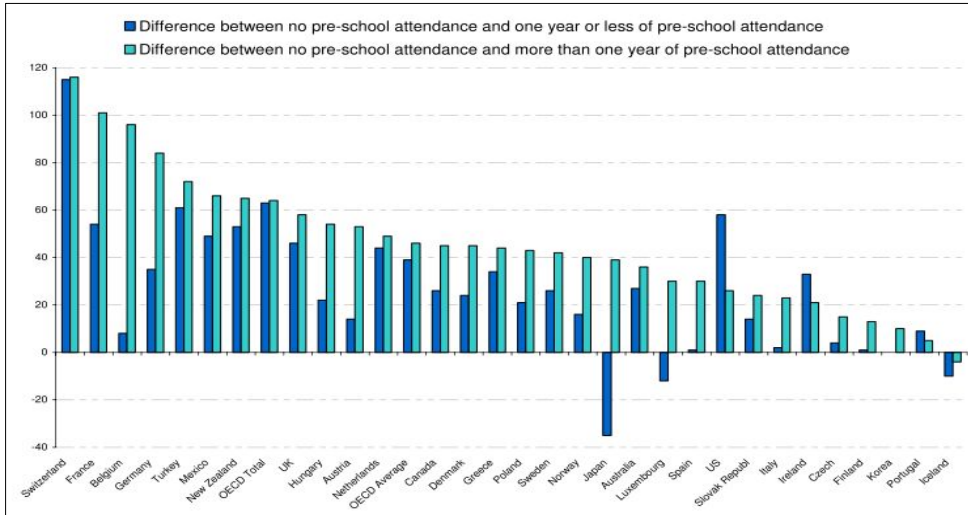
결과는 15세 학생들 사이에 상당한 성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여학생은 읽기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의 읽기 능력 평균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반대로 남학생들은 수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준다. 그림 5-19는 읽기와 수학 이해 척도의 중위 점수에서 성별 차이를 보여준다.

나. 문해점수는 다른 요인에 따라 변한다.

PISA는 학생간의 문해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서로 연관된) 요인은 유치원 취학, 부모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교육수준을 포함한다.

조기교육이 중요성은 조기교육의 기간과 읽기 문해율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그림 5-21에 제시되어 있다. 거의 모든 나라에 있어서 조기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유의하게 유리한 수행력을 보이고 있다.

[그림 5-21] 조기교육 참여 기간별 평균 읽기점수 차이, PISA(2003)(CO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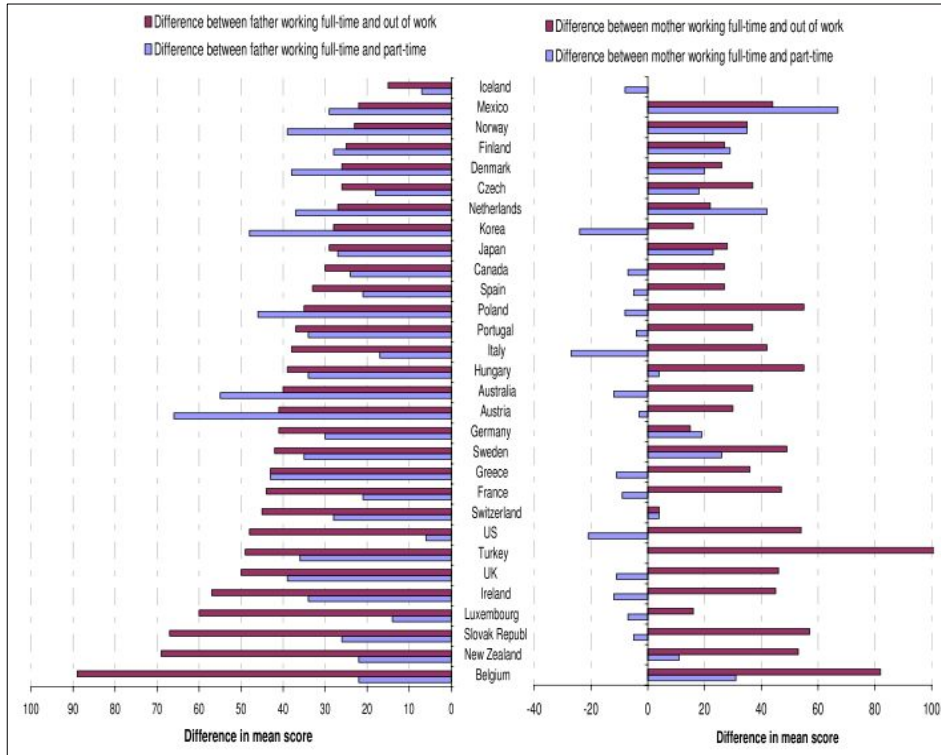
부모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정규직, 계약직, 실업 혹은 취업)는 PISA 질문지에 있는 항목이고, 학생들은 부모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부모의 직업지위와 관련된 학생의 수행 상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부모가 정규직인 학생의 수행력과 계약직의 차이와 정규직과 실업 혹은 취업중인 학생의 수행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학생의 수행력은 아버지가 정규직인 경우가 계약직이거나 취업중인 경우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다. 그러나 학생의 수행력과 어머니의 정규직 혹은 계약직 지위와의 관계는 어머니가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인 경우 학생의 수행력이 더 좋은 몇몇 국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덜 명확하다.

부모의 교육성취수준도 다음 그림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생 수행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읽기(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점수가 높다. 그림 5-22는 부모가 대학교육을 마친 학생을 (부모가 고등학교 교육만 마

친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교육을 마친 학생과 비교하고 있다.

[그림 5-22] 부모 고용형태별 평균 읽기점수 차이, PISA(2003)(CO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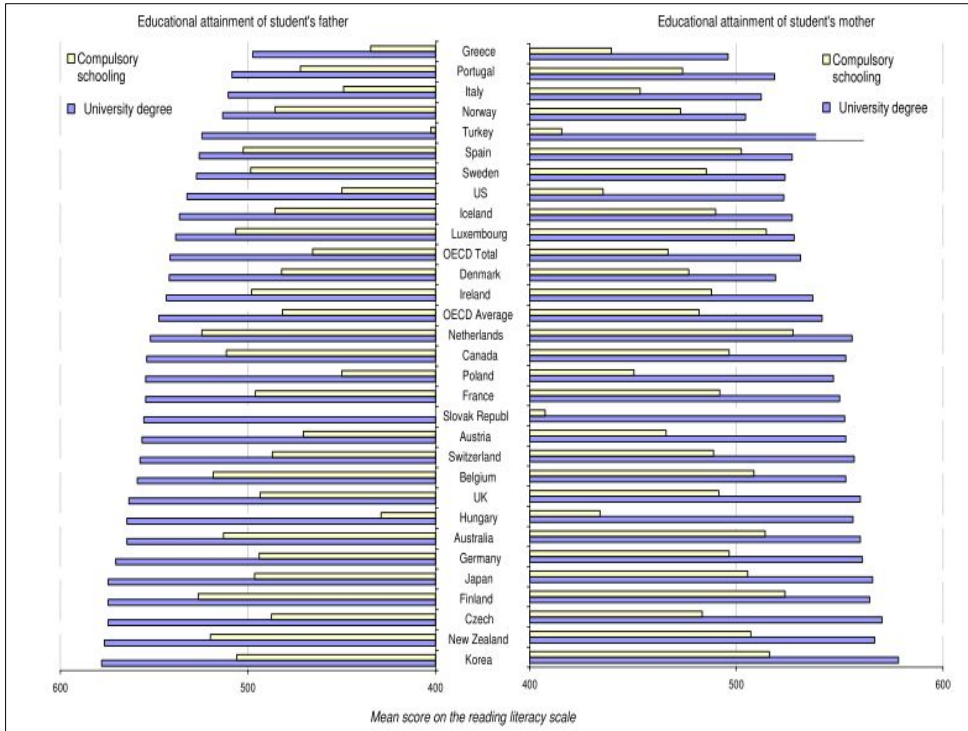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PISA 평가는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가지에 문화와 언어를 광범위하게 담도록 상당한 노력과 자원들을 투입하고 있다. 철저한 질적 담보 기제는 번역, 표본추출, 자료 수집에서도 적용된다. 만약 OECD에서 요청하는 샘플 사이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인 비교에서 누락된다. 이러한 경우는 2000년 네덜란드와 영국 2003년의 경우인데, 두 경우 모두 샘플 사이즈 요건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고, 따라서 주요한 결과에서 배제되었다.

OECD 국가에서 2.25백만명 이상의 15세 학생들이 PISA 2003에 참여하여 평가되었다. 결과는 확률 샘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오차는 계산되어, 결과는

OECD PISA 웹사이트(OECD 2004: *Learning for Tomorrow's World: First Results of PISA 200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3] 부모 교육수준별 평균 읽기문해율 점수, PISA(2003)(CO12.4)



라. 자료원과 추가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

www.pisa.oecd.org

4)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젊은이(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or employment, CO13)

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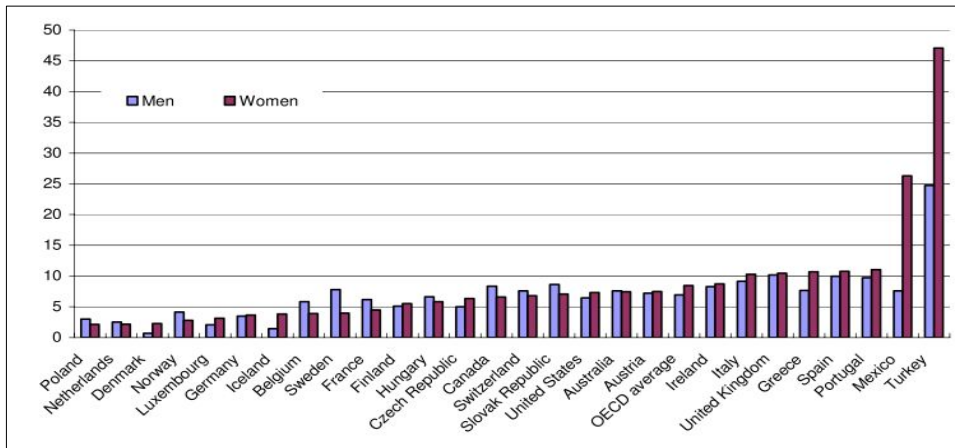
이 지표에서 제시하는 통계는 교육과정이나 고용(최소한 주당 1시간 이상)에 참

여하지 않는 청소년(여기서는 15-19세)의 연령별 비율에 대한 노동력조사에서 산출되었다.

지난 몇 십년동안의 OECD 국가들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교육에서 근로생활로의 전환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OECD 국가들의 교육정책은 종종 청소년이 최소한 2차 교육의 상위기관(고등학교)을 졸업하도록 장려하고; 또한 노동시장에서 그들의 기회를 향상시키고; 저숙련 수준이 높은 실업 위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의 높은 비율은 학교에서 노동으로의 전환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숙련된 근로자의 인력풀이 적어지게 한다.

자료는 대체적으로 1/4분기를 언급하고 있고, OECD 연차 노동력조사와 몇몇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연차 유럽노동력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1/4분기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여름 고용은 배제될 수 있다. 노동시장 지위에 대한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라서 정의되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work-study 프로그램¹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교육과 노동 모두에 존재하는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되는 데이터에서는 배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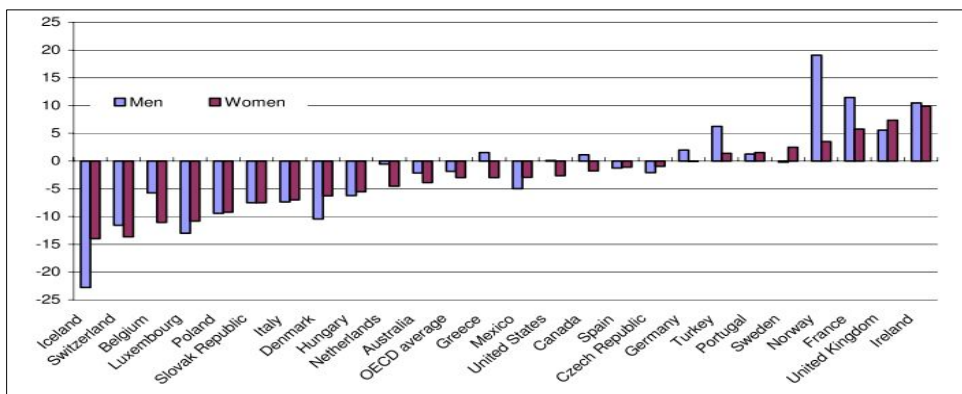
[그림 5-24] 성별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15-19세 젊은이 비율 (2004)(CO131)



18) 산학연 프로젝트 등 낮에는 근로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그림 5-25는 지난 9년간 (1995년에서 2004년) 교육기관이나 직업에 있지 않은 젊은이의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비율은 떨어졌고, 특히 여성에 있어서 그렇다. 이는 교육에의 참여가 일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경향은 학교-직업의 전환 유형이 개선되었음을 나타낸다. 프랑스(이러한 연속상의 시리즈를 단절시키는 지점임)와 노르웨이에서는(그림 5-24) 교육기관에도 있지 않고 고용도 되지 않은 젊은이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비율은 여전히 국제 비교에서는 낮은 편에 속한다(그림 5-23).

[그림 5-25] 성별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15-19세 젊은이 연평균 성장률(1995-2004)(CO13.2)



나. 주요결과(Key findings)

없음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들(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국가간 비교는 제도적인 차이를 왜곡시킨다. 교육 프로그램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고, 2차교육 기간의 중·고등학교¹⁹⁾ 평균 졸업 연령에 영향을 받는다. 평균 졸업 연령이 전형적으로 낮은 국가에서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코호트

19) 2차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lower level은 중학교, upper은 고등학교로 번역함.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들은 교육기관이나 취업하지 않은 젊은 이들 중 다수를 차지한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와 터키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에서 남학생은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 몇몇 국가에서 노동력 통계는 단지 시민들만 고려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는 집에서 생활하는 군인 또한 노동력의 일부로 고려되지만 병영에 징집된 청소년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병영에 징집된 청소년까지 노동력으로 셈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교육에도, 고용에도 포함되지 않은 남자 청소년 비율에 대한 국가간 차이는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와 영국 등 몇몇 국가에서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와 대학 입학 사이에 일년간의 “gap-year²⁰⁾”가 있다. 낮은 항공료와 경제 성장이 이러한 경향을 촉진했다.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

OECD Education Database and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6.

5) 교육 및 문해 상태로 본 한국의 현황

교육과 문해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OECD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성별 고등학교 졸업비율을 보면 25~34세 남녀는 성차 없이 동일한 97%이고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수준이다. OECD 평균은 여성

20) ‘GAP YEAR’는 초, 중,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기 직전의 1년간의 공백을 지칭하는 말로, 학생들의 안식년이라고 부를 수 있음. 즉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쉴 새 없이 공부해서 대학 합격증을 받아들이고, 곧장 캠퍼스로 들어가 공부하는 대신 사회를 먼저 배우는 제도임.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거나 동물 연구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후진국에 가서 빈곤층 어린이들을 돕기도 함. 미국과 영국의 대학들은 학생들의 GAP YEAR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정규 교육 과정에 파묻혀 있던 학생들이 곧장 대학에 들어와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지적, 정서적으로 성숙할 기회를 미리 갖는 것이 나중에 강의실에 돌아왔을 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임.

78%, 남성 76%이다. 단, 45~54세 연령대의 고등학교 졸업 비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으로 50%를 밑돌고 있다. 대학교 졸업비율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일본과 비슷하게 대졸자 비율이 높은 국가로 파악되었다. 25~34세 중 여성의 48%, 남성의 50%(OECD 국가 중 최고)가 대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OECD 평균은 여성 34%, 남성 29%이다. 대졸 비율도 중고령자에 있어서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수료한 공교육 교육연수는 12.0년으로 OECD 평균 11.8년과 거의 유사한 수치로 판명되었다.

전공별 대졸자의 성차에 있어서는 인문과학은 여성이 대부분인 75%로 OECD 평균과 유사한 상황이고, 수학 및 컴퓨터 공학 대졸자 비율 중 여성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공학 대졸자 중 여성의 비율은 OECD 평균인 25%로 파악되었다. 즉, 전공에 있어서의 성차는 OECD 국가 평균과 거의 유사하거나 여성의 비율이 수학 및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약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읽기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고, 반면, 수학에서는 가장 높은 편으로 파악되었다. 조기교육 연수와 읽기점수간의 관계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읽기 점수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국가로 파악되었다. 부의 고용상태가 안정적일수록 자녀의 읽기 점수도 높았으나, 모의 경우는 오히려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의 경우 자녀의 읽기 점수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문해율에 있어서 한국의 상황은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절 한국의 통계생산방안

1. 일부국가의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s, selected countries, 1970-2005, CO1.2)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 : IMR)은 출생아 1,000명당 만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의 수로 정의한다. 보통 1,000 분비로 나타내고 있다. 영아사망률은 경제발전, 의학기술의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을 잘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한영자 외, 2008).

$$\text{영아사망률(\%)} = \frac{\text{특정연도의 1세 미만의 사망아수}}{\text{당해연도의 1년간 총출생아동수}} \times 1,000$$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하상)에 의거하여 출생·사망·혼인·이혼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영아사망(출생 후 1년 이내 사망)은 출생 및 사망신고 동시 누락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영유아 화장신고자료(1999년 자료부터)와 모자보건법에 의한 신생아 사망자료(2001년 자료부터)를 수집하여 영아사망 건수를 보완하고 있다.

출생 코호트의 영아사망률 등을 작성하고, 그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영유아 보건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하고 있다.

2) 관련통계와 통계수치

〈표 5-5〉 한국의 영아사망률 추이

(단위: %)

연도	1970	1985	1993	1996	1999	2002	2005	2006
영아사망률	45	13	9.9	7.7	6.2	5.3	4.7	4.1

자료: 한영자 외(2008), 『2005~2006 영아·모성사망조사』, p41.

우리나라의 영아사망율은 1970년부터 작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1996년 이전의 통계는 전국적인 단위의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영아사망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에는 인구 1,000명당 45명이었는데, 1985년에는 13명으로 크게 떨어졌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 현재 4.1을 보이고 있다.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OECD 평균 보다는 낮으나 북유럽국가들의 평균인 2-3명보다는 높은 상황이다.

3) 자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영자 외), 영아·모성사망 조사

4) 작성주기

- 2008년 이전 매 3년, 2008년 2년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영아사망률은 자료와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한영자 외, 2008).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자료와 방법으로 1960년대 이후부터 영아사망률을 측정하였으나, 정확한 전국단위의 영아사망률을 측정하는 것은 199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서이다. 우리나라의 OECD 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용역위탁을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영아사망 통계를 생산하게 된 것이다.

1996년부터 최초로 전국 규모의 의료기관 조사와 출생신고자료, 건강보험자료를

연계하여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영아사망을 보다 정확한 전국단위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향후에도 현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영아·모성사망조사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통계치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2. 저출생아 비율의 변화(Change in proportion of low birth weight infants, 2005, CO2a.2)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

저출생아는 출생 시의 체중이 2500g 이하인 아이로 저출생아 비율은 당해 연도 전체 출생아 중 2500g 이하의 신생아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다. 통계자료는 출생시 신생아체중을 1.5kg미만, 1.5~1.9kg이하, 2.0~2.4kg이하, 2.5~2.9kg이하, 3.0~3.4kg이하, 3.5~3.9kg이하, 4.0~4.4kg이하, 4.5kg이상, 미상으로 구분하여 정리 되어 있다.

$$\text{저출생아 비율(\%)} = \frac{\text{특정연도의 1세 미만의 2.5kg아동수}}{\text{당해연도의 1년간 총출생아동수}} \times 100$$

우리나라에서 출생체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는 통계법에 의한 출생신고자료 이고, 이외에도 모자보건법에 의한 미숙아 등의 출생보고 자료가 있다(한영자 외, 2007).

우선, 저출생아 관련 통계자료는 1993년부터 통계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규

정에 의한 지정통계, 동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승인번호 제10103호), 동법 통계법 제23조, 통계법 시행령 제30조와 인구동태조사규칙(제정 2007.12.28 재정경제부령 591호)에 의거하여 출생·사망·혼인·이혼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해당기관 공무원은 인구동태조사 항목을 『인구동태입력시스템』에 입력한다. 그런데, 출생신고자료로부터의 출생체중 분포와 저출생체중아 발생률은 연도별 신고 누락의 차이, 체중 정보의 정확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

2000년 이후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미숙아 의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사업 실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저출생체중아와 미숙아를 보고하고 있다.

2) 관련통계와 통계수치

우리나라 저체중아는 1993년에는 2.59%이었는데, 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3.80%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4.26%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 수치는 생산된 것이 없어서 OECD 국가와의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표 5-6 참조).

3) 자료원

인구동태조사는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 주택, 보건, 사회복지, 교육, 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작성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매월

〈표 5-6〉 우리나라 저체중아 비율(1993~2007)

구분	백분율
1993	2.5
1994	2.7
1995	3.0
1996	3.1
1997	3.3
1998	3.4
1999	3.6
2000	3.8
2001	4.0
2002	4.0
2003	4.0
2004	4.2
2005	4.3
2006	4.3
2007	4.6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신고자료』, 각년도.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통계청에서 생산 국가통계를 대표하는 통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한다(한영자 외, 2007). 여기에는 행정절차상의 문제, 신고내용의 부정확성, 신고지연, 신고누락의 문제가 있고, 신고 장소의 이원화(본적지 또는 거주지에서의 신고가능)문제가 있다. 국가통계생산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표준화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의해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므로 매우 민감한 정보이다. 선진국의 경우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비밀이 보호되는 장치가 확보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국가차원의 통계생산을 위해서 한영자 외(2007)는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저체중아를 보고하고, 보건소에서는 표준화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의해 자료를 수집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저체중아의 인구사회학적 정보까지 수립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 무자녀가구 소득 대비 가구유형별 상대소득(Relative income by household type, mid-1980s and mid-2000s, CO7.3)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산식)

무자녀가구 소득 대비 가구유형별 상대소득이란 무자녀가구 소득을 1로 했을 때, 자녀가 있는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소득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소득은 가처분 소득을 사용하고 있다.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이란 경상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총소득)에서 소득세와 연금, 사회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소득을 말한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시가계조사와 2003년 이후에는 가계조사를 활용하여 이 통계 수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3)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 통계청, 가계조사

4) 작성주기

- 통계청, 가계조사, 매월 작성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다른 연구소의 실태조사 자료도 있기는 하지만, 통계청의 가계조사는 국가통계로서 매우 대표성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이어서 이를 선정하였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가계조사를 재분석하여 OECD 통계의 작성기준에 맞는 통계치를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자녀유무별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무자녀가족 소득을 기준(1)으로 하여 양부모 및 한부모가구의 소득비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아동빈곤율의 변화(Point changes in child poverty between mid-1990s and mid-2000s, CO8.2)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산식)

아동빈곤율 변화는 최근연도(2000년대 중반)의 전체 아동 중 중위소득이 50% 미만인 아동빈곤율에서 기준연도(1990년대 중반)의 아동빈곤율을 뺀 수치를 말한다.

$$\text{아동빈곤율 변화(2000년대 중반 대비 1990년대 중반)} = \text{2000년대 중반 아동빈곤율} - \text{1990년대 중반 아동빈곤율}$$

이를 위해 1995년과 2005년의 아동빈곤율의 차이를 분석하여 수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활

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가계조사는 2002년 이전에는 도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고, 아동의 연령도 1987년에서 1997년까지는 19세 이하로 하였고, 그 이후에야 18세 미만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 도시아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1990년대 중반인 1995년의 9.2%에서 2000년대 중반인 2005년에는 11.8%로 증가하여 2.6%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OECD 평균과 거의 유사한 수치이다.

〈표 5-7〉 아동빈곤율 변화추이(1989~2007)

(단위: %)

	도시근로자 ¹⁾	전가구기준 ²⁾
1989	9.2	-
1990	9.3	-
1991	8.8	-
1992	8.4	-
1993	8.6	-
1994	9.0	-
1995	9.2	-
1996	10.1	-
1997	9.4	-
1998	11.6	-
1999	11.7	-
2000	10.7	-
2001	11.0	-
2002	10.8	-
2003	11.0	13.6
2004	11.4	14.1
2005	11.8	13.9
2006	11.1	13.4
2007	10.8	13.4
2006 ²⁾	10.9	12.9
2007 ²⁾	10.7	12.9

주1: 1) 1인가구, 농어촌 지역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촌지역 제외
 3) 아동은 0~18세 미만을 기준으로 분석. 단 1987~97년의 경우 아동은 19세 이하를 기준으로 분석
 자료: 김태완 외(2008), 빈곤통계연보.

3) 자료원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 통계청, 가계조사

4) 작성주기

- 통계청, 가계조사는 매월 작성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다른 연구소의 실태조사 자료도 있기는 하지만, 통계청의 가계조사는 국가통계로서 매우 대표성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이어서 이를 선정하였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향후에도 가계조사를 재분석하여 OECD 통계의 작성기준에 맞는 통계치를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5. 아동빈곤율과 모의 고용율의 관계(2000년대 중반)(Poverty rates lower in countries with higher maternal employment rates, mid-2000s, CO8.4)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산식)

아동빈곤율은 전체아동인구 중 빈곤아동인구의 비율로 정의되고, 모의 고용율은 1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의 고용율을 나타낸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빈곤율과 모의 고용율 통계치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료원

통계청, 가계조사

4) 작성주기: 매월

나. 대표통계선정기준

다른 연구소의 실태조사 자료도 있기는 하지만, 통계청의 가계조사는 국가통계로서 매우 대표성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이어서 이를 선정하였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향후에도 가계조사를 재분석하여 OECD 통계의 작성기준에 맞는 통계치를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6. 성별 학교도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15-19세 젊은이 비율, 2004(Proportion of population aged 15-19 who were not in education or employment in 2004, by gender, CO13.1)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산식)

교육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을 의미하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진학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으면서 실업자와는 달리 일할 의사도 없는 자들을 말한다. OECD에서는 교육과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15-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분석된 우리나라 니트에 관한 연구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10-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15-29세를 포괄하고 있다. 즉, OECD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연령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생활시간조사 조사자료의 작성주기도 OECD와 달리 최초로 1999년에 시작되었고 매 5년 작성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작년도가 늦어서 1990년대 수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한

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NEET의 정의는 학자마다 혹은 기관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노동부(2007)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형 NEET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개인 가운데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 취업자, 2) 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등에 통학자, 3) 육아,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결혼준비 등의 활동자. 단, 2번에서 취업준비나 취업을 위한 교육은 NEET에 포함된다. 노동부에서 니트는 구직의사가 있는 구직니트와 구직의사가 없는 비구직니트로 구분하며, 각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text{니트 비율(OECD)} = \frac{\text{졸업, 중퇴자 중 실업자수} + \text{졸업, 중퇴자 중 비경활인구수}}{\text{전체청년인구(15-19세)}}$$

$$\text{니트 비율(한국)} = \frac{\text{졸업, 중퇴자 중 실업자수} + \text{졸업, 중퇴자 중 비경활인구수}}{\text{전체청년인구(15-29세)}}$$

$$\text{구직 니트 비율(한국)} = \frac{\text{졸업, 중퇴자 중 실업자수}}{\text{전체청년인구(15-29세)}}$$

$$\text{비구직 니트 비율(한국)} = \frac{\text{졸업, 중퇴자 중 비경활인구수}}{\text{전체청년인구(15-29세)}}$$

김기한·이경상(2006)의 연구에서 통계청의 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니트(NEET)의 정의는 ① 학생도 아니면서 ② 취업자도 아니고 ③ 미혼자인 청소년층을 의미하고 있다. 이 정의는 노동부의 정의와 비슷하지만, 구직의향을 세분하지는 않고 있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노동부(2007)에 따르면 전체 15~29세 청소년 중 NEET 비율은 17.14%이며, 남자가 12.19%, 여자는 21.73%로 여자의 비율이 남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기한·이경상(2006)의 정의에 따라 생활시간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니트 중 남자 청소년 니트(63.9%)가 여자 청소년 니트(36.1%)보다 27.8%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어 노동부 분석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니트 청소년들 중에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가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력자가 39.0%, 중학교 이하의 학력자는 3.4%로 나타나고 있다. 고학력자의 NEET 비율이 가장 많아 국가적인 손실이 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24세가 77.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5-19세 연령층(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성별에 따른 니트 비율(2004년도)

(단위: %)		
15~29세	성 별	백분율
전체 니트	남 자	12.19
	여 자	21.73
	소 계	17.14

자료: 노동부(2007),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p.30.

참고로, 이부형(2005)은 한국형 NEET의 수를 2003년 17.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노동부, 2007에서 재인용). 남재량(2006)은 2004년의 15~34세 청년인구 1450만 명 중 8.4%에 해당하는 121.4만이 한국형 NEET라고 추정하고 있다(노동부, 2007에서 재인용).

〈표 5-9〉 개인적 특성별 니트(NEET) 청소년 실태(2004년)

(단위: %, 사례수)			
구분	니트(NEET)	청소년 취업자	
전체	100.0 (498)	100.0(1,010)	
성별	남성	63.9 (318)	35.1 (355)
	여성	36.1 (180)	64.9 (18)
학력별	중학교 이하	3.4 (17)	1.8 (18)
	고등학교	39.0 (194)	38.3 (387)
	대학 이상	57.6 (287)	59.9 (605)
연령별	10-14세	0.4 (2)	0.0 (0)
	15-19세	21.9 (109)	7.7 (78)
	20-24세	77.7 (387)	92.3 (932)

자료: 김기현·이경상(2006),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한국청소년개발원, p.69.

3) 자료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2007

4) 작성주기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매 5년마다 작성된다. 1999년을 처음으로 조사가 실시되었고, 5년 후인 2004년이 두 번째이고, 2009년에는 세 번째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3에 시작되어 매년 작성되고 있다.

나. 대표통계 선정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이 전국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NEET를 판별하는데 적합한 조사라고 판단된다. 단, 연령범위를 OECD 기준에 맞추어 재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한국 자료를 생산할 때, 청소년의 연령을 OECD에 맞게 15-19세에 맞추어서 재분석할 때 국제비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성별 비교를 통해 OECD국가와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OECD는 인적자본축적 및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인적자본이 완전히 사용되지 않는 부문을 니트의 개념으로 하고 있다. 즉, 청년고용율의 관점과 비슷한 측면에서 니트를 정의하고 있는데, OECD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구직의사를 물어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의 사교육부문이 크지 않고, 공교육(공립이나 사립)에 크게 의지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정의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7. 성별 학교도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15-19세 젊은이 연평균 증가율 (1995-2004)(Average annual growth rates of youth no in education or employment, 1995-2004, CO13.2)

가. 통계현황

1) 정의와 작성방법(산식)

니트의 정의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제시하였다.

2) 관련 통계와 통계수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노동부(2007)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15~29세이고 1995년 수치는 없는 한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표본의 규모면에서 생활시간보다 신뢰성있는 조사로 판단된다. 니트인구수를 집계한 바에 의하면 15세 29세의 경우 전체적으로 니트 인구수는 16~17%대로 안정적인 추세에 있다. 성별로는 전체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 니트비율이 높다. 증감추이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는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세에서 24세의 경우도 지난 5년간 안정적인 추이인 10~11% 전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성별 증감추이는 남성의 경우는 9%대 전후로 약간 증가하고 여성의 경우는 약간 증가하다가 다시 12%대로 회귀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표 5-10〉 성별 니트 비율 추이(15~29세)

(단위: %)

15~29세	성 별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NEET 비율	남 자	11.06	12.19	12.35	11.72	13.17
	여 자	22.00	21.73	20.85	20.11	20.08
	소 계	16.73	17.14	16.75	16.04	16.72
구직 NEET	남 자	3.50	3.68	3.54	3.32	3.37
	여 자	2.56	2.69	2.79	2.67	2.26
	소 계	3.01	3.17	3.15	2.98	2.80
비구직 NEET	남 자	7.56	8.52	8.82	8.40	9.79
	여 자	19.44	19.03	18.05	17.44	17.82
	소 계	13.72	13.97	13.60	13.06	13.91

자료: 노동부(2007),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p30(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3) 자료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2007.

4) 작성주기

경제활동인구조사: 매년

〈표 5-11〉 성별 니트 비율 추이(15~24세)

(단위: %)

15~24세	성 별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NEET 비율	남 자	9.01	10.19	10.27	8.55	10.23
	여 자	12.56	13.53	13.02	12.42	12.81
	소 계	10.91	11.97	11.73	10.60	11.59
구직 NEET	남 자	2.05	2.12	2.08	1.82	1.73
	여 자	2.65	2.79	2.68	2.41	2.07
	소 계	2.37	2.48	2.40	2.14	1.91
비구직 NEET	남 자	6.96	8.06	8.19	6.73	8.50
	여 자	9.91	10.74	10.34	10.01	10.74
	소 계	8.54	9.49	9.34	8.46	9.68

자료: 노동부(2007),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p30(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나. 대표통계 선정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계조사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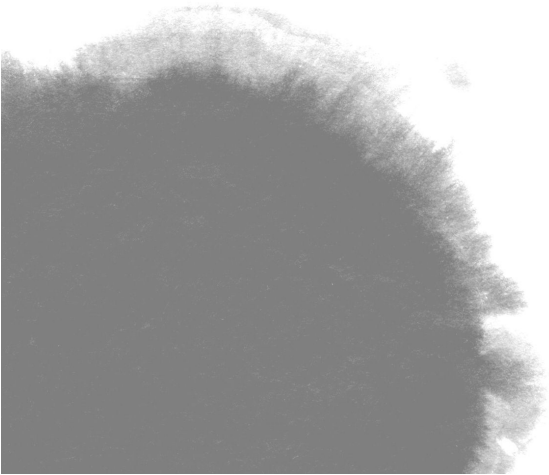
다. 통계생산 방향과 전략

향후 OECD 기준에 맞는 한국 NEET족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15~19세 연령대상만을 추출하여 재분석할 수 있다. 단, 2003년 이전의 통계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있는 가용 자료가 없는 한계를 가진다.

06

K
I
H
A
S
A

통계 생산 방안 구축



6장 통계 생산방안

제 1절 Family database의 생산현황

본 보고서의 첫 번째 목적은 OECD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국내 통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요구통계의 생산현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OECD에 제출된 통계(기제출)와 국내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나 OECD에는 제출되지 않은 통계(미제출, 생산가능), 둘째, 미제출된 통계 중 국내 원자료를 재분석해야 하는 통계(미제출, 재분석), 셋째, 기존의 조사 중 유사항목의 추가 혹은 수정 등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통계(미제출, 보완), 마지막으로 미제출된 통계 중 현재 국내에 조사된 자료가 없어 신규조사가 필요한 통계(미제출, 신규조사)이다.

〈표 6-1〉 과 같이 한국의 기제출 통계는 69개(62.7%)이며, 미제출 생산가능 통계는 12개(10.9%), 기존조사 재분석으로 생산가능한 통계는 19개(17.3%), 기존조사 보완으로 생산가능한 통계는 8(7.3%), 신규조사를 통해 생산해야 할 통계는 2개(1.8%)이다.

〈표 6-1〉 한국의 Family database 통계생산 현황과 방안

대분류	계	기제출	미제출			
			생산가능	재분석	보완	신규조사
계	110(112)	69	12	19	8(10) ¹⁾	2
SF	34	12	9	8	5	-
LMF	17	13	0	4	2 ¹⁾	-
PF	31	23	1	2	3	2
CO	28	21	2	5	0	-

주: 1) LMF 기제출 통계 13개에는 1회성 연구에 의한 요구통계(2개)가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제출하는데 제한이 있음. 이 때문에 2개의 통계는 '기제출'과 '보완'에 중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요구통계 합계와 보완통계 개수에서 차이가 발생함.

현재 OECD Family database에 제출된 한국 가족통계의 수는 69개이며, 미제출된 통계 중 기존의 국내 통계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 요구 통계의 수는 12개이다. 반면에 현재 미제출된 통계 중 자료원을 재분석해야 하는 요구통계의 수는 15개이며, 기존 조사에 항목을 보완 혹은 신규 항목을 추가해야 하는 요구통계의 수는 14개이다.

이를 대분류별로 살펴보면, 가족환경(SF)의 변화와 관련된 지표의 대부분은 이미 제출되었거나 바로 제출될 수 있는 통계(전체 34개 중 21개)들이지만, 재분석을 요하는 통계가 6개, 조사항목을 보완해야 하는 통계가 7개가 있다. 이는 한국의 가족환경과 서구 선진국의 가족환경의 차이에서 야기하는 것이나 최근 한국에서도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함(예를 들면 동거가족과 재혼가족 등)에 따라 통계를 생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통계가 제출된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는 대부분의 통계가 이미 제출(전체 17개 중 14개)되었으며 재분석을 요하는 통계가 3개, 조사항목을 보완해야 하는 통계가 3개이다. 다만 이들 미제출 통계는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통계는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피고용인에 대한 정보만 조사되어 있어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정보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기제출된 통계 중 일부는 국제통계 기준에 맞춘 논문에 근거한 통계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생산방안이 필요하다.

가족과 이동에 대한 공공정책(PF)도 상당수의 통계가 이미 제출(전체 31개 중 23개)되었으며 재분석을 요하는 통계가 2개, 조사항목을 보완해야 하는 통계가 3개이다. 그리고 신규조사를 필요로 하는 통계가 2개이다. 신규조사 내용은 주로 한부모 아동의 실태와 자녀 부양비 지급 여부, 부양비 수준 등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수급권자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조사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통계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성과(CO)의 경우 대부분의 통계가 이미 제출(전체 28개 중 21개)되었으며 재분석을 요하는 통계가 4개, 조사항목을 보완해야 하는 통계가 1개이다.

〈표 6-2〉 '가족의 구조(SF)'요구통계 분석 현황

	요구통계	통계생산방안			
		기존	재분석	보완	신규
1-1	평균가구원수	○			
1-2	가구유형(부부, 1인, 한부모가족, 기타)	△ ²⁾			
1-3	아동 및 부모동거여부에 따른 가구분포	○			
1-4	아동수별 가구분포		★ ²⁾		
2-1	0~14세 아동의 가구유형별 분포(1)		★ ²⁾		
2-2	0~14세 아동의 가구유형별 분포(2)		★ ²⁾		
2-3	0~14세 아동의 가구내 아동수별 분포		★ ²⁾		
3-1	0~14세 아동의 부모와의 거주형태			★ ⁷⁾	
3-2	0~14세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특성			★ ⁷⁾	
4-1	합계출산율	○			
4-2	완료출산율	△ ²⁾			
4-3	정상분만아의 출생순위별 분포	△ ²⁾			
4-4	출생 순위 분포의 변화(1980-2005)	△ ²⁾			
4-5	국가별 여성경제활동참여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			
5-1	첫 자녀 출산시의 모의 평균연령	○			
5-2	1970년 이후의 첫 자녀 출산시 연령의 지연추이	○			
5-3	연령별 출산율	△ ²⁾			
6-1	혼외출산아 비중(최근 연도)	○			
6-2	1970년 이후의 혼외출산아 비중의 변화	△ ²⁾			
6-3	국가별 혼외출산아 비중과 출산율의 관계	○			
6-4	십대출산율(1980과 2005년)	○			
7-1	코호트별 무자녀 비중		★ ⁷⁾		
7-2	확정적인 무자녀 비중		★ ⁷⁾		
7-3	1965년생 코호트의 확정적인 무자녀와 완료출산율		★ ⁷⁾		
7-4	무자녀 가구에 속한 여성의 비중		★ ⁷⁾		
8-1	조혼인율의 추이(1970~2007)	○			
8-2	초혼의 비율	△ ¹⁾			
8-3	초혼연령	△ ¹⁾			
8-4	초혼연령에서의 남녀차이	○			
8-5	조이혼율의 증가추이(1970~2006/7)	○			
8-6	이혼시 평균결혼기간(1980~2005)	△ ¹⁾			
9-1	파트너십 종류별 분포			★ ²⁾	
9-2	파트너십 종류별 자녀수 분포 (2001년)			★ ²⁾	
9-3	파트너와의 거주형태			★ ²⁾	

주. ○ 기재출 통계 △ 국내 통계 있으나 미제출 ▽ 제출했으나 향후 생산 불가능 통계 ★ 미제출통계

- 1) 인구동향조사(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등)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4) 통계청, 가계조사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5)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6) 가족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표 6-3〉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요구통계 분석 현황

	요구통계	통계생산방안			
		기존	재분석	보완	신규
2-1	여성고용율 대비 모성 고용율		★ ³⁾⁶⁾		
2-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모성 고용율		★ ³⁾⁶⁾		
2-3	16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모성 고용율		★ ³⁾⁶⁾		
4-1	성별 연령별 고용 프로파일(2005)	○			
4-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른 모의 고용율과 출산 휴가율		★ ⁶⁾¹⁰⁾		
5-1	전일제 중위소득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2004)	○			
5-2	전일제 근로자의 소득분배상 상위위층의 소득에서의 성별 격차(2004)	○			
5-3	전일제 중위소득 피고요인의 성별 임금 격차 동향 비율	○			
5-4	교육 수준별 연령집단별 남성 대비 여성들의 평균 연간 소득(2004)	○			
6-1	시간제 고용 비율(2005)	○			
6-2	여성의 시간제 고용율의 변화(1990-2005)	○			
6-3	임시고용 비율(2005)	▽		★ ³⁾	
6-4	임시직 여성 비율 동향(1990-2005)	▽		★ ³⁾	
6-5	학력별 여성의 고용율과 성별 고용율 격차(2004)	○			
7-1	성별 주당 통상 근로시간(2005)	○			
7-2	주당 40시간이상 근무자 비율의 변화(1985-2005)	○			
7-3	주당 50시간이상 근무자 비율의 변화(1985-2005)	○			

주: ○ 기제출 통계 △ 국내 통계 있으나 미제출 ▽ 제출했으나 향후 생산 불가능 통계 ★ 미제출통계

- 1) 인구동향조사(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등)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4) 통계청, 가계조사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5)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6) 가족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8)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9) 영아·모성사망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10) 고용보험통계(한국고용정보원)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표 6-4〉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PF)'요구통계 분석 현황

	요구 통계	통계생산방안			
		기존	재분석	보완	신규
1-1	급여종류별 가족 급여에 대한 공적 지출	○			
2-1	교육수준별 공공지출 비율	○			
2-2	교육수준별 학생 1인당 공공지출 비율	○			
3-1	가족 현금급여	○			
4-1	OECD 국가들의 조세급여 시스템 비교	○			
4-2	1차소득자가 AW 67%일 때 2차 소득자의 평균 실효 세율 비교	○			
5-1	아동부양체계의 핵심적인 특징들			★ ¹⁾⁶⁾	
5-2	한부모와 자녀부양비를 받는 한부모 비율				★
5-3	자녀부양비 수준				★
7-1	전일제 근로자의 출산 및 아버지휴가, 육아휴직 산출	○			
7-2	아동 1인당 출생당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지출	○			
8-1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피고용인 부모의 휴가 사용 비율		★ ⁶⁾¹⁰⁾		
8-2	자녀의 출생순위별 1세미만 자녀의 모성 휴가 사용		★ ⁶⁾¹⁰⁾		
8-3	휴가를 사용하는 어머니 대비 아버지 비율	○			
9-1	법정 휴일과 노조 합의에 따른 휴가, 공휴일 수	○			
9-2	근로하는 부모들이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휴가	△			
10-1	유아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	○			
10-2	아동1인당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공공지출	○			
11-1	6세미만 아동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	○			
11-2	3-5세 아동의 유치원 대기율	○			
11-3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이용률	○			
12-1	유치원을 다니는 2세 아동의 보육비용	○			
12-2	평균 임금 167%인 2인 소득자 가구의 순 아동보육비용	○			
12-3	평균 임금 67%인 한부모 가구의 순 아동보육비용	○			
13-1	보육유형	○			
14-1	보육시설(0-3세 아동)의 교사 대 아동 비율	○			
14-2	유치원의 교사 대 아동 비율	○			
14-3	보육시설 교사의 자격요건과 주 근무지	○			
14-4	유치원 교사 자격요건과 주 근무지	○			
15-1	3-11세 연령별 아동의 방과후보육서비스 등록 비율			★ ⁸⁾	
15-2	방과후보육서비스의 핵심 특징들			★ ⁸⁾	

주: ○ 기제출 통계 △ 국내 통계 있으나 미제출 ▽ 제출했으나 향후 생산 불가능 통계 ★ 미제출통계

- 1) 인구동향조사(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등)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4) 통계청, 가계조사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5)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6) 가족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8)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9) 영아·모성사망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10) 고용보험통계(한국고용정보원)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표 6-5〉 '아동성과(CO)'요구통계 분석 현황

	요구 통계	통계생산방안			
		기존	재분석	보완	신규
1-1	영아사망률(2005)	○			
1-2	일부국가의 영아 사망률(1970-2005)	△ ¹⁾⁹⁾			
1-3	영아사망률의 감소(1970-2005)	○			
2a-1	저체중아 비율(2005)	○			
2a-2	저체중아 비율 변화(1980-2005)	△ ⁹⁾			
2b-1	2세이동 백일해 접종율과 전체인구 백일해 발생율	○			
2b-2	2세 아동 홍역 접종율과 전체인구 홍역 발생율	○			
7-1	소득불평등의 지니계수(2000년대 중반)	○			
7-2	불평등 정도(198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			
7-3	가구유형별 상대 소득(2000년대 중반)	○			
7-4	가구유형별 상대소득(198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 ⁴⁾		
8-1	아동 및 전체인구 빈곤율(2000년대 중반)	○			
8-2	아동빈곤율 변화(1990년대중반-2000년대 중반)		★ ⁴⁾		
8-3	가구유형별 빈곤율(2000년대 중반)	○			
8-4	모성고용율이 높은 국가에서의 낮은 아동빈곤율		★ ⁴⁾⁶⁾		
8-5	아동과 유자녀 가구의 빈곤율(2000년대 중반)	○			
9-1	성별 및 연령별 고등학교 졸업 비율(2004)	○			
9-2	성별 및 연령별 대학교 졸업 비율(2004)	○			
9-3	수료한 공교육 연수(2004)	○			
10-1	성별 인문학, 예술, 교육학 분야 대졸자 비율(2004)	○			
10-2	성별 수학, 컴퓨터공학 분야 대졸자 비율(2004)	○			
10-3	성별 공학, 산업공학, 토목공학 분야 대졸자 비율	○			
12-1	읽기와 수학 성적 성차, PISA(2003)	○			
12-2	조기교육 참여 기간별 평균 읽기점수 차이, PISA(2003)	○			
12-3	부모 고용형태별 평균 읽기점수 차이, PISA(2003)	○			
12-4	부모 교육수준별 평균 읽기문해율 점수, PISA(2003)	○			
13-1	성별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15-19세 젊은이 비율		★ ³⁾⁵⁾		
13-2	성별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15-19세 젊은이 연평균 성장률		★ ³⁾⁵⁾		

주: ○ 기제출 통계 △ 국내 통계 있으나 미제출 ▽ 제출했으나 향후 생산 불가능 통계 ★ 미제출통계

- 1) 인구동향조사(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등)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4) 통계청, 가계조사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5)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6) 가족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8)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9) 영아·모성사망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 10) 고용보험통계(한국고용정보원)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

제 2절 기존 조사를 활용한 생산 방안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국제통계 기준에 맞추어 한국의 가족통계를 생산하는 것이다. OECD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원과 함께 국제기구의 통계자료, 논문과 학술적인 자료의 통계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한국의 다양한 자료원들을 검토하였다. 표 6-6의 자료원은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자료원이다.

이러한 주요 자료원은 기존 조사를 활용한 통계생산을 논의할 때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즉 본 연구에서 기존 통계를 그대로 OECD에 제출하는 것으로 통계 생산이 끝나는 항목들(미제출 생산가능 통계)이 있는가하면, 기존 통계에서 조사는 되고 있으나 통계가 생산되지 않고 있어 원자료를 재분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구유형에 대한 항목들이 모두 조사되었으나 통계청 홈페이지(KOSIS)에서는 관련 통계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재분석을 통해서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조사 성적이 통계생산을 만족시킨다는 전제하에 가능할 것이다. 아래의 <표 6-6>은 기존의 자료원을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미제출통계 12개에 대해서 자료원별로 살펴본 것이다.

〈표 6-6〉 기존 자료원을 활용한 생산가능 통계

자 료 원	생산가능 통계
계	11
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초혼의 비율(SF), 영아 사망률(CO) 외 2
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정상분만아의 출생순위별 분포(SF) 외 5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4)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
5)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6) 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8)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9) 영아·모성사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체중아 비율의 변화(1980-2005, CO)
10) 고용보험통계 (한국고용정보원)	-

주. 기존 자료원을 활용하여 생산가능한 통계의 수는 총 12개이나 '부모들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휴가'는 한국의 제도 미도입으로 본 표에 포함하지 않음.

다음으로 표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여종의 기존조사를 재분석하거나 보완함으로써 향후 생산 가능한 통계는 총 29개이다. 이 중 기존조사의 재분석은 자료원의 생산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방안과 연구기관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안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이 있으므로 원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료원의 생산기관에 재분석을 의뢰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 경우 기존조사의 재분석을 통한 요구통계의 생산은 자료원의 생산기관의 협조에 따라 생산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조사의 항목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에도 자료원의 조사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조사의 경우 조사 시점을 기다려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중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가족의 구조를 핵가족, 직계가족, 그리고 기타가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OECD에서는 자녀가 있는 커플가구(기혼, 동거포함),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 기타 가구로 구분하고 있다. ‘동거가족’이나 ‘친부모가 아닌 성인과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의 수’와 같은 항목들은 실제로 한국에서 일반적인 가족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 변화하

는 가족환경의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향후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신규조사 대신 인구주택총조사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표 6-7〉 기존조사의 재분석 또는 문항보완을 통한 생산가능 통계

자 료 원	생 산 방 안	
	기존조사의 재분석	기존조사의 보완
계	15	14
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이동부양체계의 핵심적인 특징들(PF)
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완료출산율(SF) 외 2	파트너십비율(SF) 외 3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모성 고용율(LMF) 외 4	임시고용비율 (LMF) 외 1
4)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구유형별 상대소득(CO) 외 1	모성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의 낮은 아동빈곤율(CO)
5)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
6) 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무자녀 가구에 속하는 여성의 비중(SF) 외 2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특성(SF) 외 2
8)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의 방과후보육서비스 이용률(PF) 외 1
9) 영아·모성사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체중아비율변화(CO) 외 1	
10) 고용보험통계 (한국고용정보원)	1세미만 자녀가 있는 모의 휴가 사용비율(PF) 외 1	가장어린자녀의 연령별 모의 고용률과 휴가율(LMF)

먼저 기존조사의 재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족의 구조(SF)’의 요구통계 현황과 산정식 등은 아래의 표 6-8과 같다. 이에 따르면 SF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통해 총 8개의 요구통계를 생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8〉 기존조사의 재분석으로 생산가능한 통계(SF)

자료원 (기관명)	요구통계명	산 정 식	요구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아동수별 가구분포	1) 아동수가 0명인 가구(0 대신 1, 2, 3 등을 대입) $\frac{\text{아동수가0인가구}}{\text{전체가구}} * 100$	2005
	0~14세 아동의 가구유형별 분포(1)	1) 한부(모)와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 $\frac{\text{한부(모)와거주하고있는0-14세아동의수}}{\text{0-14세아동의수}} * 100$ 2) 양친과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 $\frac{\text{양친과거주하고있는0-14세아동의수}}{\text{0-14세아동의수}} * 100$ 3) 기타가구에서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 $\frac{\text{기타가구에서거주하고있는0-14세아동의수}}{\text{0-14세아동의수}} * 100$	2005
	0~14세 아동의 가구유형별 분포(2)	1) 한부(모)와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 $\frac{\text{한부(모)외의성인은없는가구의아동의수}}{\text{0-14세아동의수}} * 100$ 2) 양친과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 $\frac{\text{양친외의성인은없는가구에거주하는아동의수}}{\text{0-14세아동의수}} * 100$ 3) 기타가구에서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 $\frac{\text{기타가구에거주하고있는0-14세아동의수}}{\text{0-14세아동의수}} * 100$	2005
	0~14세 아동의 가구내 아동수별 분포	1) 아동수별 분포(아동 수 1명 대신 2명, 3명 이상) $\frac{\text{아동이1명인가구의0-14세아동의수}}{\text{0-14세아동의수}} * 100$ 2)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속해있는 아동 $\frac{\text{6세이하의아동이있는가구의아동의수}}{\text{0-14세아동의수}} * 100$	200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코호트별 무자녀 비중(A)	1) 1950년생(1955, 1960, 1965년생) $\frac{\text{1950년생여성중무자녀여성의수}}{\text{1950년생여성의수}} * 100$	1950년생: 1980, 1990
	확정적인 무자녀 비중(B)	1) 1930년생(1935, 40, 45, 50, 55, 60, 65년) $\frac{\text{1930년생여성중무자녀여성의수}}{\text{1930년생여성의수}} * 100$	1930년생: 1970- 1974
	(A)와 (B)의 비중		
	무자녀 가구 여성 비율	1) 연령집단별(30-34세, 35-39세, 40-44세) $\frac{\text{25-29세여성중자녀가없는여성의수}}{\text{25-29세여성의수}} * 100$	2006

다음 ‘가족의 노동시장지위(LMF)’의 요구통계 현황과 산정식 등은 표 6-9와 같다. 이에 따르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보험통계의 재분석을 통해서 4개의 요구통계와 추가적인 세부통계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6-9〉 기존조사의 재분석으로 생산가능한 통계(LMF)

자료원 (기관명)	요구통계명	산 정 식	요구년도
경제활동인구 조사 (통계청)	여성 고용률과 모의 고용률	1) 모의 고용률 $\frac{25-44세여성*16세이하의자녀가1명이상*취업자}{25-44세여성인구}$	2004년 이후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모의 고용률	1) 만 2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 $\frac{25-44세여성*가장어린자녀의연령이2세이하*취업자}{25-44세여성인구}$	2004년 이후
		2) 만 3-5세의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 $\frac{25-44세여성*가장어린자녀의연령이3-5세*취업자}{25-44세여성인구}$	
16세 이하 자녀수에 따른 모의 고용률	16세 이하 자녀수에 따른 모의 고용률	3) 만 6-16세의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 $\frac{25-44세여성*가장어린자녀의연령이6-16세*취업자}{25-44세여성인구}$	2004년 이후
		1) 자녀의 수가 1명인 모의 고용률 $\frac{25-44세여성*16세이하의자녀*자녀수1명}{25-44세여성인구}$	
		2) 자녀의 수가 2명인 모의 고용률 $\frac{25-44세여성*16세이하의자녀*자녀수2명}{25-44세여성인구}$	
경제활동인구 조사 (통계청)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른 모의 고용률과 출산휴가율	3) 자녀의 수가 3명인 모의 고용률 $\frac{25-44세여성*16세이하의자녀*자녀수3명}{25-44세여성인구}$	2004년 이후
		1)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 $\frac{25-44세여성*3세이하의자녀*취업자}{25-44세여성인구}$	
고용보험통계 (한국고용정보 원)		2) 1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 $\frac{25-44세여성*16세이하의자녀*취업자}{25-44세여성인구}$	
		3)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의 출산휴가율 $\frac{25-44세여성*출산휴가사용중인여성}{25-44세여성인구}$	
		4) 16이하 자녀가 있는 모의 출산휴가율 $\frac{25-44세여성*출산휴가사용중인여성}{25-44세여성인구}$	

305

6
장
통
계
생
산
방
안

이어서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PF)'의 요구통계 현황과 산정식 등은 표 6-10과 같다. 이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통계의 재분석을 통해서 2개의 요구통계의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6-10〉 기존조사의 재분석으로 생산가능한 통계(PF)

자료원 (기관명)	요구통계명	산정식	요구년도
고용보험 통계 (한국고용 정보원)	1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피고용인 부모의 휴가 사용률	1) 여성의 비율 $\frac{1\text{세미만의자녀가있는피고용인여성중휴가사용자수}}{1\text{세미만의자녀를가진피고용인여성의수}}$ 2) 남성의 비율 $\frac{1\text{세미만의자녀가있는피고용인남성중휴가사용자수}}{1\text{세미만의자녀를가진피고용인남성의수}}$	2004-
	1세미만 자녀가 있는 모의 자녀 출생순위별 휴가 사용률	1) 첫째 자녀 $\frac{1\text{세미만의첫째자녀가있는여성의휴가사용자수}}{1\text{세미만의자녀가있는여성인구}}$ 2) 둘째 이상 $\frac{\text{둘째이상의자녀가1세미만인여성의휴가사용자수}}{1\text{세미만의자녀가있는여성인구}}$	2004-

끝으로 '아동성과(CO)'의 요구통계 현황과 산정식 등은 표 6-11과 같다.

〈표 6-11〉 기존조사를 활용한 재분석 요구 통계

자료원 (기관명)	요구통계명	산정식	요구 년도
가계조사 (통계청)	무자녀가구 소득 대비 가구유형별 상대소득	한부모가구 상대소득 = $\frac{\text{유자녀 한부모가구소득}}{\text{무자녀가구소득}}$ 양부모가구 상대소득 = $\frac{\text{유자녀 양부모가구소득}}{\text{무자녀가구소득}}$	2003년 이후
	아동빈곤율 의 변화	$\frac{18\text{세미만 빈곤아동수}}{\text{전체 아동수}} \times 100$ ※ 단,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가가가 제외되어 있어 향후에는 이를 포함한 조사자료가 필요함.	2008년 이후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청)	니트비율	1) 니트비율 $\frac{15-19\text{세인구} * \text{졸업, 중퇴자중실업자수} + \text{졸업, 중퇴자중비경활인구}}{15-19\text{세인구}}$ 2) 남성니트비율 $\frac{15-19\text{세남성} * \text{졸업, 중퇴자중실업자수} + \text{졸업, 중퇴자중비경활인구}}{15-19\text{세남성인구}}$ 3) 여성니트비율 $\frac{15-19\text{세여성} * \text{졸업, 중퇴자중실업자수} + \text{졸업, 중퇴자중비경활인구}}{15-19\text{세여성인구}}$	2003년 이후

기존조사의 재분석은 이미 조사되어 있는 원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이 용이한 반면에 기존조사의 항목 수정은 조사 실시기관과의 협의와 조사주기에 영향을 받는다. 자료원별 항목의 보완은 <표 6-12> 과 같다.

<표 6-12> 기존조사의 보완을 통해 생산가능한 통계들

	자료원 (기관명)	조사시점 (조사주기)	요구통계명	추가할 항목	효 과	반영 년도
SF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2009년 (3년)	0~14세 아동의 거주형태	- 가구설문 내용에 0~14세 아동의 생부 및 생모의 동 인가구내 거주 여부	0~14세 아동의 주거상황 파악	2012
			0~14세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특성			
LMF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청)	매월	임시고용비율 ¹⁾	기타항목> 32번 문항의 세부 선택문항으로 '⑦ 5년 초 과'를 추가	임시고용에 관한 국제기준 ¹⁾ 반영(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상정법률 고려)	2010
			임시고용비율변화			
	이혼신고서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	사건 발생시 (매년)	아동부양체계의 핵심적인 특징들	이혼신고서1) > ⑥ 양육자: 1) 부, 2) 모, 3) 부모 ⑦ 부양비 지급 합의: 1) 합의, 2) 합의안함 ⑧ 부양비지급 부담: 1) 부, 2) 모, 3) 부모 ⑨ 부양비 지급액 결정: 월 ()원	아동부양체계 에 대한 실태파악	2010
PF	보육통계 (보건복지 가족부)	매월	3-11세 연령별 방과후보육서비스 등록비율	1) 방과후보육 통계 - 연령별 이용률 ³⁾ 2) 방과후학교 통계 - 연령별 이용률	보육연계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2009
	교육통계 (교육과학 기술부)		방과후보육서비스의 핵심특징들	1) 방과후보육 통계 - 공공지출액 - GDP 대비 공공지출 규모 2) 방과후학교 통계 - 교사 대 아동 비율 - 공공지출액 - GDP 대비 공공지출 규모		2009

주: 1)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상용근로자(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 임시근로자(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일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는 자)로 구분하고 있음. OECD Family database 작성기준에 따르면, 임시고용은 상용근로자 중 고용계약이 정해진 일부와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합한 수치임. 그러나 고용계약이 3년까지만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외국의 경우 고용계약이 있는 근로자의 상용직과 임시직의 구분은 5년임.
2) 현재 이혼신고서 ⑤ 항목이 친권자 지정이므로 이 다음에 양육자 항목을 추가하고자 ⑥부터 시작함.
3) 현재 보육통계의 특수보육시설 현황 자료는 시도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연령별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제 3절 신규조사를 통한 생산방안

본 절에서 신규조사를 생산방안으로 제시하는 기본 배경에는 기존조사의 활용 한계와 앞으로 신규지표의 꾸준한 발굴 등을 고려하고 있다. 즉 본장 2절에서 살펴본 기존조사를 통해 재분석한 통계가 조사목적이나 조사방법 등으로 활용이 어렵거나, 설문문항의 추가나 보완이 여의치 않는 경우, 그리고 OECD가 앞으로 개발 지표의 추가 확장 등을 고려하였다.

현재의 가족관련통계들은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가족이 처한 다양한 위험들이 정확히 파악되고 정책적인 함의가 제공되는가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즉 OECD에서 추가로 조사되어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각국의 해당 부처에 질문지를 보내고 그에 대한 응답을 수집한 것처럼 본 연구 역시 추가적으로 한국의 가족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신규조사가 검토되었다. 표 6-1에서 보듯이 OECD Family database의 통계제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2가지 신규조사가 필요하다.

OECD Family database가 유자녀 핵가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어 서구유럽에는 적당하나 한국의 가족 실태를 정확하게 도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추가적인 신규 조사를 제시한다. 각 신규조사별로 Family database의 관련통계들을 제시하지만 이들은 생산방안별로 중복적으로 관련되기도 한다.

1. (가칭) 일가족양립실태조사

가. 조사목적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어머니의 고용상태와 일가족양립 실태를 파악하여 유자녀 가족의 보육정책 및 일가족양립정책, 조세정책 등 포괄적인 가족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나. 조사항목

1) 어머니의 고용상태: 노동시장 참여여부, 고용상태, 종사상 지위, 주당 근로시간, 사회보험가입여부, 연월차사용가능일 등

2) 가구상황: 자녀 연령과 자녀수, 이용서비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서비스 등), 배우자 유무, 가구내 자녀 돌봄서비스 제공자 유무 등

3) 근로소득의 점유율: 월 근로소득 대비 가구전체 소득, 월 근로소득 대비 자녀 보육 교육비, 월 근로소득의 지출 상황(부채감면, 생활비, 자녀보육비, 사교육비, 노인부양비 등)

4) 일가족양립인식: 가족내 주소득자 여부, 가족내 주돌봄서비스 제공자 여부, 노동시장참여 이유, 일가족생활양립이 어려운 이유 등

다. 기존조사와의 차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샘플이 가장 많으며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조사이나 가족의 상황에 대한 항목이 매우 협소하여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 어머니의 실태에 대한 통계의 생산에는 제약이 있다. 반면에 가족실태조사는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있으나 어머니의 고용상태와 그로인해 야기되는 현상들에 대한 조사 항목은 거의 없다.

라. 관련통계

1) LMF: 모성고용률, 자녀수별 모성고용률,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모성고용률 등과 OECD에서 미공개된 지표인 LMF1(고용상태별 가족과 이동), LMF3(가족상황별 어머니의 고용), LMF 10(가족우호적인 근로환경의 실제)

2) PF: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피고용인 부모의 휴가 사용률, 자녀의 출생순위

별 1세 미만 자녀의 모성 휴가 사용률, 근로하는 부모들이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휴가일수, 2인 소득자 가구의 전일제 보육의 순보육비용, 1인 소득자가구의 전일제 보육의 순보육비용 등

3) CO: 가구유형별 상대소득, 아동과 유자녀 가구의 빈곤율, 모성고용률과 아동 빈곤율의 관계 등

2.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가. 조사목적

일반적으로 이혼 후 자녀의 친권에 대한 결정은 법적으로 이루어지나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해서는 부모의 합의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나 모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는 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나 모는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의 책임에서 자유롭다. 이혼 후 자녀 부양의 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아동빈곤율은 높아지는 반면 자녀를 양육하는 부나 모에 비해서 부양하지 않는 부나 모의 형평성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 책임과 면접권, 부양의무 등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여 몇몇 국가에서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강제로 구상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나 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적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자녀부양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파악하여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한다.

나. 조사항목

1) 일반사항: 성별, 거주지, 출생연도, 한부모가구 생성시기, 혼인상태, 학력, 한달 평균 수입, 종교, 건강상태, 질병, 주거형태 등

2) 가족생활: 한부모가족 생성 이유, 가구원 수 및 현황, 자녀수와 연령, (6세미만 자녀의) 주 돌봄자, (초등학생 방과후) 주 돌봄자, 자녀와의 관계,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 자녀에 대한 체벌, 부모님의 학력, 부모님의 업종, 전(현) 배우자의 학력, 가족 분위기 등

3) 경제생활: 경제활동참여여부, 종사상 지위, 업무, 구직활동, 직장생활의 어려움,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 수료 여부, 가족의 경제상태, 최소 생활비용,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경제적 자립 여부 등

4) 사회심리적 상태: 가족문제, 도움받는 사람들과 도움들, 재혼의향, 스트레스 정도, 삶의 만족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5) 정부의 지원: 국기초 수급여부, 지원프로그램, 수혜 기간,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등

6) 복지욕구: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 욕구 등

다. 기존조사와의 차이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이 실시한 재가 모부자가정의 생활실태조사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정책연구를 위한 1회성 조사 이후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동태를 파악할 수가 없고, 샘플 수가 적어 모집단을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자녀부양비에 대한 항목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부모의 노동시장 참여 정도와 정부 지원에 대한 항목들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되어야 한다.

라. 관련통계

1) SF: 가구유형, 아동 및 부모동거여부에 따른 가구분포, 0-14세 아동의 가구유형별 분포, 0-14세 아동의 부모와의 거주형태, 0-14세 아동의 가구내 아동수별 분포 등

2) PF: 아동부양체계의 핵심적인 특징들, 한부모 비율과 자녀부양비를 받는 한부모 비율, 자녀부양비 수준 등 한부모 가족의 전일제 보육 이용의 순 아동보육비용 등과 미공개된 지표인 PF 6(양육지원실태) 등

3. (가칭) 가족소득체계실태조사

가. 조사목적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가 없는 한국은 빈곤선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이 사적인 체계에서 이루어지고 빈곤선이하로 떨어지면 공부조에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사적인 가족소득 체계가 건전한 가족은 빈곤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족환경과 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빈곤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소득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소득을 감소시키는 원인을 찾아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 방안 수립에 기여하고 다양한 가족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도구들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 조사항목

- 1) 일반사항: 가구원수,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혼인상태, 동거여부, 취업자 수, 고용상태, 거주 형태, 자동차 보유 등
- 2) 소득실태: 전체 가구소득의 구성, 월평균 가구소득, 시장소득과 비시장소득의 비중, 항목별 소득액 등
- 3) 지출실태: 월평균 생활비, 항목별 지출액 비중,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수(아동, 장애인, 노인으로 구분), 가족내 취학전 자녀 수와 연령, 이용하는 서비스, 장애인 돌봄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용 충당 방법, 노인 돌봄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과 비용충당방법 등
- 4) 노후준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저축, 연금, 사회보험 등),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 노후에 자식과의 동거 여부에 대한 인식 등

다. 기존조사와의 차이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도시가계조사는 일반적인 소득과 지출의 패턴을 잘 살펴볼 수 있으나 가족의 상황(예, 치매환자의 병간호 등)과 가족이 처할 수 있는 위협(예, 실업, 산재 등)에 대한 조사항목의 부족으로 복지체계내에서 가족의 소득과 지출에 문제점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국 보육 교육실태조사는 부모의 소득과 교육수준을 보육서비스와 보육비용, 보육육구 등과 살펴보는 장점이 있으나 자녀의 보육에만 초점을 맞추므로써 노인부양의 부담과 가족내 장애인 동거 여부 등 다양한 가족문제가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라. 관련통계

1) PF: 유치원을 다니는 3세 아동의 보육비용, 평균 임금 167%인 2인 소득자 가구에 대한 전일제 보육의 순보육비용, 평균 임금 675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전일제 보육의 순보육비용 등

2) CO: 가구유형별 상대 소득, 가구유형별 빈곤율, 아동과 유자녀 가구의 빈곤율 등

4. 세대실태 및 인식조사

가. 조사목적

OECD에서 요구하는 가족통계에서 ‘가족’은 유자녀 핵가족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와 남유럽 국가에서 가족이란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3세대를 의미할 때가 많다. 특히 더 이상 물리적으로 같이 살지 않더라도 정서적인 3세대 가족은 더욱 결속되고 있다. 근로가능세대(일반적으로 25-64세)들이 남녀에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 육아의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남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육아의 상당부분은 그들의 부모에게 양도되고 있다. 즉 공간적으로 같이 살지 않는 조부모들이 매일 일정시간 손자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흔해지고 있다.

반면에 과거와 같은 노인공경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하기도 한다. 노인세대와 청년세대를 구분하듯 다양한 기준들로 우리는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세대차이, 세대분열 같은 사회학적 용어들이 넘치고 있다. 한국의 가족통계체계에서 세대가 중요한 이유 역시 이와 유사하다. 현재 근로가능세대는 자녀를 부양하는 책임과 함께 부모세대를 부양해야하는 책임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노후까지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비용은 사적으로 충당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이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로부터 부양받을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가족을 매개로 세대간의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부담을 살펴보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체계를 구

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등에 주는 함의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나. 조사항목

1) 이동·청소년용: 성별, 가족상황(조부모와 동거여부, 부모와 동거여부), 주양육자, 결혼에 대한 인식, 자녀에 대한 인식, 성역할에 대한 인식,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인식(노인부양은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조부모와 동거하는 것에 대한 인식, 고령화사회의 장단점 인식 등), 세대에 대한 인식 등

2) 근로세대용: 성별, 가족상황, 주양육자, 결혼에 대한 인식,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자녀부양의 책임, 가족내 돌봄역할의 분담, 보육비용의 지원정도, 이용하고 있는 보육서비스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일반조세로 노인을 부양하는 데 대한 인식, 일반조세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데 대한 인식 등), 세대에 대한 인식 등

3) 부모세대용: 성별, 가족상황, 주양육자, 결혼에 대한 인식,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자녀부양 대비 자녀돌봄의 형평성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일반조세 VS 사회보험방식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적절성 인식), 세대에 대한 인식 등

다. 기존조사와의 차이

기존에 이와 유사한 조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라. 관련통계

1) LMF: 미공개된 지표인 LMF11(여가나 근로에서 벗어나 보내는 시간), LMF12(근로와 돌봄, 가사일에 소요하는 시간) 등

2) CO: 미공개 지표인 CO 5(10세이하 아동의 비만), CO6(15세이상 아동의 성
별 흡연자), CO15(생애 첫 투표 이용률) 등

참고문헌

- 김기현·이경상(2006),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미숙·원영희·이현송·장혜경,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김태완 외(2008),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련 외(2007),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기업수용성 연구.
- 나 정·서문희·이미화·김문정, 「2004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 노동부(2007),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 송다영·장수정·김은지, 일가족양립지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_____. 이 옥·백화중·박지혜·최진원,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 조사 5-보육·교육 실태조사 총괄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_____. 김은설·장혜경·박수연,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노동부, 2008.
- 산나리·안재진·이정림·송신영·김영원, 한국아동패널 2008, 육아정책개발센터, 2008.
- 이향란(2007), “지역아동센터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소고”, 2007 아동기

획포럼 결과보고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pp.91~108.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____, 가계조사, 각년도

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____, 인구동태신고자료, 각년도

____, 2007 경제활동인구연보, 2008.

장혜경·김혜영·홍승아·은기수·이명진·김영란·주재선·송치선, 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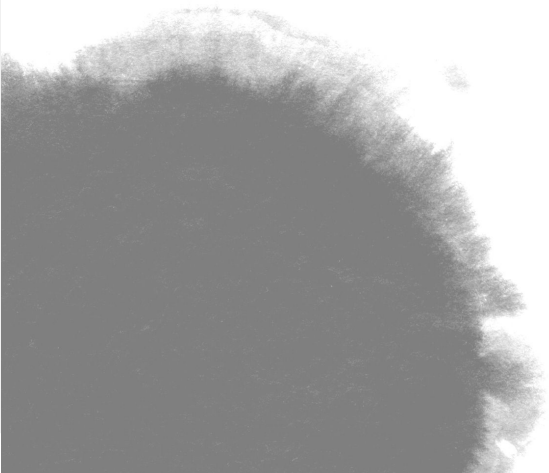
정미라·나정·박은혜·하봉운·위수경·강지원·윤진영, 삶과 학습의 조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2007.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설문지, 각년도

한영자·서경·오희철·신순문·홍재석·최정수·이난희(2007), 저출생체중아 통계생산방
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증진사업지원단

____·최정수·서경·신순문·오희철·이상욱 외(2008), 2005~2006 영아 모성사망조
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한의무기록협회·보건복지가족부.

부 록



부록

〈부표 1〉 OECD 기준 자료원에서 생산한 요구통계

Database	소분류	요 구 통 계	갯수
Earnings database	LMF 5.1	중위소득자의 성별 임금 격차	3
	LMF 5.2	상하위 소득의 성별 임금 격차	
	LMF 5.3	중위소득자의 성별 임금 격차 동향	
Labor Force Statistics	LMF 2.1	여성고용율 대비 모성 고용율	2
	LMF 4.1	성별 고용연령별 프로파일	
SOCX	PF1.1	급여유형별 가족급여에 대한 공적 지출	4
	PF7.2	출생아동 1인당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지출	
	PF10.1	보육·유아교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PF10.2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Education database	LMF5.1	학력별 여성의 고용율과 성별 고용율 격차	6
	LMF6.1	학력별 여성의 고용율과 성별 고용율 격차	
	PF2.1	교육수준별 공공지출	
	PF2.2	교육수준별 학생 1인당 공공지출	
	PF11.1	6세미만 아동의 보육·유아교육서비스 등록율	
PF11.1	6세미만 아동의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참여율		
Usual weekly working hours	LMF6.1	시간제 고용 비율	3
	LMF6.2	여성의 시간제 고용율의 변화	
	LMF7.1	성별주당 통상 근무시간	
Tax/Benefit	PF3.1	가족현금급여	3
	PF4.1	OECD 국가들의 조세급여 시스템	
	PF4.2	평균 소득 67%의 부부의 평균 실효세율	
Temporary Employment	LMF6.3	임시고용의 출현	2
	LMF6.4	임시직 여성비율의 동향	
Babies and Bosses	LMF4.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른 모의 고용율과 출산휴가율	2
	PF9.1	법정 휴일과 노사합의된 연가휴가일 수	
Benefit and Wages	PF12.2	평균임금 167%인 2인 소득자 가족의 순 보육비용	2
	PF12.3	평균임금 67%인 한부모가족의 순 보육비용	

〈부표 2〉 타 국제기구의 자료원에서 생산한 요구통계

Database	소분류	요 구 통 계	갯수
Eurostat	SF2.1	가구유형별 0-14세 아동의 분포	13
	SF4.1	합계출산율	
	SF4.2	1950년생과 1965년 여성의 원료출산율	
	SF4.3	자녀의 출생순위별 정상분만 비율	
	SF4.4	출생순위분포의 변화	
	SF6.1	혼외출산아의 비율	
	SF6.2	1970년도 이후 혼외출산아 비율의 변화	
	SF6.4	십대 출산율	
	SF8.1	조혼인율 저하 추이	
	SF8.2	초혼의 비율	
	SF8.3	초혼 연령	
	SF8.5	조이혼율 추이	
	SF8.6	조이혼율 추이	
European Labour Force Survey(ELFS)	SF2.2	가구유형별 0-14세 아동 분포	7
	SF2.3	0-14세 아동수별 가구유형분포	
	SF3.1	0-14세 아동의 거주형태별 분포	
	SF4.5	국가별 여성경제활동참여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SF7.1	무자녀 가구에 속한 여성의 비율	
	PF8.1	1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피고용인부모의 휴가사용 비율	
	PF8.2	1세미만 자녀가 있는 모의 자녀출생순위에 따른 휴가 사용	
UN	SF5.1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연령	4
	SF5.2	1970년대 이후의 첫째아 출산의 연기	
	SF8.5	조이혼율 추이	
	SF8.6	조이혼율 차이	
Luxembourg Income Study	PF5.2	한부모비율과 아동부양비를 받는 한부모 비율	2
	PF5.3	아동부양비의 수준	

322